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사례집

(유아·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2009. 12.

교육과학기술부

- 일 러 두 기 -

○ 본 사례집에 수록된 질의·회신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일부 회신내용의 경우 특정 민원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타인이 내용이 유사하다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질의·회신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사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일부 수정, 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시는 시점에서는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유 아 교 육 ····· 1
- 유치원 설립자격 조건 ····· 3
- 2010년 병설유치원 입학아동에 대한 연령 융통성 부여 요청 ····· 3
- 유아교육 ····· 3
- 2층 보육료 지원과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 4
- 3자녀 유치원비 지원 요청 ····· 5
- 5세 무상교육 ····· 6
-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서 출판시기 ····· 6
- 공립유치원 증설 요청 ····· 7
- 교육비 외에 지급하는 교재비와 급식비 문의 ····· 8
- 교육비 지원 제도 안내 ····· 8
- 유치원비 현금결제 요구 ····· 9
- 병설유치원 교육과정에 영어 포함 요청 ····· 10
- 병설유치원 반일반 기준시간 문의 ····· 10
-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 부채인정 ····· 11
- 사립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관련 문의 ····· 12
-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공개 여부 ····· 13
- 사립유치원 원장 연령은 몇세인지? ····· 14
- 사립유치원 인허가 관련 문의 ····· 14
- 사립유치원은 비영리인지? ····· 15
- 사립유치원은 학교에 속하는지? ····· 15
- 셋째자녀 유치원비 감면 요청 ····· 16
- 어린이 통학 버스 등록을 위한 안내 ····· 17
- 영어유치부의 횡포와 정책개선 요구 ····· 21
- 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 ····· 22

원장자격에 관한 문의 ····· 22
'놀이학교' 단속요청 ····· 23
유아교육비 질문(만 4세아의 만5세반 취원) ····· 24
유아스포츠단의 유아교육법 적용 여부 문의 ····· 25
유아학비 중 종일반비 지원범위 문의 ····· 26
유아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 26
유아학비지원 변경(추정소득)에 관한 질의 ····· 28
유아학비지원(가구원의 범위 등)에 대해 문의 ····· 28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임용 서류는 무엇인지? ····· 29
유치원 교사 통계 ····· 30
유치원 교사용지도서에 대한 제안 ····· 30
유치원 교사정원(원감) 관련 질의 ····· 31
유치원 교사정원 확대 요청 ····· 31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대상 ····· 32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금, 부당 청구 ····· 33
유치원 방학 ····· 33
지하에 유치원 설립이 가능한지 ····· 34
영주권자가 유치원 설립이 가능한지 ····· 35
유치원 설립자격 ····· 36
유치원 영양사 공동채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36
유치원 원비 반환 ····· 37
유치원 취원 가능한 연령 ····· 38
유치원 용지에 아동발달센터 설치가 가능한지 ····· 39
유치원에 중·간식비 지원 ····· 39
유치원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대상이 아닌지? ····· 40
유치원의 영어교육과 수익자 부담 방과 후 특별활동에 대하여 문의 ····· 40
유치원의 정의 ····· 41
유치원입학금 ····· 42
유치원장 자격 ····· 43
유치원종일제 수업의 의미 ····· 44
취학 유예아동 유치원비 지원 ····· 44

● 일반유치원에서 특정종교관련 교육을 하여도 되는지? ····· 45
● 장애유아 취학유예 관련 질의 ····· 45
● 재건축단지 내 위치한 유치원의 운영 관련 문의 ····· 46
● 종일반 유치원비 지원에 대해 질의 ····· 47
● 유아의 한글과 수공부에 대하여 질의 ····· 48

■ 특 수 교 육 ····· 49
● 특수교육대상자 학교배정 ····· 51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에 관한 질의 ····· 51
● 기본교육과정 전면적용에 따른 질의 ····· 52
● 특수교육법시행령의 자격증소지자 ····· 52
● 기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절차 ····· 53
● 사립특수학교 교원 정원 배정 방법 ····· 54
● 외국인 장애학생의 특수학교 입학 ····· 55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55
● 일반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비, 기성회비, 급식비 지원은 되는지? ····· 56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역할 ····· 57
● 장애성인의 정규교육 방안과 법적근거 ····· 58
● 장애아 무상교육 ····· 58
● 소아 당뇨의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여부 ····· 59
● 전공과 과정의 현장실습 및 취업 ····· 59
● 정신지체 장애에 대한 용어 ····· 60
● 정신지체 학교 수업시간 ····· 61
●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62년생 정신지체1급(남) 성인이 초등학교에 입학 가능한지? ····· 62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배치절차 ····· 62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범위 ····· 63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시간 ····· 63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목적은? ····· 64
● 특수학교 보직교사수 산정과 임명 ····· 64
● 장애학생 도우미 ····· 65

■ 초·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 67
●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발급시 학교명 오류 문제 해결 건의 ····· 69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연수학점 누계 개선 건의 ····· 69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간제교사 담임이력과 과목개설 문의 ····· 70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교급식 납품에 관한 문의 ····· 71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데이터 무단접근 문제점에 대한 건의 ····· 72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인증서 발급 문의 ····· 72
● 수시원서 접수시 전문계고교생 온라인 정보제공 문의 ····· 74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개인복무사항 개선안 건의 ····· 74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보안인증서 설치 문의 ····· 75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비밀번호 변경 문의 ····· 76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윤리와 사상을 사회교과군으로 교체 여부 문의 ··· 76
● 학부모 서비스 익스플로러8 지원 문의 ····· 77
● 교무업무시스템 개선 건의 ····· 77
● 내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서비스 업무개선 건의 ····· 78
● 학부모서비스와 PAPS의 로그인 페이지 통합에 대한 건의 ····· 79
●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방안 ····· 80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근거 문의 ····· 80
● 방과후학교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방안 ····· 81
● 방과후학교 수업비 지원에 대하여 문의 ····· 82
● 학교 자율화 방안 교직원 인사권 강화에 대해 문의 ····· 82
●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에 대하여 문의 ····· 83
●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질의 ····· 83
● 국내 국제학교에 관한 문의 ····· 84
●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 규정 입법예고 관련 문의 ····· 85
● 외국인학교의 편법 불법사례 진정 ····· 86
● 취학 연령이 넘은 학생이 국내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86
● 영재교육진흥법상 영재교육기관 여부 문의 ····· 87
● 영재성을 검사하는 기관은? ····· 88
● 정보올림피아드 특별전형 폐지 유예 건의 ····· 89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 검토 요청 ····· 89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문의 ····· 90
중3의 10월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건의 ····· 91
'학교알리미' 부작용 관련 질의 ····· 92
학업성취도의 법적 권한 문의 ····· 92
학업성취도에서 특수학교 학생은 제외되는지 ····· 93
미용을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 문의 ····· 94
교과부의 전문계고 산학협력인프라 구축 방안 ····· 95
마이스터교 지정과 2010 고입 관련 문의 ····· 95
개방형자율학교를 확대 관련 문의 ····· 96
교육청의 영어경시대회 후원명칭, 시상에 대하여 문의 ····· 96
국제고 입시 관련 문의 ····· 97
국제중학교 재학생의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영재학교 지원자격 ····· 98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문의 ····· 98
대안학교가 적용받지 않는 법조항 문의 ····· 99
대안학교에 대한 질문 ····· 100
대한민국의 의무교육과 위반시 처벌에 대한 문의 ····· 101
사립학교 자문기구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의 지위 ····· 103
외고지역제한에 관하여 문의 ····· 103
유학생 특목고 진학 자격에 관한 문제 ····· 104
의무교육연한(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에 대한 대안교육의 위헌 및 적법성 여부 질의 ····· 105
인가받은 대안 중학교 현황 문의 ····· 106
인근에 위치한 학교운동장 시설 사용 문의 ····· 106
자율학교 운영 방안 건의 ····· 107
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전형방법 문의 ····· 108
자율형사립학교 관련 문의 ····· 108
장관상 관련 문의 ····· 109
중학생 징계 구분에 관한 문의 ····· 10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관하여 질의 ····· 110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21375호 제81조 제3항에 대한 유권해석 … 111
특목고 진학에 대한 문의 … 111
특목고(외국어고)정책방향 질의 … 112
특성화중학교의 종류에 대하여 질의 … 113
특수목적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 … 113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를 온라인상에서 화상회의 가능여부 문의 … 114
학교법인과 임면권자의 의미 법령해석 요청 … 115
학교운영상의 각각의 정의에 대한 문의 … 115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현장실습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관련) … 116
서울국제고 특별전형에 관하여 질의 … 117
국제중, 국제고 자료 요청 … 117
국제학교 입학기준 변경 시기 문의 … 118
인정유학후 귀국하여 재취학시 꼭 시험을 치러야 하는지? … 119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능한 교외상의 범위 질의 … 119
재량활동 정규교과 시간의 운영 문의 … 120
외국인의 국내 고등학교 편입 가능 여부 문의 … 120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과 ITQ자격증 NEIS 자격취득란에 등록 여부 … 121
경조사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여부 … 122
권고전학 학생의 재입학 문제 문의 … 122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교출석인정여부 … 123
학교폭력 및 따돌림에 관한 질의 … 123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문제점 … 124
교복공동구매추진 학부모 문의 … 126
재외한국학교의 저소득층자녀에게 학비지원 관련 문의 … 127
재외한국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기 위한 방법은? … 128
재외한국학교 입학절차 관련 문의 … 129
고용휴직시 관용여권 발급문제 문의 … 129
딸아이 유학 관련 문의 … 130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학적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 132

-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한 해외 국가 인정학교 확인 문의 ····· 132
- 일본 소재 국제학교의 한국 인정 여부 문의 ····· 133
- 자녀학비보조수당(영 제11조 및 (별표6) 국외취학 문의 ····· 133
-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지 변경시 필요한 서류와 방법은? ····· 134
- 재외국민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등록에 관한 문의 ····· 135
- 재외한국학교의 초·중학교 학생이 무상의무교육 대상인지 ····· 136
- 재외동포교육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의 차이점 문의 ····· 136
- 재외한국학교 초빙교사 근무에 관한 문의 ····· 138
- 재외한국학교 특수학급 여부 문의 ····· 139
- 정주국제학교 인가여부 문의 ····· 139
- 주 상해 한국학교 고1학년 1반 증설에 관한 문제 ····· 140
- 중국 광동지역 한인학교 설립계획 문의 ····· 140
- 필리핀에 있는 학교가 정식 인가된 학교인지 문의 ····· 141
- 한국어교사 교육 기관 문의 ····· 142
- 한국어능력시험 문의 ····· 142
- 한국학교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 ····· 143
- 해외 한국학교 설립 문의 ····· 143
- 해외 한국학교에 초빙교사제의 대안 필요 제안 ····· 144
- 해외파견공무원의 자격 기준에 대해 문의 ····· 145
- 해외한국학교의 교감 파견계획 문의 ····· 146

■ 학생건강안전 ····· 147

- 가상현실 체험관 유통문제 ····· 149
- 개정 학교보건법에 대한 적용 문의 ····· 150
- 개정된 중학생 체력검사 기준표 문의 ····· 151
- 학교급식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에 관하여 질의 ····· 151
- 건축물 용도에 따른 허가 신청 때 심의 관련 재 질의 ····· 152
- 관광호텔 등이 적용되는 학교보건법 관련 질의 ····· 153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범위 등 관련 문의 ····· 154
- 교육환경 평가 관련 질의 ····· 155

교육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시기 문의 ····· 156
교육환경평가 대상여부 문의 ····· 157
교육환경평가 대상여부 문의 ····· 157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에 관한 질의 ····· 158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여부 문의 ····· 159
다자녀 가구 학교 급식비 지원여부 문의 ····· 160
당구장 보건법 적용에 대한 문의 ····· 160
대학교 보건실에 관한 문의 ····· 161
대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질의 ····· 162
돼지고기의 등급 판정확인서에 대한 문의 ····· 162
문구점의 도박을 배우는 오락기 관련 문의 ····· 163
미니오락기에 대한 상대정화구역내 규제를 해제 문의 ····· 164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 시정요청 ····· 165
학교보건법 법령 해석 요청 ····· 166
보건지소의 학교보건법 금지시설 해당여부 재질의 ····· 167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심의 ····· 168
인조잔디에 관한 문의 ····· 169
사무실이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지 문의 ····· 170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관련 문의 ····· 170
상가 거리제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관하여 질의 ····· 171
교실 천정에 도배되어 있는 석면 철거에 대한 문의 ····· 172
실내 공기질 측정관계 문의 ····· 173
실정에 맞지 않는 학교 위생 정화구역 문의 ····· 174
양호교사와 보건교사의 역할(직무) 차이 문의 ····· 175
폭력게임기에 대한 제재 요청 ····· 176
외국소재 한국국제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가입이 안되는지? ····· 176
유생성 뇌수막염으로 인한 출결상황 문의 ····· 177
일반교사의 의약품 투여에 관한 질의 ····· 177
전국 중, 고등학교에 혈액형 검사 실시 건의 ····· 178
정비구역안의 학교의 교육환경보호 관련 문의 ····· 179

- 정화구역 법령해석 요청 ····· 180
- 정화구역설정에 따른 학교보건법상 학교경계선은 어디서부터인지? ····· 181
- 중학생 운동특기생 합숙교육불가방침 철회요청 ····· 182
- 학교급식소 지하수 사용관련 문의 ····· 183
-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할 경우? ····· 184
- 청정연료공급설비(CNG충전소)의 상대정화구역 해당 규정? ····· 184
- 초등학교 1학년 급식에 대하여 질의 ····· 185
- 초등학생 유학에 따른 건강검진 관련 문의 ····· 186
- 초중고 교실 공기오염 심각성에 대한 문의 ····· 186
- 총포판매업이 정화구역에 저촉되는지 여부 문의 ····· 187
- 축열식 전기물끓이개 사용시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 근거법규는? ····· 188
- 학교 경계선 관련 문의 민원 ····· 188
- 학교 급식비 소득공제 관련 문의 ····· 189
- 학교 운동부중 축구 등 인기 종목의 운영방법의 개선 요청 ····· 190
- 학교 정화구역내 가능 업종 문의 ····· 191
- 학교급식 식재료 복수검수에 관하여 질의 ····· 192
- 학교급식 식재료 소독관련 문의 ····· 193
- 학교급식일지 출력 별도 보관여부 질의 ····· 193
- 학교내의 정수기 관리 문제 질의 ····· 194
- 학교보건법 상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관련 문의 ····· 194
- 학교보건법 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범위에 관한 질의 ····· 195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관한 문의 ····· 196
- 학교보건법 정화위원회에 대한 질문 ····· 197
- 학교보건법 제 5조 및 6조의 학교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질의 ····· 198
- 학교보건법 제6의3조에 관한 문의 ····· 199
- 학교보건법 제6조 3에 대한 문의 ····· 200
- 학교보건법 제6조의 2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문의 ····· 201
-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되는지? ····· 202
- 학교보건법의 해당사항 관련 문의 ····· 203
- 학교부지 위치 이동(변경)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이행 여부 ····· 203

- 학교수련회중 다친 사고처리에 대하여 질의 ····· 204
- 학교시설(운동장)사용에 관한 사항 문의 ····· 204
- 학교안전사고에대한 법률 해석관련 질의서 ····· 205
- 학교에서 실시하는 단체 해외수학여행을 보류요청 ····· 206
- 학교위생정화구역내 대기배출시설 설치가능 여부? ····· 207
- 학교위생정화구역내 용도지역변경(준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관련 문의 ····· 208
- 학교유해시설물에 관해서 질의 ····· 209
- 학교정화구역과 폐기물처리시설관련 문의 ····· 210
- 학교정화구역내 건축행위 가능여부 질의 ····· 211
- 학교정화구역내 보건지소가 진료소에 해당여부? ····· 211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문의 ····· 212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PC방)의 경계는? ····· 213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학교부지확대)설정시 기존 금지시설에 대한 조치 ····· 214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시 대학원대학 포함여부 문의 ····· 214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의 법령 해석 문의 ····· 215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 관련 ····· 216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해제 효력존속에 관한 질의 ····· 217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해제에 관한 질의 ····· 217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관련 ····· 218
- 학생건강체력평가제 확대 시행 계획에 대한 문의 ····· 219
- 학생안전공재회 보상에 관한 질문 ····· 220
- 학습환경보호위원회와 관련 문의 ····· 221
- 학교급식에서 수입쇠고기 사용 관련 문의 ····· 222

■ 초·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 223

- 초등학교 교감 업무, 대우에 대한 건의 ····· 225
- 교사자격증이 미국에서 인정되는지 ····· 225
- 승진규정 중 연구점수와 석사 학위 인정 범위 ····· 226
- 퇴직교사 성과급 문의 ····· 227
- 1,2월 근무 중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성과급 지급 여부 ····· 227

1정 연수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 228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육공무원 고용휴직에 관한 건 ····· 229
2009년도 하반기 교원 시도간교류 여부 문의 ····· 230
2009년부터 적용되는 석사학위 2개 취득자 연구 점수문제 ····· 230
2009년 초등학교 교장·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일 및 자격증부가점 반영 · 230
입학허가시점에 자격(현직교직)을 상실시 어떻게 됩니까 ····· 231
가족수당 지급대상 관련 문의 ····· 231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 ····· 232
가족수당에 대한 질문 ····· 233
간병휴직과 질병휴직 기간 중 대학원 수강의 적법여부 ····· 233
개정자격 연수 평정(2008.2)에 대하여 문의 ····· 234
겸직 범위 ····· 235
경력 인정 문의 ····· 236
고용휴직 ····· 236
고용휴직 관련 문의 ····· 236
고용휴직이 되나요? ····· 237
공무원 재직기간 중 학위취득시 학력인정 관련 ····· 238
공무원자녀학비보조수당지원에 대한 문의 ····· 239
공무원재직중 징계중 사직가능여부 ····· 239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 통합해도 괜찮은가요? ····· 240
공통가산점에 대한 문의 ····· 241
교사의 시도간 일방 전출입을 교과부에서 적극 실시 요구 ····· 241
교사 영어 연수 휴직에 관하여... ····· 242
교사의 권리 ····· 242
교사의 권리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 ····· 243
교사의 급지 근무연한 변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243
교사의 대학원 수강 ····· 244
교사의 민간단체 고용 휴직에 관한 내용 ····· 245
교사호봉수와 진급에 대한 질문 ····· 245
교원 호봉경력(환산율) 인정에 관한 사항 ····· 246

교원 호봉정정 문의 ····· 247
교원성과급 지급 기준 ····· 248
교원연구평점 소급적용은 법개정 년도부터 적용해야 타당 ····· 248
교원연금 지급 ····· 249
교원연수생 급여지급 건 ····· 250
교원의 경제활동 ····· 251
교원의 방송통신대학력인정여부 ····· 251
교원의 복무관리에 대해 ····· 252
교원이 소속된 학교의 학생으로 재학이 가능한지 여부 ····· 252
교원인사위원회 구성관련(고등학교) ····· 253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여부 ····· 253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254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연구점수 상향 조정, 소외되는 사람없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 255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일관성 유지를 ····· 256
교육공무원 승진시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 256
교육공무원 외국 국적 취득 ····· 257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 문의 ····· 257
교육공무원법 해석 ····· 258
교육공무원의 고용 휴직에 대하여 ····· 259
교육공무원인 부모의 가족수당 지급 ····· 259
교육공무원의 개인적인 어학연수에 대한 질의 ····· 260
교육대학 졸업 후 농사경력 반영 여부 질의 ····· 260
교학급당 학생수 감축 요청 ····· 261
교육청 근무 순회교사의 연수 ····· 262
교육총경력 ····· 262
교육행정경력의 범위에 관한 질의 ····· 263
교장 자격증 부관설정등에 관한 규정 중 질의사항? ····· 263
교장임기에 대한 질의 ····· 264
교장자격 연수 완료 후 자격증 발급 기한 ····· 265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에 관하여 ····· 265

교직수당가산금(원로수당) ····· 266
교직원 공제회 종신보험료 납부 ····· 266
교직원 맞춤형 복지보험 문제 제기 ····· 267
교직원 육아휴직지침 및 교육법전 ····· 268
교직원 직무연수 장소가 본교일 경우 출장신청 가능 여부 ····· 268
6.25사변일이 국가공휴일이었던적이 있는지 ····· 269
교회 주일학교 경력이 교직경력에 인정되는지 ····· 270
국가별 외국대학 현황 ····· 270
국어과목과 한문과목이 상치교과인지 ····· 271
국제학교 교사 지원 자격에 관하여 ····· 272
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파견 시 현직교사의 고용휴직불가방침 ····· 273
군 근무경력 인정 기간 문의 ····· 273
군경력과 학위경력 중복시 호봉획정 ····· 274
군경력이 교육공무원승진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이 되는 지요? ····· 274
군미추 추가 신청을 바랍니다. ····· 275
군복무 후 복직에 관한 문의 ····· 276
동반휴직 조건 문의 ····· 276
근무년수 산입에 대해 ····· 277
기간제 교사 호봉 책정에 대한 궁금점 ····· 277
기간제 교사 나이를 연장 요청 ····· 278
기간제 교사는 채용신체검사를 왜 매년하는지요? ····· 279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급을 주지않는 것은 형평성 어긋나지 않는지 ····· 279
기간제교사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 280
기술교과 교사중 공업분야 자격(기계, 전자 등) 소지자가 기술교과의 교감 승진 가능 여부 ····· 280
다면평가의 문제점 ····· 281
당연퇴직자의 퇴직 일자 ····· 281
비인가 대안학교와 인가 대안학교에서 교사 경력인정에관한 문의 ····· 282
대학교 교육조교의 경력인정 부분 ····· 283
대학원 경력인정에 대한 문의 ····· 283

대학원 석사학위로 1급정교사를 받았을 경우 ····· 284
대학원 수강시 복무관계 ····· 285
대학원 연구조교 경력 ····· 285
대학원 편입학 ····· 285
대학원과 군경력이 겹칠때의 호봉 ····· 286
유아교육전공 대학원 문의 ····· 287
동반휴직 ····· 287
동반휴직 가능 여부 ····· 287
동사무소 통장경력 호봉획정시 인정여부 ····· 288
명예퇴임의 시기 ····· 288
명예퇴직 조건 순위 ····· 289
미인정 경력 ····· 289
박사학위 점수 인정 여부 ····· 290
발령 후 군경력 인정 ····· 291
벽지 가산점 인정 확인 ····· 291
보건 겸직 교사의 수당 ····· 292
보건교사 산가시 보건업무수당 지급 ····· 293
겸직가능여부 질의 ····· 293
복직시 휴직전 학교로 복직되는지 ····· 294
부전공 인정 여부 ····· 294
불문경고가 징계로서 비정기 전보의 대상이 되는지? ····· 295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비정규직보호법률 적용 문의 ····· 296
사학연금 부담금 소급에 관한 건 ····· 296
상치 과목의 기준 ····· 297
새로 개정된 승진 규정에서 석사학위 2개 인정여부 ····· 298
성과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298
소방안전교육사 의무 배치건 ····· 299
수석교사의 보전수당가산금 지급여부 ····· 299
승진규정에서 석사학위를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가능한지 ····· 300
승진후보자 평정지침(교육성적 인정 범위) ····· 300

- 시간강사경력인정에 따른 통상시간에 대하여... 301
- 영양교사에게 안전관리수당지급이 가능한가요? 302
- 영주권을 가진 초등교사의 복직여부 302
- 원격교육연수원 법인 분리 가능여부 질의 303
- 원로교사의 복무및 대우에 대한 내용 303
- 유사경력 인정 304
- 유학휴직 연장을 이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304
- 육아휴직 경력인정 범위와 기간 305
- 육아휴직 시에는 해외 거주가 불가능한지요? 306
- 육아휴직 신청 시기 306
- 육아휴직 중 해외체류 307
- 육아휴직과 호봉 308
- 육아휴직의 경력산입에 관해 308
- 육아휴직중 출산 309
- 인사규정에 관한 문의 309
-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을 다녔을 때 호봉인정? 310
- 자격연수 인정범위에 대하여 311
- 교원 공개전형의 정원 문의 311
- 장애인 교원 임용고시 문의 312
- 장애인 임용 조건에 대한 문의 313
- 재외국민 교육기관 파견 근무 경력 314
-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 314
-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근무한 유치원교사의 경력인정에 대해... 315
- 재차(2차)민원 교육공무원 정년과 사립학교 교장의 임기의 해석 315
- 전과에 관해 의문사항 316
- 전국연구대회 승인에 관한 법령 질의 316
- 전문상담교사자격연수 직무연수 인정여부 317
- 전임강사 경력증명 318
- 전직에 관해서 질문 318
- 전직전 벽지가산점은 인정된다는 것인지요? 319

정근수당 관련 ····· 319
정근수당에 관한 문의 ····· 320
정년퇴임교사에게도 퇴임시 특별승진제도 신설 요망 ····· 320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사립학교의 신임 학교장의 자격기준 해당 여부 ····· 321
휴직 조항 문의 ····· 322
종일반강사 호봉경력 ····· 322
종일반은 정규학급이에요.. ····· 323
중국 심천 한국 국제학교 경력증명서 ····· 323
중등 교원임용시험 가산점에 대한 문의입니다. ····· 324
중등 특수 임용 응시 요건 ····· 325
중등 특수 지역가산점 ····· 325
중등 특수 직업교사 임용에 대한 문의 ····· 326
중등2정(음악)자격증 소지자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경력 ····· 327
중등교사 연수휴직관련 문의 ····· 327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관해서 궁금증 ····· 328
중등교사의 국내대학 파견은 교원대학교만 되는 것인지 ····· 329
중등교사자격증으로 초등학교 교사 근무경력의 호봉환산률 ····· 329
중등교원선발에 대해서 궁금한점 질문 ····· 330
중등임용 가산점 문제 ····· 331
중등임용 특수학교 직업교사 지원자격 문의 ····· 332
중등임용고시 응시자격에 대한 질의 ····· 333
교원임용 결격사항 문의 ····· 334
중등임용에서 임용유예 혹은 대기발령에 대해서 질문 ····· 335
중등특수교사 채용을 위한 임용고시의 지원 자격에 대한 문의 ····· 335
중학교 교원 ····· 336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자에 대한 유사경력 인정범위 ····· 336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한 순회 전보 가점을 줄 수 있는가? ····· 337
지역사범대 가산점 ····· 338
과도한 체벌 근절 요청 ····· 338
직무연수(원격연수) ····· 339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관련 직업훈련 포함여부 ····· 339
- 질병휴직 연장 관련 질의 ····· 340
- 우수 교사들의 교수방법 및 수업 노하우 공유 ····· 340
- 초과근무와 출장비 병급건 ····· 341
- 초등1급정교사 자격연수를 직무연수처럼 등급제할 계획인지? ····· 342
- 현직교원의 학사편입이 가능한지 ····· 342
- 초등교사 어학연수 휴직 문의 ····· 343
- 초등교사의 고용휴직 관련 ····· 343
- 초등교원 임용 연령제한 폐지 ····· 344
- 초등교원 자격에 관하여.. ····· 344
- 초등교원 채용 및 교대 통폐합과 관련한 질의 ····· 345
- 남교사를 많이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 346
- 초등특수교육과 복수전공 ····· 346
- 초등학교에서 중등교사자격으로 근무가능 여부 ····· 347
- 초빙교사 임명 및 해임 과정 ····· 347
- 초빙교원의 자격 ····· 348
- 치료실기교사 ····· 349
- 치료실기교사 관련 문의 ····· 349
-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 350
- 한글학교는 고용 휴직 대상기관인가요? ····· 351
- 해외유치원 경력 문의 ····· 351
- 현장교사제도에 대한 질문 ····· 352
- 현직교사의 상담교사 발령 ····· 352
- 호봉산정에 관하여? ····· 353
- 호봉승급 일자 문의 ····· 354
- 호봉재획정 문의 ····· 355
- 호봉정정에 따른 사립학교 기간도 환급대상이 되는지요? ····· 355
- 호봉책정시 경력인정(영양교사) ····· 356
- 호봉획정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인정여부 ····· 357
- 호봉획정시 연구원 경력 관련 ····· 358

- 호봉획정에 관한 질문 ····· 358
- 휴일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 ····· 359
- 휴직 변경에 대하여 문의 ····· 360
- 휴직 중 1정연수 ····· 361
- 휴직 후 경력인정 및 호봉승급 ····· 361
-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 362
- 휴직에 관하여 ····· 362
- 휴직의 임용기간 포함여부 ····· 363
- 휴직제도 관련문의 ····· 363
- 휴직중 1정연수에 관해 ····· 364
- 휴직중 전보 관련 문의 ····· 364
- 희소과목 1급정교사 자격연수관련 ····· 365
- 교원 겸직 가능 여부 ····· 366
- 교원임용시험 및 국가고시 토요휴무일 시행 요청 ····· 366
- 정근수당에 대한 질의 ····· 367

■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 369

-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시안 ····· 371
- 2007 개정교육과정에 의한「즐거운 생활」실험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수정요망!! ····· 371
-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질의 ····· 373
- 2009학년도 [치료교육활동]편제 및 담당교사배정 ····· 374
- 2009학년도부터 실시하라는 보건교육에 대한 질의 ····· 374
- 7차 개정 교육과정 중 '특별활동' 영역관련 ····· 375
- 7차 교육과정 개정 ····· 376
- 7차 교육과정 개정안 중 재량활동 ····· 377
-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정보 ····· 378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수학 영역의 바뀌는 부분 ····· 378
-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서 발간 여부 ····· 379
- 개정된 교육과정에 관하여 ····· 380

- 고등학교 교과목중 국사가 선택과목인가요? ····· 380
- 서점의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판매 ····· 381
- 교과 시수 감축 ····· 381
- 교과 편제와 단위 배당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에 관한 질의 ····· 382
- 교과내용에 대한 교사의 권한 ····· 383
- 교육과정 [공업계열 전문 교과 과정] 자료 ····· 384
- 교육과정 운영 ····· 384
- 교육과정심의회 재구성 ····· 385
- 교육과정에 대해 ····· 386
- 상업계 교과 공업계로 통합한 것에 대하여 ····· 386
- 새교육과정중 전문계열 기준학과 및 전문교과 편제에 관하여 ····· 387
- 중·고등 및 대학교육과정에 질문 ····· 388
- 국사교과가 선택제 인가요? ····· 389
- 역사과목이 독립적으로 분리 되었는지 ····· 389
- 연구학교 자료의 공개 ····· 390
- 유치원 개정교육과정 지도서를 구입 방법 ····· 390
-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서 ····· 390
- 전문계고 교육과정에 대한 질의 ····· 391
- 전문계고 학과 통폐합에 따른 필수교과 이수 관련 ····· 391
- 정보컴퓨터 관련 교육과정 편성 ····· 392
- 중학교 영어 7-a, 수학 7-가 학기별 이수 시간 확보 ····· 393
- 중학교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 394
- 컴퓨터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 ····· 394
- 문과와 이과 분리 ····· 395
- 초등 1, 2학년 재량활동에 영어교육 편성에 관한 질의 ····· 396
- 초등학교 재량활동 영역 편성 ····· 397
- 초등교육과정 중 정일제와 정시제에 대해서 질문 ····· 398
- 초등학교 수학과 진급평가 관련 의견 ····· 398
- 초등학교에서 국제 이해 교육 의 운영 실태 문의 ····· 400
- 초등학교의 수준별 수업 집단 편성에 대해 ····· 400

- 취학전 아동 한글교육은 어느정도까지? ····· 401
- 학교 특별보충과정에 관해서 문의 ····· 402
- 학교교육과정 계발활동에 관하여 ····· 403
- 학사일정 관련 문의 ····· 404
- u-learning 시범학교에 관하여.. ····· 405
- 3학년 기술·가정 전기·전자 기술 단원 실습 방법 구분 ····· 405
-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외형체제 기준 ····· 406
- 교과서 구입 방법 문의 ····· 407
- 학교내 교과서 배부 방법에 대한 건의 ····· 411
- CD없는 교과서는 시행령 위반인지 ····· 411
- 교과서와 사회 문제집에 독도 표기 ····· 412
- 교사용 지도서(중학교 1학년 사회) 제작 관련 문의 ····· 412
- 황의 칭호 사용 ····· 414
- 학교별 같은 교과서를 쓸 수는 없는지 ····· 414
- 사회과부도 지도의 황해를 서해로 ····· 415
- 아시아지역의 기준점 ····· 416
- '미래를 여는 역사'가 교과서로 쓰이고 있는지? ····· 416
- 외래어라고 계속 교과서에 등재되는 "다스"는 "다즌"이 맞지 않습니까? ····· 417
- 일본어교재 구입 방법 ····· 418
- 중학교 생활국어 개선 요청 ····· 419
- 영어 교과 테이프 구입 방법 ····· 419
- 교과서 구입 방법 ····· 420
- 초등학교 1,2학년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파일을 구할 수 없나요? ····· 421
- 초등학교 국정도서 실험본 제공 요청 ····· 422
-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 ····· 422

■ 대 학 입 시 ····· 425

- "대학진학시 전문계 특별전형"에 관해서 문의 ····· 427
- 검정고시를 통해 12년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 ····· 427
- 수능 귀마개사용에 대해서 ····· 428

2012년 대학입시제도에 관해 질문 ····· 429
건강장애 학생의 대입 특별전형에 관해서 ····· 430
건축과 야간 직장인 특별전형 ····· 431
검정고시와 대입 특별전형 ····· 431
고졸검정고시생 대학 수시 입학 ····· 432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해서 ····· 433
대입 기회균형선발제 ····· 434
대입원서접수료 해지시 환불 ····· 434
대입특례자격요건 중 기간 문의 ····· 435
대학 수시 등록 관련 질문 ····· 436
대학 입시 전형료 문제 ····· 437
대학수능 사진 ····· 437
외국국적의 학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가능 여부 ····· 438
대학입시 수시 관련 문의 ····· 438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한 문의 ····· 439
모자가정 아이 대학입학 시 혜택가능한지 ····· 439
미국 영주권자 초등·중등 교육 안내 요구 ····· 440
복수지원 위반관련 문의 ····· 442
수능 선택과목 수정이 가능한지 ····· 443
수능 수험표 대리수령 문의 ····· 444
수능 좌석 배치 수정 건의 ····· 444
수능시험 수험장소 배정에 관해서 문의 ····· 445
수능시험장 소지물품에 관한 질의 ····· 446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 시 불편 ····· 446
수능입학시험 응시자격에 관하여 문의 ····· 447
수시합격에 대한 문의 ····· 447
수시합격에 대한 문의 ····· 448
수능시험 볼펜 사용 여부 ····· 448
외국 유학 중고생 대학입시 관련 문의 ····· 449
외국인 학생의 정의 문의 ····· 450

- 재수생 수능원서 접수방법 문의 ····· 450
- 재수생의 경우 주소지가 도시로 이전될 경우 농어촌특별전형을 받을 수 있는지? ····· 451
- 재외국민 특례입학 12년 전과정 이수의 자격이 되는지? ····· 452
- 정시모집 중복지원에 대한 문의 ····· 452
- 수능을 없애고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것은 어떤지 ····· 453
- 중국 유학생 학력인정 여부 문의 ····· 454
- 중국의 학교인증에 관하여 문의 ····· 454
- 수시 합격 후 KAIST지원 가능 여부 ····· 455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문의 ····· 456
- 해외 고교 졸업생의 국내 대학 입시 방법 문의 ····· 456
- 해외한국학교의 경우 수능접수 절차 문의 ····· 457
-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농어촌전형지역 개편 ····· 457
- 기회균형선발제의 차상위계층에 대해 질문 ····· 458
- 농어촌 소재 지정학교 문의 ····· 459
- 대입수학능력시험 감독업무에 관련 문의 ····· 460

■ 영어교육관련 ····· 461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격완화에 우려 ····· 463
- 수능 영어과목을 언제부터 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는지 문의 에 대한 문의 ····· 463
- 국가인증영어능력평가의 진행상황 문의 ····· 464
- 기간제 및 방과후 영어 선생님도 교원자격증이 필수인지 ····· 464
- 방과후학교 외국인 강사가 필요한지 ····· 465
- 초등학교부터 교환 학생 제도 신설을 건의 ····· 466
-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에 대한 문의 ····· 466
-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자격문의 ····· 467
- 영어회화 전문강사제 자격 조건 문의 ····· 467
- 영어회화지도(E-2) 비자 대상국 관련 문의 ····· 468
- 외국인 강사 자격과 관련한 문의 ····· 469
- 외국인 영어강사의 에이즈 검사 시행 요청 ····· 470
-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질의 ····· 470

EBS 영어교육방송 채널을 지상파나 저렴한 케이블 상품으로 시청할 수 없는지? …… 471
EBS 영어교육방송(EBSe English TV) 방송을 공익채널로 선정토록 건의 …… 472
EBS 영어교육 채널 공공채널 언제쯤 가능한지요? …… 473

초·중등 교육시설 …… 475
고등학교 실험실 폐수배출처리시설 설치 여부 …… 477
국립초등학교 시설사업의 인허가기관은? …… 477
체육장 범위 질의 …… 478
컨테이너 교실활용에 대하여 …… 478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적용범위 문의 …… 479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과의 관계 …… 480
학교용지 조성 관련 …… 481
2009년도 교육 예산 문의 …… 481
2009년도 학교 회계직원 임금 체계 …… 482
강사수당 지급여부 문의 …… 483
공무원 여비 지급 시기 질의 …… 484
학교 회계직원 2009년도 급여인상 계획 …… 485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 중 지역 교육지원과 관련 문의 …… 486
신설학교 부지매입계약시 계약당사자는 누가되어야 하는지? …… 486
폐교 재산 매각에 대한 질의 …… 488
폐교 활용 관련 문의 …… 489
폐교 재산의 수의매각 여부 문의 …… 489
2009.5.28일자 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영개발 주체 범위 …… 490
시공사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과표 변경에 따른 환급 및 해약세대 관련 …… 491
학교신설비용 납부시 학교용지부담금에서 해당금액 공제 가능 여부 …… 491
환급금 권리양도에 관하여 문의 …… 493
아파트 할인분양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문의 …… 49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 …… 494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문의 …… 494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문의 ····· 495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문의 ····· 496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문의 ····· 497
- 학교용지부담금 감액 관련 질의사항 ····· 498
- 학교용지부담금 개정(5.28)안에 대한 질의 ····· 499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문의 ····· 500
-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특례법 제5조제4항 질문 ····· 500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 501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문의 ····· 502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문의 ····· 503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문의 ····· 504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문의 ····· 505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급 관련문의 ····· 506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업무 질의 ····· 507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제도 개선요구 ····· 508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건 ····· 509
- 학교용지분담금 신청지급 지연에 대하여 ····· 510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 특례법(5.28)개정안에 대한 질의 ····· 511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관련 문의 ····· 512
- 학교장 재산소유권 관련 문의 ····· 513
- 학교회계가 국고라는 근거는? ····· 513
- 학교회계에서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지 여부? ····· 514
- 학습환경 격차 해소 관련 문의 ····· 515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관련 ····· 516
- 학교운영지원비 문의 ····· 517

■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 519

- 사교육 학원비를 경감 문의 ····· 521
- 사교육비(방문교습 수업료, 교재비) 인상 자제 요청 ····· 521
- 사교육없는 학교 지원 사업의 실효성 문제 ····· 522

- 필리핀 F2 비자 강사등록 시 문의 ····· 523
- 학원강사 등록에 관한 문의 ····· 523
- 공동주택 음악레슨 소음에 대해서 ····· 524
- 교습소에는 왜 유아수업을 불가능한지 ····· 525
- 문예창작교습소가 가능한지요? ····· 526
- 불법의료교육 (침,뜸교육) 에 관한 교육청의 처분가능 여부 ····· 526
- 아파트 층내에 학원 및 교습소 및 과외 인허가 문제 ····· 527
- 외국어학원 입원자격에 관한 건 ····· 527
- 재외동포(F-4) 학원강사 자격에 대한 문의 ····· 528
- 태글리쉬의 불법운영 여부 ····· 529
-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생 등 미성년자 수강 가능 여부 ····· 530
-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수강대상 기준 문의 ····· 531
- 학원내 영상강의의 명확한 허용을 바랍니다. ····· 531
- 학원내 영어도서대여점 운영이 가능한지 ····· 532
- 학원법 제5조 질의 ····· 533
- 학원법정수강료에 대한 문의 ····· 534
- 학원의 교습행위에 대하여 ····· 534
- 학원이 있는 건물에 유해업소 입점 여부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할수 있는지 여부 ····· 536
- 학원허가 유해업소중 노래방문제 ····· 537
- 유아 대상 창의놀이 등 학원법 적용 대상 여부 ····· 538
- 수강료 반환 관련 1/2의 정의 ····· 539
- 주민공동시설내 영어체험학습 학원법 적용 여부 ····· 539
- 음악학원에서 성악과 피아노 교습이 가능한지 ····· 540
-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 ····· 540
- 공익법인 장학재단 운영 관련 ····· 542
- 공익법인 이사선임시 '특수관계자' ····· 542
- 미등기된 공익법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 여부? ····· 543
-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 ····· 544
- 교과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 근거는? ····· 544

법인 허가시 민법 제32조 학술에 관한 주무관청 판단 ····· 545
교육 사업 면세 사업 적용을 위하여 ····· 546
비영리법인끼리 혹은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통합 ····· 546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 547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위치 및 건축물 용도 ····· 548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비 기준 문의 ····· 549
평생교육시설에서 유아 대상 교육 가능 여부 ····· 549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변경, 지위승계 ····· 550
평생교육시설 형태 및 시설 조건 ····· 551
평생교육시설 교육대상 ····· 552
평생교육시설장소(인가장소)외에서 과정운영 가능한지 ····· 553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 학급증설, 정원, 수업년한 변경 ····· 553
미술영재교육 목적의 중・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가능 여부 ····· 554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전문계와 인문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은 가능한지 ····· 555

교육청 및 지방 공무원 ····· 557
교육전문직 선발 관련 문의 ····· 559
교육전문직이 되는 방법 ····· 559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훈・포장 수여 ····· 560
인사교류 가능 여부 문의 ····· 561
국가공무원 당직 및 시간외근무 관련 질의 ····· 562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수발의 역할 ····· 563
상장 재발급, 영문발급 가능한지 ····· 563
학교에서도 차량 홀짝제를 실시해야 되는지 ····· 564
교육청 산하 도서관 설치 법령 ····· 564
균형인사(기술직・이공계공무원인사관리)지침 적용 ····· 565
기능직 공무원(통학버스 운전직) 유사경력 인정 여부 ····· 565
지방공무원 대체 휴무 ····· 566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 566
교육감 선거 반대 ····· 567

- 공무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 가능 여부 ····· 568
-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 자격 ····· 568
- 지방잡급의 호봉인정에 대한 문의 ····· 569
- 교육의원 자격조건의 타당성 ····· 570

■ 기 타 ····· 571

- 꿈나래21 구독관련 문의 ····· 573
- 학부모봉사동아리(우리아이함께키우기) 운영 문의 ····· 573
- 각 대학의 종류 리스트 문의 ····· 574
- 전국 중고등학교 사회선생님 현황 ····· 574
- 가사고등학교 현황 ····· 575
- 학교 목록(주소,전화번호 포함) 요청 ····· 575
- 유치, 초, 중등학생 수를 알 수 있는지? ····· 576
- 국가 공인 영어 인증 자격 ····· 576
- 국가공인한자검정 시험 단체현황 ····· 577
- 민간자격의 등록 가능 여부 ····· 578
- 사단법인 자격증 유효기간 문의 ····· 578
- 자격기본법 제4장 민간자격 등록 대상 ····· 579
- 자격증 불법 사용에 대한 문의 ····· 579
- 2학기 지원사업 EBS 무상지원 문의 ····· 580
- 국가정보화사업 관련 문의 ····· 581
- 저소득층 자녀 초고속인터넷 무료이용 ····· 581
- EBS 중학과정 강의 다운로드 ····· 582
- EBS 교부금 삭감 ····· 583
- 교육감 교육경력 인정(시간강사, 전임교수) ····· 583
- 교육전문직 선발에 따른 연령제한 완화와 선발 방식 개선 희망 ····· 584
-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직 ····· 584
- 특수교육대상자선정 장애등급 ····· 585
- 공민학교 출신자의 학력인정 ····· 586
- 검정고시 시험일자 질의 ····· 587

- 초등졸업검정고시 혹은 중학교입학 검정고시 ····· 587
- 고입 검정고시 응시 자격 ····· 588
-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 완화 요청 ····· 589
-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 590
-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 591
-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 591
- k-2 학교란? ····· 592
- 다문화가정 관련 방과후학교 강사 활용 ····· 593
- 다문화가정 지원 문의 ····· 594
- 모자가정 학비지원 가능여부 ····· 594
- 난민 인정자 진학 ····· 595
- 유학(초・중・고생)정책 ····· 596

Ⅰ. 유아·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유 아 교 육

유치원 설립자격 조건

질의

○ 유치원 설립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996년 5월부터 사립학교 중등교사로 현재까지 정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중등 정교사 1급이지요. 시설장 혹은 원장 자격을 위해 제가 더 준비해야 할 자격증이 어떤 것인지, 설립절차 및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정식 교사가 아닌 기간제(중등에서) 교사를 한 사람에게도 경력상의 인정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9. [교직발전기획과]

○ 유치원 원장의 자격취득은 원감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이수하거나(유아교육법 제22조 및 별표1), 교원자격검정령 별표(교장(원장)자격인정기준)에 충족한 자로서 해당 교육감이 무시험검정을 통해 자격을 수여하게 됩니다. 교육경력이 3년이상일 경우 동 검정령의 요건은 충족할 것이나, 동 자격은 자격 수요 및 유치원 시설의 설립·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교육감이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교육청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또한, 동 설립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지역교육청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병설유치원 입학아동에 대한 연령 융통성 부여 요청

질의

○ 저는 2007년 1월 3일에 태어난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큰애까지 3명) 아이들을 병설유치원에 입학시키려고 했더니 입학연령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아동이라고 하더군요.

○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어 유예 및 조기입학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융통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병설유치원의 정원이 허락한다면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09. 6. 22. [유아교육지원과]

○ 유치원의 입학 가능 연령은 만 3세에서 5세까지로, 우리부는 학부모의 자녀 입학 시기 선택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하여 1,2월생의 경우는 입학을 제한하지 않고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상위 학급 또는 본 연령 학급에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가능 연령의 전체적인 기준만을 제시하여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 특히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초등 입학기준일 전후의 1년을 부모 동의하에 입학 허가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초등학교와의 유기적 연계측면에서 입학가능토록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아모집 시기 이전에(10월중) 다시 한 번 현장에 안내토록 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2층 보육료 지원과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질의

○ 보육료 지원은 2층 입니다. 5인 가족이구요. 법정 지원금액 100%로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만4세 8만6천원의 금액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법정지원금액 172,000원

실제 유치원비 205,000원 차액 33,000원

○ 3층은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이 되고, 2층은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이 안된다고 하니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3층 보육료지원 137,000원에 두자녀 84,000원 더하면 211,000원이 지원되지만, 2층은 두자녀 지원 없이 172,000원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6. [유아교육지원과]

○ 3층이 3~4세 차등교육비와 두자녀이상 교육비는 같이 지원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 두지원 금액의 합계가 지원최대금액(만 4세 사립유치원 기준 172,000원)까지만 지원토록 되어 있어 민원인과 같은 조건의 3층에 경우에도 민원인과 같은 금액만 지원 받습니다.

3자녀 유치원비 지원 요청

질의

○ 요즘 저출산이라고 다들 걱정하는데 저는 애들 유치원비 때문에 힘듭니다.

○ 소득수준별 교육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3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과 연계하지 말고 유치원비 정도는 전액 지원이 필요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7. [유아교육지원과]

○ 우리부에서 지원하는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만3~5세에 해당하며, 소득인정액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일 경우(4인 기준으로 436만원 이하)에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취원 중인 유치원에 제출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심사한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유아학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이때 만3,4세아는 소득수준에 따라 1~3층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은 유아학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유치원, 보육시설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 아이 이상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아학비 지원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계층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셋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재정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우리부에서 하는 사업은 학부모님의 수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자녀 이상 교육비, 종일반비 지원 사업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셋째아 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선생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시청이나 구청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5세 무상교육

질의

○ 작년까지만 해도 5세 무상교육을 2003년 1월,2월생을 부모의 서약서만 있으면 혜택를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올해(2009년)부터 안되는 건지, 그러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0. [유아교육지원과]

○ 「초・중등교육법」이 개정('07.8.3)되어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대상이 2002.3.1 ~2002.12.31생으로 변경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대상자 등)도 개정되어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되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이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올해 초등학교 조기입학대상은 2003. 1.1~2003.12.31생까지로 1년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이것을 유치원에 적용할 경우 만4세(2004.1.1~2004.12.31)의 경우에는 1, 2월생만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생까지 모두 조기입학 예정 아동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입학은 학부모님의 선택에 의해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지원하지 않기로 지침이 정해진 것이니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서 출판시기

질의

○ 자료실에 개정 해설서가 총론, 건강*사회, 표현*언어*탐구 3권의 pdf파일로 올려져 있는 걸 봤습니다.

○ 임용시험 범위가 개정 교육과정인 것을 감안하여 수험생으로써 빠른 시일 안에 해설서를 보고 학습하고자 하는데 개인적으로 다운 받아 인쇄하기가 분량도 너무 많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언제 출판된 교육과정을 볼 수 있을까요?

○ 작년 6차 교육과정은 일반 서점에서도 팔았던 것 같던데 언제쯤 사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16. [유아교육지원과]

○ 개정된 유치원 교육과정은 12. 13자로 확정 · 발표하며, 확정된 개정안은 2009년도부터 유치원에 적용하게 됩니다.

○ 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 · 보완하는 '수시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 7차 교육과정부터 바꾸었으며, 이에 대한 해설서 및 활동지도 자료집 집필을 마치고 9월초 인쇄과정으로 들어 갑니다.

○ 따라서 9월24일 이후 경 각 시 · 도교육청 및 시중에 배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궁금해 하시는 해설서는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임용시험은 2008년도 하반기 임용시험에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공립유치원 증설 요청

질의

○ 유치원의 경우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이 적용되기에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원하는 사람의 수에 비해 너무나 적은 수의 공립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늘려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9. [유아교육지원과]

○ 현재, 유아교육의 상당부분을 사립유치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공립유치원 및 단설유치원의 신증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금년도 시도교육청에서 설립예정인 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에 대한 신증설비를 모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 및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유아학비를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비 외에 지급하는 교재비와 급식비 문의

질의

○ 교육비 외에 교재비와 급간식비를 따로 납입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비에 이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1. [유아교육지원과]

○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1980년대 후반부터 자율화되었고, 2003년까지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수업료를 조정하다가 2004년부터 전면 자율화되었습니다. 유치원비가 부담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부는 공립유치원 신설 및 학급수 증설을 통해 비용은 저렴하지만 질높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10조에는 유치원규칙은 설립 · 인가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제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에는 수업료 · 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대해서는 제정한 유치원규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장이 정할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유치원의 지도감독청인 해당 지역교육청에 신고한 사항과 다를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시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 제도 안내

질의

○ 제 소득은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 세금포함 총금액이 5,700만원 정도 되고 집사람은 알바형식으로 월6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 제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녀 양육비 또는 교육비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8. [유아교육지원과]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치원 취원 아동에게 지급되는 유아학비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신고를 통한 소득인정증명서를 해당 동주민센타에 제출하여 지원계층을 판단 받아 만5세아의 경우 균등지원(국·공립 57천원, 사립 172천원). 만 3~4세의 경우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소등증명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인정액을 환산받으신 후 취원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단,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이라면 보건복지가족부로 연락하시어 지원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비 현금결제 요구

질의

○ 유치원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유치원에서는 현금이 아니면 돈을 받지 않겠다는군요. 월급받는 회사원으로 대부분 카드로 생활을 하는데 현금만 받는다니 이게 웬말인가요. 더욱 저를 어이없게 만드는 것은 현금영수증 조차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1. [유아교육지원과]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교육기관으로 유치원의 수업료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하여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치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월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금이나, 카드결재 등 구체적인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아교육법 제18조에 의하면 공·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에는 유치원규칙은 설립·인가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제

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에는 수업료 · 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대해서는 제정한 유치원규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장이 정할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본 사항은 원장선생님과의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요구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 교육과정에 영어 포함 요청

질의

○ 초등 1학년때 영어가 교과목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병설유치원은 아직 교육과정에 없다고 하네요. 저희 병설유치원은 경제적인 면에서나 선생님의 관심과 배려에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영어가 교육과정에 없어 선생님께서 수업을 할 수 없다면 외부강사가 주2.3회 오는 수업은 아이들이나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0. [유아교육지원과]

○ 영어교육에 대한 우리부의 입장은 영어교육은 아동 발달상 3학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수업시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교육과정 편성 · 운영에 반영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 1, 2학년 영어교육은 희망자에 한해 일부 방과후학교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므로 유치원에서 가능한 영어는 다문화 교육활동의 한 유형으로 간단한 영어놀이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정규 교육과정 운영시간 중에 주기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별도의 강사료를 받고 교육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병설유치원 반일반 기준시간 문의

질의

○ 제가 지금 보내려고 하는 곳은 13시까지라고 되어있는데 보통 반일반도 오후 2시 이후인

데 이른 것 같아서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28. [유아교육지원과]

○ 병설유치원의 반일제(반) 기준시간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2조 4항에 "반일제"라 함은 1일 3시간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서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반일제 시간은 위 기준을 근거로 해당 유치원원장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유치원에 반일제 시간운영에 대한 사항을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 부채인정

질의

○ 저는 친정부모님과 신랑, 그리고 6살, 3살을 둔 주부입니다.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됨은 물론, 저희의 실수로 부모님마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2007년 7월 신용회복위원회에 힘을 빌려 갚아 나가게 되었지요.

○ 왜 다른 대출들은 인정을 해주면서 신용회복을 위해 갚아 나가고 있는 금액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14. [유아교육지원과]

○ 부채는 지출형태에 따라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앞의 세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로 토지, 사업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다만 생활비나 생활용품 구입비 등의 부채는 불인정) 4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 또한 가구별 지역별 부채 인정 한도액이 있는데, 민원인께서 거주하는 ○○시는 대도시로 가족구성원이 3인인 경우 3억7천만원, 4인인 경우 4억1천만원, 5인인 경우 4억4천만원, 6인인 경우 4억 6천만원까지 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부채인정 한도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부채, 부도로 인한 부채는 가구별 지역별 부채 인정 한도액에 관계없이 전액 추가 인정
- 급여 압류로 인하여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채인정한도액을 적용받지 않음(급여 압류 확인서 제출시 인정)
-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채인정한도액을 적용받지 않음

  * 대상 ; 배드뱅크(한마음금융, 희망모아유동화회사),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LG-산은 공동추심프로그램(상록수 유동화 회사), 개인회생제도(법원)를 현재 이용하고 있거나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단,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등

○ 부채에 대한 기준은 위와 같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 매달 84만원정도 갚고있다는 내용만 보아서는 남은 금액을 부채로 인정하여야 할 것 같으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주민센터 업무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관련 문의

질의

○ 사립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1. 단순히 설립자 변경 인가 요건의 적합 여부만을 검토하여 인가하여야 하는지?
2. 설립자 변경 인가 요건 외에 (당초 설립 인가 요건이 바뀐 경우) 현재의 사립유치원 설립 요건까지도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에 인가하여야 하는지?

   (예) 당초 설립 인가시 정원이 학급당 40명으로 책정되어 인가하였으나, 현재의 학급 편성 기준이 학급당 30명인데 설립자 변경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설립자 변경 조건 구비 여부만을 검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학급 편성 기준까지도 적용하여 정원을 축소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5. [유아교육지원과]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권한은 시도교육감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유아교육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 등)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는 명확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유아교육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유치원의 인가 변경은 설립·경영자, 설립목적, 명칭, 위치, 유치원규칙, 원지(園地)·원사(園舍)와 체육장의 평면도 등 중요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인가 변경 요청시 위의 해당 인가 변경 사항 중 변경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 인가받도록 하면 되며, 이에 따른 세부적인 처리는 교육청에서 인가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공개 여부

질의

○ 사립유치원 예결산서는 지역교육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지, 또는 원본이나 사본을 공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공개 해야한다면 법적근거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사립유치원에서 예결산서를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초, 중학교처럼 공개해야하는 법이나 규정이 있는지 공개해야한다면 홈페이지가 없는 사립유치원은 어떤 식으로 공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14. [유아교육지원과]

○ 사립학교법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및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에 따라 유치원에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예결산을 공개하도록 유도해야 할 사항입니다.

○ 우리부에서는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제 및 e-유치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립유치원 원장 연령은 몇세인지?

질의

○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세인가요?

○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기준 연령은 몇 세인가요?

○ 사립유치원에 원감이나 교사인 경우도 만 62세가 넘을 경우 임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0. [유아교육지원과]

○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립유치원 교원(원장, 원감, 교사 등) 임용 가능 연령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시도교육청에서는 가능한 공립유치원장과 동일하게 만 62세 이하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교원자격검정령(별표)'에 의한 원장자격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연령과 관계없이 원장 취임예정 유치원을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 만62세 이후에 임용가능 여부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서 권고하고 있으나 사립의 경우 교원의 임용권이 설립자(법인 등) 및 경영자에게 있으므로 정관 및 자체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립유치원 인허가 관련 문의

질의

○ 사립유치원 인가와 관련하여 기존에 유치원이던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 1층은 어린이집, 2층과 지하는 강당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픈데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1층은 어린이집으로 밖에 인가되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에 주출입구가 어린이집과 별개라면 지하1층과 2층(1층 면적 제외)을 포함한 면적으로 유치원인가가 가능할까요?

회신 회신일 : 2009. 3. 8. [유아교육지원과]

○ 유치원 및 보육시설이 한 건물내에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할청에서는 유치원의 학급수 및 학급당 원아수 등 유치원의 적정한 원아수용을 위해 원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어, 지역별로 설립여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은 비영리인지?

질의

○ 사립유치원이 유치원만 운영하고 있다면 비영리단체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8. 18. [유아교육지원과]

○ 유아교육법에 의거 학교 및 유치원 등과 같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며, 문의하신 사립유치원은 비영리단체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립유치원은 학교에 속하는지?

질의

○ 유아교육법에도 나와 있듯이 유치원은 학교에 속하고 사립유치원도 학교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할구역 교육청으로부터 장학과 행정 지도를 받으며 유아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선생님들도 교직자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 사립유치원이 어디에 속하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9. [유아교육지원과]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유치원의 설립기준 및 사립유치원의설립인가신청 설립허가기관인 교육감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임을 설명드립니다.

셋째자녀 유치원비 감면 요청

질의

○ 맞벌이이다 보니, 종일반이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동네에 7살, 6살 아이를 받아주는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등)이 없어 종일반이 있는 유치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 왜 우리나라에서 아이 3명이상은 부의 상징이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가장 큰 문제인 교육비에 대해선 혜택이 없습니다.

○ 맞벌이를 해서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중산층도 3명을 교육하기엔 너무도 힘이 듭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량껏 추진하기 보다는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셋째아이 만이라도 유치원비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18. [유아교육지원과]

○ 우리부에서 지원하는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만3~5세에 해당하며, 소득인정액이 영유아가구 소득 70%수준 이하일 경우(4인 기준으로 436만원 이하)에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부터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취원 중인 유치원에 제출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심사한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유아학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이때 만3,4세아는 소득수준에 따라 1~3층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은 유아학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유치원, 보육시설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 아이 이상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 소득에 상관없는 셋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일부 재정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우리부에서 하는 사업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자녀 이상 교육비, 종일반비 지원 4가지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부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 더 많은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 버스 등록을 위한 안내

질의

○ 유치원 어린이 통학 차량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유치원 어린이 통학 차량 등록은 의무 사항은 아니며, 신고절차를 거쳐 신고필증을 교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구체적인 유치원 차량에 관한 기준이나 지표입니다.

○ 예를들어, 안전벨트는 어떻게 하여야하며, 보호장구, 차량 내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들과, 차량 밖의 디자인이라든가, 꼭 장착해야 할 것들 등 구체적 사항이 없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11. [유아교육지원과]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는 현재 의무사항이 아니며, 어린이 통학버스로 특별보호를 받고자 할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2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에 한하되, 도장·표지·보험가입 및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장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장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①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한하여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어린이 또는 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타도록 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8항 · 제27조제6항 · 제29조제1항제4호 · 제48조제4항 · 제50조제2항 및 제106조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동차일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학교 또는 보육시설 · 학원 ·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

차 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가목 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제35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를 당해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차대 및 차체) ⑧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신설 1997.8.25〉

제27조 (좌석안전띠장치등〈개정 1997.1.17〉) 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신설 1997.8.25〉

제29조 (승강구) ①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1997.8.25〉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의 발판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제2단 이상의 발판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견고하게 설치된 보조발판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등화에 대한 기타기준) ④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7.8.25, 1999.2.19, 1999.6.28〉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고, 정지한 때에는 적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되(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어서는 아니된다), 운전자가 그것을 작동할 수 있을 것

6.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제50조 (후사경 등 〈개정 2008.1.14〉)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차체 바로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1997.8.25, 2008.3.14〉

3.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실외후사경은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이를 위하여 평균곡률반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반사면이 1만 제곱밀리미터 이상인 실외후사경 또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8.1.14〉

제106조 (등화장치) 등화장치의 광도 및 조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7, 1997.8.25, 1999.2.19, 1999.6.28, 2008.1.14〉

1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어린이 통학버스의 요건은 위와 같으며, 법령에서 언급된 별표 등은 표로 되어 있어 본 답변에 올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조건을 갖춘 어린이 통학버스용으로 출고되고 있는 자동차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어유치부의 횡포와 정책개선 요구

질의

○ 식비1만원, 온라인수업전원포함9만원을 올리더군요.

○ 부모입장에선 10만원이나 한꺼번에 올리는 느낌이라 모두들 화가 났습니다. 교육청에 문의를 했더니 초등수강료로 계산해서 원어민 50% 는 74만원, 원어민70%해서 84만원 한정이 나오더라구요. 문제가 없는셈이죠.

○ 또, 아이에게 중고들생들도 방학이 있는데 하는 생각에 쉬기로 했죠. 그랬더니, 다음달에 유치부에 들어 올려면, 자리가 있건 없건 30%를 무조건 내야한대서 할 수 없이 15만3천원을 수업한번 듣지 않는데 선불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여름에 한달 여행다녀온 아이친구도 수업한번듣지 않고 30%냈습니다. 한달 쉬었을 때도 입학금이이나 자리보존료라는 이름을 붙여 영어 유치부학원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6. [유아교육지원과]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기관으로 유치원 설립인가 조건에 해당하는 시설규모 등을 갖추고 정규 유치원교사에 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에서 명시하는 유치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으로 말씀하신 영어유치부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등 교과목중심으로 편성되어있는 초중등교육과정과는 달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치원교육과정에는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생활 등 생활영역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가운데 요구하시는 영어교육은 위의 5개 생활영역중 사회생활영역의 '다양한 문화에 관심가지기' 내용을 통해 구현되고 있으며, 영어교육과 관련된 생활영역으로 혼동하기 쉬운 언어생활영역은 우리말(국어)에 대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관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부는 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은 알파벳이나 단어를 암기하는 인지적 차원이 아닌 글로벌시대에 대처하는 세계시민교육 및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유아기와 초등저학년 시기는 우리나라 언어와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바른 사용이 다 중요

한 시기라는 국가전략하에 초등교육도 3학년이후의 영어교육 시간 확대 등으로 영어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어머님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질의

질의

○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로 한정하였는데, 왜 유아놀이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4. [유아교육지원과]

○ 유치원교육비 지원에 관하여 우리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기관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유아놀이학교는 보육료 지원대상기관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원장자격에 관한 문의

질의

○ 박사학위소지자가 유2정자격증을 소지하여 유치원에서 1년 근무하면 원장추첨검정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4. 16. [유아교육지원과]

○ 원장자격연수에 관하여 통상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장자격인정기준 및 교(원)장자격증부관설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해 이미 유치원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하신 경우, 일단 유치원(또는 보육시설)에 근무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고 만32세 이상이 되는 경우 에 원장 취임예정 유치원을 확보한 후 원장 자격인정에 의해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원장자격연수를 받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부관 설정기준은 1급자격증과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인 경우는 임

용유치원에 1년간 계속 근무해야 하며, 2급 자격증과 6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인 경우는 임용유치원에 3년간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부관이 설정되게 됩니다.

○ 위의 부관설정한 자격증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그 자격인정을 취소당하게 되며, 현재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 외의 관련 행정절차는 유치원장자격발급권자인 해당 지역교육청에 상담하여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놀이학교' 단속요청

질의

○ 아이들을 위한 기관으로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놀이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 이러한 놀이학교는 대부분 교육청에 미술학원 또는 영어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원법에서는 분명히 "학교"와 같은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신고한 교과과정 이외에는 다른 과목을 가르칠 수없게 되어 있습니다.

○ 수 많은 영어 유치원, 놀이학교 들이 성황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학원인지 유치원인지 알 수 없는 광고를 하면서, 실제는 학원등록을 하고서 영어와 미술 등 각종 과목을 가르쳐 수강료를 높게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높은 수강료는 받는 적법한 기준이 있는 것 까지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아이를 둔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법을 피해 높은 수강료를 부여하고 있는 유아 교육시설 때문에 벌써 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 사교육은 초, 중, 고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 어린이 교육시설에서도 불법 학원운영(놀이학교)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 같으니 철저하게 단속하고, 추후 표기에도 있어 정확하게 표기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30. [유아교육지원과]

○ 학원의 명칭은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에 의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의 용어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습과정 역시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에 의거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학원의 학원수강료를 포함한 학원비가 해당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되며, 불법 고액 학원비를 징수한 학원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비 질문(만 4세아의 만5세반 취원)

질의

○ 2004년 2월생의 경우 2011년 취학 대상입니다. 2009년도에 만4세아에 해당이 되는데 층별로 따지면 만4세아 5층입니다.

○ 2010년 조기 입학을 시키고자 하는 경우 2009년에 소득인정액 증명서 상 지원계층이 만4세아 5층이어도 만5세아 전체금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6. [유아교육지원과]

○ 2009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5세 : 2003. 1. 1 ~ 2003. 12. 31

만4세 : 2004. 1. 1 ~ 2004. 12. 31

만3세 : 2005. 1. 1 ~ 2006. 2. 28

○ 유치원 실정에 따라 만4세아가 만5세반으로 취원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만4세아로 지원되며, 초등학교 조기입학 예정 아동(만4세)의 경우라도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되지 않

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나, 만3,4세 차등교육비 지원의 경우 '09년 7월부터 영유아가구 소득수준 70%수준까지 지원범위를 변경하여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다.

○ 교육예산상 모든 유치원 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이 될 수는 없으나, 매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아스포츠단의 유아교육법 적용 여부 문의

질의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설립된 체육시설물(지방공기업)로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스포츠단은 5세, 6세, 7세반으로 연령별로 각 20명~25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수영, 리듬체조, 태권도 등 체능프로그램(50%)과 오르다, 가베, 미술, 영어 등 인지프로그램(50%)을 접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치원을 운영할때는 유아교육법을 적용받고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운영할때는 영유아법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는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할때도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그리고 체육시설물에서 체능프로그램 중심(60%이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데 인지교육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에 교육과정의 비율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첫째, 유아스포츠단이 유아교육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 둘째, 체육시설물에서 체육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2. [유아교육지원과]

○ 유아스포츠단은 체육시설물 개관시 유아들에게 체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파악되며,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적용 대상이 아닌 무인가 시설로 판단됩니다.

○ 무인가 체육시설에서 체육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운영할 수 있는가의 문제

는 우리부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체육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 시설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유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는 있으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이며 유치원 및 보육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학부모를 현란시킬 소지가 있음을 문제삼을 경우 및 급식 및 안전사고 등이 일어났을 경우 유아들은 청소년 및 성인에 비해 훨씬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아학비 중 종일반비 지원범위 문의

질의

○ 2009년 유아학비지원 기준중 종일반비 지원 기준에 의하면 국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월 5만원 범위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종일반비(연령,계층 구분없이 동일지원)로 지원하고, 단 공,사립유치원 저소득층 급, 간식비로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유치원에서 종일반과 특기적성교육을 함께 8시간 이상 운영하면서 지원금 범위내에서 특기적성교육을 포함하여 5만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09. 6. 2. [유아교육지원과]

○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에 한하여 종일반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도교육청 지역여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국·공립·사립유치원 저소득층 급·간식비로 지원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 종일반비 지원을 악용하여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종일반비를 신청 수령하는 경우에는 관련 지도감독기관인 지역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질의

○ '0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유아학비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 산식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부채-기초공제액)+승용차 재산 가액)× 재산의 종류별 환산율 적용)×⅓ 로 되어 있는데

1. 수식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모든 종류의 재산가액-부채-기초공제액+승용차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환산율 적용×1/3 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저의 해석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이경우 적용해야할 환산율은 무엇입니까?

2. 1번의 해석이 옳지 않다면 위의 계산식을 적용해서 각각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라는 말인지요? 그렇다면 각각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마다 부채와 기초공제액을 빼고 승용차재산가액을 더하여 산정하라는 말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17. [유아교육지원과]

○ 우선 유아교육비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소득인정액확인은 관할 동주민센터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의 소득 및 재산조사방식에 따르고 있습니다.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의 선정 기준과 지원 단가를 통일하여 학부모들의 시설 선택권 보장 및 혼란 방지)

○ 위질문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실제로 동주민센터등에 유아학비지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대략의 결과를 위해서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부채-기초공제액)+승용차 재산 가액)× 재산의 종류별 환산율 적용)×⅓ 의 적용시 아래의 사항을 적용하시되 이 과정에 많은 변수가 있어 동주민센터에 유아학비지원신청을 하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일반사항

- 신청가구에 임대보증금 , 금융기관 부채, 금융기관 이외 기관의 부채가 있는 경우 공제처리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공제 결과 기초공제액이 남는 경우에도 승용차 재산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공제순서 : 일반재산→금융재산 순으로 함

○ 재산의 종류별 환산율은 각각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값은 불인정. 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유아학비지원 변경(추정소득)에 관한 질의

질의

○ 2009년 유아학비지원 변경에 대한 내용이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내용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지원단가 뿐이었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이 높아지고 지원이 높아져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번 2009년 보육료(어린이집 관련)료 지원(하반기) 산출시 기존에 있던 추정소득금액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 허나 유아학비보조금 소득인정 계산시 만5세만 추정소득은 포함되지 않고, 그 외는 추정소득금액이 포함되니, 저같은 경우에는 단돈 몇 천원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31. [유아교육지원과]

○ 우선 일부 근거법률등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비지원은 보육료지원의 선정기준과 지원단가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육료지원과 같이 2009년 7월부터 변경 적용되는 유아학비지원제도에서는 추정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적으로 변경된 기준으로 받으시는 유아학비지원은 2009년 8월까지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7월부터 소급적용 가능함도 알려드립니다.

유아학비지원(가구원의 범위 등)에 대해 문의

질의

○ 보건복지부 시행 가구원의 범위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도 똑같은 방침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구원의 범위에서 조부모 제외) 조부모 동거사실 확인이 불가능함에 따라 편법(주민등록 이전 등)으로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진입하고, 조부모의 재산·소득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제도의 취지를 살려 조부모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조부모 가구원수 산입제외로 인해 탈락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유예기간('10년 2월까지)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가구원범위에서 조부모를 제외한 요인만으로 탈락되는 경우, 소명하도록 하여 조부모를 포함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또한 재산 산정시 공시지가의 0.9라고 나와 있던데 그럼 전세로 사는 사람들의 배려는 없나요?

○ 한 예로 저의 아파트 전세가가 14000만원입니다. 제 친구는 시가 28000만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13800만원 입니다. 거기에 공시지가 0.9를 하면 12420만원이네요.(보건복지부는 공시지가만으로산정)

회신 회신일 : 2009. 6. 3. [유아교육지원과]

○ 우선 근거법령의 차이에 따라 일부 사안(적용 연령 등)은 제외하고는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은 학부모님들의 시설 선택권 보장 및 혼란방지를 위하여 그 선정기준과 지원단가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육료지원관련 가구원의 범위와 유아학비지원관련 가구원의 범위는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 두번째 주택은 주택공시가액을 적용률 0.9로 나누어 시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택공시가액보다는 높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유치원 원장 및 교사 임용 서류는 무엇인지?

질의

○ 유치원 원장및 교사 임용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7. 4. [유아교육지원과]

○ 유치원장 및 교원 임용서류는 해당교육청에서 정해 시행하는 것이므로 임용예정인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공무원 임용 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1 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 통계

질의

○ 저희 교육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 전국 시·군·구 별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종사자 수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4. [유아교육지원과]

○ 전국의 유치원 교원 현황 등 교육관련 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의 각급학교 및 교육청의 자료(매년 4월 1일자)를 수합, 정리하여 처리하고, 처리 완료된 통계 자료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시스템을 통해 공개 관리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유치원 교원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http://cesi.kedi.re.kr)->유·초·중등통계->주제별 분석->교원'에서 설립별, 지역별, 행정구역별 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어린이집과 관련한 자료는 소관청인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 콜센터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통계에 관하여 미흡하거나 추가문의 사항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운영실(전화 3460-0379, 3460-0357, http://cesi.kedi.re.kr)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용지도서에 대한 제안

질의

○ 이번에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유치원 교사용지도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CD가 포함되어있어서 모든 지도서 내용을 한글로 받아 볼 수 있거나 모든 활동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충자료(동영상, 사진 등)가 들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뿐이라서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 유치원은 교사용지도서가 있으나, 모두 워드로 직접 쳐서 교육지도안에 넣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3. [유아교육지원과]

○ 교사용지도서의 온라인 및 CD자료 보급 등 파일형태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 교과

용도서 내에 있는 저작물, 작품 등 내용 중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저희부에서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시간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데는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한 지는 저희부에서도 잘 알고 있으나, 책자 형태로 보급되는 것과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것은 파급력과 이용에 있어 차이가 있어 부득이 선생님들의 수업에 활용하시도록 책자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보다 유용한 자료를 선생님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사정원(원감) 관련 질의

질의

○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보면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시행령은 23조에 일정규모 이하를 2학급 정의했는데 그럼 사립유치원의 경우 3학급 이상은 반드시 원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원장은 있되 원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6. [유아교육지원과]

○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에서 일정 규모 이하란 2학급을 의미하며 3학급이상이라면, 원장, 원감, 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이는 의무조항이기도 하므로 반드시 3학급 이상이라면 원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 교사정원 확대 요청

질의

○ 유아기는 신체, 정서, 사회, 언어, 인지 발달이 고루 발달하고 모든 발달에 기초가 탄탄하게 닦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전문성을 가진

유치원 교사들이 더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09. 3. 16. [유아교육지원과]

○ 새정부의 '작은 정부' 방침으로 전체 국가공무원 정원이 동결되었으며, 유 · 초 · 중등 교과교사 및 비교과전문직(보건, 영양, 사서, 상담 교사)의 경우도 정원이 동결되었습니다.

○ 따라서 유 · 초 · 중등 교과교사 및 비교과전문직(보건, 영양, 사서, 상담 교사)의 경우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규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대상

질의

○ 첫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방과후 수업을 받는다면 둘째아이 유치원교육비지원내용중에 두자녀이상 보육료가 지원될 수있나요?

○ 방과후 보육료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도 포함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3. 2. [유아교육지원과]

○ 우리부에서 실시하는 유아학비 지원대상은 만3~5세아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유치원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3~4세) 아동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민원인의 경우 두자녀이상 교육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이용할 경우 유치원 두자녀이상 교육비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법정저소득층(1층) · 2층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이상 이용할 경우 지원하는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우리부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대상 학생에게 자유수강권을 지급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일정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학교가 위치한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금, 부당 청구

질의

○ 월급 명세서가 훤이 보이는 가정은 적당히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몇몇 가구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한다 던지 개인 사업장을 둔 가정은 부당으로 소득을 신고해서, 1층으로 해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 하지 않는다면, 정말 어려운 가정은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안 그런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24. [유아교육지원과]

○ 우리부는 허위서류 작성등 부당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것을 예방하고자 '09년 7월부터 유아학비 지원 신청자는 모두 금융재산 정보 조회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금융재산 정보 조회 범위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및 채무이기 때문에 재산 및 채무에 대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유치원 방학

질의

○ 유치원 방학이 한 달씩이나 됩니다. 유치원 방학에 다른 학부모들도 불만스러워 하고 저처럼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 맞벌이가 필요한 현 상황에서 장기간의 방학은 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 [유아교육지원과]

○ 유치원의 방학에 대한 의문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이며,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이듯이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기관임을 먼저 이해하셔야 할 듯 합니다.

○ 따라서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그 교육과정 안에는 하절기 및 동절기의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맞벌이부부의 증가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이 증가하면서 방학기간을 보다 단축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방학기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2조에 의한 법정 수업일수(연간 180일 이상)의 범위내에서 학교장(원장)의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유치원에 부모님의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셔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각급 학교의 교사들에게 있어 방학은 휴가의 의미가 아닌 연수기간입니다.

○ 따라서 방학 중 다양한 연수를 받거나 자기 연찬 기회를 통해 교사로서의 자질과 책임 그리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기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시에는 유치원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님의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의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교통비와 식대 등 수혜성 경비는 수혜받지 않은 방학기간은 제외하고 책정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비용책정의 기준은 해당유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유치원 설립이 가능한지

질의

○ 유아교육법이나 관련 규정에 지하층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지하에 유치원 시설의 일부를 만드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하에 유치원 설치가 안된다면 그 관련 규정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5. [유아교육지원과]

○ 유치원 설립에 관한 규정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설립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치원 등 각급학교의 설립에 관한 허가권은 시·도교육감에 있으며 동 규정 3조 및 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침은 해당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유치원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한 사항은 설립허가시 담당자의 실사를 통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을 설명드리며 해당 내용은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교육청 시설관리과에 문의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가 유치원 설립이 가능한지

질의

○ 현재 미국 영주권자로써 국내 주민등록은 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유치원 설립·운영코자 하는데 미국 영주권을 포기 하지 않을시 유치원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4. [유아교육지원과]

○ 국내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장기 외국거주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국내 거소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국내 국적 및 주민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치원의 설립 신청은 가능할 것이나,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상근하여야 하므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의 운영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유치원설립시 설립자 겸 원장을 겸하는 경우, 원장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원장, 원감 수용계획에 의거 자격연수를 실시하기에 시도의 형편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유치원 인가는 지역의 주변여건 및 수용계획에 따라 유치원 인가여부를 결정하기에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 국적 및 영주권으로 인한 주민등록 부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출입국관리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바, 우리부에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관할 사무소에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국적 및 주민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유치원 설립자격

질의

○ 저는 학부에서 경영학전공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보육교사1급과 일반시설장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경력은 5년정도 됩니다.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은 없는데 유치원을 설립하고 싶은데 자격이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8. 27. [유아교육지원과]

○ 일반인은 유치원 설립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립시에는 유치원교사자격의 교육경력 3년, 만32세이상 된 자로 원장자격인정에 의한 자격연수를 마친 원장을 임용해야 합니다. 설립은 가능하나, 유치원장자격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귀하의 보육교사1급자격과 어린이집경력으로 보아 어린집설립 및 원장자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해당 보건가족부 또는 해당지역 구청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영양사 공동채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질의

○ 유치원 급식실에 조리사를 두어야하는것은 알고있지만 유치원 현장에 영양사까지 채용하는것은 많은 인건비 부담으로 현장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 제40조의3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①「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 1인을 둔다. 다만, 교사의 수급상황 등의 원인으로 학교별 영양교사 1인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5.9.29]

○ 급식조례안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은 관할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지요? 저희는 156명으로 인가되어 단체급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공동이 아닌 개별 영양사를 두어야한다기에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10. [유아교육지원과]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시설, 설비기준)제2항에 의거 1회 급식유아가 100인 이상인 유치원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하며, 다만,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실시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동일교육청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 원비 반환

질의

○ 입학금을 먼저 낸 상태에서 이사때문에 첫주를 유치원에 다니지 못했을 경우 원비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 [유아교육지원과]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학교교육기관입니다.

○ 따라서 수업료의 반환문제는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3항에 의거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별표)에서 정한 바에 의해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제6조제3항관련)

1. 당해 학기 또는 당해 분기(수업료를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 학기 또는 당해 분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수업료를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수업료는 다음 가목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수업료는 그 전액을 반환한다.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다만, 시·도 조례로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환불규정을 별도로 정하였다면 조례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시·도 조례로 정하지 않았다면 앞서 말씀드린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유치원이 위치한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조례를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취원 가능한 연령

질의

○ 유아교육법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유아로 규정하고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 3세미만의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26. [유아교육지원과]

○ 유아교육법 제2조에 '유아'라 함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고 있으며, 2009학년도 유치원 입학기준일은 2003. 1. 1 부터 2006. 2. 28일생 범위 내에서 원아모집을 실시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2549(2008.11.05) 유치원 입학기준일 변경관련 유의사항 안내)

유치원 용지에 아동발달센터 설치가 가능한지

질의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유치원용지에 대해 30%이내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혹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 아동발달센터는 어느 용도로 분류되며 유치원용지에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8. [유아교육지원과]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 중 설립주체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교지 안에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아동발달센터 설립에 대하여는 부지의 면적, 아동발달센터의 설립목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에서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에 중·간식비 지원

질의

○ 유치원은 어린이집과는 달리 중・간식비가 지원이 되지않아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월교육비 외에 교제비며 중간식비를 지출해야 하고 영어, 과학교제비도 따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0. [유아교육지원과]

○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영유아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시설

로 종일토록 보육함이 원칙이므로 보육비에 중·간식비 및 오후 보육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 유치원은 만3세 취학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학교기관이므로 보모의 필요에 의하여 교육과 보호를 실시하고 있는 종일반 경비(중·간식비 포함)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대상이 아닌지?

질의

○ 유치원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 유치원을 건축하려고 하니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를 위하여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 협의를 하니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범위에 들어가지 않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그렇담 유치원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범위(대상)가 안되는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20. [유아교육지원과]

○ 유치원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범위(대상)가 아니며 개별법 적용을 받는 인허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의 영어교육과 수익자 부담 방과 후 특별활동에 대하여 문의

질의

○ 요즈음 일부 유치원에서는 영어교육 전담 선생님을 고용하거나 영어 선생님 파견수업 형

식으로 영어교육을 공공연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은 교습과정 위반으로 불법이라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 일부 유치원에는 방과 후(2시 이후)에 영어를 비롯한 여러 종류를 교육비를 추가 부담시키는 '수익자 부담 방과 후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합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3. [유아교육지원과]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기관으로 유치원 설립인가 조건에 해당하는 시설규모 등을 갖추고 정규 유치원교사에 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에서 명시하는 유치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 따라서 초중등교육과정과는 달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치원교육과정에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생활 등 생활영역으로 교육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가운데 영어교육은 위의 5개 생활영역중 사회생활영역의 '다양한 문화에 관심가지기' 내용을 통해 구현되고 있으며, 영어교육과 관련된 생활영역으로 혼동하기 쉬운 언어생활영역은 우리말(국어)에 대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관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유치원에서의 영어교육은 알파벳이나 단어를 암기하는 인지적 차원이 아닌 글로벌 시대에 대처하는 세계시민교육 및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아기와 초등저학년 시기는 우리나라 언어와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와 바른 사용이 다 중요한 시기라는 국가전략하에 초등교육도 3학년이후의 영어교육 시간 확대 등으로 영어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의 정의

질의

○ 유아교육법제2조(정의) 각호 제2호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 각호 이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란 사립유치원도 학교로 인정을 받는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7. [유아교육지원과]

○ 유치원이라함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 또한, 제7조에 의해 ①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②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사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구분 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항에 의한 학교임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입학금

질의

○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을 하고 난 뒤 1달을 다니고 사정이 생겨서 못 다니게 되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입학금은 돌려받지 못했는데 입학금의 목적이 무엇이며 왜 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9. [유아교육지원과]

○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학교교육기관입니다.

○ 따라서, 수업료 등의 반환문제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3항 4호에 의거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입학개시일이 지난 경우에는 입학금의 환불은 불가능하며 그 외의 수업료 및 교재비 등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과오납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입학금의 세부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입학금은 입학사무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물품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로 유아교육법 제18조에 의하면 공.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동법 제10조에는 유치원규칙은 설립인가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제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에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대해서는 제정한 유치원규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치원장 자격

질의

○ 초등학교 교장으로 2년정도 재직하다 명예퇴직을 했으며, 정년까지는 만 2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사립유치원장으로 바로 임용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유치원장 연수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11. [유아교육지원과]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원장은 유치원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는자 입니다.

○ 여기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자라 함은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해당자

①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②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③ 3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등과

7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경력에는 교감, 교장경력이 모두 포함되므로 원장자격 인정기준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절차(연수지명)에 대하여 해당교육청 업무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종일제 수업의 의미

질의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1조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 주5일 수업실시/로 되어있습니다. 종일제 수업을 하는 경우 8시간이상 수업을 하는 기준으로 종일제 수업일수에 토요일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토요일 수업을 8시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종일제 수업일수에 포함시킬수 없다 합니다. 정규수업일수에도, 종일제 수업일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수업은 누가 하라는 말씀이신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23. [유아교육지원과]

○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하면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교육과정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토요일도 수업일수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 그러나 지역에 따라 "종일제" 또는 "에듀케어" 운영은 시·도교육감 권한 사항으로 운영지침은 시·도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취학 유예아동 유치원비 지원

질의

○ 저희아이가 1급 뇌병변 장애로 유치원을 가려고 하는데 유치원은 유아학비가 한번밖에 지원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 유치원만 몇년 다니면 계속 지원이 되는건지, 학교를 1년 유예하고 8살에 유치원에 처음 가려고해도 지원금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31. [유아교육지원과]

○ 유아교육지원비 대상아동은 지급일 현재 취학전 아동으로 1년에 한하여 유예를 허용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학대상 아동 중 취학 유예 된 아동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재지원이 가능하오며 취학유예확인서를 유치원에 제출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유치원에서 특정종교관련 교육을 하여도 되는지?

질의

○ 아이가 어느덧 5살이 되어 유치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정 종교 재단 유치원이 아닌, 일반 유지원을 보냈구요. 그런데 아이가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 특정 종교 식사 노래 및 기도를 하는 겁니다.

○ 유치원에 전화해서 바꾸어주길 부탁했고, 담임은 바꾸겠다고 하였으나 원장이 바꾸지 않겠다는군요. 이제 막 적응하게 된 아이를 옮긴다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입학금, 원복비 등 다른 유치원을 가게 되면 추가로 돈도 들고요.

○ 일반유치원에서 특정 종교관련 행위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종교법인도 아니고 일반 유지원에서 특정 종교행위를 하는것은 당연히 제재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10. [유아교육지원과]

○ 유아교육지원법 제10조에는 유치원규칙은 설립 · 인가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제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 3항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유치원규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유치원장이 정할 사항입니다.

○ 또한 특정 종교관련 행위에 대한 교육내용 등이 유치원의 지도감독청인 해당 지역교육청에 신고한 사항과 다를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도감독 요청하시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유아 취학유예 관련 질의

질의

○ 현재 만5세(우리나라 나이로 7세)로 2009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합니다. 현재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으며 무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2009년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하고,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또는 사립 유치원에 계속 다닌다면 교육비가 또 지원되나요? 교육비가 지원안된다면 사비로는 다닐 수 있나요?

○ 현재 만5세(7세)인데 생일이 2월생이라 2008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야 하나, 장애로 인하여 유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심하여 2009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한 번더 유예를 하고 싶습니다. 유예가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21. [유아교육지원과]

○ 장애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으려는 경우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유예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2008년부터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지방비로 지원되므로 유치원의 실제 소요경비를 조사하여 지원액을 결정하고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방안'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유예시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거주하시는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단지 내 위치한 유치원의 운영 관련 문의

질의

○ 재건축이 진행중인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이 휴원한 후 철거된 다음 같은 단지내에 부지가 확정되어 건축이 완료 단계에 있으나 당초 위치에서 190m 정도 이동된 곳입니다.

○ 이러한 경우 위치와 지번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위치이전 인가 절차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재개원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3. [유아교육지원과]

○ 유아교육법 제 8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는 유치원 위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치이전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일반 유치원비 지원에 대해 질의

질의

○ 현재 유치원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종일반 비용을 따로 받지 않아서 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나라에서 5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으니 그 돈을 받겠다고 합니다.

○ 오늘 갑자기 "다른 사람은 지원이 되어 나라에서 5만원을 받지만 어머님은 지원이 안되니 3만원만 받을께요" 라고 선심 쓰듯합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바람에 괜히 없던 종일반비가 생긴겁니다. 이건 아니잖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09. 4. 29. [유아교육지원과]

○ 종일반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다니는 원아에게 지원되며, 국공립은 3만원, 사립은 5만원 범위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종일반비 지원시 시·도교육청 지역 여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종일반비 지원을 악용하여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종일반비를 인상하거나, 신청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의 한글과 수공부에 대하여 질의

질의

○ 초등학교 입학전까지는 한글을 떼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계속 보내온 부모들도 결국 한글은 부모가 직접 가르치거나 아니면 학습지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 한글과 숫자 공부는 가장 기초공부이므로, 별도로 사교육(학습지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 것만으로도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그곳에서 정규수업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08. 10. 30. [유아교육지원과]

○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두는 학교로서 초·중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유치원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07년 개정된 유치원교육과정에는 한글교육 부분을 언어생활영역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구성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단계의 글자교육이 아니라 동화듣기, 그림동화책읽기, 이야기나누기, 동극, 동시짓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말과 글에 자연스럽게 친숙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유치원교육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글자교육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글자교육을 하는 방법과 내용이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 수 교 육

특수교육대상자 학교배정

질의

○ 시각장애인 3급인 중3 남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특수교육대상자라서 일반전형에 앞서 특별전형으로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했습니다. 일반전형은 진학이 가능하지만 제 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2항에 있는 거주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같은 지역일지라도 군을 벗어난 다른 학교는 진학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장애학생도 비장애학생처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거주지라는 문구로 인해 장애학생의 선택 기회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25. [특수교육지원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특수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조항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편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지 이외의 학교 배치를 원할 경우 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토대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에 관한 질의

질의

○ 특수교육법 제22조 1항에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시 보호자는 학부모 대표로 몇 명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 개별학생 보호자가 각각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0. [특수교육지원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1항에 규정된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특수교육대

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 각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가장 잘 알고 있거나 지원이 가능한 전문성을 지닌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학교장이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호자가 팀원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학급의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을 학급 단위로 구성하여 각 학생의 학부모나 보호자의 의견 · 요구 등을 반영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는 등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기본교육과정 전면적용에 따른 질의

질의

○ 2009학년도 기본교육과정 전면적용에 따라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정신지체/정서장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치료교육교사는 2009학년도에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기본교육과정 전면적용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치료지원을 누가 담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1. [특수교육지원과]

○ 치료교육 폐지에 따른 대책 및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에서 치료지원은 국가적 차원의 행·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적용시기에 따라 연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치료교사의 자격전환 연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도교육청별로 치료지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되, 2009년도에 전면 시행되는 기본교육과정 적용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량활동 등을 활용하여 치료지원을 제공하고, 교원수급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 이후 기본교육과정 적용 학교의 치료교육 교사의 담당 교과 등은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및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특수교육법시행령의 자격증소지자

질의

○ 제17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특수학교의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이 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17조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번에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말하는 건가요? 직업상담사도 포함되는 걸까요?

회신 회신일 : 2009. 1.14. [특수교육지원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2호의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을 의미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

○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을 통해 취득하셨다면, 제1호에 해당하므로 직업교육 전문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절차

질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절차와 서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3. 19. [특수교육지원과]

○ 학부모가 자녀에 대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를 희망할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

수교육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한 뒤,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30일 내에 청구인에게 통보되며,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립특수학교 교원 정원 배정 방법

질의

○ 특수학교 교원정원을 배정기준을 제시해주어야 하는데, 금번 2008.5.26일 시행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의하면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학생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산어촌…(중간생략)…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단위 학교, 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4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당교사 배치 시 학생 4명마다 1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6. [특수교육지원과]

○ 종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특수학교의 교직원)에 따라 일반 유·초·중·고 교원의 배치기준을 해당하는 학교급별 특수학교 교원의 배치기준에 준용하였으나, 새 법에서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 배치기준을 특수교육대상자수를 기준으로, 즉 학생 4명당 1명으로 총 정원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 기준은 단위 학교나 학급에 교사를 배치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기보다, 중앙정부에서 시·도별 교사 정원을 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시·도의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1명을 기준으로 특수교육 담당 교사 정원을 산정하되,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배치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정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어느 시·도교육청 내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에 1,110명, 특수학급 2,311명, 일반학급 210명 총 3,631명 있다면 학생 4명당 1명을 기준으로 908명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 정원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908명을 배정받는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일반학급 순회교사 등 교육 환경의 여건이나 학생 특성,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다시 단위 학교 · 학급별 배치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 단위 학교에 대한 교사 배치는 시 · 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학생수에 비해 교과별 담당교사 등 필요한 교사수가 많은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재 정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원의 40% 범위내에서 추가 배치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장애학생의 특수학교 입학

질의

○ 몽고 국적을 가진 다운증후군 학생의 경우 국내 특수학교에 입학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8. 22. [특수교육지원과]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 · 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인 것이 확인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이 확인된다면 입학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질의

○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실제 수업과 지원이 특수학급 교사가 아닌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시 팀원으로 특수학급 교사가 적절한지, 아니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의 교사가 적절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22. [특수교육지원과]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결정한 교육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

적이며 상세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은 가급적 해당 학생을 잘 아는 인사들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특수학급 교사가 해당 학생을 잘 알고 있다면 특수학급 교사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가 잘 알고 있다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수교사가 해당 학생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별화교육지원팀에 포함될 경우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분석, 기존 개별화교육계획서 검토, 관련 교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비, 기성회비, 급식비 지원은 되는지?

질의

○ 과거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되어있던 무상지원에 대한 내용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어서 과거처럼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은 학교로부터의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으로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이 무상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기성회비 및 급식비를 납부했다면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소급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7. [특수교육지원과]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유·초·중학교는 시·군·구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며,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관련사항은 취학중인 학교나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교육비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역할

질의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절차 및 처리 과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병원에 의뢰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나요?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 받기 원하는 경우, 병원에서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는 효력이 없나요?

○ 시행규칙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게 되어있는데 병원의 진단이력이 없을 경우에는 병원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23. [특수교육지원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병원에 의뢰한 진단비용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부담하게 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진단·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진단·평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되는 것만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만으로 부족하고 의료적인 진단·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만 병원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병원에 의료적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진단·평가 과정에서 대상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병원의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장애성인의 정규교육 방안과 법적근거

질의

○ 청각장애인 시설에 30-58세의 장애성인이 초등교육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는 취학연령이 훨씬 지난 성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며, 평생교육법은 한글해득이나 직업교육 및 대안교육 방안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도 취학연령이 지난 장애성인의 정규교육에 관한 조항은 언급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이 어려운 경우 순회교육이라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관련 조항이 없어 질의 드렸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9. [특수교육지원과]

○ 「초·중등교육법」에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가 지난 장애성인을 위한 정규교육 제공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정규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국의 몇몇 일반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을 위해 학교장의 결정 하에 청강, 참여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에 장애성인 특수학급(파견학급)을 설치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또한 학령기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아 무상교육

질의

○ 저희 아이는 2008년 2월에 종합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통합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복지카드를 발급 받지 않고, 장애진단서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9. [특수교육지원과]

○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장애 유아 중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교육

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교재대. 급식비 등)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우리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아 당뇨의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여부

질의

○ 우리 아이가 1형 당뇨(소아당뇨)환자입니다. 유치원을 보내서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소아당뇨는 특수교육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그러나 타 지방은 1형 당뇨가 특수교육지원대상으로 식비지원 및 우유까지 무상 지원되고 유치원은 36만1천원씩 지원(원비 공제)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9. [특수교육지원과]

○ 건강장애로 인한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정한 질병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 교육적 지원의 요구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별로 설치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장애를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배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따라 중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청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과 과정의 현장실습 및 취업

질의

○ 전공과 (정신지체)재학 중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 장애인 고용을 하고자 하는 일반사업체에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지와 있다면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현장실습 후 사업체에서 고용을 원하여 취업이 되었을 경우 자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기 수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5. [특수교육지원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수업운영방법 등)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4조(교외체험학습상황)에 의거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외체험학습(현장실습, 지원고용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경우 학칙에 교외체험학습(현장실습, 지원고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학칙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전공과 과정은 의무교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체에 고용이 되었을 경우 자퇴도 가능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서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시점에서 학생의 출석일수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수업운영방법 등)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4조(교외체험학습상황) 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교외체험학습(체험활동)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교외체험학습의 활동유형, 인정절차, 인정범위, 인정기간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교외체험학습상황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이 수업으로 인정한 교외체험학습(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을 입력한다. ③ 학교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학습에 참여한 실적은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 실시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내용(수준) 및 평가, 시간 또는 일수를 실시일자 순으로 입력하며, 개별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한 행사활동, 수련활동 및 학년・학급단위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특별활동상황'란에 입력한다. 다만, 개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교육적으로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정신지체 장애에 대한 용어

질의

○ 기관이나 논문 등에서 경우에 따라 정신지체와 지적장애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가 있는데, 두 가지 용어 중에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9. [특수교육지원과]

○ 질의하신 내용 중 '지적장애'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의와 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정신지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관련 교육적 기준 용어입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운영 시에는 '지적장애'가 아닌 '정신지체'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신지체 학교 수업시간

질의

○ 정신지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개정된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 시간(단위) 배당 기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개정된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기본교육과정 시간(단위) 배당 기준에서 '1시간의 수업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는데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과 학교버스로 통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교를 같이하는 문제로 중학부 과정은 45분 수업에 쉬는 시간이 5분 밖에 되지 못하므로 초등학교 과정부터 중등 과정까지 모두 40분 수업을 하고 10분씩 쉬는 시간을 갖는 체계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6. [특수교육지원과]

○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특수학교는 학생의 발달 고려 및 학교버스의 원활한 운행 등을 위해 초등학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수업을 모두 40분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8-3호 특수학교 교육과정 13쪽 ③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62년생 정신지체1급(남) 성인이 초등학교에 입학 가능한지?

질의

○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62년생 정신지체1급(남) 성인이 초등학교에 입학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4. [특수교육지원과]

○ 교육법 제96조상의 취학 연령인 만6~14세(초·중등)는 의무교육대상아동의 연령을 한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무취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민원대상자는 과연령자로 규정합니다.

○ 적령기의 아동과 같거나 유사한 학년에 취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칙이 정한 절차 또는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 적정 학년에 취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령기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배치절차

질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배치절차에 따르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배치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내용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등인데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면 통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절차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9. [특수교육지원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배치결정이 나기

전에 선정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범위

질의

○ 학교장이 중증 장애아의 현장체험학습(학교교육과정이 아닌 개인적) 참여를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23. [특수교육지원과]

○ 특수교육보조원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현장체험학습을 교육 및 학교활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보조원의 채용과 역할 규정을 해당교육청에서 운영 지침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시간

질의

○ 일반 초등학교에서 학기별로 중간평가, 기말평가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일반학생들과 똑같은 평가시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일반학생에 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줘도 안 되고 뇌병변장애1급인 학생인 경우는 일반 학생에 비해 평가시간을 얼마나 더 주어져야 적절할까요? 다른 장애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6. [특수교육지원과]

○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학생이 학교 및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 관련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200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공고」를 기본 안으로 하는 공문

을 시·도교육청에 시행(2008.7.8.)한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맹인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를 제작·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함.

  ※ 점자판과 점필 및 카세트녹음기는 수험생 본인이 준비하여 지참하여야 함.

- (약시)저시력수험생의 경우 확대독서기 사용을 권장(개인 지참 가능)하며 원할 경우 확대(118%, 200%, 350% 중 택1)한 문제지도 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
- 뇌성마비(뇌병변)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함.
- 청각장애수험생 중 지필검사대상자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사용대상자는 일반 수험생과 같이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같음.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목적은?

질의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검사 역할이 특수교육대상자 선별 차원인지 판별, 입급 가능한 차원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3. [특수교육지원과]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를 말씀드리면,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 발견(선별) 시,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청에 신청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의뢰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결과를 다시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학교에 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수학교 보직교사수 산정과 임명

질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특수교육진흥법과 특수교육담당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 기준에 의하여 보직교사의 임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5조에 의하여 준용하되, 보직교사수는 특수학교 초등부(유치부포함)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중등부(중학부, 고등부, 전공과 포함)는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신학기부터는 어느 기준에 의하여 보직교사수를 산출해서 임명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22. [특수교육지원과]

○「특수교육담당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 기준」은 2008년 7월 28일자로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수학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 관련 조항은 곧 개정되어 모든 사항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될 예정임(의안번호 1801975, 2008.11.12-국회 제출)

장애학생 도우미

질의

○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를 신청하는 공문을 이맘때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대학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장애학생 도우미를 신청해야 할 경우 구체적으로 언제쯤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요
- 또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고, 1~3급 장애학생만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6. [특수교육지원과]

○ 도우미 신청시기에 대하여는 매년 2월경에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도우미 수요신청을 파악하기 위한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하며, 각 대학은 신입생을 포함한 대학

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에게 이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도우미 지원을 원하는 장애학생들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초순경에 대학의 장애학생 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절차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신청요청 공문 발송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 2월

↓

대학별 시행계획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
(대학 ⇒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3월

↓

국고보조금 지원 심의·확정 및 통보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 3월~4월

↓

국고보조금 교부(교육과학기술부 ⇒ 대학) 3월~4월

↓

대학 시행(대학) 3월~12월

↓

결산 :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대학 ⇒ 교육과학기술부) 다음 해 1월

○ 도우미의 지원대상은 4년제 대학교(대학원 포함)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도우미 지원을 신청한 장애학생입니다. 다만 휴학생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 대학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각 대학의 담당부서에 구비되어 있는 도우미 지원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대학도 있지만,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다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한 장애등급은 원칙적으로 1~3급의 중증장애학생이지만, 4급 이상의 장애학생이라도 도우미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또한 중증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최대 2명까지 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며,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은 전문도우미를 지원합니다.

* 전문도우미 : 시각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속기사, 청각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수화통역사 등 전문자격증 소유자

초·중등 학적 및 학교운영 등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발급시 학교명 오류 문제 해결 건의

질의

○ 과거에 졸업했던 날짜를 정확히 알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를 사용해 열람을 해보았는데, 국민학교를 선택하고 보면 국민학교로, 초등학교로 보면 초등학교로 되었습니다. 1996년전 졸업생은 국민학교로, 그 이후 졸업생은 초등학교 졸업생으로 자동적으로 처리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5. [정보화담당관]

○ 졸업증명서 발급시 학교 찾기를 한 후에 선택된 학교명으로 해당 증명서 열람 및 출력시 표기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졸업학년도를 기준으로 학교이력 정보에 근거하여 학교명이 표기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연수학점 누계 개선 건의

질의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연수기록 누계를 보면 15시간당 1점의 평정점수가 가산되고 있으나 15시간 미만은 점수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8시간 연수를 10번을 해도 점수에 전혀 반영이 안되며 15시간은 한번만 해도 1점이 반영됩니다. 시간을 누적점수로 계산해서 학점 누계점수가 나오게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10시간짜리 연수를 10번을 했다면 종합해서 100시간이니까 100시간에 대한 누적 점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NEIS의 누계시스템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5. [정보화담당관]

○ 교원연수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교원연수, 연구실적 학점화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교육인적자원부 예규 제259호)에

1) 연수과정 단위로 학점을 산정하고, 계속 연수는 인정치 않음

2) 15시간미만은 학점인정에서 제외함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는 동 예규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간제교사 담임이력과 과목개설 문의

질의

○ 출산휴가 간 선생님을 대신하여 4월부터 방학식 날까지 기간제 선생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선생님께는 해당 학년반 권한과 교과목 권한 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별 시간표는 3월~1학기말까지 원래 처음 선생님(출산휴가 가신) 이름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식 7월23일에 기간제 선생님께서 출장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표에 전 선생님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제 선생님의 결보강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7월23일만 기간제 선생님 이름으로 담당교과 개설하여 과목은 그대로, 기간제 선생님 담당으로 시간표 바꿔 저장하여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 기간제 선생님 해당 기간 동안 담임을 기간제 선생님으로 바꿔놓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 하나는 시간표 문제인데요. 기간제 선생님이 맡아서 수업하는 기간에는 그 선생님에게 과목개설이 주어져야 되고, 복무처리 상황이 발생하면 결보강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6. [정보화담당관]

○ 기간제 교사가 일시적으로 담임을 맡게 된 경우

- 학생부 및 복무와 관련된 행정 처리상 담임으로 정식 처리를 하는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해당 사항은 학교 현장 및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담임으로 인정할 경우 담임이 변경 혹은 교체된 경우이므로 교무업무시스템을 통해 담임으로 이력 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통지표 및 학생부에 담임으로 이력이 남도록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 이력 추가와 달리 복수 담임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교사가 학교를 출산휴가 및 기타 사정에 의해 장기간 업무를 중단한 경우가 아니고, 한반의 학생을 두 교사가 나누어 관리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출산휴가를 통해 새로운 대체 교사가

직무를 대신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간표 관련

- 기간제 선생님의 이름으로 과목개설 후 전체 시간표에서 변경하시면 위에서 질의하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복무 및 결보강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과 원격지원을 원하시면 NEIS 콜센터(02) 564-1114)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교급식 납품에 관한 문의

질의

○ 소고기의 경우 학교에서는 육류 발주시 [한우 양지 국거리 10kg]처럼 단일부위를 명시해서 발주를 합니다. 영양교사의 말에 따르면 NEIS 등록시 국거리라든지 중등육 등은 입력이 안되고 단일부위만 입력이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양교사의 입장에서는 감사 등에 대비하여 서류를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실제 납품은 한 품목이 아니고 국거리용도에 맞는 다른 부위가 섞인 혼합육이 납품이 되어서 NEIS와 실제 물량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질 낮은 고기나 등급이 다른 고기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고기의 경우 모든 납품업체에서 혼합육을 납품하고 있는데 무조건 단일부위만으로 고집을 하면 업체는 불필요한 재고부담으로 납품단가를 인상해야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1. NEIS상에 입력할 수 있는 품목을 다양하게 할 수는(상등육, 중등육 등) 없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6. [정보화담당관]

○ NEIS 급식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여 사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 국거리 중등육', '한우 양지 중등육', '한우 양지 중등 및 상등육 혼합' 등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무작위로 식재료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등록한 식품의 정보는 관할 교육청의 급식 담당자가 식재료

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사전에 승인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신청한 식재료 정보를 교육청에서 승인하면 관할 교육청의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식재료 명을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데이터 무단접근 문제점에 대한 건의

질의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직원이 학생 개개인(졸업생 포함)의 성적, 병력, 진학 등의 사적인 사항에 대해 무단으로 접근하여 열람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학생의 사적인 프라이버시로서, 제3자가 아무런 동의 없이 무단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 문제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시스템적 보완이나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7. 22. [정보화담당관]

○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는 일선 학교의 교사가 학생 관련 업무를 정보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시스템입니다. 이에 학생 개인의 성적 등의 학교생활기록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절제된 권한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NEIS 권한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교사의 업무에 따라 부여됩니다. 담임, 교과담당교사 등 교사의 업무에 따라 처리, 열람할 수 있는 학생 정보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1반 담임 선생님은 2학년1반 학생 정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임의의 교사가 아무런 통제 없이 학생의 정보를 열람 할 수 없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인증서 발급 문의

질의

○ NEIS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합니다. 인증서 발급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부모서비스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8. 8. 18. [정보화담당관]

○ 질의하신 NIES 인증서는 교직원들의 교무업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교육청에서 신청 발급되고 있으므로 소속 교육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NEIS 교무업무시스템에서 교육적으로 활용되는 각종 학생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여 자녀의 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학부모서비스는, NEIS 홈페이지(www.neis.go.kr)에 접속하여 자녀 학교의 해당 시·도교육청을 선택하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신원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학부모 신원인증은 NEIS 인증서가 아닌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발급관련 상세내역은 초기화면 '공인인증서 발급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재원,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산원,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한 인증서 또는 각 은행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도 가능)

○ 내자녀 바로알기(학부모서비스) 신청 방법〉〉

1. http://www.neis.go.kr 접속
2. 자녀 학교의 해당 시·도교육청을 선택
3. 민원서비스에서 하단에 위치한 학부모서비스의 학생정보열람신청 선택
4. 신청인 신원인증확인
   - 4-1. 신원확인이 완료되면 이름과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 이후 신청자 정보와 대상 학생정보를 기입됨
   - 4-2. 처음 열람 신청을 하는 경우 필수입력사항을 기입하시고, 학생의 정보열람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신청(학부모)정보에 이전에 기입했던 정보가 나타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버튼을 눌러 정보를 변경
5. 학생의 학교 찾기
6. 검색된 학교 목록에서 대상학교명을 클릭하여 학교를 선택한 후, 학생의 나머지 정보를 기입
   - 6-1. 학생의 학년, 이름, 주민번호 기입
   - 6-2. 학교에서 승인
7. 신청 버튼 후(완료)

※ 신청 후 승인 소요기간은 2~3일로 그 이후에도 승인이 나지 않았으면 해당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시원서 접수시 전문계고교생 온라인 정보제공 문의

질의

○ 현재 고3 담임입니다. 대학 수시 2학기 학생의 원서접수시 NEIS 시스템으로 학생 본인의 정보제공을 동의하면 온라인으로 대학지원이 가능한데, 전문계고교 경우는 학생이 온라인으로 지원하고도 오프라인으로 전문계고 학생이라는 출력물을 다시 대학측에 보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구축한 NEIS 시스템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데도 굳이 오프라인으로 또 다시 보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9. 12. [정보화담당관]

○ 현재 대학입시에 있어서 학생생활기록부 등의 정보는 학생 동의시 각 대학에 일괄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학교 계열 등의 표시는 학교교무업무시스템에서는 확인이 가능하나 대학에 학생정보 제공시 표시되지 아니하며, 이는 학교 계열정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하며(종합고 등) 학생 교육과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개인복무사항 개선안 건의

질의

○ NEIS 프로그램에서 병가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었나 싶어 로그인후 MY PAGE → 마이메뉴 → 복무 → 일일근무상황조회 메뉴를 선택하고 조회를 했더니, 계급, 성명, 근무상황, 행선지등 제 개인 복무사항뿐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의 복무사항이 조회 되더군요. 근무상황이나, 행선지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복무내용까지 다른 교직원에게 공개되어 사생활에 손상이 가지나 않을까 싶습니다.

○ 마이페이지, 마이메뉴의 일일 근무상황조회 메뉴는 개인의 복무사항만 조회 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마이메뉴에서 없애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메뉴는 말 그대로 개인을 위한 복무내용만 조회되어야 될 텐데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8. [정보화담당관]

○ NEIS에서는 현재 기관(교육청, 학교 단위)내 근무상황부를 “마이 페이지(일일근무상황조

회)"에서 모든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기능(모든 직원의 근무상황부 열람)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시도교육청 업무관련자 협의를 거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 아울러, NEIS에 대한 기능개선 및 보완에 대한 신청 절차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NEIS 기능개선 및 보완 사항을 시도교육청으로 요청
2) 기능개선 및 보완에 대한 시도교육청 자체 검토 후, 담당자가 NEIS 총괄센터 운영 "서비스 개선 요청사항 관리 시스템"으로 기능개선 및 보완 요청
3) 시도교육청에서 요청한 개선 및 보완 사항을 NEIS 총괄센터 업무별 담당자 검토 후 개선 및 보완 조치
   -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 실무 협의회 개최
   - 기능 개선 및 보완의 규모에 따라 유지보수 또는 추가 개발(예산이 수반되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보안인증서 설치 문의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취급시 의무사항인 보안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는 보안인증서가 설치되어있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홈페이지는 보안인증서를 설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신문고처럼 보안인증서를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4. [정보화담당관]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일절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종 민원 신청 등을 위해 입력하는 개인정보 사항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동연결 실명인증 시스템이며, 이는 또한 구간암호화를 통하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모든 정보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게시판의 글쓰기 사항은 G-PIN(행안부 관리)을 활용하고 있기에 우리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일절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비밀번호 변경 문의

질의

○ "교육(행정)기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비밀번호 관리) 중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하여 분기 1회 이상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NEIS 교무업무시스템 자원운영, 관리표준 및 절차서 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보안관리 지침"에는 비밀번호는 월 1회 이상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 빠른 시일 내 답변 부탁드려요.

회신 회신일 : 2009. 3. 25. [정보화담당관]

○ 교육(행정)기관 정보보안 기본지침은 PC 및 정보서비스 서버 등 모든 정보화기기에 대한 기준을 정한 지침이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직원 및 학생 등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이므로 타 정보기기보다 보안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기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절차서 등에서 월 1회 이상 변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설치된 서버, 시스템 관리 PC 등은 동 운영 절차서에 따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윤리와 사상을 사회교과군으로 교체 여부 문의

질의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대학입학시 내신성적 산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를 출력하면 윤리와 사상과 전통윤리가 도덕교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교과군으로 편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입학시 내신산출에 사회교과를 반영할 때 윤리와 사상과 전통윤리가 도덕교과군으로 되어 있으면 제외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능에서는 사탐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NEIS상에서 편제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5. [정보화담당관]

○ 민원인이 제기한 "윤리와 사상"과 "전통윤리" 과목에 대한 교과군의 변경은 현재로선 어

렵다고 사료됩니다. NEIS상의 교과군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60호”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 임의 변경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학부모 서비스 익스플로러8 지원 문의

질의

○ 인터넷 익스플로러7에서는 열리던 홈페이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8에서는 열리지 않고 있어서 학부모서비스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시도하면 공지사항에 “귀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8을 이용하여 접속하였으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7에 최적화되어 있는 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7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제어판 - 프로그램추가/제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8을 제거 하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내 인터넷 익스플로러8에서도 정상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라고 몇 개월 전부터 공지되어 있기에 여러 달을 기다려도 동일한 이유로 접속이 되지 않고 있어서

○ 이에 문제를 제기한바 현재로서는 예산상의 문제, 또 기타 기술 적 문제로 언제 고쳐질지 모르겠다는 답을 들었기에 답답하여 이곳에 문의 하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4. [정보화담당관]

○ MS사의 IE8버전에 대한 NEIS 학부모서비스 제공상 문제는 NEIS에 도입된 상용 프로그램의 보완과 개발사업자의 프로그램 수정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된 사항 입니다. 현재 학부모서비스에서는 IE8버전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 우리 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으나, 관련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선이 늦어지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및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간에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교무업무시스템 개선 건의

질의

○ 교무업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익스플로러8로도 업무를 사용하게 해주겠다

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지가 벌써 몇 달째입니다. 윈도우업데이트는 계속 업데이트 할 것이냐고 물어보고 익스플로러8 공지문은 계속 잠시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신속히 익스플로러8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9. 8. [정보화담당관]

○ IE8.0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으로 인해 NEIS 사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0년 교무업무시스템 개편 사업을 통해 해결할 예정입니다.

내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서비스 업무개선 건의

질의

○ 2006년 9월 1일 부터 "내 자녀 바로 알기"학부모서비스가 학무모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하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번거로운 이용절차(공인인증서 준비-사이트 접속-인증서로 로그인- 학부모 서비스 신청 - 담임선생님의 승인 - 자녀정보 열람)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하는 통에 많은 학부모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힘들게 등록을 하고 담임선생님의 승인을 받고 내 자녀 정보를 해보니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 문제점(프로그램 질의응답 내용 중)

- 생활기록부내 상장기록 누락
- 오랜 승인대기
- 3일에서 1주일이 걸리는 질문에 대한 답변
- 늦은 자료 업데이트 등

○ 개선 요구내용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1. 담임선생님들이 자녀정보를 제대로 제때에 입력하고 있는지?
   - 선생님들의 성과급 제도에도 반영하여 좀 더 적극적인 관리를 하도록 함.
2. 학부모들이 더 쉽게 열람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3. 특목고나 입시 사정 관제를 위해 돈을 주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지 않고도 담임선

생님들의 꾸준한 기록이 아이들의 학생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4. 부모와의 원할한 상담도 가능하도록.

회신 회신일 : 2009.10.19. [정보화담당관]

○ NEIS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학부모서비스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와 자녀의 학교생활 정보, 기타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학교, 학생 관련 정보는 각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학교에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부에서는 각급학교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학부모님께 자료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 각급학교에서 업무처리가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평가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입학사정관제의 포트폴리오 작성 관련하여 우리 부 방과후 학교팀에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동 사업이 완료되면 별도의 안내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학부모서비스와 PAPS의 로그인 페이지 통합에 대한 건의

질의

○ 업무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PAPS 학부모 가입 건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릴까합니다. SEMS의 학부모 서비스 통해 가입을 했는데, 또 PAPS에서 가입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더군요. 그래서 학부모 서비스에 이 PAPS의 개념을 통합시키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10.21. [정보화담당관]

○ 초등학생들의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은 '09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학부모님께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현재 NEIS 학부모서비스에 가입한 학부모님은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에 추가적인 가입절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은 NEIS 학부모서비스의 하부 메뉴에 PAPS 메뉴를 선택하여 자녀의 건강체력 관련 자료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SEMS는 공식적으로 교과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참고로, 2005년 교무업무시스템 개발 초기에 NEIS 교무업무시스템을 지칭하는 약어로 임시 사용했던 용어임을 알려드립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방안

질의

○ 마땅한 영어학원, 미술학원 하나 없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부모로서의 미안함만 자라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8. [학교선진화과]

○ 정부에서는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을 '06년 19개 군, '07년 89개 시·군, '08년부터 140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비도 '07년 851억, '08년 1,044억원, '09년 2,614억원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08년부터는 전체 농산어촌 지역(읍·면이 있는 140개 시·군)에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총액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여건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시설·기자재비, 이동수단비 등으로 활용됩니다.

○ 앞으로도 우리 부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근거 문의

질의

○ 기초자치단체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를 알고 싶어 질의드

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8. [학교선진화과]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등 방과후학교 관련 주요 사업은 그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립한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도 동 계획을 근거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08.4.15. 발표)"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년 수립·시행해온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이 폐지되고, 시도교육감에게 자율권한이 주어짐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교부시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 향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등 방과후학교 관련 주요 사업은 시도교육감이 수립한 시·도별 방과후학교 기본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이는 지역과 학교가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방과후학교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방안

질의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중등 방과 후 수업이 자율적인 것보다 일부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사교육을 없애려는 부분에 공교육 강화라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정당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없애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 부디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부족한 아이들과 우수한 아이들에게 다양성이라는 부분이 교육적인 점에서도 너무도 필요한 부분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7. [학교선진화과]

○ 방과후학교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 ·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폐지(4 · 15 학교 자율화 조치)시 우리 부는 "방과후학교 규제 정비 안내('08. 4. 30.)"를 통해 방과후학교는 "수요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08년부터 방과후학교가 지방이양 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해당 지역의 방과후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수업비 지원에 대하여 문의

질의

○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수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7. [학교선진화과]

○ 저소득층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범위는 시·도교육청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나, 대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소년소녀가장, 시설수용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등입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역은 해당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자율화 방안 교직원 인사권 강화에 대해 문의

질의

○ 기능직, 일반직 공무원 모두 행안부 소속 공무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선 교육감에게만 인사권을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한 자율화 방안에 보면 학교장에게 기능직 임용권을 준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7. [학교선진화과]

○ 우리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학교현장 중심 자율화로 다양하고 더 좋은 학교를 만들

기 위하여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발표(2009. 6.11)하였습니다. 학교장에게 부여된 행정실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교육감에게 있으며, 법령상 학교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학교장의 인사권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별로 자체 인사지침 등에 근거하여 전보 및 전보유예 요청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 규정에 의거 지역교육청 소속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에 대하여 문의

질의

○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어떠한 정책인지, 자격요건은 어떤 것이지 알고 싶어서 문의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7. [학교선진화과]

○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방과후학교의 질제고를 위해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행정업무 보조인력을 배치하는「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상세한 자격 기준은 시·도교육청과 학교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 재학생 또는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로서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에서 추천된 행정 보조 업무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입니다.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질의

질의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올해 2월6일 제정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 (즉, 올 2월 6일 이전)에는 이 규정이 시행되지 않아

외국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이중국적자도 입학에 제한이 없는 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는 2월1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외국인학교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규정 제정 및 시행 전에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지시가 정당한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12. [글로벌인재육성과]

○ 귀하께서는 외국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이중국적자도 외국인유치원에 입학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및「유아교육법」제16조에 근거하여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기준, 내국인 입학자격, 학력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외국인학교의 설립주체는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사립학교 법인으로 하고,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으로 한다.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시 국가·지방자체단체의 부지 임대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기준을 외국에서 총 3년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라 ①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9부모 중 1인이라도 외국인이면 가능) 또는
- ② 외국에서 총 거주한 기간이 3년(365일×3)이상인 자로, 단순 체류한 기간은 제외하며 거주 또는 학교에 재학한 증명을 제시하여야 입학이 가능하다.
- 상기한 ①, ②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재학생은 졸업(통합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통합과정 졸업)시까지 재학할 수 있으며,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도 ①, ②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입학이 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외국거주기간 3년 미만 복수(이중)국적자 외국인학교입학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국제학교에 관한 문의

질의

○ 5년이 넘는 외국생활을 접고 저희아이는 9학년을 마치고 내년에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로 가게 되며 한국 학력인증이 되는 인터내셔널 스쿨은 어느 학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대학을 가려면 한국 학력인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4. [글로벌인재육성과]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국내학력인정을 위한 인가는 해당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신청받아 허가하도록 하였으므로, 자녀분이 입학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도교육감으로부터 학력인정 학교로 지정받은 외국인학교에서 국어·사회 교과를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한 내국인 학생은 국내학력인정이 가능하며, 학력인정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국어, 사회 교과를 별도로 이수하지 않아도 국내학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 규정 입법예고 관련 문의

질의

○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외국인학교 입학자격과 관련하여, 기존에 입학이 가능하던 2중국적자 및 영주권자도 해외거주기간을 충족해야만 입학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인 것이 사실인가요?

○ 현재 정부에서는 18세이전의 미성년자에게는 "국민처우등록"을 할 경우 외국시민권자에게도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여 사실상 2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한국인 대우를 받는 미성년자가 꼭 거주기간을 충족해야만 외국인학교에 입학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외국인학교는 외국시민권자(영주권자)들을 위한 학교 아닌가요? 그런데 외국거주기간을 충족한 외국시민권자만 입학이 가능하고, 그렇지않은 경우는 시민권자도 입학자격이 없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3. [글로벌인재육성과]

○ 이번에 제정되는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상위법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서의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의 자녀 및 해외에 일정기간 체류한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위한 학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법제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정의에 대해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는 "외국인을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 국적법에서는 이중국적을 만 18세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내국인으로 처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과 내국인의 정의는 저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법을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의 의견을 따른 것이란 것을 밝혀드립니다.

외국인학교의 편법 불법사례 진정

질의

○ 학교에서는 입학 당시에만 국적을 확인할 뿐 재학중에는 국적상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국국적을 상실한 내국인이 외국인학교를 버젓이 다니고 있고 그런 외국인학교를 국내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여 학력을 공식 인정해주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3. [글로벌인재육성과]

○ 우리 부는 지난 10. 28일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 대통령령에 의하면 영주권 및 이중국적 소지자라 할지라도 해외거주 3년 이상의경험이 없을 경우 외국인학교 입학이 제한됩니다.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09. 2. 6)

○ 그리고 외국인학교 편법 및 불법이 발견될 경우 시정변경명령, 인가취소, 학교폐쇄 등 지도감독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쯤 대통령이 발효되면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한 편법 및 불법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학 연령이 넘은 학생이 국내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질의

○ 취학 연령을 초과한 학생이 국내외국인학교에 재학중입니다. 당해 학생에 대한 취학 의무를 촉구하여야 하는지 (불법 유학에 해당하는지) 또 그 절차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 취학 연령을 초과한 학생이 외국에 부모와 장기 체류중이며 현지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 당해 학생을 유예로 관리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31. [글로벌인재육성과]

○ 현재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라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자녀 또는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현행 5년이상)하고 귀국한 내국인이 재학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도 가능). 따라서, 이러한 자격조건에 해당하여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불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현재까지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예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대통령령으로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08.10.18~11.17)했으며, 법령 제정이 완료되어 외국인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재학 사실 확인으로 유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겁니다.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정('09. 2. 6)

○ 외국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아동으로 현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귀국하여 국내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의무교육 유예상태에 있게 되며, 단지 현지 학교에 재학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귀국 시까지 취학통지서 재발부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학생이 귀국하게 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학교장이 재학할 학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영재교육진흥법상 영재교육기관 여부 문의

질의

○ 현재 운영되는 대학부설 영재센터의 경우 시·도교육청과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제중학교나 특목고 진학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졸업자의 경우 가산점 취득이나 특별전형에 응시가 가능합니다만, 해당 학교들은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영재센터 이수실적은 모두 인정한다고 합니다. 시도교육청과 교과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학부설 영재센터도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영재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9. [창의인재육성과]

○ 교육청과 교과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학부설 영재센터는 「영재교육진흥법」상의 영재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상 영재교육기관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과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영재성을 검사하는 기관은?

질의

○ 우리아이의 정확한 영재성을 알고 싶은데, 신뢰할만한 검사지나 검사기관을 알려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4. 16. [창의인재육성과]

○ 검사지, 검사기관, 영재교육기관 등 현황은 우리부에 관련자료가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우리부에서는 일반 지능, 특수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등 그 밖의 특별한 재능이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 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 영재교육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 담임선생님과 협의를 통하여 영재교육기관의 선발절차를 거친 후 영재교육 대상자로 확정되면 해당 교육청 및 대학부설 영재교육기관을 통하여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재 영재교육기관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교육청의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별도의 예산과 자체 규정에 따라 교육원 자율적으로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교육하고 있으며 해당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올림피아드 특별전형 폐지 유예 건의

질의

○ 초등학교부터 IT영재 교육을 받아왔고 과학고 입시의 정보올림피아드 특별 전형을 목표로 중학교 생활 절반(1년 6개월)을 정보올림피아드 공부에 매진해왔습니다.

제안점: 1. 정보 올림피아드는 현행 방식대로 존속시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2. 특별 전형 폐지는 1년 정도는 유예를 시켜야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3. 다른 올림피아드와 성격상 차이를 감안하여 정보 분야는 독립된 전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4. [창의인재육성과]

○ "올림피아드 학생 선발방식 개편 및 과학고 특별전형 폐지" 역시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서, 사교육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이 아닌, 과학에 대한 흥미도와 잠재력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공교육의 틀 내에서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학고 특별전형 폐지에서 정보올림피아드만 다른 선발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입학사정관 제도 등을 통해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려는 과학고의 선발방식 변경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 검토 요청

질의

○ 2011년부터 영재교육원 수료 및 경시대회 특별전형을 폐지한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사는 곳이 과학에 관련된 학원이 있지도 않은 강원도 시골인데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하나요? 그리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면 올해 입학생이나 내년 입학생 때부터 적용해야지 과학고를 작년부터 준비해 영재교육원에 일부러 들어간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 영재의 목적이 무한한 영재성을 키우는 것이지만 과학 쪽으로 치중돼 있는 학생이 전 과

목 내신을 잘 받지 않아 진로를 포기하는 것보다 내년까지 현재 시행하는 방식을 조금 더 시행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 입시 변화 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2. [창의인재육성과]

○ 2011학년도 과학고 입시부터는 기존의 일반전형, 특별전형 대신 학생의 수학·과학 소질과 잠재력, 관심과 동기 등을 종합 고려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전형 및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개선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선되는 입시에서는 학습 과정 외에도 수학·과학 분야 적성과 소질 등 학생의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고에 어울리는 학생들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학생이 수학·과학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다니고 있는 영재교육원과 학교 교육 등에 충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과학고 입시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과학고 설립목적에 맞는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문의

질의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단순히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을 파악하는데만 그쳤으면 합니다. 기초학력 미달 제로플랜에서학습부진아를 선별해내어 교육한다고 하면 열등감만 커지고 사교육비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렇게 공부로 등급을 나누는건 점점 더 치열해 지는 경쟁만 만들뿐입니다.

○ 저희 학교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때문에 중간고사를 3학년 전 범위로 하고 6교시에서 7교시에서 8교시 수업을 한동한 해 왔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대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방과후 수업중 몰래 숙제를 하거나 딴청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0. [학교정책분석과]

○ 학업성취도 평가는 개별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책임지도 함으로써 학생들이 기

초,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학력정보를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이와 같은 평가는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 지역 간 학력차이 해소, 교육과정 개정 등의 정책 수립 및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의 객관적인 학력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여, 학력 부진학생을 책임지도 함으로써 전 국민의 기초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또한, 국가에서는 학력이 낮은 학교 및 학생에 대해서는 보충지도 자료 보급, 특별재정 지원, 우수교원 배치 등을 추진할 것이므로 학교 및 학생을 도와주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3의 10월 학업성취도평가 관련 건의

질의

○ 중3의 경우 10월이면, 중간고사를 치르고, 바로 다음달에 있을 (내신성적 산출 때문에 1, 2학년과 달리 빨리 치르게 됩니다.) 기말고사 준비를 하며, 시험범위에 꼭 포함되어야 할 부분 진도를 필수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합니다. 따라서 12월에 치르기를 건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6. [학교정책분석과]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주요 단계(Key stage) 즉, 초등학교를 학습이 종료되는 시기인 초6, 중학교 학습이 종료되는 시기인 중3,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종료되는 시기인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성취수준(우수/보통/기초/기초학력 미달)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따라서 각 학교급별로 1회 시행되는 평가입니다.

○ 이러한 평가는 국가 차원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교육격차 해소 등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학교에서는 개별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객관적인고 신뢰성 높은 학력정보를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한 평가이므로 그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교알리미’ 부작용 관련 질의

질의

○ ‘학교알리미’를 통해서 학교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계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특정부분만 강조되거나 ‘학교서열화’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 진학률을 부풀린 학교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2. [학교정책분석과]

○ 학교정보공시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교육에 대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와 학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학교정보공시를 통하여 학교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립하며, 미흡한 학교에 대하여 특별재정 지원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학교정보공시제의 기본방향입니다.

○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학교서열화와 같은 교육적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정리된 부분이며, 부정확한 정보입력 등은 제도 도입의 초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봅니다.

○ 향후, 공시된 학교정보를 통하여 바람직한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 학교가 내실 있는 학교운영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 모든 국민들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학교정보공시제도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학업성취도의 법적 권한 문의

질의

○ 「초·등교육법」에는 학업성취도를 볼 수 있는 권한은 아직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시군교육청에서 교육장의 권한으로 학업성취도 고사를 전체 학생으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요.

1. 교육장이 학업성취도라는 명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할 권한이 있는지요(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관련 법령을 함께 올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7. [학교정책분석과]

○ 행정체계상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는 시도교육감이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도교육감은 교육과정평가의 일환으로 학업성취도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여기서 교육과정이란 '형식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목표나 교육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계획'으로 정의(교육과정해설 총론)하여 평가를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 고시(1997-15호)에서 시도교육청은 지역 및 학교에서 적용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동 지침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교육감은 교육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 또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제6호에서도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도 교육감은 교육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

학업성취도에서 특수학교 학생은 제외되는지

질의

○ 200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평가대상이 초6,중3,고1학생들의 전수조사라고 하는데 특수학교의 학생들은 제외됐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8. [학교정책분석과]

○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정에 근거한 평가이므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이수

자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수대상자가 평가 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미용을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 문의

질의

○ 전국에서 미용을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5. [진로직업교육과]

○ 먼저 유·초·중등학교는 시설·설비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도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 인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문계고 : 전남미용고(전남), 동산정보산업고(서울), 인천생활과학고(인천), 서서울생활관광고(서울), 동일전자정보고(광주), 양동고(경기 양평), 임산고(경기 일산), 홍천정보과학고(강원 홍천), 제천산업고(충북 제천), 증평정보고(충북 증평), 논산여상(충남 논산), 남원제일고(전북 남원), 덕암정보고(전북 김제), 학산고(전북 정읍), 여천실고(전남 여천), 경북생활과학고(경북 구미), 영주동산고(경북 연주), 포항동성고(경북 포항), 경남산업(경남 거제)

◆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서울연희미용고(서울)
. 정암미용고(서울)
. 정화미용고(서울)
. 부산미용고(부산)
. 한남미용정보고(대구)
. 경기미용고(경기)
. 예일미용고(충북)
. 경북미용예술고(경북)
. 경남미용고(경남)

교과부의 전문계고 산학협력인프라 구축 방안

질의

○ 정부부처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지만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0% 내외에 불과하였고 인원미달 현상은 여전하였습니다.

○ 이는 예산과 일부 프로그램만 지원한다고 해서 직업교육이 내실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전문계고 단계에서도 산학협력인프라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과부의 전문계고 단계 산학협력인프라 구축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3. [진로직업교육과]

○ 정부차원에서 직업교육 정책을 통하여 단위학교 변화를 위한 별도의 예산지원은 직업교육 기능 및 취업기능강화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학교 상황에 적합한 교육과정, 학생진로지도 등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계고 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정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산업체 등을 연계하여 국가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형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육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학협력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이스터교 지정과 2010 고입 관련 문의

질의

○ 마이스터교지정에 대해 어느 지역의 학교가 지정이 되었는지요? 설립 목적과 향후 진로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8. [진로직업교육과]

○ 마이스터고는 현재 '11년까지 50개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08년 10월에 9개교, '09년 2월에 12개교를 지정하여 현재 총21개교가 '10년 개교를 준비중

에 있습니다.

○ 마이스터고 설립 목적은 고교 졸업 후 우선 취업을 통해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우수 기업에 취업하고, 전공분야 특기를 살린 군복무, 직장과 병행 가능한 대학교육 등을 통해 최고의 기술 명장을 육성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 주요 혜택은 학비 면제, 기숙사 제공, 다양한 장학금, 해외 직업전문학교 연수 등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 모집 방법 :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여 성장가능성을 통한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고, 전국단위 선발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방형자율학교를 확대 관련 문의

질의

○ 개방형자율학교는 입시교육의 폐해를 보완하고 전인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좋은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일선 공립학교들 보다 개방형자율학교를 훨씬더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노르웨이나 싱가포르같이 전인교육과 지식교육이 잘 접목된 선진식학교를 모방해 이 개방형 자율고를 보완 육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2. [학교제도기획과]

○ 개방형 자율학교는 공립학교 혁신 및 창의적 인재육성, 인성교육을 위하여 2007년 도입되어 현재 전국에 10개교가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자율형 공립고로 명칭을 변경하여 12개교를 추가지정, 2010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 자율형 공립고 지정학교 : 도봉고, 수락고, 당곡고, 등촌고, 성동고(서울), 낙동고, 사상고(부산), 강동고, 경북여고(대구), 상일여고(광주), 세마고(경기), 대산고(충남) 총 12교

교육청의 영어경시대회 후원명칭, 시상에 대하여 문의

질의

○ 00일보 주최 전국영어경시를 보면 학생들에게 응시료를 받는 경시대회인데 어떻게 00광역시교육청이 후원할 수 있고 교육감이 시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과부의 「각종행사관련교육인적자원부장관우등상및후원명칭사용승인에관한규칙」이나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1호(2008. 5. 8)를 보면 돈을 받는 경시대회는 후원명칭과 시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사실일 경우 규정과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17. [학교제도기획과]

○ 후원명칭과 수상제도에 관한 업무는 시·도교육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도교육자치단체(시·도교육청)에서 후원명칭 사용승인이나 수상관련 업무는 시도의 포상관련 조례나후원명칭과 관련한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에 적시하신 「각종행사관련교육인적자원부장관우등상및후원명칭사용승인에관한규칙」(폐지) 이나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1호'(상기 규칙의 폐지 예규)는 교육과학기술부 내부 업무지침으로 시·도교육청을 구속하고 준수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대전일보 주최 건에 대한 타당성과 적합성 여부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고 입시 관련 문의

질의

○ 내년부터는 특목고 입시가 지역 제한제가 있어서 경기도는 ○○국제고만 지원 가능하다고 하네요. ○○국제고는 사립학교라서 다른 외고 같은 학비를 내야 한다는데 **도 중학생들은 공립 국제고에 들어갈 권리가 박탈된 건가요?

○ 저희 같은 서민들은 00국제고나 **국제고 진학위해 집을 옮기거나 팔기 어렵고 불법으로 전학하자니 양심이 허락지 않고, 열심히 실력을 키우면 저렴하게 영어공부 할 수 있는 방법(공립 국제고)을 어렵사리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날벼락 맞은 느낌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0. [학교제도기획과]

○ 국제고 등 특목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2010년 입시부터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가 있

는 지역의 고등학교에 지원해야 합니다. 근거는 원래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규정돼 있었습니다.

○ 다만, 교육감이 특목고를 지정고시할 때 학생모집단위를 지정할 수 있어, 그간 특목고 중에는 전국단위 선발을 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6년 특목고 입시 과열경쟁을 염려한 교육감협의회에서 특목고 광역단위 선발을 결정했고,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올해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당시 교육감님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특목고가 없는 지역 학생들의 타 지역까지 배려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학생선발 방식의 변경은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국제중학교 재학생의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영재학교 지원자격

질의

○ 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영재학교 지원자격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3. 9. [학교제도기획과]

○ 국제중을 비롯한 특성화 중학교 졸업생은 거주지에 소재한 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00국제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지원해야 합니다. 과학영재학교는 출신중학교,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문의

질의

○ 대안학교 설립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교과부의 인가를 받게 되면 교과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과부의 인가를 받지 않을시 인가받는 대안학교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11. 16. [학교제도기획과]

○ 우리 부는 2009. 11. 5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포하였습니다. 아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해당되는 지역의 시·도교육감에게 인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학교헌장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8. 삭제 〈2008.12.31〉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5. 교직원 배치계획서

○ 이에 대한 관련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의거, 대안학교는 각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고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나, 이외에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하는 곳은 학력인정과 무관하며 사설학원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가 적용받지 않는 법조항 문의

질의

○ 외국인학교에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대안학교에서는 법과 령에

없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뜻인지요? 장학지도 안 받아도 되고, 학업성취도 평가 안 해도 되고,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 안 해도 되고, 교육비 보조 안 해줘도 되고, 학습부진아를 위해 수업일수나 교육과정 신축 운영 안 해도 되고, 학교회계 설치 안 해도 되고, 학교운영위 구성 안 해도 된다.

○ 그럼 반대로 대안학교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학년도를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로 하기"를 외국인학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뜻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11. [학교제도기획과]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규정된 대안학교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다만, 학교회계와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및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규정에서 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학교에 대안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안학교에서 학교회계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의무는 아닙니다.

○ 또한, 외국인학교에 대해 제2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학교에서도 학년도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질문

질의

○ 경남 00고등학교는 가된 대안학교인가요? 아니면 평생학습시설로 분류되나요? 정교사 채용이라는 공고를 봤는데, 교사로 채용된다면 일반 국공립학교와 같은 보수와 경력이 인정이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1. [학교제도기획과]

○ 경남 00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된 대안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곳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 학생 〉

초중고생 〉 학교정보·교육통계 〉 대안교육 실시 학교 현황(한글파일)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인가된 대안학교의 교사자격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인가 기관에서의 교사의 보수는 이사장과 계약에 의한 사항으로 이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무교육과 위반시 처벌에 대한 문의

질의

○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의 내용(년한 등), 그리고 위반시 처벌 내용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2. [학교제도기획과]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이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위탁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취학의무) ①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만 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

는 자의 경우에는 만12세에서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11세,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13세[제27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 11세 또는 만 13세에서 해당 연수(年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15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4세를 말하고,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6세를 말하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연수)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이행 및 독려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등) ①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7.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취학하는 자의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그 해당

연수를 더한다.

○ 의무교육 위반시 벌칙은 「초 · 중등교육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려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사립학교 자문기구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의 지위

질의

○ 사립학교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인 운영위원의 법적 지위(법적으로)가 공직인지 아닌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30. [학교제도기획과]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공직이 아닙니다. 참고로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이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예금보호위원회 등에서도 그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나 위원직의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등 위원의 역할이 공공성을 띠는 경우에 「국가공무원법」 상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학운위 위원들은 학교의 예 ·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등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결정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역할에 있어서 공공성을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운위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아니한 자가 위원에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위원의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규정하였습니다.

외고지역제한에 관하여 문의

질의

○ 2010년 외고입시부터 지역제한이 이루어지는 걸로 들었습니다. 현재 주소지에는 제대로 된 외고가 없어 아들을 타지역 외고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지역제한을 두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교육의 평등권을 위해서도 이러한 제도는 절대 시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2010년도에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는지 결정된 사항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08. 12. 23. [학교제도기획과]

○ 외국어 고등학교는 "어학 영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로, 어학 분야에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위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이들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선은 이러한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임을 유의하시고 진학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편 제도 변경의 시기는 외고가 현재 야기하고 있는 과도한 입시경쟁,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 비교육적인 현상의 파장을 감안한 정책방안이며, 이에 대해 우리부에서는 지난 2006.10월 각시·도교육감 회의에 지역제한 적용을 시작하도록 시행공문이 시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역제한에 대한 방안이 당사자에겐 부정적인 결정으로 들릴 수 있으나, 대한민국 전체 학생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유학생 특목고 진학 자격에 관한 문제

질의

○ 현재 국제학교나 우수한 특목고의 경우, 외국에서 중학생활을 보내고 한국에 성적이 없는 경우 아예 입학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학 가능한 학교도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제 아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를 졸업하고도 한국에 와서 중3 2학기를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과 다시 다녀야 한다는 불합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현지에서 보낸다면 아이는 언어습득에 더욱 매진할 수 있고, 저보다 어린 학생들과 다시 중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이런 규정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한 가지 더 제안한다면, 한국의 기숙형학교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의무적으로 기숙형학교가 운영되고 있음으로 해서 사교육 시장이 커지지 못하는 것처럼, 기숙형 학교는 사교육 시장을 고의로 누르지 않고도, 공교육이 바로설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2. [학교제도기획과]

○ 문의 사항은 외국 유학생의 국내 고등학교 특례입학에 관한 내용인 듯합니다. 특례입학은 특목고라고 해서 특별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시도교육청 별로 설치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가 소재한 시·도교육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무교육연한(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에 대한 대안교육의 위헌 및 적법성 여부

질의

○ 현재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규정되고 있다고 압니다만 중등과정의 대안교육이 버젓이 시행되고, 심지어 그 학교에서는 2009년 개교를 목표로 초등과정의 대안교육이 준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부적응아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의무교육연한을 국가에서 지정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교육여건의 확보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시민적 연대강화를 위한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초·중등교육법」 제 13조와 14조를 감안해 볼 때, 고의로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의무교육 연한의 학생들을 모집하는 행위는 의도적으로 법령의 취지를 훼손코자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초·중등교육에서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라면, 그 사안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관사항이지 미인가 사설교육기관의 소관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19. [학교제도기획과]

○ 대안교육을 하는 곳은

1. 정규학교인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근거, 전국 29교 운영)

2. 각종학교인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 및「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 '07년 제도도입 후 전국 2교 운영)

3.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인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약 130여개소)로 구분됩니다.

○ 교과부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중 교육적으로 우수하고, 시설조건이 충족된 시설은 "각종학교인 대안학교"로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을 수 있도록「대안학교 설립 · 운영 규정」(대통령령)을 제정(07. 7월) 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에 2곳(경기도, 서울)이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아 운영 중이며,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 더불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중 과도한 수업료와 외국학력인정 등 과대광고로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인가받은 대안 중학교 현황 문의

질의

○ 2009년까지 인가 받은 대안 중학교 현황에 대해 학교 이름과 주소 등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1. [학교제도기획과]

○ 시·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2개교가 있으며, 기존학교와는 달리 체험위주 교육 등 다양하고 독특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정규 중학교인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는 8개교가 경기, 전북, 전남지역에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 학교명 및 주소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 학생 〉 초중고생 〉 학교정보·교육통계 〉 대안교육 실시 학교 현황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인근에 위치한 학교운동장 시설 사용 문의

질의

○ 일요일날 조기회 같은 경우는 돈을 내고 계약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락을 받으러가서 연락처를 적어놓고 한다면 학교 운동장시설에대해서 회손할 염려도없습니다. 운동장을 지역주민에게 잠시 개방하는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9. 22. [학교제도기획과]

○ 공휴일을 이용해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차거나, 가족끼리 배드민턴을 치는 등 건전한 주말과 동네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운동장 개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휴일 운동장사용에 개인이 아닌 단체에서 사용할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칙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학교 운동장의 이용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제749호) 제5조에 의거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시도별 조례·교육규칙에 따라 징수하고, 지역 및 학교공동체의 합의와 운영의 묘를 살려 학교실정에 맞도록 자율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이 법으로 정해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안전을 위해 운동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의 운영에 관한지침에 따라 현재 학교장님께서 이를 시행·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에 지역주민이 학교시설 이용에 대하여 학교장과 다양한 방법의 건의 또는 협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율학교 운영 방안 건의

질의

○ 현재의 자율학교법이 타도 유학생은 당초 거주지내 고등학교로의 진학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교의 지리적 특성상 여러군이 인접해 있으므로 거주지 진학불가 방침은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자율과 경쟁에 의한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초 거주지내 고등학교 진학 가능을 건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9. [학교제도기획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개정 2009. 3. 27)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의 학생은 원거주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전형방법 문의

질의

○ 자율형사립고의 신입생 전형의 방법에 다음과 같은 항목있는데 (학생선발) 비평준화 지역의 입학전형은 지필고사외의 방법으로 학교 자율적으로 선발하고, 평준화 지역의 입학전형은 시·도교육감이 결정한다. (시행령 안 제82조제7항, 규칙안 제3조) 비평준화 지역의 입학전형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선발고사(연합고사)도 지필고사에 해당되어 입학전형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5. 6. [학교제도기획과]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르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학교별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연합고사 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여 실시하는 입학전형은 학교별 입학전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시가능합니다.

자율형사립학교 관련 문의

질의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09년도에 30개교를 우선 지정고시 후 2011년까지 100개를 지정할 예정이며, 지정되는 학교는 현재 일반계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29일자 교육과학기술부 Q&A 자료에 의하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은 1차적으로 기존의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 신설을 계획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자율형사립학교로 학교를 설립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

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0. [학교제도기획과]

○ 자율형 사립고는 물론 신설하여 지정도 가능합니다. 학교를 설립하실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시·도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학교설립계획서에 자율형 사립고 지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설립과 동시에 지정이 가능합니다.

장관상 관련 문의

질의

○ 저는 지방에서 예술단체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단체에서 내년에 청소년 대회를 개최하고자합니다. 저희 대회에 상장이필요한데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신 회신일 : 2008. 9. 22. [학교제도기획과]

○ 후원명칭 사용은 「각종행사관련교육인적자원부장관우등상및후원명칭사용승인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해당 기관이 행사시작 30일 전에 우리부에 요청하면 행사내용과 관련된 부서에 접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합니다. 후원명칭사용 요건은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의 본부가 주최 행사이거나,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여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내용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관련 규칙을 참고하시어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과로부터 명칭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학생 징계 구분에 관한 문의

질의

○ 중학생은 의무교육대상자임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대한 해석이 학교마다 달라 중학생에 대한 징계 구분이 제 각각인 것 같습니다. 징계 구분에서 특수교육이수까지는 모두 동일하나 그 다음 단계로 가정학습(등교정지) 징계 항목이 규정된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에 대한 가정학습(등교정지)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13. [학교제도기획과]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된 사항이라면 (학부모, 학생, 교사의 합의) 학칙에 등재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관하여 질의

질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5항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의 선출은 교원위원은 참여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개입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아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1. 교원위원의 위원장 추천이 타당한지 여부
2. 교원위원이 위원장 선출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줄 발언-예)위원장은 학부모중 1명 부위원장은 지역위원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식의 발언.

회신 회신일 : 2009. 4. 8. [학교제도기획과]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및 이에 근거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조례 및 해당 학교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위원장이 선출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21375호 제81조 제3항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21375호 제81조 제3항 입학전형의 지원 제한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학생이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내의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및 새로 제도화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함.' 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 현재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상기법률 제 81조 제3항의 적용이 외국어고등학교라는 내용은 '학교'로 파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상기법률의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는 학교가 아닌 해당학과로 파악 하고 계신지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과 더불어 예외규정의 적용을 검토하시는지 답변을 구하고자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9. [학교제도기획과]

○ 특목고 광역단위 제한의 예외는 '학교' 단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재 각 시도 교육감이 고시한 특목고 지역제한 고시문의 예외는 '외고가 없는 지역'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근 교육감끼리 협의하여 당해 시도에 해당 과가 없을 경우,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현행 외고의 전형 방식이 바뀌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지금처럼 지망 학과를 순위대로 나열하고 성적 순으로 선발한다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특목고 진학에 대한 문의

질의

○ 특목고를 준비하는데 왜 복수지원이 안 되는 건지,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대학도 여러 번 지원할 수 있는데,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을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고 합격 못하면 다른 학교 지원하는 식으로 하고 그래도 실력으로 안 되면 일반 고교를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5. [학교제도기획과]

○ 먼저, 특목고 광역단위 학생모집은 학교장이 결정하고 시 · 도교육감이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목고는 교육감이 학생모집 단위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 특목고 학생선발 지역제한은, 2006년 특목고가 유발하는 불필요한 입시과열을 막고, 또한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2006년 시 · 도교육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2007년부터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교에 입학하게 되는 2010년 입시부터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특목고가 없는 지역의 학생은 지역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결국 지역제한은 특목고 설립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자치의 기본 정신을 강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데서 나타나는 과열 경쟁 해소를 위해 중복 지원을 제한하는 법령이 제정된 것입니다. 법령 제정 본래의 취지가 우리 학생들을 지식기반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길러내기 위하는 데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목고(외국어고)정책방향 질의

질의

○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교육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수도권에서의 특목고 설립을 규제하고 있어 일선 지자체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도권 특목고(외국어고)설립에 대한 교육정책은 어떤 방향이며 언제부터 추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특목고설립이 가능하다면 국비지원은 가능한지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서 부지매입비, 건축비 모두 부담토록 하고 있음)

회신 회신일 : 2009. 4. 6. [학교제도기획과]

○ 정부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하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고 등 특목고 정책도 고교 다양화 정책

기저에 바탕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특목고 지정(설립)은 우리 부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 교육수요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님이 추진합니다. 물론, 특목고 등 외고, 과학고, 국제고는 교육감이 지정하기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고 등 특목고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 국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성화중학교의 종류에 대하여 질의

질의

○ 특성화중학교의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3. 10. [학교제도기획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특성화중학교에 대하여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학급수·학생모집지역 및 그 적용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④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우리부가 지정한 특성화중학교로는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8곳(경기도의 헌산중・두레자연중・이우중・한겨레중・중앙기독중, 전북의 지평선중, 그리고 전남의 성지송학중・용정중), 국제특성화중학교 2곳(부산국제중학교, 청심국제중학교)이 있습니다.

특수목적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

질의

○ 현재 특수목적학교 또는 자립형 사립학교등은 기존의 교육기관의 성격에서 특수목적을 위

한 학교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 한의학과 양의학을 기반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연계하고 의과대학의 수련과정으로 연계할 수 있는 특수목적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을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3. [학교제도기획과]

○ 의학계열 특목고는 현행 법령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성화고등학교로는 가능할 듯합니다. 현재 간호, 임상병리 등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 또한,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자율화의 일환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학교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학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개설할 수도 있겠으나, 비용, 자격증 등 여러 문제를 선결해야 가능할 듯합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를 온라인상에서 화상회의 가능여부 문의

질의

○ 이사회 임원1인이 사임하고자 하여 이와 관련하여 법인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사결원발생에 따라 이사회 회의 및 법적 절차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회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사들의 국내외 일정 등으로 시간이 서로 맞지 아 한 장소에 모여 오프라인으로 회의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 이에따라 온라인 상에서 '화상회의'로 이사회를 개최하려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법을 찾았으나 관련법을 찾지못해 온라인상으로 이사회 회의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7. [학교제도기획과]

○ 「사립학교법」 제17조에 의하여 이사회의결을 위한 회의 소집시에는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서 면대면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온라인상의 화상회의로는 모일 수는 있으나, 의결을 위한 안건을 채택하기 위한 사항이라면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온란인상으로 이사회 회의는 가능할 것이나 의결을 위한 이사회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법인과 임면권자의 의미 법령해석 요청

질의

○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임면에 있어서 학교법인과 임면권자가 나오는데 이사회를 임면권자로 보는지 이사장을 임면권자로 보는지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9. [학교제도기획과]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는 이사회의 기능으로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의2 제1항제1호에서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교원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19조에서는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관하여 학교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인 이사장이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운영상의 각각의 정의에 대한 문의

질의

○ 학교분류 상 용어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전문계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의 정의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8. [학교제도기획과]

○ 먼저, 학교 계열.유형의 명확한 기준설정인 교육과정에 의해 ①일반(인문)계열과 ②전문

(실업)계열 또는 특성화(특목고)계열로 구분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인문계고(일반계고) : 대학진학을 목표로 교육과정이 이루졌으며,

○ 전문계고(실업계고) : 전문계고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현장에 적응하여 기술, 기능력 및 현장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현장실습이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되다 보니, 전문계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인권침해, 노동력 침해 등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산업체에서는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단순 대체인력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은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취업의 질을 제고하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졸업 후 해당업체에 취업이 보장될 때 회사는 현장실습생에게 교육과 투자를 하게 되고 학생은 진로와 연결하여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한 현장실습 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목적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특수목적고등학교(제90조)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며,

○ 특성화고등학교(제91조)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시도교육감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와 직업교육특성화고등학교 2가지 유형의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현장실습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관련)

질의

○ 3학년 2학기 현장 실습을 위해서 전문 교과는 현장실습으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보통교과(8단위)가 편성되어 있어서 2/3이상 이수 되어야합니다. 2/3이상을 이수하려면 11월 24일 이후가 되는데 그 이전에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이 현재 5명 정도 됩니다(전체 학생 30명중) 이 경우에 이들 학생이 지금 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2/3 이수에 부족한 시간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과제학습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1. 16. [학교제도기획과]

○ 모든 교과의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이수 후 현장실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세한 사항은 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존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은 '08년 폐지)

서울국제고 특별전형에 관하여 질의

질의

○ 2010년도 서울국제고 신입생 전형요강에 특별전형이 있는데 사회적 배려자 범위에 차상위계층 자녀는 포함이 되는데 한부모 가정은 왜 안 되는 것인지요?

○ 대학교 기회균형 선발제에는 한부모 가정도 차상위계층으로 포함되어 접수를 하던데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다른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29. [학교제도기획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입학전형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해당학교의 장이 정합니다.

○ 대학의 경우도 학교의 장이 학생을 선발하며, 대학에 따라 기회균등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은 대학별로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제중, 국제고 자료 요청

질의

○ 국제중학교, 국제고등학교에 대한 자료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외국어고등학교와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8. [학교제도기획과]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이하 학교설립권자는 시·도교육감입니다. 교육청에서

는 학생수용계획을 참고하여 학교설립이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한 후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설용건 등을 참고하여 학교설립인가를 검토합니다.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인가를 합니다.(참고로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통합검색〉학교설립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학교

  목적 :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

  설립 : 설립.운영권자 동일(국.공.사립)

  입학전형 : 광역(인근)원칙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 외국어계열학교

  목적 : 동일

  설립 : 설립.운영권자 동일(국.공.사립)

  입학전형 : 학교별 선발, 광역(인근)원칙

  법령 :동일

국제학교 입학기준 변경 시기 문의

질의

○ 국제 학교 입학기준이 5년 유학에서 3년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어제쯤 시행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3년차 유학생인데 귀국후 국제 학교에 갈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17. [학교제도기획과]

○ 내년부터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다 귀국한 학생으로 대폭 완화되고, 입학 규모도 학교 정원의 30%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나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대학입시에서 외국인 특례입학자격은 주지 않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현행 5년 이상 해외거주 학생에서 3년 이상 해외거주학생으로 완화되고,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정원의 20~30%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 초·중학교의 입학자격은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또는 정부 초청이나 추천으로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입니다. 고교는 부모 및 학생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자녀 또는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상사 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자녀 중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등입니다.

인정유학후 귀국하여 재취학시 꼭 시험을 치러야 하는지?

질의

○ 귀국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남편이 해외상사 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아이가 초등 4학년 초에 이곳 두바이로 출국, 4월 9일부터 3학년 마지막 4학기 과정에 입학하여 현재 6학년 재학중입니다. 금번에 귀국 발령이 나서 6월 중순경 6학년 전 과정을 마치고 전가족 함께 귀국하려 합니다.

○ 두바이와 한국 사이에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이가 중 1학년에 편입하려면 중1 학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개 과목 시험을 치러야 하며 70점 이하의 과락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배우지도 않은 과목을 70점 이상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몹시 부담스러워 여쭙습니다. 두바이의 학교는 학력이 인정되는 명문학교인데, 저희 아이가 꼭 시험을 쳐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5. 11. [학교운영지원과]

○ 해외근무 등으로 인한 온가족의 해외이주에 따라 유학한 경우는 인정유학에 해당됩니다. 인정유학 후 귀국하여 국내학교로 복귀할 경우에는 유학기간의 외국 정규학교 재학기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할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국내재학기간과 유학기간 및 유학학년 등을 근거로 적정학년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님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능한 교외상의 범위 질의

질의

○ 초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얼마 전 관할 경찰서에서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성적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을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가 있어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와 관련하여 NEIS 등록(기재)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6. [학교운영지원과]

○ 교과부 훈령인「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 기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훈령 제9조에 따르면 수상경력의 입력시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상의 남발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력할 수 있는 교외상의 인정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외상의 경우, 교과부 및 교육청이 주최한 대회이거나, 학교장 추천을 통해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경우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량활동 정규교과 시간의 운영 문의

질의

○ 재량활동(연간 60-70시간) 정규교과 시간에 특수자격(바둑, 컴퓨터, 미술, 전통(국악 등))을 소지한 외부강사(교사) 등을 임용하여 정규교사가 아닌 외부강사가 전담하여 수업을 진행하고(당연 인건비는 학교회계 등 학교예산으로 집행) 수업일수로 계산하여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7. [학교운영지원과]

○ 훈령 제719호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에 따르면, 재량활동 결과를 기록하는 것은 실제로 수업에 참여한 이수시간 및 활동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정규교사가 아닌 외부강사가 전담하였다 하더라도 학교운영권자의 허가를 득했다면 당연히 수업으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고등학교 편입 가능 여부 문의

질의

○ 현재 한국고등학교에서(사립, 공립, 인문계, 실업계)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경우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경우 전체 학생 수 대비 인원 제한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경우 정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측이나 유학생 측에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5. [학교운영지원과]

○ 「초・중등교육법」 제43조, 제47조와 동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자격을 갖춘 자는 국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시행령 제77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 등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국내 교육 관련 법령에서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외국인학생의 경우 동 시행령 제75조 및 제92조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 전학 및 편입학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의 입학, 전학 및 편입학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학교의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과 ITQ자격증 NEIS 자격취득란에 등록 여부

질의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워드 자격증은 NEIS의 자격취득란과 가산점란에 올라가 있던데, ITQ자격증도 국가공인 자격증이니까 올릴 수 있는지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도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술자격증만 선택가산점에 해당되고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선택가산점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3. [학교운영지원과]

○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격증란에 기록할 수 있는 국가공인민간자격의 종류와 유효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의 부록3에 제공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는 모든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과부 NEIS지원서비스(helpsys.mest.go.kr) 의 공지사항 1684, 1683과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 정보마당〉정보자료실〉학교정책국〉 1548에 탑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조사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여부

질의

○ 초등생 경조사 출결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몇 일간이나 결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훈령(616호)을 찾아보니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은 7일간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지금은 변경이 된 것인지요? 아니면 학교마다 다른 것인지요? 아니면 외할버지는 직계존속이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15. [학교운영지원과]

○ 교과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부모의 부모(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사망한 경우 7일을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경조사에 따른 출석인정 일수는 학교마다 다르지 않고 모든 학교가 동일하며, 문의하신 외할아버지의 경우는 직계존속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권고전학 학생의 재입학 문제 문의

질의

○ 올해 우리 반 학생이 학교내 상습적인 금품갈취와 심한 언어폭력으로 학교선도위원회의 결정으로 권고전학을 받게 되었고, 학교장의 결재도 끝난 상태입니다.

○ 학부모님이 권고전학의 징계를 받고는 학생의 생활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징계를 번복해 줄 수 없냐고 하는데, 교장선생님의 결정이 있다면 징계를 번복할 수 있는지요?

○ 그럴 수 없다면 올해 자퇴를 하고, 올해 자퇴한 학교로 재입학을 학생이 희망할 경우 재입학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24. [학교운영지원과]

○ 학생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 학교의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재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 학생에 대한 재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 자퇴한 자의 재입학은 해당학교의 학교장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교출석인정여부

질의

○ 재학 중인 학생이 비행으로 인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개정 소년법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는 제4호 였음) 처분을 받으면 6개월간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학교 출석일수를 인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며, 어떤 요건에서 학교출석을 인정해 주는지요?

○ 6호 기관 중의 하나인 00교호직업보도원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를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6호 처분(구 4호 처분)을 받은 경우 출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한 적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런 내용을 시도 교육청에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학교81140-497, 2003. 4. 11.)

○ 법원에서는 재학생인 6호 처분자가 모두 학교출석을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일부 학교에서 학교출석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법률적 근거 및 학교출석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알고자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4. [학교운영지원과]

○ 재학 중인 학생이 비행으로 인해 소년법 제32조 제5항(현재 제6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의 취지와 수용기간 동안 소정의 학업교육과정을 이수함에 비추어 출석으로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 다만, 입소기간동안 소정의 프로그램 및 과정에 불참한 경우에는 불참 시간 및 일수 등을 이수증에 엄격히 기재하여 학교에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학생 출결관리가 공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및 따돌림에 관한 질의

질의

○ 자녀가 따돌림과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소개하여 주시고 하루 속히 아이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16. [학교운영지원과]

○ 교과부에서는 폭력으로 인해 자라나는 학생들의 밝은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범정부차원에서도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이나 학교현장에서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으로 피해 받은 학생들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교과부에서는 Wee센터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ee센터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운영하는 교육 업입니다. 이곳에는 전문상담교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이 배치되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가정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이용하는 장소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국공통)158 8-7179**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문제점

질의

○ 자치위원장은 학교장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임의로 교감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지요?

○ 자치위원회의를 개최 하루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내용을 알리지 않고 통보하여 당일에야 회의 내용을 알게 하고 있는 바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가해학생이나 피해 학생의 처리를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회의를 내용은 알리지도 않고 하루 전에 통보하여 개최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위원은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이 맡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학

교운영위원 중 지역위원이 학부모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한지요?

○ 피해학부모가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관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근거도 없는데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 마찬가지로 학교운영위원장에게도 참관을 허용치 않도록 되어 있다는데 그 근거는 어떤 것인지요?

○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을 다른 교사(학년부장 등)가 다른 학생들에게 결석한 이유 등을 묻는 것과 피해 사실이 어떠한 경로인지 모르나 학급에 유포가 되고 학교에 유포가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요?

○ 가해 학생의 징계 내용에 대해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통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8. [학교운영지원과]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질문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14일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개정전 법률은 학교의 장이 위원장직을 맡도록 하였으나, 개정 법률에 의하면 위원장은 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학교의 장은 위촉권만을 가질 뿐 자치위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회의내용 통보에 대한 문의 :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전담기구에서 사안에 대해 파악을 하고, 학교의 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 개최 시 회의 내용을 몇 일전에 통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회의내용을 회의 당일에 배부하여 가·피해학생의 인권보호와 비밀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역위원이 학부모 위원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 자치위원회의 구성은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도 위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상황에 따라 구성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치위원회 회의 참가 여부에 대한 문의 :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면 가·피해자에게 의견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비밀유지, 인권보호,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차원에서 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은 회의에 참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피해사실 유포 여부에 대한 문의 : 학교폭력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자치위원이나 교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많은 개인적인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함으로써 가급적 그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회의비공개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처리에 관여한 교원의 경우도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며, 누설금지 위반여부 등은 학교폭력 가해나 피해사실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가해학생의 조치를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결정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의 학생과 해당 부모님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 학생의 학생과 해당 부모님께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피해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복공동구매추진 학부모 문의

질의

○ 저는 주부이며 학부모로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저의 생각을 정리하고 개선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교복공동구매를 진행을 통해 알게 된 교복 시장의 문제점

1. 교복의 목적성 상실되었다.
2. 학생 교복이 대기업에 의한 낭비적 거대시장으로 변질되었다.
3. 이권에 개입하게 되는 추진 학부모들의 부담과 예상되는 부작용입니다.
4. 대한민국 학부모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5. 교복공동구매는 일반 학부모에 의해 추진될 수 없습니다.
6. 필수교재인 교복은 교육적 목적에 맞게 누구나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 교복에 따른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처음 교육적 목적에 의해 구매가 이루어져야 하

며 이에 경제적, 실용적 고려의 범위가 지정되어야 한다. 교육은 사치가 아니므로 적정한 범위가 전문가에 의해 정해질 수 있으며 국민의 보편적 교육을 위한 공교육에서는 불필요한 경쟁과 고급화를 제도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2. 제안 내용
- 교복 등 수익자 부담 교육재에 대한 적정가를 제시한다.
- 학교에 따른 필수 교육비용의 차등 허용치를 마련한다.
- 교복의 경우 사양을 간소화하여 교복생산 시장을 개방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는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통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에 학부모를 대표하여 그 뜻을 전하여야 하며 교복뿐만 아니라 모든 수익자부담 경비에 있어서 학부모가 비교 가능한 적정가와 모범사례들에 대한 정보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에게 전달되어 일반 학부모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실제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 수지지역 8개 중학교 교복공동구매의 바람이 단지 극성스런 학부모에 의한 일시적인 술렁임으로 끝나지 않고 공교육의 목표인 보편적 교육의 혜택을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 어떤 학교에서도 공평히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4. [학교운영지원과]

○ 각 시도교육청별 공동구매 관련 학부모연수, 교복공동구매매뉴얼 등을 보급 하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직접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 먼저 교복의 적정가 제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학교자율화조치로 인해 교복에 관한 지침을 폐지하고 교복관련 모든 사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교복의 디자인 사양 추가 등은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에서 심의 결정할 사안입니다.

○ 우리부는 교복가격의 안정화와 교복시장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노력을 관련부처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외한국학교의 저소득층자녀에게 학비지원 관련 문의

질의

○ 저는 중국에 있는 북경한국학교에 중학생 자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업부진으로 등록금 납부가 어려워 학업을 지속시키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한국학교에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제도가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11.30 [재외동포교육과]

○ 우리부에서는 재외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9년도의 경우, 재외한국학교 학생 318명에 대하여 약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국가별·학교별 학부모의 소득수준, 물가수준, 가정형편 등이 상이하므로 지원대상자는 학교에서 별도로 심사·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외한국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기 위한 방법은?

질의

○ 재외한국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11.30 [재외동포교육과]

○ 재외한국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학교 이사회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지 채용 교사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초빙되는 선생님(초빙교사)과 현지국에서 교사자격을 가진 선생님(현지채용 교사)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 해당 한국학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교사 초빙 공고에 따라 서류 및 면접시험 등 공개경쟁을 통해 선생님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채용공고 : 홈페이지(www.mest.go.kr) 〉 알림교실 〉 공지사항 〉 "교사채용, 교사초빙, 초등교사" 검색

○ 채용이 확정되면 해당 학교와 고용계약을 직접 맺은 후 관할 교육청에 고용휴직을 신청(영사관 공인 고용 계약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자세한 고용 휴직 절차는 소속

시 · 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외한국학교 입학절차 관련 문의

질의

○ 해외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하게 되는 지역에 한국학교가 있다고 하여, 아이들을 이곳에 입학시키고 싶은데, 학교 입학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11.30 [재외동포교육과]

○ 근무하실 지역의 한국학교에 자녀분의 편입학을 원하신다면, 우선 해당 학교에 학부모 비자 종류(부모의 현지국 체류 조건), 학생의 편입학 가능성, 입학시험의 유무, 학비 등 구비자료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의 편입학이 가능하다면, 해당학교에서 요구되는 전학서류를 국내학교에서 구비하여 해당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휴직시 관용여권 발급문제 문의

질의

○ 고등학교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09년부터 재외국민교육기관인 중국 00한국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초빙교원이고 고용휴직입니다.

○ 관용여권발급에 관해 외교통상부에 질의했는데 파견교사뿐만 아니라 초빙교사도 국외에 나가면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공문이 있으면 관용여권이 발급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초빙교사로 해외에 나가시는 다른 불들도 관용여원을 발급받은 경우를 보았구요. 저도 관용여권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19. [재외동포교육과]

○ 관용여권은 해외 파견, 출장 등 공무로 해외로 출국할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빙되는 교사는 신분은 공무원이나, 고용휴직 후 현지채용교사로 나가는 것이므로 그 목적

이 공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용여권 발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외교부에서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공무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다만, 현지법상 재외공관 부속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국학교의 경우, 재외공관의 행정원으로 계약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공관에서 초빙교사에게 관용여권을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7조를 참고로 하시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외교통상부 여권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딸아이 유학 관련 문의

질의

○ 필리핀 마닐라 소재 마닐라 한국아카데미에 딸을 유학 보내려하는데 그학교가 재외국민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교육기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9. [재외동포교육과]

○ 재외교육기관의 범위는『재외국민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2호내지4호』에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이에 따라 필리핀 마닐라 소재 마닐라 한국아카데미의 경우 동법 2항의 재외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아울러, 재외교육기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한글학교"는 비정규학교로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학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재외한국학교 현황('09. 9기준)

국가명	학교명	설립 연월일	학생수(학급수)					전임교원수(파견교원수)			
			계	유	초	중	고	계	유	초등	중등
일본	동경한국학교	'54.04.26	1,094(27)	-	589(15)	251(6)	254(6)	55(3)	-	31	24(3)
	교토국제학교	'47.05.13	155(7)	-	-	51(3)	104(4)	16(1)	-	-	16(1)
	오사카금강학교	'46.04.05	361(16)	14(2)	174(6)	106(3)	67(5)	32(2)	-	11	21(2)
	오사카건국학교	'46.03.01	440(22)	31(4)	167(6)	122(6)	120(6)	36	5	6	25
소 계(4개교)			2,050(72)	45(6)	930(27)	530(18)	545(21)	139(6)	5	48	86(6)
중국	북경한국국제학교	'98.08.26	1,127(42)	81(4)	558(19)	230(9)	258(10)	83(1)	9	30	44(1)
	상해한국학교	'99.07.06	1,093(46)	-	599(26)	212(9)	282(11)	97(1)	-	50	47(1)
	연변한국학교	'97.12.01	213(12)	-	98(6)	62(3)	53(3)	25(2)	-	12(1)	13(1)
	천진한국국제학교	'01.03.05	919(31)	117(5)	428(14)	185(6)	189(6)	76(3)	13	33(2)	30(1)
	홍콩한국국제학교	'88.03.01	182(14)	18(2)	80(6)	22(3)	62(3)	26(1)	3	12	11(1)
	연대한국학교	'01.03.01	704(26)	-	309(12)	195(6)	200(8)	60(2)	-	26(1)	34(1)
	대련한국국제학교	'04.03.01	374(17)	-	191(8)	97(5)	86(4)	36(1)	-	18(1)	18
	선양한국국제학교	'06.03.01	182(14)	38(3)	92(6)	34(3)	18(2)	39(1)	3	17(1)	19
	무석한국학교	'06.09.04	84(9)	-	79(6)	5(3)	-	21(1)	-	13	8(1)
	칭다오청운한국학교	'06.05.25	588(27)	56(5)	310(12)	143(6)	79(4)	51(1)	7	20	24(1)
소 계(10개교)			5,466(238)	310(19)	2,744(115)	1,185(53)	1,227(51)	514(14)	35	231(6)	248(8)
대만	타이뻬이한국학교	'62.02.01	48(8)	16(2)	32(6)	-	-	9(1)	2	7(1)	-
	고웅한국학교	'61.01.25	34(5)	-	34(5)	-	-	6(1)	-	6(1)	-
소 계(2개교)			82(13)	16(2)	66(11)	-	-	15(2)	2	13(2)	-
베트남	호치민시한국학교	'98.08.04	1,063(39)	33(2)	526(17)	228(9)	276(11)	66(3)	3	29(1)	34(2)
	하노이한국학교	'06.03.21	316(17)	-	180(11)	72(3)	64(3)	25(1)	-	14(1)	11
소 계(2개교)			1,379(56)	33(2)	706(28)	300(12)	340(14)	91(4)	3	43(2)	45(2)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	'76.09.18	12(5)	5(1)	7(4)	-	-	4(1)	1	3(1)	-
	리야드한국학교	'79.04.24	15(7)	2(1)	13(6)	-	-	6(1)	1	5(1)	-
소 계(2개교)			27(12)	7(2)	20(10)	-	-	10(2)	2	8(2)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76.01.05	1,075(41)	-	509(20)	225(8)	341(13)	71(4)	-	39(1)	32(3)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학교	'93.02.27	85(6)	-	85(6)	-	-	15(1)	-	15(1)	-
태국	방콕한국국제학교	'01.03.31	126(12)	-	74(6)	30(3)	22(3)	27(1)	-	11	16(1)
필리핀	필리핀한국학교	'09.05.13	29(9)	-	16(6)	13(3)	-	19(1)	-	7	12(1)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92.03.01	92(9)	22(2)	70(7)	-	-	11(1)	2	9(1)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95.01.23	319(17)	158(9)	161(8)	-	-	25	13	12	-
브라질	브라질한국학교	'98.02.12	75(7)	-	75(7)	-	-	7	1	6	-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92.02.14	90(8)	34(2)	56(6)	-	-	9(1)	2	7(1)	-
이란	테헤란한국학교	'76.04.30	27(6)	-	27(6)	-	-	4(1)	-	4(1)	-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79.12.05	43(6)	-	43(6)	-	-	7(1)	-	7(1)	-
소 계(10개교)			1,961(121)	214(13)	1,116(78)	268(14)	363(16)	195(11)	18	117(6)	60(5)
합 계	15개국, 30개교		10,965 (512)	625 (44)	5,582(269)	2,283(97)	2,475(102)	964 (39)	65	460(18)	439(21)
					10,340(468)					899(39)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학적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질의

○ 태국의 방콕에서 방콕 한인 국제 학교를 다니다가 제적이 된 상태인데 제적증명서를 한국 관련 기관에서 발급을 받을수가 있나요? 방콕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아포스티유 협약에 관련하여 제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5. [재외동포교육과]

○ 방콕한인국제학교의 제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하여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터넷(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전화(2100-7500 또는 3210-0404)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한 해외 국가 인정학교 확인 문의

질의

○ 영국의 primary school 중 한 곳을 다녔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인가된 학교여부 확인서를 받고 싶은데 절차를 알려주세요.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학교확인증을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1. [재외동포교육과]

○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 리빌딩 4층에 있는 외교통상부 영사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해당국가 외무부)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수수료 500원

〈우편 발급절차〉

- 상기 신청 구비서류와 반송용 우표 및 봉투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 Korean Re 빌딩 4층 외교통상부 별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에게 송부

일본 소재 국제학교의 한국 인정 여부 문의

질의

○ 제가 자녀들과 회사 문제로 일본에서 2년간 체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소재 국제학교중 한국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 귀국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인정하는 학교의 list가 있나요? 참고로 제가 거주할 예정인 곳은 tsukuba입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Liberty International School과 Tsukuba International School 가 있던데요. 이 학교는 어떤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24. [재외동포교육과]

○ 우리부로부터 인가받은 재외한국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경한국학교 : 81-3-3357-2233
- 경도국제학교 : 81-75-525-3535
- 오오사카금강학교 : 81-6-4703-1775
- 오오사카건국학교 : 81-6-6691-1231～4

○ 그 외 학교가 해당국가의 허가로 설립된 학교인지 여부는 일본 문무성에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영 제11조 및 (별표6) 국외취학 문의

질의

○ 자녀가 고교1년생으로 일본에 유학생을 받아주는 학교를 유학원을 통해서진학을 했습니다.

○ 일본은 동경한국학교, 쿄토국제학교, 오사카금강학교, 오사카건국학교 5개 고교로, 동 학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학교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고지현에 있는 明德義塾高等學校(MEITOKU GIJUKU HIGH SCHOOL)에 올해 입학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 올해 우리나라에서 유학입학생이 17명이 입학을 했는데 왜 이학생들에겐 적용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유학학교로 우리나라 학생이 4년 전부터 유학생이 들어간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9. [재외동포교육과]

○ 현행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운영승인한 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참고 :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96페이지에 보면 국내 공무원의 자녀가 교과부장관이 승인하지 않는 국외의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재외 한국학교현황 (15개국 30개교 2009.9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자료)

○ "일본의 동경 한국학교, 쿄토국제학교, 오사카, 금강학교, 오사카건국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가 받은 학교이므로 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에 의한 학비보조수당의 지급 대상이오나,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明德義塾高等學校(MEITOKU GIJUKU HIGH SCHOOL)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학교가 아니므로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지 변경시 필요한 서류와 방법은?

질의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외국민교육기관근무를 위해서 고용 휴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학교를 이동하고자 합니다. 재외동포교육기관 등록 인가된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이동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9. [재외동포교육과]

○ 한국학교에 고용휴직으로 근무 중이시라면 한국학교의 교원 임면권은 학교법인이사장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다른 학교로의 이동은 근무지 이동의 절차가 아니고 원하는 학교에서 교사 모집 공고가 나올 때 지원을 하셔서 합격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교와 고용계약 상태를 해지하여야하고 해지에 따른 귀책사유가 귀하에게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소속 교육청에도 고용계약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휴직은 그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복귀해야하므로 해당교육청과 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등록에 관한 문의

질의

○ 중국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아 산동성에 설립한 0000한국학교로 유치원, 초,중,고에 500여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내용은 한국의 교육과정을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 교과부에 등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한 이유로 한국국적의 학생이면서도 행정적 재정적 기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외국민교육지원등에 관한 법률(07. 1. 3 법률 제 8164호) 제 30조(재외국민교육기관등의 등록)에 의거 공관장에게 등록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7. [재외동포교육과]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규 한국학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학교법인 설립-학교운영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또한, 재외교육단체는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외에 재외 국민 교육을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이므로 귀학교와 같이 현지국가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교의 경우는 재외교육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외한국학교의 초·중학교 학생이 무상의무교육 대상인지

질의

○ 저는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태국 방콕한국학교에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등록금부담이 버거운 형편입니다. 국내 같으면 무상의무교육 대상자들인데, 국가에서 재외한국학교 초·중학생에게도 국내 수준의 지원을 해 주실 수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12. [재외동포교육과]

○ 재외한국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국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교육대상자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무상의무교육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거주요건 및 학령요건을 갖추고, 학교 선택권 없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국내 초·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의무교육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로서(거주요건), **학령에 도달한자**(학령요건) 이어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3조)

○ 또한, 국내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학생인 경우에도 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하는 사립유치원, 사립초등학교,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은 수업료 등을 별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해외에 설치된 자국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외국 국가에서는 교원 일부 파견 및 일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재외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외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한국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교육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의 차이점 문의

질의

○ 재외동포교육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의 차이점

○ 재외동포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교사경력은 인정여부

참고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이면 100% 경력인정된다는 법을 본적이 있습니다. 재외동포교육은 어떻게 경력환산 하는지 승진여부와 관련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표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 [재외동포교육과]

○ 재외동포교육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과의 차이점

- 재외동포교육기관과 재외국민교육기관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은 의미상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외동포는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을 가르키는 용어로써, 조선족, 고려인 등을 다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자만을 재외국민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에는 일시체류자와 영주권자가 있습니다.

재외국민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재외국민교육기관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던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은 2007.1.3자로 폐지되었음)

○ 재외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교사경력의 인정여부

-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근무한 경력은 폐지되기 전 규정인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재외교육기관에 고용된 경우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 44조 1항 6호에 의하여 재외교육기관에 고용된 경우에 한해 동 기간동의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인정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1항 1호에 의하여 상근인 경우는 100%, 비상근인 경우는 50%로 인정을 받을 수있습니다만, 상근과 비상근의 구분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2003)'에 따라 계약시 수업시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재외교육기관 현황표

- 우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우리부 홈페이지 실국마당/정보자료실/7번/재외한국교육원 및 재외한국학교 현황이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글학교를 포함하여 재외교육기관 전체를 알고자 하시면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외한국학교 초빙교사 근무에 관한 문의

질의

○ 한국학교에서 초빙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1. 현직초등교사가 고용계약서를 쓰고 해외한국학교에 근무를 할 경우(현 근무지에서는 고용휴직상태), 고용계약서에 나와있는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경우, 계약위반을 이유로 다시 국내 관할 교육청으로 복직이 가능한지?

   이 같은 현상이 09학년에도 계속될 경우, 계약위반의 사유로 다시 국내로 원활하게 복직할 수 있는지?

2. 분명, 08학년도에 충실히 근무했는데 교장선생님의 권한으로 복직에 필요한 서류(경력증명서, 보수지급 증거자료, 교원시수 배당표) 등을 발급할 수 있는지?

   지난 '09년초에 09학년도 국내복직의사를 밝혔지만, 교장선생님께서 본인 허락없이 복직시, 국내복직에 필요한 서류를 일체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3. [재외동포교육과]

○ 귀하께서 더 이상의 학교 근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우선 고용계약을 해지하셔야합니다. 귀하의 급여가 다소 늦게 지급된 것도 계약위반사항인지의 여부는 고용계약서를 바탕으로 판단해야할 것이지만, 일단 더이상 고용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 학교장을 통하여 최종 임용결정권자인 학교법인에 통보하여 고용계약 해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내 복직 사항은 고용계약 해지와 동시에 가능하며 국내 학교의 복직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고용계약 해지는 원하는 자가 계약당사자에게 언제든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해지에 따른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교장선생님의 복직 관련 서류 발급 거부의사 표현은 교장선생님께서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으니, 우선,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위반인지의 여부를 따져보고, 상호 인정 하에 그 의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재외한국학교 특수학급 여부 문의

질의

○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2009학년도 재외한국학교 명단을 보았습니다. 유치, 초등, 중고등 학급수는 나와있는데 특수학급 여부, 혹은 특수아동의 재학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특수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재외한국학교의 명단인데 가능할런지요?

○ 저는 현재 초등특수교사로 재직 중이며 한국어교사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해외이든 국내이든 관계 없이 몇년간 휴직을 하고 한국어 교사, 혹은 사회복지사로 학교나 복지관 등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이런 사유로 휴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0. [재외동포교육과]

○ 특수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재외한국학교의 명단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재외한국학교에서 특수아동을 위한 과정은 소재국 및 학교의 사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사의 채용은 개별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고용휴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휴직사유가 동 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휴직허가권자인 해당 교육청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아 하므로 임용교육청의 휴직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국제학교 인가여부 문의

질의

○ 중국 정주 국제학교로 유학을 보낼 예정인데 인가된 학교가 맞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29. [재외동포교육과]

○ 귀하께서 문의하신 중국-정주 국제학교는「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

해 설립·인가된 학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중국정부인가를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가셔서 (http://www.koreanembassy.cn/) 상단의 "여행·교육"란을 클릭하시고 "교육민원신청" 코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상해 한국학교 고1학년 1반 증설에 관한 문제

질의

○ 저희는 5년째 해외주재를 하고 있는 재외국민인데 '09년에 고1이 되는 딸아이가 있습니다. 한국학교 고1을 들어가야 학기가 맞아 연말에 한국에 들어가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00한국학교에서 고2학년과 고3학년은 다 네학급인데 고1학년만 3학급이니 한반 증설을 간곡히 말씀드렸으나 교장선생님께서는 부정적이십니다.

○ 회사에서 발령은 나고 5년넘게 외국에서 국제학교 다니던 아이를 한국에서 특례가 아닌 수능으로 시험을 보라 하는 것이 서로 못할 일이라 선처를 호소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5. [재외동포교육과]

○ 재외한국학교에서 학급을 증설하는 문제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교원확보 등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사항이며 우리부에서 인가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귀하의 요청에 도움을 드릴수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광동지역 한인학교 설립계획 문의

질의

○ 이곳 중국 광저우에도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아직 북경, 상해, 청도처럼 한인 학교가 없어 외국인 학교나 중국인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인 아이들이 제대로된 한글 교육과 생활에 대한 학습을 위해서는 한국인 학교도 상당한 장점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 한국국제학교가 설립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것인지, 광저우 지역 혹은 광동 지역내 설립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20. [재외동포교육과]

○ 재외한국학교 설립은 법인 또는 단체가 현지 교민들이 교육수요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지 공관을 거쳐 학교설립인가 승인신청을 하면 현지실사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설립 인가를 해주고, 일부 예산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학교가 정식 인가된 학교인지 문의

질의

○ 취학통지서를 받은 학생 중에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서 유예 신청서를 써 가지고 왔는데 그곳에서 1학년이 3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4월에 2학년으로 입학할 수 없는가 문의를 합니다. (필리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1학년을 마쳤다고 함)

○ 본교에서는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인지 확인이 되면 평가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학부모가 원하는대로 편입학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고 싶은 것은 필리핀의 이 학교가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인지, 아님 사설 학원인지의 여부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9. [재외동포교육과]

○ 우리부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가 필리핀에서 정식인가를 받은 학교인지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주한필리핀대사관이나 필리핀한국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세계의 국가별로 학제 및 수학연한, 개인별 학적관련서류에 대한 확인(대사관 등 관계기관에 공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귀국자 일반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판단하는 사항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소관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적 준비서류(사실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학교 모든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국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출력물(해당자)

출입국 사실증명서(부・모・학생)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국내거소사실증명서(해당자) 등

한국어교사 교육 기관 문의

질의

○ 재외동포인데 한국에 약 4-5년정도 머물며 한국어교육학 석사과정을 공부하여 외국으로 나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 한국어교육학 석사과정도 공부하고 교원자격증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2. [재외동포교육과]

○ 한국어교사자격증의 발급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명의로 발급되오며 그 자격기준과 경력에 관한 사항은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www.korean.go.kr/kteacher) 또는 한국어진흥팀 (02)2669-9725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능력시험 문의

질의

○ 중국 운남곤명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는 가장 가까운 도시가 성도나 중경인데 기차로 18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운남성 교육청에서도 곤명에서 시험을 치르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도록 해 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08. 11. 25. [재외동포교육과]

○ 중국 내 한국어능력시험은 중국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중심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MOU 협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중심은 중국 내 시험장 지정 및 원서 접수 등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험출제, 인쇄, 문답지 배송 및 채점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장 지정은 중국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중심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학교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

질의

○ "중국국적을 가진 사람도 중국 현지에 '한국학교 설립인가'를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현지에서 한국학교를 하려고 할 때, 자격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5. [재외동포교육과]

○ 해외한국학교 설립은 한국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이므로 설립자가 외국국적인 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정수중 2분의 1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해외 한국학교 설립 문의

질의

○ 해외에 초,중,고 한국인 학교를 설립 하고자 하는데 설립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한국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설립 절차 및 자격 요건 등이 있을 듯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1. [재외동포교육과]

○ 재외한국학교 설립의 절차 등 근거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 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현지 교민들의 교육수요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산목록 및 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지 공관을 거쳐 학교설립인가 승인신청을 하면 현지실사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설립 인가를 해주고, 일부 예산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외 한국학교에 초빙교사제의 대안 필요 제안

질의

○ 한국학교에서 약 2년간 초빙교사로 근무하다가 국내 학교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초빙교사에 대한 처우와 그에 따른 후속예우가 너무나 열악하여 새로운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1. 파견교사를 없애고 2007년부터 실시해온 초빙교사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새로운 파견제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해외근무기간의 모든보직및 교육과정 수행을 그대로(100%)인정하여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하도록 합니다.
3. 보수도 한국보수 수준 그대로 적용하고 순환근제 원칙(약5년)으로 선발하여 배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한국학교 학생들도 국내 학생들처럼 소중한 우리 교포자제들이고, 그 교육 결과 feeddack이 고스란히 국내로 환류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소명의식을 지닌 정교사들이 정당한 처우로 소신있게 근무하는 여건을 마련해야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 [재외동포교육과]

○ 귀하의 민원 내용은 주로 고용휴직인 경우의 경력이나 승진 반영사항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인 고용휴직과 관련된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해외한국학교 근무를 위한 고용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6호로 한국학교 근무자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 고용휴직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한국학교 근무자에게만 특별히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예외사항을 두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부장교사 경력이나 근평과 같은 경우는 신분이 이미 휴직으로 처리된 것이라 휴직 중의 사항을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해당부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 파견교사제를 현지채용교사제로 전환한 것은 파견교사와 현지채용교사간의 갈등, 열악한 재정문제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해외한국학교는 교과부의 승인을 얻은 학교이나 국공립학교는 아닌 사립학교와 같은 형태로 예산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학교장을 파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외파견공무원의 자격 기준에 대해 문의

질의

○ 해외파견공무원(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교감도 해외파견 교장이나 교육원장 시험에 응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안한 미혼인데 교과부에서는 결혼을 안한 사람은 선발을 꺼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혼 여부가 면접에서 불리한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7. [재외동포교육과]

○ 재외 교육기관 파견을 위한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별표1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교사는 파견을 보내지 않고, 한국교육원장과 한국학교장만 파견을 보내고 있는데 교육전문직이나 교감 경력 3년이상이면, 한국교육원장 응시가 가능하고 한국학교장인 경

우는 학교에 따라 교장자격소지자나 교감자격소지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1차시험은 어학과 국사시험이 있으며, 2차시험은 면접시험입니다. 결혼의 여부가 응시나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외한국학교의 교감 파견계획 문의

질의

○ 저는 해외한국학교에 근무경험이 있는 초등교사입니다. 갈수록 재외국민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한국학교의 설립도 많아지고 학생수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로 한국학교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장만 파견하고 있으며, 그나마 교감의 역할을 하던 파견교사는 지난해부터 선발하지 않아 학교에 따라 자체적으로 채용해 교감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 근무경험으로 볼 때 대사(총영사)와 더불어 국가를 대표하는 양대 기관장으로 교장선생님의 역할은 한국의 교장선생님과 달리 대외적인 일들이 많아 학교의 일에 힘쓸 시간이 태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운영, 생활지도 등 수많은 학교의 일을 총괄해서 이끌어 나갈 교감의 파견이 절실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예산의 문제 등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재외교민교육을 위해서 대규모 학교부터라도 교감을 파견하길 건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28. [재외동포교육과]

○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교감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교감직 수행을 위한 선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재외한국학교는 사립학교의 성격을 가지고있어 교감채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교과부에서 일방적으로 파견을 결정하여 보냈겠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향후에 교감파견에 관한 사항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건강안전

가상현실 체험관 유통문제

질의

○ 내 용: 자사는 가상현실(3D영상)체험관을 전문적으로 창업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개 요

- 본 게임기는 단순오락보다는 현재 많은 개발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입체영상과 가상현실체험 기술이 접목된 게임기로써 교육과 놀이가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가상현실 체험관입니다.

○ 문제점

- 본 제품은 보다 실감나는 체험을 위해 라이더가 첨가되어 법률상 유원시설 또는 청소년 오락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학교 보건법에 의거 절대 정화구역(학교 담장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에서의 설치와 운영은 불가하며 상대정화구역(50m~200m)이내에 설치를 위해 학교정화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2/3이상 찬성이 되면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 가상현실체험은 현 정부의 17대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되어 전국의 많은 대학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에서도 3D영상제작에 관련된 많은 학과들이 생겨나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정보를 알려주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면 절대정화구역내의 할인유통점이나 극장의 영업이 가능하고 상대 정화 구역 내에서도 노래방의 경우 운영이 가능 하지만 건전한 "가상현실 체험관"영업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절대정화구역 외의 지역 즉 상대정화구역에서 만이라도 가칭 '3D 체험 학습관'으로 창업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9.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학교보건법」 제5조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이나 학교설립

예정지로부터 200미터 까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법 제6조제1항에서는 동 구역내에 학습환경 등에 지장을 초해할 수 있는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귀하께서 말씀하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단,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의 정화구역은 제외)도 포함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을 제외한 상대정화구역내에서는 해당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만약 정화구역내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학교보건법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은 관계자(학생, 학부모, 교사 등)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언급하신 정화구역내 설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시설의 업종분류는 문화부 소관으로 해당 부처에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학교보건법에 대한 적용 문의

질의

○ 본 계획은「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하는 계획으로 개발계획 내용중에 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으며, 학교보건법 개정전(2008년4월27일 제6조의2 시행)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여 교육청과 학교용지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일부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때, 학교보건법 제6조의2의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보건법 개정전 기 입안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민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고일 이후는 계획입안된 것으로 봄)계획으로 별도의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8. [학생건강안전과]

○ 교육환경평가제도 시행(2008. 4. 28) 당시 이미 해당 교육청과 학교용지 선정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그 협의자체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이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용지에 대하여 재검토(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개정된 중학생 체력검사 기준표 문의

질의

○ 중학교에 근무하는 체육교사입니다. 개정된 중학교 체력검사 기준 자료를 구하고자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28. [학생건강안전과]

○ 중학교 체력검사기준표는 2000년 신체검사규칙의 법제명이 학교건강검사규칙으로 법제명만 바뀌고 표안의 내용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학교신체검사규칙'은 법제처(http://moleg.go.kr)>법령검색:학교건강검사규칙>부칙> 별표4,5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에 관하여 질의

질의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4]학교급식의 위생· 안전관리기준(제6조제1항관련)

2. 개인위생

가.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결핵검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 학교는 학교급식법규에 따라서 년 2회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2회나 하니까 비용도 두배나 들어가는 데요. 건강진단(구.보건증) 검사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학교 운영비 또

는 급식비로 사용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9. 1.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진단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은 초중등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및 운영에 대한 지도 · 감독 권한을 가진 관할교육청에 문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 용도에 따른 허가 신청 때 심의 관련 재 질의

질의

○ 본 건물은 이미 정화구역 200m이내 이므로 교육청 심의를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차 같은 내용으로 심의를 받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으므로 질의합니다. 단란주점150㎡ 이상은 유흥주점과 수평이동이 가능 하다고 보아집니다.

○ 첨부한 구청의 허가 조건에도 단란주점 150㎡이상은 표시가 없습니다. 이것은 유흥주점과 같다는 뜻이 아닌지요? 건축을 할 때도 같은 위락에 속해 있으므로 구비 할 조건이 같습니다.

○ 단란주점 150㎡이상과 유흥주점은 상호 심의 없이 이동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19.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주변 일정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동 구역내에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설치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기 심의받은 단란주점(150㎡이상)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데 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영업이 가능하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에서 동 시설이 위락시설로 구분되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하더라도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다른 행위 및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에는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유흥주점 및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마. 무도장, 무도학원 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도 단란주점, 주점(유흥주점), 무도학원·무도장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의 허가대상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대상과는 각각의 행위 및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광호텔 등이 적용되는 학교보건법 관련 질의

질의

○ 학교보건법제6조1항13호에 의해 호텔, 여관, 여인숙은 학교정화구역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서의 호텔이라 함은 관광 진흥법제3조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업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 적용이 된다면 관광진흥법 16조(사업계획승인시의 인 허가의제 등)에의한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는 학교보건법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관광호텔업등록시에 받는것인지에 관한 여부?

○ 관광진흥법18조1항6호에 의하면 학교보건법제6조의유흥시설의 설치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을 경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만약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의 경우 유흥시설이 없을경우는 학교 보건법제 6조의 학교 정화구역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회신일 :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제6조1항13호에 의해 호텔, 여관, 여인숙은 학교정화구역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관공진흥법제3조 관광호텔업은 호텔의 범위에 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 적용이 된다면 관광진흥법 16조(사업계획승인시의 인 허가의제 등)에 의한 관광호텔사업 계획승인신청시에는 학교보건법제6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관광호텔업등록시에 받는 것인지에 관한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시 부터 관광호텔업을 포함한 관련 부대시설(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 여부를 포함하여 적용을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계획승인과 등록시점을 별개로 구분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를 적용시킬 경우 인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숙박업은 허가되고, 유흥시설은 불가되는 경우)

○ 관광진흥법18조1항6호에 의하면 학교보건법제6조의유흥시설의 설치인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을 경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만약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의 경우 유흥시설이 없을경우는 학교 보건법제 6조의 학교정화구역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흥시설이 없다하더라도 관광숙박업 자체가 학교보건법 제6조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설치 전 심의를 득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범위 등 관련 문의

질의

○ 학부모는 학교 체육대회에서 학부모 달리기 대회에 참석하였다가 안전사고를 당해 오른쪽 아킬레스건 파열의 진단을 받고 수술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등을 보상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부모의 체육대회 및 달리기에 참석유무는 강제성이 없고 본인의사이기에 체육대회라는 교육활동에 참가한것이 아니라 단순참가자라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 학교 체육대회는 학교장이 주관하는 공식적인 교육활동이며 또한 체육대회 안에 포함되는 모든 행사는 교육활동의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학부모가 교장선생님 이하 수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공식적인 교육활동으로 치러진 행사에 참가하여 다친것인데 어찌 그 학부모를 교육활동에 참가자가 아닌 단순참가자라고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 학교 안전 공제회의 설립 취지에 맞게 학교내 안전사고에 대해 폭넓은 해석이 필요할 듯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8.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체육대회 참여를 권유하면서 그 중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참가방법 등을 적시하여 안내문에 기재하였다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한 자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교육활동참여자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환경 평가 관련 질의

질의

○ 학교보건법 개정이전인 ①2006년 5월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②2007년 10월에 해당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하여 개발계획변경(안)을 작성하였으면 학교보건법 제6조의2에 정한 교육환경 평가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 학교보건법 개정이전에 해당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하여 개발계획변경(안)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학교보건법 제6조의2에 정한 교육환경 평가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7. 1.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용지 선정시 학교의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등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교육환경평가제도'를 '08. 4. 28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 시행시점에 있어 이미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 시행이전 이미 학교용지선정과 관련하여 해당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다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와 학교용지 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증감되는 경에는 평가서를 재검토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시기 문의

질의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5조의3(평가서의 제출검토 등)⑤항에 평가서의 제출 및 제5조의 4에 따른 평가서의 검토결과 통보는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하지만, 택지개발사업시 제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인구영향평가)가 실시계획 전에 본안이 제출완료 되므로 개발계획 승인후에도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고 제영향평가도 초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교위치와 정확한 제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평가초안시 학교계획대상지의 보링 ,대기, 소음측정불가) 개발계획승인전에 기초조사(계획학교부지마다 토질조사, 대기, 소음등)를 실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실시계획승인(도시관리계획결정)시에 교육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 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러한 경우가 부득이한경우(개발계획 수립전이 아닌 실시계획전)에 교육환경평가실시 가능여부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4. [학생건강안전과]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보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주변이 유해요인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환경평가제도를 법제화 하여 '08. 4. 28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및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개발계획 수립시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실시하도록 명시한 이유는 개발계획 수립시 부터 적정한 학교용지를 선정함으로써 학습환경은 물론 학교보건·위생·안전을 고려한 용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부적절한 학교용지 선정으로 인하여 도시관리계획 전체가 바뀌게 되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개발사업자의 의견 반영)도 있습니다.

○ 하지만,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있어 여러가지 변수로 인하여 개발계획 자체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제출 및 작성시기를 도시관리게획 결정 전까지 조절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측가능한 상황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제

출시기와 관련해서는 관할 시도교육청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여부 문의

질의

○ 사업시행내용 2007년 8월~2008년 1월

○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동법 제28조에 의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구미시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동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학교보건법 개정내용 중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 상기 진행중인 사업이 교육환경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3. [학생건강안전과]

○ 교육환경평가제도 시행당시 이미 해당 교육청과 학교용지 선정과 관련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그 협의를 교육환경평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용지에 대하여 재검토(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여부 문의

질의

○ 학교보건법 제6조의2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근거여부)

○ 동법 시행령 제12조 평가서의 재검토 등에서 '교육환경평가를 완료한 후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 실시계획변경사업은 대상사업이 아니라 판단됨.

○ 만약, 변경사업도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상사업이라고 한다면, 법 시행이전에 승인을 득한 택지개발사업 중 특성상 1차,2차, 많게는 3차까지도 변경사업이 있는데, 그때마다

교육환경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일이 발생됨.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2005년 12월 29일에 득하였음. 이후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초1을 삭제하면서 중1을 당초 초1의 위치로 이동함. 지자체의 요구로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사항이 발생. 이 사업이 대상사업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6.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보건 위생 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기 위한 교육환경평가제도가 '08. 4. 28 부로 시행되었습니다.

○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는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교육환경 평가를 완료한 다음 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 학교용지 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실시계획변경사업이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수반된다면「학교보건법 시행령」제5항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에 관한 질의

질의

○ 2003년 8월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당시 초등학교 1개소 설치로 계획하였으나, 04년도 도 교육청과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중학교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문화재발굴조사로 인하여 사업추진을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가, 08년 03월 21일 초등학교 1, 중학교 1개소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개정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에게 사전협의를 시행하였고, 08년 4월 21일 학교위치 조정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아 계획변경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완료(08.10.21)하고, 08.10.30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갑설 - 개발계획 내용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시행(08.4.28) 이전에 개발계획 내용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고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등을 시행하였으므로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

지 않아도 된다.

○ 을설- 교육과학기술부 내부문서인 학생건강안전과-2945('08.09.01)호에 2-나-3) 에 의거하여 교육환경평가 실시를 하여야 한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1. [학생건강안전과]

○ '08. 4. 28 부로 개정·시행된 「학교보건법」 에서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결과의 통보는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평가제도가 시행된 '08. 4. 28기준으로 현재 진행되던 개발사업의 경우 '08. 4. 28 이전에 해당 교육청과 학교용지 선정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이 협의가 완료되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변화가 없다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 별도의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교육환경평가서는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검토 또한 교육감이 학교보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바 교육환경평가제도 시행 시점 전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과 확인을 거쳐 작성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여부 문의

질의

○ 저희집은 1남3녀고 저희신랑 월급 백만원 정도 받아서 약값, 병원비 좀 힘들거든요. 저흰 급식비만 지원만 받아도 살것 같은데 지원 방법이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2. 4. [학생건강안전과]

○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수용학생, 모부자가정, 소년소녀

가장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으로, 지원자 선정 당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더라도 갑작스런 사고나 실직 등으로 인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경우, 학교별 '급식지원 상담창구'를 통해 긴급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학교 담임교사 상담 또는 행정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학교 급식비 지원여부 문의

질의

○ 보육시설이나 보육료 지원이 꼭 필요한 맞벌이가구는 소득초과로 지원이 안되고 집에놀면서 교육이나 보육시설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데도 단지 공짜 또는 80%정부지원이라는 이유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들에게 지원하는 재정을 조금이나마 줄여 정말 출산율에 도움이 되고 다가구자녀의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7. [학생건강안전과]

○ 다자녀가구에 대한 급식비지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서의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가정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다자녀가구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고소득가정 학생도 급식비 지원을 받게 되어 형평성 및 유상급식 학부모의 반발(고의적 급식비 미납) 등 부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현행 급식비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자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수용학생,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이며, 그 이외에도 지원자 선정 당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더라도 갑작스런 사고나 실직 등으로 인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경우, 학교별 '급식지원 상담창구'를 통해 긴급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해당 학교 담임교사 상담 또는 행정실을 통하여 급식비 지원 여부를 문의하여 바랍니다.

당구장 보건법 적용에 대한 문의

질의

○ 법규 관련 사항을 보면 당구장 미성년자 출입금지 위헌 소송에서 승소, 최근 여러 사례에 당구장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의 패소가 많고 이로 인한 행정력손실, 교육청의 예산 낭비, 국민들의 재산권침해, 행복추구권 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당구가 체육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관련법규도 재정비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면해제가 어렵다면 예외 사항을 두어 지금의 200m인 것을 절대 정화구역 안 50m 로 축소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설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당구장이 스포츠놀이 문화로 인식되었다 하더라도, 동일장소에서 성인들과의 시설 공유로 도박, 흡연 등의 유해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2007년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유해성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당구장은 청소년·학생의 경우 52.8%, 교직원·학부모의 경우 55.5% 가 아직도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구장의 경우 전체지역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주변 일정지역에 제한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대학교 보건실에 관한 문의

질의

○ 중, 고등학교에도 보건실이 있는데, 저희 대학교에 보건실이 없네요. 원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12.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실의 설치는 대학교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실의 설치는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한 학교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학교의 경우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질의

질의

○ 대학교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대상에 포함되나요? 즉, 대학교 학교경계선으로 부터 200m이내에 금지시설을 할 수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17.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 제5조에 의거 학교의 보건 ·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초 · 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학교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돼지고기의 등급 판정확인서에 대한 문의

질의

○ 학교급식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사용 할 때, 학교급식법의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의 등급규정 이상의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의 경우 도체별 등급판정서를 발행이 되므로, 검수 시 몇 등급 고기가 입고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으나, 돼지고기의 경우는 수십/수백마리 도체의 등급판정결과가 한장에 발행되고 있으며, 축산물 납품업체에 분할 발급을 요구하여도 현실상 어렵다고 하며, 법적 등급 이상인 것만 확인 가능한 등급판정서(1,2등급이 섞인 판정서) 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 또한, 1등급인지 2등급인지 모르기 때문에 돼지고기 축산물 가격은 '돼지고기 oo원'으로 등급별 차별화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학교급식소에서 축산물을 사용 시 축산물납품업체로부터 동일 등급만 찍힌 등급판정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또는 법적 기준 이상의 등급임만이 확인 가능한 등급판정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26. [학생건강안전과]

○ '07. 1월 마련된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의 '축산물' 중 돼지고기는 C등급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축산법시행규칙 개정('07.7.1)으로 돼지고기 등급을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으로 분리하여 시행됨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되는 돼지고기의 경우는 축산법 35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2등급 이상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돼지고기의 경우에도 소와 같이 도체별 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또는 등급별로 분할발급이 가능하므로 당해 학교와 계약체결한 돼지고기의 육질등급을 확인, 그 이상의 품질을 납품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당사자인 학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점의 도박을 배우는 오락기 관련 문의

질의

○ 문구점의 오락기 그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즐길수 있는 오락기가 아닙니다. 오락기로 아이들은 도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기면 메달이 주르륵 과연 이것이 오락인지요? 문구점 말 그대로 문구만 판매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08. 10. 13.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지역을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상기 구역내에서는 학습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안전 보호를 위하여 일부 시설 및 행위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으며 민원인께서 언급한 미니게임기(싱글로케이션) 또한 '08. 8. 4

부로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가능 할 경우에만 상대정화구역에 한하여 설치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미니오락기에 대한 상대정화구역내 규제를 해제 문의

질의

○ 저는 미니오락기(문구점 2설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2008년 8월 3일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편입되어서 사실상 학교앞에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제가 영업하여 설치하는 게임은 게임산업진흥법상 연령제한이 없는 게임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상에는 2대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이 게임산업진흥법에 반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지켜져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 그러나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는 상태인데, 게임산업진흥법상에 의하여 '전체이용'가능한 아이들의 게임에 대하여 상대정화구역까지 규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상대정화구역의 제한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상태로는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심의는 법 시행 첫해이므로 절대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모두 거부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상대정화구역내에서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11. [학생건강안전과]

○ 2007. 8. 3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주변의 문방구 및 슈퍼마켓 등에 설치된 각종 게임물시설이 학생들에게 여가선용 또는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학습과 교육환경에 더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정서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 등으로 인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 내용은 게임기 자체의 심의 기준이지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의기준은 아님을 알려 드리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모든 미니게임기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함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2008. 8. 4 이전에 기존에 영업중인 미니게임기 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해당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셔야 하며, 불법영업중인 게임기의 폐쇄를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시설을 차단함으로써 학습환경 보호의 근본을 만들기 위한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 시정요청

질의

○ 금년부터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에 따른 학교 운동 선수 학생의 오전수업 참가(오전 3시간)로 인하여 1학년에 한하여 운동선수만으로 구성된 운동부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인문계 학교의 운동선수들은 체육 특기생으로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특기생이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에서 열외를 인정하여 운동으로 그들의 특기를 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특기생 학급을 교육과정에 편성시킴으로 인하여 학사 일정에 편법 운영이 조장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의 문제, 4교시 이후 수업에 대한 제도적 결손, 가르치지 않는 과목에 대한 평가 문제 더구나 의사 결정의 최후 심의 과정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17. [학생건강안전과]

○ 학생선수들이 잦은 대회출전 등으로 누적된 수업결손으로 인하여 성적저하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2009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계획」(2009.2)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동 계획 18쪽에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수업결손 보충 등 학력증진 방안 강구'를 안

내한 바 있습니다.

※ 학교 내 시설이 없어 정규수업 후 운동이 불가한 종목(빙상, 조정, 골프 등)의 경우, 현장체험학습 계획 등으로 학교장 결재 후 운영

- 고등학교(2,3학년)의 경우 예·체능계열 등 별도 반을 편성·운영 가능

※ 학생선수의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및 선택 확대

* 경기고 사례 : 예·체능계열로 별도 반을 편성·운영

-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지침 위반 시, 징계 방안 강구

- 정규수업 이수율을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점검 및 장학활동

○ 「2009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계획」(2009.2) 18쪽과 같이 고등학교(2,3학년)의 경우 예·체능계열 등 별도 반을 편성·운영이 가능하며, 1학년의 경우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므로 별도반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립형사립고등학교나 자율학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이 다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법령 해석 요청

질의

○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장을 개축 하려고 합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액화가스저장소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지역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상대지역(학교보건법)입니다.

○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개축을 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액화가스충전소를 개축하려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 액화가스충전사업장을 개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학교보건법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대상이어도 예외적으로 관할 교육장의 재량으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2. 12.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 상 금지행위 및 시설은 입지적 제한을 두는 것으로 동행위 및 시설의 위치, 규모 등 당초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의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허가사항의 변동여부로 심의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건지소의 학교보건법 금지시설 해당여부 재질의

질의

○ 보건지소는, 보건소와는 다른 기관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0호의 전염병 요양소, 진료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 이유는, 보건지소는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염병예방시설이 아니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시설규모에 미달되어 전염병예방시설로 활용이 불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의 전염병환자 및 전염병의사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역보건법 제9조의2 규정은 군 보건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전염병예방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00군의 전염병예방시설은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신축코자 하는 보건지소는, 5~8명의 인원이 근무하는 도서지역의 소규모 행정기관이며, 주로 보건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진료부분은 군 보건소와는 별도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12조의 시설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 또한 이곳은, 육지에서 선박으로 1시간 정도 가야하는 작은 섬으로, 도서지역의 여건상 다른 부지 확보가 어려우며, 또한 학교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대응으로 학생건강에 기여하고, 노령화 추세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지원이 결정된 사업입니다. 보건지소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0호의 전염병 요양소, 진료소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1.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중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전염병요양소, 진료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는 전염병예방법 제23조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에서 규정하고 있고, 보건소의 경우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 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의 전염병 진료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하에 정화구역 설정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련 기관(보건소, 자치단체 등)과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심의

질의

○ 현재 비디오방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노래방시설을 하여 영업하려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해야하는데 위 두개의 업종은 유치원 정화구역심의 대상 제외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복합유통으로 등록을 하면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데 사실인지요? 이미 비디오방이 허가되어 영업을 장기간 하였고 노래연습장 또한 심의대상이 아닌데 단지 업종의 이름이 복합유통이라는 이유로 심의 대상이 된다는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복합유통으로 등록하더라도 그 내용에 하고자하는 영업의 내용을 분명히 등록하도록 되어있고 하고자하는 영업이 심의 대상이 아니면 허가를 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단지 업종의 이름이 다르다 하여 영업을 규제한다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4. [학생건강안전과]

○ 유치원 및 대학의 정화구역내 설치가능한 당구장,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만화가게, 담배자판기,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에 대하여 복합유통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기에서 언급한 유치원 및 대학의 정화구역내 설치가능한 업종만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또한 예외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유치원 및 대학의 정화구역내 설치가능한 하나의 업종이 아닌 2개 이상의 업종에 대한 복합유통게임시설 제공업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복합유통게임시설제공업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에 관한 문의

질의

○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해가 내리쬐는 날에는 고무냄새가 좀 심하게 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에 TV에서 보니 불량 고무를 인조잔디밭에 까는 경우를 보았는데, ○○대 대운동장도 그러한 불량고무를 쓰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 인조잔디 고무분말 유해성 보도('06.12. KBS)이후, 당시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인조잔디 고무분말 안전기준(권고안, 07. 4)'이 마련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인조잔디 충진재 설치 전 냄새와 분진이 없는 친환경소재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충진재를 확인하는 등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인조잔디 RS기준(신뢰성 기준) 및 GR마크, 환경마크 획득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충진재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운동장 전체의 4곳 이상을 오염이 되지 않도록 골고루 채취하고 밀봉 후 전문검사기관(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에 의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는 재포설 하고(인조잔디 시공사 부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야간 조명시설과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학생 및 지역주민의 활용도를 높이고, 더운 여름 물을 뿌려주면 복사열로 인한 더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09년도부터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계획('09~'12년까지 1,00개교 조성)에 따라 잔디(천연·인조잔디)운동장, 우레탄시설(트랙, 다목적구장), 흙운동장(감람석 모래, 황토, 마사토 등)을 학교구성원의 선택에 따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지 문의

질의

○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상대정화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장소외의 타지역(다른지번)의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한 건물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무실이 폐기물 수집장소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3. [학생건강안전과]

○ 사용하고자 하는 사무실이 현재 정화구역에 포함되고,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수집장소와 바로 인접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당해 구역내에서 일어나는 행위 및 시설을 고려하여 폐기물 수집장소 전체를 상대정화구역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보다 정확한 사항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바, 정화구역 설정·관리자인 시도교육감(시도교육감이 위임한 교육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관련 문의

질의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시행하는 산업단지 내부의 학교시설용지의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되는지?

○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될 경우 {시·도 학교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시·도 학교보건위원회}의 관계는?

○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08. 8. 4.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시행하는 산업단지 내부의 학교시설용지의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환경평가의 목적은 학교용지 선정 시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시행하는 산업단지 내부의 학교시설용지 선정시에도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될 경우 시·도 학교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시·도 학교보건위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시·도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을 말하며, 국토해양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도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며 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용지 선정시 실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만약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에 있어 학교용지 선정과 관련된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학교용지 선정시 실시하는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의 취지에 비추어 산업단지 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상가 거리제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 관하여 질의

질의

○ 학교앞 50미터까지는 당구장이나 노래방 PC방 따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제하고 있으나 저희 상가 바로 뒷건물(불과 2-3미터)은 50미터가 벗어났다는 이유로 버젓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자체를 없애라고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겠지만 탄력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9.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습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일부 행위 및 시설의 설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모든 업종에 대한 설치 금지)
- 상대정화구역 ; 학교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이내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구역(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

○ 따라서, 민원인께서 알고 계신 500미터의 구역은 학교부지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며 대학의 정화구역인 경우 당구장, 일명 PC방, 무도학원·무도장, 노래연습장 등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금지 규정은 우리의 미래엔 학생들의 학습환경 및 보건·위생·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입법 목적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실 천정에 도배되어 있는 석면 철거에 대한 문의

질의

○ 석면의 위험에 대한 뉴스를 볼 때 마다 학교의 교실천정에 있는 하얀 색 보드판이 석면이 아닐까 늘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석면에 대한 철거 주장은 늘 있어왔는데 어째서 아직도 학교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30. [학생건강안전과]

○ 석면은 건축자재에 함유되어 사용되었는가 여부보다는 사용된 건축자재 파손으로 인한 비산되는 것이 매우 위험하며, 이를 위해 학교 교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부에서 지난 2007.7 ~ 12까지 실행된 표본조사 결과 중 천정텍스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77% 가량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만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교실의 비산석면 검출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이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2008년 9월19일 [학교석면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고, 현재 이 종합대책에 의해 각급학교 석면물질 실태 전수조사를 2009년 12월까지 시행 합니다. 이 실태 전수조사 시 각급 학교의 건축자재 등은 훼손등급, 학생 접근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석면함유 시설에 대한 개·보수, 제거 등 5단계 대응법을 적용하여 관리하게 되고, 이런 실태조사와 별도로 석면에 대한 홍보·교육, 학교 개·보수 및 교육기자재 구입 시 석면함유 제품 사용제한 등도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느끼시는 조급한 마음은 공감하는 바이지만, 전체 학교에 대한 일시적인 조사를 시행하기에는 전문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인 수순을 밟아 갈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관계 문의

질의

○ 건물의 실내공기질측정에 대해서 학교의 교실을 리모델링을 했을 때 개축에 포함시켜 그 교실을 특별점검의 대상으로 봐야하는지 여부와 동일년도에 3교실을(특별실)했을 때 3곳 전부 해야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3. 13.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교사내 환경위생 유지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그 수준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개축 학교의 경우 실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벤젠,

톨루엔 등 개별 유기화학물질에 대한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리모델링의 경우 그 방법에 따라 휘발성유기합물을 함유 또는 사용한 건축자재로 인한 교실내 농도 파악을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에는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실정에 맞지 않는 학교 위생 정화구역 문의

질의

○ 제가 개업하려는 곳이 학교부지로 정해진 곳이라 정화구역 해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학교 부지가 향후 5년 이내에는 학교를 건립할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학교 부지로 선정되어있으니 실제 학교가 생기던 말던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언제 생길지도 계획도 없는 단지 학교부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반경 200미터 내에 모든 상권에 학생들이 이용할수있는 위해시설을 폐지시켜 지역 상권을 축소 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너무 불합리한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 두 번째는 정화구역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위 지번은 초등학교 소유로 되어있는 학교 부지 전체로 본다면 170 미터 가량 상대정화구역에 들어 갑니다. 하지만 위 지번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은 초등학교 진입로 및 축대로 사용되는 지점 입니다 즉 학생들이 공부하고 뛰어노는 학교건물과 운동장이 있는 교육시설과는 거리가 있단 말씀이지요. 그리고 학생들의 주통학로와도 거리가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6. [학생건강안전과]

○ '08. 4. 28 개정된「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학교경계선 및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이유는 학교설립예정지 고시 이후 동 부지에 학교설립 인가 및 시설을 갖추고 개교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 학교가 개교하기 전까지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해업소가 들어서서 학교설립에 문제가 되거나 개교 후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학교보건법」위반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 또한,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유해업소 입지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등재하는 등 대국민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에 대한 인허가시 인허가 담당부서와 협조하에 인허가를 진행하는 등 대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학교 및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학교정화구역은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하게 된 때,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하는데, 향후 학교 시설이 확장 등으로 인하여 담장 및 울타리 등이 확대 될 경우를 감안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정된 용지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호교사와 보건교사의 역할(직무) 차이 문의

질의

○ 보건교사의 직무 중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3항 2) 학교 환경위생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보건교사들의 주장대로 행정실 업무이므로 보건교사의 직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일인지 구체적으로 우리학교에서 의견차이는 먹는물 관리 부분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9. [학생건강안전과]

○ 첫째, 양호교사의 역할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간단한 질병치료 및 응급진료에서 학생에서 발생하기 쉬운 질병의 예방·치료 및 재활로 확대됨에 따라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변경되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14호)

○ 둘째,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무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를 분장하여 소관 업무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력게임기에 대한 제재 요청

질의

○ 학교 문방구 주위나 편의점 주위에 설치되어 있는 폭력성 게임 오락기를 조속히 철수 시켜야합니다. 아주 어린아이부터 중학생까지 주로 하는 이 게임기는 거의 폭력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이런 불량폭력 게임기를 설치 허가를 내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2.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 상대정화구역 : 학교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구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는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설치 제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미니게임기 또한 '08. 8. 4 부터 포함되었습니다. 만약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외국소재 한국국제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가입이 안되는지?

질의

○ 외국소재 한국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걸로 아는데요. 외국에 있는 학교는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24.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 즉「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

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 학교안전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 다만,「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외국소재 한국국제학교의 경우 학교안전공제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생성 뇌수막염으로 인한 출결상황 문의

질의

○ 유행성뇌수막염으로 인한 학생의 출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결석인지 출석인지 알고 싶습니다. 찾아보니 훈령에 법정전염병은 출석처리하게 되어 있고 법정전염병은 아니나 작년 올해 공문에 의하면 격리 조치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1.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 제8조 (등교 중지)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훈령 제719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법정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행성수막염 등 병명으로 출석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석, 격리를 요하는 의사의진단서로 해당학생이 부득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을 인정하여 학교장은 해당지역 지침을 참고하여 결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교사의 의약품 투여에 관한 질의

질의

○ 고등학교는 야간자율학습과 방학중 보충수업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어

보건교사가 없을때

○ 학생들이 아플 경우 일반교사(예를 들어 학년 담임교사)나 교감선생님이 일반약품(타이레놀이나 감기약 등)을 학생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투여하지 못한다면 법적근거를 알려주시고 아픈 학생을 옆에서 지켜봐야하는 일반선생님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학생들의 불편함도 이해를 하지만, 안정성이나 근거가 확보되지 않고는 약을 맡길수 없는 입장이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4. [학생건강안전과]

○ 일반교사에 의한 일반약품 투여에 대한 검토결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판례가 없어 현행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 투여 관련 법령인 약사법에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판매)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약사법 2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에 의거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판매는 수여를 포함

○ 단,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직무에 의거 예외적으로 간호사면허를 가진자에 한하는 의약품 투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의해 학교 보건교사는 보건실에서 일반의약품 투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교사 미배치교 약품투여는 법적으로 이렇다 할 판결까지 진행된 것은 아니기에 다음 관련법을 참고하셔서 판단,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형법제20조관련 판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복지부고시)

전국 중, 고등학교에 혈액형 검사 실시 건의

질의

○ 모 학교에서는 자신의 혈액형을 잘 못 알고 있는 학생이 많은데, 전국 중, 고등학교에 혈

액형 검사를 실시하면 어떤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5. 4.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건강검사 항목은 학교건강검사제도 개선 시 관계자(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건의하신 혈액형검사는 과거와는 달리 대부분의 아동들이 출생 시 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하므로 학교건강검사에서 혈액형 검사를 초·중·고등학생 전체에게 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다만, 출생 시 확인한 혈액형 정보를 분실하였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혈액형검사가 미실시 된 사례가 있을 것을 우려해 초등학교 입학 시 1회 검사토록 하고 있으며 학생건강검진 결과(혈액형 포함)는 가정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향후 학생들이 개인의 건강검사 결과를 숙지하고 자기 건강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비구역안의 학교의 교육환경보호 관련 문의

질의

○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6년 6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사업지에 같은법에의한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인가시 갖추어야 할 서류 중 동법 제30조 7의2에 따른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제출시 반드시 학교보건법 6조의3 및 시행령, 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을 따라야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08. 9. 3.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정비구역내 학습환경보호를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될 때부터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08. 8. 4 시행)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은 학교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될 경우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수립하는 주요정책이 심의, 학습환경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교육감이 요청하는 학습환경 등의 보호를 위한 자문에 대한 응답등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학습환경 조사항목별 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교육감이 실시하는 사항이며, 사업시행자가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 중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정비구역내 학습환경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기준초과 및 학습환경보호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사업시행인가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조치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자치단체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조치 요구)

○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제출시 도정법 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바, 보다 근본적인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학습환경 조사항목별 기준에 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화구역 법령해석 요청

질의

○ PC방 출입구가 정화구역 판단기준이라는 해석에 의거하여 PC방출입구가 정화구역밖에 있으면(원래 정화구역 바깥은 교육청심의와 관계가 없으니) 교육청의 심의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건가요? 건물은 정화구역에 걸쳐있으나(건물의 일부가 정화구역에 해당) 출입구(오픈하게되면 PC방 출입구도 정화구역 바깥이 될)는 정화구역 밖에 있는 건물에 교육청의 심의가 필요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6. 11.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로 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를 넘을 수 없을 수 없으며, 이 정화구역은 당해 지역 교육장이 설정·고시하게 됩니다.

○ PC방 또한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물 전체(단독층 사용 포함)의 용도가 금지행위 및 시설일 경우 건물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건물중 일부만 금지행위 및 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하게 되는 장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고시는 당해 교육장이 실시하게 됨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구역설정에 따른 학교보건법상 학교경계선은 어디서부터인지?

질의

○ 학교경계선(학교담장으로 부터200미터를 적용할 경우)200.6미터에 위치하고 있으나 학교용지로 결정된 지번으로 부터 학교 경계선으로 할 경우에는 198미터정도 위치한 자리에 PC방영업을 하고자 합니다.

○ 교육청에서는 학교경계선을 학교용지로 결정된 부지로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대법원판례(대법원2008.6.12. 선고 2008도2152 판결 (학교보건법위반)(공2008하,1015)에 의하면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 학교담장으로 부터 적용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교육청에서는 학교경계선을 대법원 판례대로 학교담장으로 할 경우 추후 학교담장밖 학교용지로 된 부분에 학교부속시설(체육관 등 부대시설 또는 학습장을 증축할 경우 정화구역을 변경설정해야 하는등 추후 민원발생소지가 있어서 판례대로 담장을 경계선으로 할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는것이 맞는지요 대법원판례가 맞는것인지 교육청 답변이 맞는것인지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11.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학교경계선에 대하여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담장 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 학교담장이 없는 학교가 많아지고, 학교시설의 확대에 따라 학교담장을 늘리는 사례,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경계선 등을 고려해 볼 때 학교용지 자체를 학교경계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교육청에서의 안내와 같이 향후 정화구역 포함여부에 따라 재산권 문제 등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선은 학교담장이 아닌 지적도상 학교용지의 경계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중학생 운동특기생 합숙교육불가방침 철회요청

질의

○ 중등부운동선수들의 합숙을 전면 금지시키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합숙 등은 시체육회 등에서 지원이 좋아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나름 자녀의 꿈과 희망을 갖게끔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합숙이 금지되어 아이를 운동을 포기시키면 그간 공부만 하던 아이들 성적 못 따라가고 뒤쳐져서 폐인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중학생을 누구 보살핌 없이 학교주변에 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게끔 하면 아이가 어떤 생활이 될 것이라는 게 뻔한데.. 그나마 합숙은 코치 및 감독선생님의 지시 하에 생활하여 안심도 되고 우선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9. [학생건강안전과]

○ 그동안 「학원체육 정상화 촉구 국회결의안('07.11)」,「국가인권위원회 권고('07.12)」, KBS 1TV '쌈'의「스포츠와 성폭력에 관한 인권보고서」보도('08.2.11) 등 학교운동부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08.11.19. 국가인권위원회의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조선일보 기획보도('08.11.10~17)에서와 같이 학생선수 폭력 및 성폭력, 수업결손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으며 합숙훈련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기본인권 보장을 위해 '09년도부터 의무교육간인 초·중학교까지 합숙훈련 전면금지한 것입니다. 다만, 「2009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계획」 17쪽과 같이 도서·벽지, 농·어촌지역 학생선수를 위한 합숙훈련의 목적이 아닌, 숙식(宿食)을 해결하는 선수기숙사 운영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책상, 컴퓨터, 침대 등 학습여건을 잘 갖추어 운영토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을 유발하는 학기중 상시 합숙훈련은 금지(초・중・고별 차별화 하여 규정)하는 한편, 학교운동부 합숙소를 선수휴게실 또는 선수기숙사로 전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소 지하수 사용관련 문의

질의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4.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1호.다목에, '급식용수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소독 또는 살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항목의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표 점검기준에는 '지하수 소독·살균 미실시, 상수도가 있음에도 지하수 사용' 시 부적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지하수 공급이 모두 가능한 학교에서 지하수를 소독 또는 살균하여 사용할 경우, 상수도가 있음에도 지하수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시에는 감점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이 사항이 학교급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5.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급식법 제1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의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기준에 의거 급식용수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소독 또는 살균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급식 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매일 소독 또는 살균과정을 거쳤다면 시정명령, 행정처분 또는 징계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하수는 상수도와는 달리 각종 유해세

균 및 바이러스 등 병원성미생물로 쉽게 오염되어 식중독 사고의 원인되는 등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교에 상수도가 공급되면 급식용수로 상수도를 사용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할 경우?

질의

○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을 검사해서 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 납품하는 채소류를 검사했는데 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처벌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처벌근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집단급식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6. [학생건강안전과]

○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검사 결과 관계법령에 의거 잔류허용기준 등 초과시는 당해 학교에서 납품업체와의 계약조건 등을 확인하여 납품업체에 대한 제제조치를 강구하고, 동 검사결과를 관계법령에 의거 생산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연료공급설비(CNG충전소)의 상대정화구역 해당 규정?

질의

○ 저는 천연가스차량(CNG버스)에 청정연료(CNG)를 공급하는 설비를 설계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중 상대정화구역에 벗어나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일부에서 CNG충전소의 주설비인 처리설비(압축기), 충전설비(충전기),압축가스설비(압력용기)외에도 지하에 매설로 오는 가스공급배관이나 전기수전을 위한 수전설비 그리고 구조물인 방호벽도 학교부지경계로부터 200M이내에 있으면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제가 아는 바로는 청정연료를 공급하는 주요설비인 처리설비(압축기), 충전설비(충전기), 압축가스설비(압력용기)외에 지하에 매설되는 배관이나 수전시설과 구조물인 방호벽도 해당되는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1. [학생건강안전과]

○ 천연가스차량 충전소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 그에 따른 정화구역 내 포함되는 일부의 시설이 해당 충전소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수설비인지의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화구역내 설치되는 시설현황 및 그에 따른 학습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화구역설정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교육청 또는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 급식에 대하여 질의

질의

○ 요즘 경기가 어려워 맞벌이 가정이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학년 아이를 두고 있는데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 않아 정말 힘드네요. 학교에서 빨리 급식을 해주어야 마음 놓고 회사일이 될 것 같은데요.

회신 회신일 : 2009. 3. 13. [학생건강안전과]

○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는 보통 2~4주의 기간동안 1~4시간 정도의 수업실시 및 학교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새로운 환경 및 단체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실시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학교급식 실시여부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는 만큼 당해학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이를 건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유학에 따른 건강검진 관련 문의

질의

○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때 일년간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5학년인데 작년에 초등학교 1,4학년이 받아야하는 학생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아야하는지요? 아니면 중학교 1학년때 받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1. [학생건강안전과]

○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건강문제를 조기 발견 · 악화방지를 위해 학교건강검사(신체의 발달상황, 건강검진, 신체능력검사,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취학 후 3년마다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에 학생이 방문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문의하신 사항과 같이 해당 학년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때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초중고 교실 공기오염 심각성에 대한 문의

질의

○ 초 · 중 · 고교 교실의 공기가 내장재와 책상 등에서 방출된 포름알데히드(HCHO) 같은 유해물질로 오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의 실내공기 오염도가 높아지는 원인으로 접착제를 사용한 압축목재 등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방출하는 내장재와 책상 등과 함께 환기시설의 부족을 지적하더군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18.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사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축학교에 대해서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책상·의자·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폼알데히드 방출량이 적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학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실내 공기 질 관리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학교 신축시부터 건축자재로부터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기적인 확인 및 관리를 통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설립·인가(학교 설립계획)시에는「학교보건법」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및 조치

○ 학교 신축(증·개축)시 사용하는 건축재료 및 가구류 등은 화학물질의 방출이 적은 친환경적 건축자재 사용(설계 단계부터 확인)

총포판매업이 정화구역에 저촉되는지 여부 문의

질의

○ 학교의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위해 정화구역을 설정 유해업소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학교보건법 제6조1항2호에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라 명시되어있음에도 법령해석의 정확한 범위와 한계를 정의 하지 못하고 총포판매업소를 포괄적으로 동일시 해석을 내려 정화구역내 상대지역금지시설로 판단 심의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행정부서의 지나친 재량권남용이라 생각되며 빠른 유권해석을 내려 영업장소제약 및 시간허비로 인해 경제활동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9.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구역내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시설 및 행위의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총포판매소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제4조 및 24조에 따라 총

포화약류 제조소 및 화약류 저장소의 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다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축열식 전기물끓이개 사용시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 근거법규는?

질의

○ 학교급식소에서 축열식전기물끓이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관할 행정기관의 위생계 등에 문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야하는지 질의했었는데, 담당자들이 정수기와 다르고, 가열을 거치므로 안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물끓이개는 정수기와 달리 정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유입구쪽에 입체성 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를 통과하고, 가열조와 냉각조를 거친 후 음수구 직전에서 자외설 조사를 거칩니다. 축열식전기물끓이개 사용시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면 분기별로 해야 하는지 몇회해야 하는 관련근거법령을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5. 25.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정수기의 수질검사는 동시설의 휠터교환, 청소 등 유지관리의 소홀로 먹는 물 수질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끓여서 먹는물을 공급하는 것은 학교먹는물의 공급원칙에 해당하며, 별도의 점검절차는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물끓이개 내부 및 채수구 등 적절한 유지관리가 병행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경계선 관련 문의 민원

질의

○ 관사는 학교 경계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용지라 하더라도 학교교육과 관련이 없는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 담밖에 설치한 교육과 관계없는 시설물은 학교부지라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나온것 아닙니까?

○ 학교부지이지만 학교 담밖에 있는 주차장은 과연 학교 경계선에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7. 8.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비록 학교경계선이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워지는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였지만 향후, 학교 시설의 확충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재 사용중인 주차장을 폐쇄하고 그 장소에 학교운동장 또는 기타 교사를 신설하였을 때 정화구역의 설정·고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그동안 영업해 오던 시설 및 행위의 이전/폐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경우를 감안하여 정화구역 설정권자가 판단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 급식비 소득공제 관련 문의

질의

○ 2008년 세법 변경에 따른 초, 중, 고 급식비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소득 공제를 대상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발급 가능한지, 아니면 학교 서무과로 가서 직접 발급 받아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세법만 변경 해놓고 수동적으로 학교 서무과에서 발급해라고 하면 곤란하며 IT강국 답게 교육청이나, 전자정부에서 발급 가능 하도록 개선 요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6. [학생건강안전과]

○ 2008년도 연말정산 교육비 소득공제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①항 제4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①항에 의거하여 2008년도 부터는 연 200만원 교육비 공제대상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공납금 이외에도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교육비 소득공제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학부모님께서는 2009년 1월 중순이후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자료를 조회/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운동부중 축구 등 인기 종목의 운영방법의 개선 요청

질의

○ 현재 학교에서는 특기생 또는 체육영재라는 명목으로 체육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학교의 자체예산으로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축구의 경우에는 모든 경비를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부터 경비를 내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경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 축구의 감독이나 코치들은 학교장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월급을 주고 고용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축구를 배우고 싶다면 클럽에 가입하여서 배우고 학교에서 하는 축구는 재능이 있고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축구가 되어야 합니다.

○ 축구는 희망자에 한해 학교에서 하고 나머지는 클럽에 가서 배우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즉 클럽이나 사회의 시설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은 학교가 수용하더라도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체육에 맡겨야 하고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으로 나누어서 일반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스포츠는 학교에서 수용하고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는 과감히 사회체육에 일임하여서 수요자가 편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2009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계획('09. 2)」을 통하여 안내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제기하신 학교 축구부 운영 사례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해 교과부, 문화부, 대한축구협회가 공동으로 「학원축구 활성화 사업추진계획('08. 11)」 수립하고, '09년도부터 기존 토너먼트 전국규모 축구대회를 리그대회로 전환하는 한편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학기중 상시 합숙훈련 금지 등 제도개선을 한 바 있으며 농구, 야구 등 타종목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사업추진계획('09. 11)」에 따라, '10~'12년까지(3년간) 4개 권역, 12개교(초·중·고 × 4개 권역)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동 시범운영을 통하여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과학적 훈련프로그램 적용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타종목·타지역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교과부에서는 문화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정화구역내 가능 업종 문의

질의

○ 학교주변 200m안에 베레타 사격장(B.B탄) 설치·운영할려고 합니다. 절대구역 50m 는 벗어나고요. 구청에서는 자유업 스포츠 쪽으로 허가가 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행행위업종에는 포함이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교육청에서는 사행행위등 규제 및 특례법 2조에 의한 시설을 단속한다고하는데 이 법안 시설물은 포함이 안되는데요. 영업방식은 돈을 받고 권총등으로 타켓을 맞추는 형태이며 점수가 높게 나오면 인형등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회신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까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5호에서는 사행행위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께서 질의하신 영업행위는 소관 법률 주관 부처인 경찰청에 사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복수검수에 관하여 질의

질의

○ 학교급식 식재료의 질을 가늠하기 위해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복수검수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검수제는 학교급식 재료를 중복으로 검수하여 급식재료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학교급식은 정말 전문성이 요구되고 양질의 급식을 위해서 다른 업무 무엇보다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에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검수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교직원을 복수검수자로 지정하여 책임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업무를 행정실장이 하도록 하고 있고요.

○ 복수검수제는 영양교사를 주 책임자로, 조리사 나 조리책임원을 부책임자로 지정하여 실질적으로 검수를 할 수 있는 검수단을 꾸려 조직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과연 행정실장이 학교급식 재료의 질을 가늠 하는 복수검수자로 마땅한지, 복수검수자로 급식재료와 조리의 전문가인 조리사나 조리책임원, 아니면 외부전문가나 검수전문요원을 구성하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8. 12. 24.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급식에서 제공되는 식재료의 안전과 품질을 위해서는 철저한 검수가 필수적이며, 식재료 구매시는 원산지와 품질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검수지침으로 하여 원산지 확인 등 안전과 품질에 중점을 두어 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 검수시에는 학교장 책임하에 영양(교)사가 주관하여 대면 검수하되 불가피한 경우 학교관계자가 검수업무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복수검수는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교급식 식재료 복수 검수시 참여하는 학부모나 교직원 등은 식재료의 품질을 검수하기 보다는 식재료의 구매내역(수량, 표시기준 등) 등을 영양교사 함께 확인함으로써 식재료 구매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소독관련 문의

질의

○ 본사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74호 "식품첨가물의기준 및 규격 중 개정" 법률(2007.11.09)에 의거 오존수 "살균세정장치"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법률에 준하여 개발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기준에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아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한후 보급하고 있으나 일선학교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온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지침서 대로 염소로 침지하여 소독해야 하고 페이퍼로 농도를 측정하여 기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 아마 그 지침서는 식약청 고시 이전에 하달된 것으로 사료되나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를 식약청 고시 대로 오존수와 염소수로 세척해도 좋다는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4. [학생건강안전과]

○ 채소류 및 과일류의 소독에는 일반적으로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살균소독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였으나, 2007.11.9 개정된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74호)에 의거 채소류 및 과실류의 소독에 오존수 및 차아염소산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동 고시에 추가된 오존수 및 차아염소산수에 대한 성분, 사용기준, 동 살균소독제 발생장치의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일지 출력 별도 보관여부 질의

질의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에의해 급식일지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합니다. 대면결재시에는 예전과 달리 결재선이 따로 출력이 안되므로 엑셀파일전환 후 결재라인을 직접 만드셔

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NEIS로 승인받아 결재 후 급식일지는 별도로 출력해서 보관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NEIS상에서 그대로 보관되어지면 되는지요.

○ 주간/월간 식단, 급식 일지, 시장조사 자료, 급식 개시보고서/변경보고서 모두 별도 출력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9. 12. [학생건강안전과]

○ '08년 하반기에 개선된 나이스(NEIS) 학교급식 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승인 처리되는 급식일지 등의 서류는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보관되므로 별도로 출력 필요가 없으나, 불가피하게 수기로 결재를 받는 서류에 대하여는 보관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내의 정수기 관리 문제 질의

질의

○ 학교에 있는 정수기와 가정에 있는 정수기는 사용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서의 정수기 관리는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는 학생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공공시설에 비치된 정수기에대한 관리법률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1.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기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수기에 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하는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설치된 정수기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등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수기(냉·온수기)를 통해 공급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의무화(분기 1회)
- 조사항목은 환경부가 제시화는 2개 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학교보건법 상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관련 문의

질의

○ 학교보건법 제6조를 보면 학교정화구역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금지행위로 나와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기초시설 내 폐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다른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6. [학생건강안전과]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수질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시설로서,「하수도법」제2조에 따라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 등을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는 개념적 및 처리방식이 다르므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행 법률상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가능한 시설일 수 있으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

○ 학교보건법 제6조1항2호에 명시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관련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하지 않아야 하는 시설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에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허가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학교 보건법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소가 포함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6.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기

준 저장능력이 5톤 이상인 경우 동법 제1항2호에 의하여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관한 문의

질의

○ 2005년 11. 14일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는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이중 제3항의 소음의 기준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교사내의 소음은 55dB(A) 이하로 할 것 에서

○ 교사내라 함은 어느곳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교사내에서 창호을 개방한 상태입니까? 닫은 상태입니까?

○ 55dB(A)의 기준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충분히 수업을 진행하고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소음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12. 23.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의 소음은 학교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을 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라 함은 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내 시설을 말합니다.

○ 또한 소음 측정시에는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을 실시하게 되며, 교사내 소음도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경우는 원인 제공자에게 소음저감방안을 요청하고, 그 원인이 내부에 있는 경우는 생활지도 등을 통하여 소음 발생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또한 외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중창 또는 냉난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창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소음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에 의거 소음을 제거 또는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교사내 소음기준은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표8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현재 교사내 소음기준에 대한 외국사례로는 미국 공조·냉동난방 기술자협회(ASHRAE)에서 학교, 교실내 소음기준을 35 dB9A)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교과부에서는 정온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하여 '08. 4. 28 부로 교육환경평가제도를 실시하였으며, 학교용지 선정시 부터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기존학교 중 주변환경(군항공기, 철도, 도로 등)에 의하여 소음피해를 입는 학교에 대하여 시설보완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정화위원회에 대한 질문

질의

○ 정화위원회심의에서 '업소심의'라는 항목을 법적으로 심의를 할수 있는것인가요? 같은 곳의 학교용지예정지의 정화위원회를 2번씩이나 해야하나요? 첫 번째만으로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16.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교육감에게 제출된 평가서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따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의 유무를 조사하고, 소관 정화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한 검토란 법 제6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관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제7조 및 시·도교육청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만약 학교용지로 선정하고자 하는 용지의 주변환경에 금지행위 및 시설 또는 위험요소가 존재할 경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소관 정화위원에서 각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교육감이 학교용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할 때 학교용지로 부적합한 경우 대안이나 조건을 제시한 부분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내용일 경우 학교

용지 선정자가 그 대안 조건을 반영한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였을 때 그 반영결과를 소관 정화위원회에 검토의견을 재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학교용지 선정자로 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학교용지의 적합여부를 통보할 때 학교용지로 부적합한 경우 대안이나 조건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안 등을 제시받은 학교용지 선정자는 그 대안 또는 조건을 반영한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민원인께서 대안이나 조건을 반영한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였을 때 접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에게 그 사유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보건법 제 5조 및 6조의 학교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질의

질의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정 후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정 전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처리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인지의 여부?

○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로 되어 있는데, 한 필지 동일부지가 학교와 열병합발전소의 거리가 일부는 200m이하이나, 다른 일부는 200m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 즉 동 부지중 중 200m를 초과하는 곳에 열병합발전소의 부속시설로서 열원공급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을 설치(증설)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9. 5. 25. [학생건강안전과]

○ 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 시점에 있어 기존 업소의 이전·폐쇄여부는 학교 설립을 위한 용지 선정시 또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사전 조사시 해당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 후 정화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졌으리라 판단됩니다. (정화위원회 심의, 유예기간 부여 등)

○ 또한, 학교정화구역내 부대시설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화구역설정권자인 교육청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고시자체가 교육장의 고유 사무로서 모든 권한이 이양되었으며, 그 현안 업무 또는 자세하게 알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학교보건법 제6의3조에 관한 문의

질의

○ 교육환경중 일조권 침해 판단을 위하여는 정확한 건축배치 계획이 수립되어있어야하나, 정비구역의 지정.고시할때는 높이, 층수, 용적율, 건폐율의 전체적인 계획만 수립되어있어 구체적인 건축배치 자료를 근거로한 일조침해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학교보건법제6조의3에 근거하여 정확한 건축배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구역내학습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의뢰가 가능한지의 여부 우리구에는 도시재정비촉진을특별법에의거하여 뉴타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계획수립(구획지정.계획결정고시)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으로 의제처리가 됩니다.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거한 협의를 할때 신설, 기존학교가 정비구역내 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3.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으로는 학교 또는 정화구역이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될 때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수립하는 주요정책의 심의, 학습환경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 교육감이 요청하는 학습환경 등의 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 따라서, 교육감이 실시한 학습환경 조사내용(일조권 등)에 대하여 반드시 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조사의 경우에는 도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토지이용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사업시행 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일조량 확보를 위한 조사 및 의견을 자치단체에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현재 학교 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경우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 3에 대한 문의

질의

○ 학교보건법 제6조의 3 ①항중 "정비구역에 있거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같은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 대한 법규해석 및 그시점이 도촉법 및 도정법과 학교보건법제6조 3과 시기 일치여부?

○ 현시점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의 3 ①항 정비구역내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심의여부?

○ 위 두가지 심의시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이행여부?

회신 회신일 : 2009. 3. 18. [학생건강안전과]

○ 정비구역 안에 학교 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포함될 경우 교육감 소속하의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관내 모든 정비구역마다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도정법의 정비기본계획은 도촉법의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 같은 단계이며, 도정법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는 도촉법의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단계와 동일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3조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학교의 보건 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수립하는 주요 정책의 심의, 학습환경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 교육감이 요청하는 학습환경 등의 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대한 응답을 수행하게 되는데, 도정법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단계와 실시계획인가시 수립하는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이나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계획에 대하여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학습환경조사 결과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위원회에 조사결과의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의 2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문의

질의

○ 00간호대학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최초결정 1999. 2.4)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와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하여 학교부지면적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학교 부지면적을 확장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재해성검토 등 여러 가지 검토와 관련실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성 검토 주요내용 : 사업개요, 지역개항,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의 설정, 환경현황조사, 예측 · 분석, 저감방안, 종합평가 및 결론 교통성 검토 주요내용 : 서론, 도시계획개요, 교통시설 현황분석, 장래교통수요 예측, 교통시설계획, 교통운영계획, 종합의견

○ 또한, 학교보건법 제6조의 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제1항 및 제2항에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2조(평가서의 재검토 등)에는 학교용지 선정자가 교육환경 평가를 완료한 후 학교용지 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증감되는 경우 평가서를 교육감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 대학의 경우 최초의 학교 설립이 아닌 기운영중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면적이 10%이상 증가함에 따라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교육환경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 할 때의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내용이 교육환경평가서 작성내용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서류로 대체가능한지의 여부.

회신 회신일 : 2008. 12. 29. [학생건강안전과]

○ 교육환경평가제도의 취지는 선택적으로 학교용지 선정이 가능한 곳에 대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선택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며, 학교보건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데로 이미 도시관리계획상 학교용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학교가 운영중에 시설의 확충 등의 사유로 학교용지를 확장시키는데에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2조(평가서의 재검토)의 사유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학교용지의 확장으로 인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보건법에 규정된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되는지?

질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6호 “폐기물 수집장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6.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 제6조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장소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허가 이상의 장소일 경우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 따라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법”으로 허가가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장소 또한 허가를 득한 상태라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 수집장소”에 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학교보건법의 해당사항 관련 문의

질의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 부지가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되는지, 또는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제7호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4.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및 시설은 각 행위 및 시설의 모법에 근거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본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 허가 또는 신고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내용에 대한 답변은 환경부에 질의하시어 관련 답변을 받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 적용여부는 정화구역 설정·관리자인 교육감(또는 교육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부지 위치 이동(변경)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이행 여부

질의

○ 현재 도시개발 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도 도시계획 심의결과 재심의 결정으로 구역내 학교용지의 위치가 이동(변경)된데 대하여 기 교육청과 협의 완료(학교보건법 제6조의2 시행일 2008.4.28이전)된 내용만으로 도시계획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아니면 교육청과 재차 협의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제 6조의2 제2항의 규정의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9. 5. 18. [학생건강안전과]

○ 교육환경평가서는 학교용지 선정시 최상의 조건의 용지를 선택적으로 가능한데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은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

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귀하께서 동 제도시행 이전에 학교용지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별도의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 동 제도 시행 이후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다면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시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수련회중 다친 사고처리에 대하여 질의

질의

○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고를 학교 수련회중에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수련회측은 책임보험만 들고, 180일이 넘어 치료를 요하는 사고의 치료는 더 이상 책임질수 없다는 답변을 합니다.

○ 향후에 이곳 수련장을 이용하여 행사를 하다가 또다른 사고를 겪게 된다면 사고를 먼저 당한 학부형 입장에서 이런 곳은 안전사고의 처리에 대한 미비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영리운영을 할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학교들이 이런곳은 수련원의 보험관계 미흡으로 수련장으로 이용을 자제해야 함을 느끼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7.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측의 수련활동과 관련한 관리 · 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수련원의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학교와 수련원간에 위탁계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수련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관리 · 감독 책임은 수련시설 설치 ·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 신체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와 최소한의 배상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운동장)사용에 관한 사항 문의

질의

○ 학교 운동장 및 시설을 주민에게 대여 및 개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학교장의 허가을 받아야 하는지요?

회신

○ 최근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시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공간 외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이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관해서는「초·중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제11조 (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학교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학칙 및 자체규정을 정하여, 지역 및 학교공동체의 합의와 운영의 묘를 살려 학교실정에 맞도록 자율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에대한 법률 해석관련 질의서

질의

○ 저의 아들이 작년에 학교에서 친구들 에게 폭력을 당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금을 신청 하였으나 가해자가 있다는 이유로지급 거절이되어 현재 심사청구중에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41조에서는 “공제금을 받을자는 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신청하고 공제회는 14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있으며” 동법 제44조에서는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회는 피공제자(가해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경우 안전사고를 일으킨자 또는 그보호자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저의아들인경우 공제회에서 공제금을 지급한후 가해학생 이나 그부모들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는것이 법해석에도 맞고 배상책임 이론에도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공제회 방침은 가해학생이 있을경우 그보호자 의재산이 없는경우에만 공제금을 지급할수있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7.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서는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로 약칭)에서 학교장에게 요청을 하고, 그 요청사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해야 하며 그 비용은 가해학생의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 ·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합의금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내지제3항에 따라 분쟁을 직권으로 합의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단체 해외수학여행을 보류요청

질의

○ 언론에서 연일 뉴스화되고 있는 si(바이러스)로 인해 각가정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

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중국, 베트남, 몽골)을 앞두고 학부모들은 여간 불안한게 아닙니다.

○ 물론, 이런문제를 학교에 직접 건의하여 조금 그 기간을 변경하거나, 뒤로 늦추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여행도 아니고, 단체 수학여행을 이런 시점에서 정해진 계획이니까 보내겠다는 것이라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 건의 하지 못하는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2. [학생건강안전과]

○ 수학여행은 학교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가 시도교육청이 정한 지침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중요한 학내 교육활동입니다. 또한 저희 부에서는 지난해 4월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학교의 여건과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학교가 법령이 정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금지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최근 전세계적으로 위협을 주고있는 신종플루와 관련 하여 학부모로서 학교측에 재검토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뜻을 같이 하시는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학교장에게 건의 또는 재검토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학교위생정화구역내 대기배출시설 설치가능 여부?

질의

○ 학교보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대기, 수질, 악취, 소음진동 법에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할수 없다고 되어있고, 위반할시 2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라고 되어있습니다.

○ 건축법 상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음 진동규제법상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수리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환경관련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 설치할 것입니다.

○ 환경관련법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각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면 정비공장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설치할 수 있는가요?

○ 만약,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수있다고 예상이 되어 정비공장을 지었는데. 운영도중 방지시설의 고장 등으로 인해 대기배출허용기준을초과한 경우에어떤벌칙을 받게되는지요?

○ 환경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것으로예상되는 배출시설은 짓지 못하는게 당연한데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가 어떤의미가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 그리고 같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세차장을 운영하다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처분을 어떻게 받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5.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고 있으며,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를 할 수 없는 절대적 금지시설임을 알려 드립니다.

○ 상기 의미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가 무조건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종의 영업행위에 따라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 또는 규제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해당되므로 관련 시설의 방지시설 운영 및 실제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 세차장 운영건에 있어서도 세차장 운영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에 포함된다면 상기와 같이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학교위생정화구역내 용도지역변경(준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관련 문의

질의

○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도시관

리계획상 기존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때 변경되는 지역 일부가 기존 학교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거하여 금지행위 및 시설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 업무특성상 용도지역을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축물에 대해 지정/권장/불허용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사업추진에 있어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사전에 결정을 해놓아 후에 실제 건축주가 학교위생정화구역에 부합되는 용도의 건축물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3. [학생건강안전과]

○ 현행「학교보건법」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주변에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유흥·향락시설등의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 지정되면, 이로 인하여「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유해시설물에 관해서 질의

질의

○ 학교유해시설물에 유흥업소, 여관, 모텔 등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유소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주유소가 학교 앞에 생기면 그에 따른 시설물이나 차량통행이 증가 되고 아이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30.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주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행위 및 시설은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거나 직접 이용하지 않더라도 신체적, 정서적 유해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시

키고 있는데 주유소는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우리부에서 2007년도에 각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당시 주요소에 대한 인식은 학생 46.3%, 학부모 및 교사 43.9%의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그 시대의 유해성 인식도 및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고 있는바, 주유소의 경우는 추후 유해인식도 조사 및 관련기관 및 단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과 폐기물처리시설관련 문의

질의

○ 학교정화구역내의 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 종류와 범위를 지정하여 현재 포괄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사항을 실제 환경유해처리시설과 분류하여 정부시책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렇게 됨으로 폐자원의 재활용을 더욱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함으로 부존자원의 대체효과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일익이 되는 큰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1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고 동 지역내 학습환경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중 귀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처리시설' 또한 정화구역내 설치가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여 그 종류로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와 관련한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과 '폐기물 재활용 시설' 의 형식 및 종류에는 커다란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폐기물처리시설' 로 인한 폐기물 적재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진동 등에 의한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동 제도의 운영목적상 금지행위 및 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정화구역내 건축행위 가능여부 질의

질의

○ 제가 폐차장 사업을 할려고 부지 선정을 하고 있는 도중 마땅한한 사업부지가 있어 건축행위를 하고자하는데 학교(중학교)에서 140m(상대정화구역) 정도 떨어져 있는데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건축법 용도상)이 학교보건법상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9. 9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및 행위에 대한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중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자동차폐차장 자체는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폐차장내 폐기물처리시설(예, 소각시설 등)을 별도로 설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고)를 받아야 할 경우 금지행위 및 시설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있으시면 우선 관련 인허가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정화구역내 보건지소가 진료소에 해당여부?

질의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앞 절대구역에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보건지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제10호의 진료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6.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0호의 ‘전염병요양소, 진료소’는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염병예방시설'(격리치료병원·의원·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과 같은 의미로서, 「지역보건법」 제9조제2호에서는 보건소 주요업무로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를 규정하고 있고,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업무와 제3군 전염병 등의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0호의 '전염병요양소, 진료소'의 범위에 포함하여 상대적 금지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학생 및 교직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의견 : 「지역보건법」에 의거 설치하는 '보건소(보건진료소)'는 국민건강증진, 전염병 예방관리, 모자보건 및 의약무 보건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보건 행정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문의

질의

○ 저희 아버지가 신설된 종중의 자연장지를 설치하려하는데 설치 예정장소가 학교 바로 옆이라 학교정화구역에대해 알아본 결과 화장시설, 납골시설은 설치가 안된다고 정확이 기재되어 있지만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

○ 교육청에도 문의한 결과 학교 바로 옆으로 자연장지도 장사시설에 포함되고 설치하고자 하는 면적도 2천평방미터에 달하는 넓은 지역으로 어려움이 있을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학교정화구역 내에 자연장지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6.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제1항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1호~20호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종의 자연장지는 학교보건법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중

3. 종중·문중묘지

바. 중종·문중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의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 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중종묘지를 설치하려는 곳이 학교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PC방)의 경계는?

질의

○ 학교보건법 제5조1항 및 제6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학교경계선 200m범위 내에서는 PC방을 설치할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그 경계선은 "해당 PC방 전용시설(전용출입구)의 경계선이다" 라는 법제처(안건번호 09-0092)의 해석을 근거로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가장 인접한 학교의 경계선과 본건 PC방의 전용출입구 경계선과는 200.54m라는 거리 측량결과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청에 본건 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그 경계의 기준선은 해당시설 건물의 경계선이므로 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1.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주변 일정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PC방 또한 금지행위 및 시설로 정해져 있으며,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상대정화구역내 설치를 할 경우 해당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와 관련된 법제처의 해석 내용은 우선 전용시설이 정화구역내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복합시설에 대한 회신내용으로써 만약 PC방의 전용 시설(pc방 내부, 계단, 화장실 등)이 정화구역내 포함되어 있고, 전용출입구가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이는 정화구역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학교부지확대)설정시 기존 금지시설에 대한 조치

질의

○ 학교(대학교)가 설립인가되어, 학교경계선에서부터 200미터를 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하였습니다. 이후 학교에서 부지를 확충하고 도시계획법상 학교용도로 지적고시 하였다면, 정화구역을 변경고시함에 있어 새로이 늘어나게 되는 상대정화구역내 기존 금지시설(예: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위와 같이 기존 금지시설이 있는 경우 정화구역 설정 고시를 할 수 없는 건지?

○ 상기 기존 금지시설을 이전폐쇄토록 조치한다면, 유예기간은 몇년이어야 하는지? 또한 이전에 따른 배상 주체는 누가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3. 31.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금지시설 등이 학교용지 확정에 따른 정화구역변경으로 포함될 경우 해당 금지행위 및 시설의 이전/폐쇄 조치(상대정화구역내 상대 금지시설의 경우 정화위원회 심의 후 설치 가능)가 선행되어 지지 않는다면 도시관리계획상 학교용지로 지정·고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보건법 부칙〈8391호, 2007. 4. 27〉 제2항 및 3항에 따른 경과조치는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정화구역 설정 및 법 시행당시 학교설립예정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담은 내용으로 상기건과 관련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시 대학원대학 포함여부 문의

질의

○ 학교보건법 제2조에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학교로 정의되어 있으나, 본 조항에 대학원대학의 포함 여부가 판단하기 어려워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대상 여부?)

회신 회신일 : 2009. 3. 6. [학생건강안전과]

○ 대학원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1호의 대학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의 법령 해석 문의

질의

○ 법상 위생정화구역의 설정은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담장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물른 지적도상에 구역이 설정되고 고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미터 경계의 기준이 당해 번지의 가장 가까운 지적선으로부터 학교경계선 까지의 거리인지 아님 해당시설 즉 건물의 해당시설로 부터의 거리인지가 궁금합니다. 아님 해당시설의 출입구로 부터인지요.

○ 즉 아파트의 경우 지적선 경계는 정화구역내에 들어가 있고 실질적인 상가는 반대편에 있어 정화구역 경계를 벗어나 있을 경우와 넓은 면적의 시설일 경우 창문쪽은 정화구역 경계내에 있으나 출입구는 반대편에 위치하여 경계밖에 있을 경우에 대하여 저촉 여부의 판단 근거가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9.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당해 시·도교육감 (시·도교육감이 위임한 교육장)이 설정하는 것으로 당해 정화구역 설정권자인 시·도교육감이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건물 전체의 용도가 학교보건법령에서 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일 경우 건물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유동성을 가진 일부 행위 및 시설의 경우 해당 업종 및 시설의 전체 부지에 대하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건물중 일부만 금지행위 및 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하게 되는 장소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장소가 정화구역 밖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에 필요한 부대시설 (화장실, 주차장, 출입문 등)이 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동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구획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화구역 설정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상기 기준을 적용하는 교과부에서 제정한 지침은 없으며, 만약 필요할 경우 정화구역 설정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심의 신청 관련

질의

○ 학교보건법상의 금지행위 및 시설(노래연습장) 설치예정 건물 소재지의 행정구역과 정화구역을 관리하는 학교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노래연습장 설치예정 건물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교육청에 심의신청을 해야하는지? 정화구역을 관리하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에 해야하는지? 즉, 노래연습장을 설치하고자하는 장소는 ○○시이구, 정화구역 관리 학교는 **시에 위치합니다. 이럴 경우 심의신청을 ○○교육청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교육청에 해야하는지

○ 노래연습장을 설치하고자하는 장소가 관할 교육청이 다른 두 학교의 정화구역내에 해당될 경우 심의신청은 어디에 해야하는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 정화구역의 관리에 의거 정화구역을 관리하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에 해야하는지, 아니면 관할 교육청 두곳에 모두 심의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상 금지행위 및 시설 중 노래연습장을 상대정화구역내 설치하고자 할 때 노래연습장 소재지의 행정구역과 정화구역을 관리하는 학교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행정구역의 교육청에 심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심의 신청서를 접수한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과 협조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의견을 물어 심의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두번째 질의도 같은 상황으로 노래연습장을 설치하려는 행정구역의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야하며, 이 경우 학교 소재지의 관할 교육청에 협조하여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정화구역의 관리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정화구역의 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해제 효력존속에 관한 질의

질의

○ 초등학교 인근(상대정화구역)에 1999도에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중 4층 일부가 당구장 업종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해제되어 영업하여 오던 중 2007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인접지 자투리땅을 합병하여 첨부문서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 이 경우 -합병한 후 지번이 같고 사용코자하는 층도 4층으로 동일하고 업종도 당구장으로 같을 경우- 1999년도에 심의해제 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해제 효력이 계속적으로 존속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4.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습환경 및 학교보건·위생·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학교주변 일정지역에 대하여 입지 및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당구장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1999년도에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가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 하지만, 건물 재건축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을 물론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이전의 심의기준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새로이 영업행위를 하려는 당구장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해제에 관한 질의

질의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었으나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법률 제1항에 의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년도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해제가 된 구역으로서,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해제 한 행정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 또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해제 한 행정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해제를 받은 구역의 소유자나 이해당사자에게 사전협의 등의 절차는 어떠한 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9.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동 구역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첫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기존 결정과는 별도로 재심의 할 수 있는 경우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변경되었거나, 정화구역내 학교의 급이 바뀌었거나, 기타 영업행위의 변경 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변경되었을 경우 재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둘째, 사전 협의 등의 절차의 경우 소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관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관련

질의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심의 신청이 들어와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 결정을 민원인에게 회신했습니다. 민원인은 똑같은 주소지에 똑같은 면적으로 재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는 위의 경우라면 계속하여 똑같은 심의가 신청되더라도 받아야 하는지, 아니

면 심의를 신청받지 않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6.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있어 재심의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심의를 받은 장소라 하더라도 행위 및 시설 변경, 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변경으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가 있을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권자인 교육청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제 확대 시행 계획에 대한 문의

질의

○ 교과부 홈페이지를 보다가 학생건강체력평가제 확대 시행계획이라는 문서를 보았습니다. 특교는 (08년 6월 확정)으로 되있는 데요 교특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인가요? 측정장비 구비(소계) 이렇게 해서 학교와 지역교육청 쪽에 측정장비 구비에 따른 예산이 교특으로 지정되어 나오는 것으로 되있는데 이 예산은 언제 학교로 나오는 것인가요?

○ 전체학교의 70%에 예산이 나온다고 되어있는데 70%에 해당하는 학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회신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는 '51년부터 실시되어 온 운동기능 중심의 학생체력검사를 비만을 포함하는 건강체력 중심의 학생건강체력평가로 전환하고, 검사결과를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에 입력하면 학생개인별 신체활동처방을 제공하고 학교별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체력을 증진시키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동 사업은 '09년도 초등학교에 전면시행(초5~6, 초4 선택)한 바 있으며, '10년도에는 중학교 '11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측정장비 예산지원의 경우 학교별로 구입(학교별 8,230천원 정도)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규모 학교, 일부 고가의 장비의 경우 지역교육청별 구비하여 순회 사용하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시행이 필요하며, 시・도교육청에서 측정장비 구비 예산(교육비특별회계)을 확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일선 학교 교직원의 업무 경감 및 측정의 정확성 유지 등을 위하여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측정하는 방안(1~2백만원/1교)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안전공재회 보상에 관한 질문

질의

○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데. 쉬는시간에 우리아들을 포함하여 4명이 뒤엉켜 장난을 치다가. 우리 아들의 손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있는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학생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1.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44조 (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① 학교안전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가해자가 명백히 밝혀질 경우 가해자에게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불확실하지 않은 시엔 안전공제회에서 선치료후 구상권에 따라 가해자가 밝혀지면 그 가해자에게 청구토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습환경보호위원회와 관련 문의

질의

○ 학교보건법 제6조의3 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가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에 있거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도정법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환경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13조에 의하면 학습환경보호위원회는 학교의 보건, 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 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바 정비구역 지정후 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0.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 또는 학교환경위새정화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등을 보고하기 위하여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는 학교 또는 정화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될 때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수립하는 주요 정책의 심의, 학습환경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 교육감이 요청하는 학습환경 등의 보호를 위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기능은 교육감이 수립하는 주요 정책의 심의에 해당되므로 사업시행자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아님을 우선 알려 드립니다.

○ 도정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추진단계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 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단계에서 자치단체의 경우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계획을 수립하게되고 교육청에서는 학습환경보호위원회 구성 및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계획을 검토하게 됩니다.

○ 이와 같이 정비구역 추진단계에 따라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계획 및 교육시설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사업시행인가 단계)을 교육감이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할 경우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급식에서 수입쇠고기 사용 관련 문의

질의

○ 단체급식소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우육의 경우 (1)쇠고기: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육질등급이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 (5)수입축산물:대외무역법,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1)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수입우육의 경우 육질등급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상당하는 품질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호주산 Steer급 이상, 뉴질랜드산 Premium Steer급 이라고도 하는데, 어떤서류에서(수입신고필증 등) 어떤 항목을 체크하면 상당하는 품질을 갖췄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 갈비탕등을 냉동완제품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하는 수입산 우육도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우육으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이때 업체에 요청해야 할 서류와 체크해야할 항목은 어떤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23. [학생건강안전과]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입축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체와 계약 또는 식재료 납품시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및 수입신고필증을 제출받아 구매요청한 제품의 품질이 제대로 납품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수입산 쇠고기의 등급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물등급판정소 등에 직접 문의하실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초·중등 교원 인사(임용)
복무, 보수 등

초등학교 교감 업무, 대우에 대한 건의

질의

○ 초등학교 교감 업무, 대우 등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교사에서 교감으로 자격변동이 되어도 교감은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교사 2급 정교사에서 1급정교사로 자격 변동 시에 1호봉 승급을 해주고 있는데, 교사에서 교감으로 자격이 변동 되어도 호봉 승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 성과급 지급시에도 교사가 승진하여 교감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감에 대한 대우는 교사만도 못한 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급 지급시에 교감 C등급이면 교사A등급보다 상당히 그 액수가 적습니다. 교사에서 승진하여 교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3. 같은 교감인데 초등과 중등 교감의 업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등교감의 경우 인사업무 중 호봉승급 등 봉급 관계 일부 업무, 인사기록 관계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등학교에는 행정실에 한사람을 더 배치 등 그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 교감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을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이는 초중등 교감 업무에 대한 불균등한 조치이며 초등학교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 사료 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7. [교직발전기획과]

○ 교감의 업무에 있어서 초등과 중등의 업무량 차이를 지적하신 부분은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며, 해당학교의 제반 사정, 업무의 중요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교원의 해당 직급 기준호봉으로 각각 책정하고 있으며, 제도의 취지상 각 직급 공무원의 업무성과를 고양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일직급에서의 등급간 지급액 격차에 관심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직공무원은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된 상하직급간 금액 격차가 더 큽니다.

교사

질의

○ 교사자격증이 미국에서 인정되는지 여부와 허용범위 (연령제한, 경력인정 범위, 기타 등등)

○ 영문으로 교사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또 절차와 미국에서 한국 자격증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있으나 한국에서 교사경력은 없으며 사회복지공무원으로 20년을 근무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7. [교직발전기획과]

○ 미국에서 인정여부는 해당 수요기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해 취득한 교원자격증은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에 대한 '교사자격증 유효확인서(영문서식)라고 하며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외국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서식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에 직접 서면 또는 메일로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담당부서 전화 02-2100-6484)

○ 그 외 미국에서의 동자격증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은 외교통상부 또는 주재국 대사관을 통하여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승진규정 중 연구점수와 석사 학위 인정 범위

질의

○ 교육경력 21년 2개월(2009년 4월 30일 기준)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 연구실적 점수 중 직무관련 학위 실적이 석사 1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00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를 전공하였는데 논문은 쓰지 않고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연구점수 1점으로 인정되는지요?

○ 등급표창을 1995년, 1996년에 시도대회에서 각각 3등급, 그리고 1999년에 3등급(시도대회), 2003년에 2등급 (시도대회) 2007년 전국대회에서 3등급에 입상하였습니다. 이 점수들이 모두 새로운 점수 부여 규정을 받게 되어 등급 표창을 받은 년도와는 상관없이 시도대회 3등급은 0.5점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년도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가 다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29.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이 당해직위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 연구점수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논문과 관련 없으며 석사학위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도규모대회에서 입상을 한 실적에 대해서는 승진규정에 정해진 점수로 모두 조정이 됩니다. 입상한 년도와 관계없습니다.

퇴직교사 성과급 문의

질의

○ 2007년 8월 31일 퇴직했습니다. 8월 31일 까지 근무를 해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31. [교직발전기획과]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를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인(12/31)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한 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원'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되는 것이 아니라 성과상여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1,2월 근무 중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성과급 지급 여부

질의

○ 2007년 1,2월 근무를 한 후 3월부터 육아휴직을 했는데 1,2월 중 모유수유로 인해 육아시간(1일~14일 총 10시간)을 사용한 경우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19. [교직발전기획과]

○ '09년 성과상여금 지침에는 교원이 공가, 육아시간 활용의 사유로 인해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이 안될 경우에도 '2일의 범위' 내에서(1일/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육아시간 활용은 출산장려와 모성의 보호를 위해 통상적인 근무시간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근무형태이기 때문에 예회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정 연수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질의

○ 음대를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를 졸업하고 일반중등음악 2급정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사립고등학교에서 2년 6개월 동안 음악시간강사를 했고 또 공립특수학교에서 3년동안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면서 음악수업을 했습니다. 이때 특수교육대학원을 다녀서 특수2급정교사(음악)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른 공립 특수학교에서 5개월 14일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2008년 신규로 임용되어 지금까지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1정 연수 수요조사가 있어서요.

1. 제가 특수 1정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연수를 받을 수 있다면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요(희소과목이라서요)
3. 1정 연수를 받을 수 없다면 대학원졸업으로 1정연수를 대치할 수 있나요
4. 대학원졸업으로 1정연수를 대치하고난 후 혹시 나중에 승진을 하고 싶어지면 다른 어떤 시험(잘모르겠지만)을 통해 점수를 획득하면 1정 연수에서 점수를 얻은 선생님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9. 30. [교직발전기획과]

○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특수학교에서 1년이상 근무한 후 1정 자격연수를 이수하거나, 둘째는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1년의 교육경력이 경과한 후 교육대학원의 졸업학력으로 1급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의 방법을 선택하여 교육대학원의 성적을 1정자격 취득시 사용할 경우 교감승진 시 1정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과정은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취득 시의 성적만 해당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육공무원 고용휴직에 관한 건

질의

○ 2009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휴직에 관한 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당시 통과된 법률안을 보면,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대통령령 및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에 고용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고용휴직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고용 휴직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에 명시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때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임시로 고용된다는 말은 어떤 직종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컨대, 입학사정관과 같은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 등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4. [교직발전기획과]

○ 2009.1.1부터 시행되는 교육공무원법의 고용휴직 관련 조항은 제44조제1항제6호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 이때, 고용의 의미는 당해기관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음)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단순히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라하더라도 어떤 계약조건으로 고용되는가와 소속기관의 허가여부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만료기한은 그 고용기간이 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는 현재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이 법제처심사 단계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도 하반기 교원 시도간교류 여부 문의

질의

○ 2009년도 하반기 교원 시도간교류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정확한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6. [교직발전기획과]

○ 과거 우리부는 시도간 교류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였으나, 학교자율화 계획에 의거 2009년부터는 시도교육청이 교육청간 자율적 협의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실시여부, 교류기준 및 규모 등에 관하여도 교육감이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부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별거 교원의 고충을 고려하여 교원 정원 확보 등 교과부 차원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2009년부터 적용되는 석사학위 2개 취득자 연구 점수문제

질의

○ 2009년 부터 적용되는 교원 승진 규정 중 2005학년도 1학기 입학자까지 복수 석사 학위를 인정해 준다고 하였는데, 인정 되는 점수가 몇점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9. [교직발전기획과]

○ 종전의 규정대로 2점 인정한다라는 사항은 2009년도 개정시행 이전인 2008.12.31 현재 평정대상자에 한함을 설명드립니다.

2009년 초등학교 교장·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일 및 자격증부가점 반영

질의

○ 2009년 초등학교 교장·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일은 언제이며 2009년 1월중에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은 2009년 초등학교 교장·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선정시 자격증부가

점 반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12.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4조에 따르면, 명부는 1월31일 기준으로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가산점의 경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7항에 따라 12.31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월에 취득한 자격증은 부가점 반영이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입학허가시점에 자격(현직교직)을 상실시 어떻게 됩니까

질의

○ 2009학년도 입학전형 및 자격기준에 의하여 현직교원자격으로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지원대상 자격인 현직교원 자격을 2009.2.28일자로 퇴직하여 상실하였습니다 이 때 입학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와 현직교원의 범위가 반드시 졸업시까지 유지가 되어야 재학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 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3. 5.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원의 경우 2000년 이후에 설치 인가된 모든 전공은 반드시 현직교직원에 한하여 입학하는 조건으로 승인설치 되었으며 이는 '양성' 및 '연수'기능에 관한 교육부 지침으로 당해 학교에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음을 설명드리며 입학당시에 현직 교원이었다 할 지라도 자격검정시점에 그 직을 유지 하지 못했다면 자격검정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말씀하신대로 현직교원의 범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격검정시점임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지급대상 관련 문의

질의

○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부부중 1인이 공무원이고 다른 1인이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 등인 경우에도 그중 1인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부중 1인이 공무원(초등교원)이고 다른 1인은 인건비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되지 않고 일부(5%정도)만 국고에서 보조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일 경우 부부 양쪽이 다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부부중 1인만 가족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13. [교직발전기획과]

○ 행정안전부 수당 담당자에 확인한 결과 국고에서 보조될 경우 %에 상관없이 지원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

질의

○ 가족수당 지급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립 중학교입니다. 저희 학교에 10월 결혼을 하신 선생님이 부양가족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양가족신고를 받은 결과 배우자가 00진흥재단에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수당도 신청하여 지급받는다고 하는데 수당을 이중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16. [교직발전기획과]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4항에 의거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4인 이내)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 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양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하여야 하며,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

○ 부양가족 요건 충족 시 신청일로부터 3년간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2006. 11월 중에 신청을 하면 2003. 12월까지 소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 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두 사람 중 아무에게나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대방 급여 담당자 분들과 합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에 대한 질문

질의

○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인데 주소지는 부모님만 계시는 고향으로(부모님과 같이) 옮겨져 있고 주말이면 고향으로 내려가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은 같이 등재 되어 있지만 거리가 멀어서 실제로 부양한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부양가족 수당 신청을 거절하고 있기에 부양가족 수당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 [교직발전기획과]

○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부양가족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장남의 경우 '98년 12월까지는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거하더라도 지급하였으나, 현재 장남이라 할지라도 위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가족수당이 지급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간병휴직과 질병휴직 기간 중 대학원 수강의 적법여부

질의

○ 간병 휴직과 질병(갑상샘의 악성신생물) 휴직 기간 중에 있는 교사가 대학원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휴직 사유를 계속 인정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4.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45조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의한 교육공무원인사실무지침을 살펴보면 통상 휴직업무 처리시 임용권자는 휴직의 허가시 교원수급사정, 예산상, 휴직의 목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 특히,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하는 휴직(동반, 유학, 육아휴직 등)에 대하여는 그기간 동안에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또는 휴직의 목적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병휴직과 질병휴직시 대학원수강에 관한 사항은 통상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2조에 의해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동태를 항상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직허가권자인 임용권자가 휴직목적의 적합성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우리부에서 답변드리가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교육청과 다시 한번 상담하여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정자격 연수 평정(2008.2)에 대하여 문의

질의

○ 지금 1급 정교사로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2년제)을 졸업하고,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후 1급 정교사로 근무하던 중 교육대학교(4년제)에 편입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다시 계절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정 자격 연수 점수로 사용할 수 있다면, 취득한 교육대학원 학점 평균이 4.5 만점에 4.22(백분율로 96.22)인데 자격 연수 점수로 어떻게 환산하며 환산한 점수는 몇점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9.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대학교 계절제 교육대학원에서 받은 석사 학위를 연구 점수로 사용하지 않고, 1정 자격 연수 점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정자격연수 성적이 이미 1정연수를 통해 받았기 때

문입니다. 다만, 교감, 교장 순위명부 작성시 1급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정교사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 성적은 가능합니다.

○ 1정연수를 받지 않은 선생님이 대학원 성적으로 대신하는 경우에는 학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선생님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A학점은 90점을 부여받습니다.

겸직 범위

질의

○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재직중이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각 시·도에서 신고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 2회 총 4-6시간, 오후 7시정도에 강의가 시작되므로 업무에 차질은 없을것으로 생각되나 겸직의 허용범위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8. [교직발전기획과]

○ 공무원의 겸직가능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상황과 공무원의 관여정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속 기관장이 판단해야 하며, 특히 공무원은 성실의무·품위유지 의무가 있고 일반적인 국민정서를 감안해야 하므로 겸직 허가 시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극 고려합니다.

1)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2) 금지대상이 되는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3) 해당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정기적인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따라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영리행위인지 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무인지의 여부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당해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행위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영리업무 금지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자세한 것은 임용권자(교육감 또는 복무지도감독권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력 인정 문의

질의

○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한뒤 발령이 나지 않아서 4년제 대학교 3학년에 편입학을 하여 1년간 학교를 다니다 발령이 나서 4년제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4년제 대학교의 1년간(3학년)의 학력(경력)을 호봉획정시 인정 받을 수 있는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 [교직발전기획과]

○ 2년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은 16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경우처럼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봉획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휴직

질의

○ 교직발전기획과-105(2009.01.20.)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 알림에 의거 범인(사)좋은교사운동 소속 선생님이 고용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이 허락한 좋은교사운동 단체에 대해 타교육청이 고용휴직을 허가하여도 가능한 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10. [교직발전기획과]

○ 문의하신 범인(사)좋은교사운동본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 3에 의거 고용휴직이 가능합니다.

고용휴직 관련 문의

질의

○ 고용휴직 범위에 관하여 재외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등에 관한 허가여부를 어떻게 해석해

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8. [교직발전기획과]

○ 2009.1.1부터 시행되는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고용휴직의 요건을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로 정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학교가 고용휴직 대상 기관인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우리부 재외동포교육과 또는 해당 교육청에서 재외교육기관 해당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받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휴직이 되나요?

질의

○ 중국소재 한국국제학교에서 현재 고용휴직의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내년도 휴직 연장을 검토하던 중 2008. 3. 21자로 개정된 법률 제 8913호에 의하여 이학교가 고용휴직 대상기관의 학교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7. [교직발전기획과]

○ 2009.1.1부터 시행되는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고용휴직의 요건을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로 정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학교가 고용휴직 대상 기관인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해당여부는 우리부 재외동포교육과 또는 해당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중 학위취득시 학력인정 관련

질의

○ 공무원 재직기간 중 학위취득 시 학력은 비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는 야간대학(원), 계절대학원, 공무원 임용전 학위를 수료하고 임용 후 학위취득시의 경우입니다.

1. 만약, 2002년 3월 (주간)대학원 입학하여서 1년의 과정을 들은 후 2003년 3월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2003. 3월부터 2004. 2월까지 공무원이면서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여(연가활용) 2004. 2월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 후 학위를 받아서 학력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2002년 3월~2003. 2월(1년)간은 호봉에 인정되지 않나요?
2. 위의 경우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범계 가산점수도 부여할 수 없는 것인지요?
3. 국립대학 행정조교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만약, 2년간 조교를 하면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석사학위는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까? 차후에 교수로 임용이 될 때 호봉획정 시 행정조교는 80% 인정되고, 석사학위과정은 100% 인정됩니다. 이때 중복경력의 경우 유리한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석사학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교인 80%로 인정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3. 16. [교직발전기획과]

○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는 우리부에서 발간한 2008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을 근거로 통상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은 실제 학위취득한 날로부터 실교육기간을 기준으로 석사 2년, 박사 3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임용이후의 대학원 학위 취득은 말씀하신대로 학력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의 임용전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임용전에 재학한 기간만 100%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사범계 가산연수는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를 졸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통상 호봉산정시 학력과 경력 및 경력과 경력의 중복이 발생될 경우 어느것 1가지만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된 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산정여부 판단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의하여 호봉획정권자가 결정함을 설명드립니다.

공무원자녀학비보조수당지원에 대한 문의

질의

○ 자녀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비는 일반학교보다 조금 비싼편입니다 평생교육법에의 설치된 학교로 알고 있고 전년도에는 일반고등학교수준의 공납금을 지원받았는데 얼마전 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학교가 아니니 지원했던 모든 금액을 다시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규정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대안학교라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10. [교직발전기획과]

○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우리부에서 발간한 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에 의하면 학교의 범위는 말씀하신대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8조 및 학력인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합니다.

○ 의뢰하신 학교의 경우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로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타깝지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학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재직중 징계중 사직가능여부

질의

○ 제딸이 교육공무원으로 근무중 중징계(정직)를 받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정직기

간 또는 정직기간전에 의원면직은 불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06. [교직발전기획과]

○ 파면, 해임을 선고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직시에는 의원면직 또는 사직이 가능합니다.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 통합해도 괜찮은가요?

질의

○ 2009.1.1 부터 시행되는 교원승진규정에 보면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통가산점 : 장관지정 연구학교(1.25),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0.75), 연수학점(1) 총 3점

선택가산점 : 도서벽지농어촌(4.0), 교육감지정 연구학교(1.25), 연구점(3.0), 부장교사 등 총 10점이 있습니다.

○ 이번에 발표된 승진규정 연구학교 근무점수를 보면 공통가산점 장관지정 연구학교 1.25점, 선택가산점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 1.25를 주면서 단서조항에 장관 지정 연구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가산점과 통합한 총합계 1.25를 초과할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이렇게 되는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을 분리한 의미가 없고 선택가산점으로 공통가산점을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부 시범학교 근무점 0.968, 도지정 시범학교 근무점 0.96을 가지고 있는데 위와 같이 통합해서 1.25로 제한해 버려 많은 점수를 그냥 버리게 되어 손해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시행하는 것은 공무원 승진규정 (대통령령 제 20068호, 2007. 05. 25)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18.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에 의거 선택가산점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는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으나 가산점에 반영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교과부의 공통가산점이고 시도의 경우에는 인정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질의하신대로 두개의 가산점을 합해 반영한다고 하는 기준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많은 학교에서 연구시범을 한 경력이 있으나 이를 반영하는 여부는 시도교

육감의 권한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가산점에 대한 문의

질의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공통가산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9년부터 바뀌는 승진규정 중 공통가산점의 '직무연수'이수실적 가산점이 이전의 1학점당 0.01에서 0.02로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향되는 가산점 부여 시점이 2009년도에 이수하는 직무연수부터 인지 아니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이수한 직무연수도 학점당 0.02씩 상향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2. [교직발전기획과]

○ 직무연수 학점과 관련하여 1학점당 0.02점의 가산점은 그동안 직무연수를 받은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경과규정을 두어 제한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직무연수에 평등하게 적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시도간 일방 전출입을 교과부에서 적극 실시 요구

질의

○ 교과부가 나서서 교사의 시도간 일방 전출입을 적극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다 넘겼으니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하라지만, 시도교육청에서는 1:1 교환 원칙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9.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의 시도교류는 1:1교류, 다자간 교류 및 일방전입의 방법을 통해 실시되며 일방전입의 경우, 매년 증원되는 정원 중 일부를 일방전입용으로 배정하여 실시해 왔습니다. 한편, 시도간 교원교류에 관한 세부사항(교류 기준 및 규모 등)은 교육감이 정하게 되며, 일방

전입의 규모도 교육청의 교원수급사정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올해부터는 학교자율화 계획에 의거 시도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운영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며, 별거교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교과부 차원의 지도와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교사 영어 연수 휴직에 관하여...

질의

○ 현재 국립학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교사가 외국으로 영어 연수를 목적으로 휴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어 연수 중 외국 대학원 입학 허가를 받아 진학을 하려 한다면, 유학 휴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9.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법 44조에 의한 휴직 중 해외 연수로 인한 휴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에서 정하는 유학휴직으로의 휴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사의 권리

질의

○ 교사의 권리 중에서 교사의 자율성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중 어디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또한, 교사의 여러 권리들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등권, 사회권, 자유권 등의 하위개념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사의 권리는 무엇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18. [교직발전기획과]

○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한다는 의미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사의 권리와 국민의 기본권과의 관련성에 대한 질의는 교사의

경우 국민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무원이라는 두 가지 중의적인 신분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은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교육공무원법상 의무)와 공무원으로서의 권리(신분보장권, 교직단체활동권)를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사의 권리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

○ 교사의 권리를 보면, 적극적인 권리 중에 자율적으로 교육할 권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3. [교직발전기획과]

○ 국민의 기본권 (자연권이라고도 합니다.)은 인간이 태어날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의 권리를 말합니다.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의 5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교육할 권리라는 의미가 다소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학문과 예술의 자유로 해석한다면 자유권에 가깝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교사 스스로 자신의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의 행위가 학생들에게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사의 권리 중 자율적으로 교육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교사의 급지 근무연한 변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

○ 교사들은 급지별로 근무연한이 있습니다. 가급지의 근무연한이 10년이었다가 8년으로 변경을 할 때 적용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8년에 인사협의회를 거쳐 2009년 3월 1일부터 근무연한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고 했을때 8년의 적용시점을 2009년 3월 1일 전입교사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 이전의 전입자는 10년이 지나야 만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제가 있는 곳에서는 2009년 말에 내신을 쓸 때 근무연한이 8년, 9년, 10년되는 모든사람이 한꺼번에 자리를 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무연한 변경이 적용된다면 근무연한 변경이 8년으로 바뀌는 것은 이미 8년 전에 법이 개정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데 잘못된 것 같아 질의를 드립니다. 근무연한 만기가 이전에는 10년이었다가 2009년 3월 1일부터 8년으로 바뀔 때 8년의 적용시점을 언제부터 해야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6. [교직발전기획과]

○ 교사의 급지 근무연한 변경에 대한 적용 시기는 일의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법령 개정 시 경과규정(가령, 이 법은 몇월몇일부터 적용된다.)이 있는 것처럼 급지 근무연한 변경에 대한 규정(시도 자체 규칙)역시 경과규정 등을 확인 해야 합니다. 민원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대학원 수강

질의

○ 대학원에 합격하여 9월에 주간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요일은 수업이 오후 6시 이후에 있는데 목요일은 12시 이후 조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장님께서 허락을 안하십니다. 교사가 주간대학원을 다니면 안된다는 규정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법규 등을 알아봐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1.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은 국가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민원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주간대학원 수강은 관련 규정 및 그 해석에 의해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하고, 근무시간 중에 수강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이탈금지 규정에 의해 연가·외출·조퇴 등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 교원의 경우에도 학교수업 등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가, 외출, 조퇴 등의

허가를 통해 해당 과정의 근무시간 내 수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판단 및 허가의 권한은 복무감독권자인 교장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복무감독권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퇴 등의 허가를 통해 해당 교원의 대학원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복무상황에 판단은 복무감독권자가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교사의 민간단체 고용 휴직에 관한 내용

질의

○ 올해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인해서, 교원의 경우, 민간비영리단체에 고용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마침 단체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 장학사님께서는 "단체가 타시 교육청 법인 소속인데, 휴직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사가 속해 있는 교육청 법인만 휴직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법 개정 취지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3.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의 민간단체 고용휴직 가능 범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었음을 시도교육청에 통보(2009.1.20)한 바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 또한 조속히 동 법령이 개정된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휴직의 허가는 교원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임용권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우리부가 강제할 수는 없으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 3에서 정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특정 지역의 교원이 그 소속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만 고용휴직이 가능하도록 정한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교사호봉수와 진급에 대한 질문

질의

○ 비사범계열 교육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복수전공으로 국어 국문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과 일반 대학원 중 둘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도 똑같은 진급 조건을 갖고 같은 호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반 대학원에 진학 한다고 할때, 교육학 (교육 행정, 교육 사회, 교육 공학 등)을 선택하여 공부하면 국어 과목을 공부할 때와 호봉의 차이가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1. 15.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부에서 발간한 2008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편람을 근거로 호봉경력산정시 대학원의 경력은 연구경력으로써 최종 학위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수학연한을 산정하여 최대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을 인정하고 있으며, 학위취득으로 결정됩니다.

○ 통상 교원으로 임용된 후의 초임호봉 획정 및 학력 또는 자격취득에 의한 변동 등 여러 가지 요인을 합산하여 임용청인 해당 교육청에서 호봉획정을 산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호봉의 차이가 나는 지 판단이 되질 않아 정확한 설명이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상 어떤 과목으로 임용되느냐에 따라 당해직위에서의 연관성을 고려해 추가 반영이 됩니다.

교원 호봉경력(환산율) 인정에 관한 사항

질의

○ 교사가 자동차중개업(딜러) 경력이 있으면 호봉경력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영업및소득세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3할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동차딜러의 경우 직영(정규,월급)이 아니라 개인 영업소 대리점과 개인이 계약을 하여 차를 몇대 팔면 돈(수당)을 받는 형식입니다. 즉, 차를 팔지 못하면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을 보면 제6류(4할) : 제5류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각종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외교인, 점원 제외), 외교인 : 보험판매원, 외판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판매원도 자동차 딜러와 마찬가지로 직영직원이 있고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 두 가지 형태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1. [교직발전기획과]

○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영업및소득세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3할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안부의 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에 보면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력조회시 확인사항으로는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여부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력의 인정여부는 전력조회서를 보고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원 호봉정정 문의

질의

○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해서 호봉재획정을 하던중 이 교사의 초호봉획정시 대학원연구경력이 당시 호봉획정자의 실수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1일자로 복직하는 이교사의 경우는 8. 1자로 호봉재획정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초호봉의 오류로 인한 호봉정정은 언제하는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호봉재획정을 할때 어치피 호봉정정도 이루어지는데, 호봉재획정과 동시에 호봉정정을 하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별도로 호봉정정 발령을 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5. [교직발전기획과]

○ 호봉정정과 호봉재획정은 그 행위 원인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호봉재획정을 통해 호봉정정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재획정은 육아휴직 복직시 복직일에, 호봉정정은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민원인의 경우에는 호봉정정을 먼저하고 호봉재획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호봉정정 및 호봉재획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교원성과급 지급 기준

질의

○ 교원성과급 기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남깁니다. 2007년 3월 1일~12월 31일까지는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 중 3개월은 출산휴가였습니다.) 이런 경우 1월, 2월 근무만으로도 올해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 성과급 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9.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은 금년도에 지급대상기간을 2007년도(1~12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근무기간인 1,2월중 복무처리 사항에 지급대상제외자로 기록되지 않았다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궁금해 하시는 동 성과상여금의 지급지침은 행정안전부(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추후 교육공무원 뿐 아니라 전체 여성공무원 출산휴가기간의 성과급 지급대상 여부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연구평점 소급적용은 법개정 년도부터 적용해야 타당

질의

○ 교과부는 2009년 이전에 이수한 연구점수나 취득한 학위 등도 2009년 12월 31일 평정시부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05에 시·도규모 연구대회에 출전하여 1등급을 입상하였다면, 이 실적은 2008년 12월 31일 평정시까지는 0.5점으로 평정되나, 2009년 12월 31일부터는 개정된 승진규정에 따라 1.0점으로 평정한다는 것입니다. 현장 연구대회나 학위 취득(현행 연구평점에서 석사는 1점, 박사는 1.5임) 평정점만 두 배씩 높여 주고, 그것도 소급해서 적용해 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2009년 12월 31일 평정시에는 법 개정후인 2008년~2009년에 취득한 연구점수에 한해서 개정된 평점을 주는 것(시도 대회1등급시 0.5점에서 1점)이 합리적이며 2008년 이전에 취득한 연구점수는 기존의 평점(시도대회 1등급 0.5점)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9.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연구실적평정의 개정은 총점 대비 요소별 점수가 낮아 총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어 본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연구실적평정점의 경우, 총점을 그대로 유지하되 연구대회 입상등급별 평정점과 석·박사학위의 취득실적평정점을 각각 상향조정하여 1,2개의 실적만으로도 총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전문성 신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동 규정 개정의 효과가 2009.1.1이후 현재의 기준으로 조정된다는 점에 있어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승진규정 개정이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이미 종료한 과거의 승진심사 등에 소급적용되어 심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실시될 승진심사에 적용되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연금 지급

질의

○ 사립학교 교사이며 정년까지 근무하면 19년이 되어 연금 대상자가 못됩니다. 그러면 얼마 안되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텐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공무원 연금 개정에 10년 이상 근무시 연금대상자가 된다는 조항도 기각되고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3. [교직발전기획과]

○ 현재 '사학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급여 중 퇴직연금은 재직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공무원연금법이나 사학연금법 개정내용에도 연금수급요건을 20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나 가까운 장래에도 민원인은 퇴직연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간 연

계제도가 논의 중에 있어 국민연금 가입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원연수생 급여지급 건

질의

○ 저희 학교 선생님이 2008 일본문부과학성 초청 교원연수생으로 선발되어 2008.10.1~2010. 3.31(18개월) 동안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간외수당, 담임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교원연구비(학교회계에서지출)이 지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또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되는 수당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28. [교직발전기획과]

○ 파견교사의 수당관련하여 이해를 드리기 위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접 파견하는 경우와, 해당학교에서 국내에 있는 교사를 초청하여 직접 고용계약(고용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견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현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근무하게 되어 교육부가 국내보수와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초빙교사 등 고용휴직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신분은 유지하면서 휴직상태이므로 당해학교에서 학교의 관련규정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파견근무자의 경우가 더 많은 보수를 지급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 (p 237)

- 말씀하신 사항은 지급되지 않으며,
- 그 밖의 수당 (재외근무수당, 배우자수당, 특수지수당, 자녀수당, 학비보조수당, 의료비, 주택임차료, 항공료, 이사비)에 해당될시 지급함.
-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의 가족수당 경우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 p175) ⇒ 배우자를 주재국에 동반하지 않았을 경우,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서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재외공무원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 가족수당을 지급

○ 이외 궁금한 사항은 학술진흥재단, 국외파견교사 보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경제활동

질의

○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영어원서를 번역하여 출판하여 수입을 얻는 것이 겸직 금지의 의무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9. 19. [교직발전기획과]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능률저해 등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업무가 금지토록 기술하고 있으며, 같은 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사적인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임용권자)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겸직허가 여부는 신청자 본인과 임용권자가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처리될 문제이므로 자세한 것은 해당 교원의 복무지도를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의 복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방송통신대학력인정여부

질의

○ 초등학교 호봉재획정 업무추진관련임

- 공무원 보수규정 초,중등교원 호봉관련 업무처리 규정을 보면 학력과 경력이 중복될경우 유리한 것으로 하는것은 알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 예외인가요?

1. 1970년 교원양성소를 졸업하여 임용한 초등교사가 1977년 3월에서 1981년 2월 까지 방송통신대를 2년제 졸업한경우 : 그당시의 학력과 경력중복인정여부
2. 학력과 경력중복인정된 경우라면 2년제 교육대학으로 중복인정되는지, 전문대학으로 인정되는지?

3. 중복인정 된다면 예외인정사례의 근거 관련법규는 어디에 근거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08. 8. 25.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으로 재직 중 학력변동은 재획정사유가 되오며 재직 중 학력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경력 중복이 되어 호봉재획정의 실익이 없어 호봉재획정을 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2년제 교육대학으로 인정하며 동규정 별표 23 비고 5 구학력대비표에 의거 2년제 교육대학졸업 학력을 인정하면서 사범계 가산연수 1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학.경력 중복이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것 1개만 산입함을 알려드리며, 첨부로 보내드린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복무관리에 대해

질의

○ 지역 국립대학에 근무하며 교원의 휴가, 휴직, 안식년, 연구년 기간 중 출장명령이 가능한지 더불어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 [교직발전기획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복무 관련 법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기술하고 있듯이 복무관계는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로서 이를 위한반 경우에는 징계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원이 소속된 학교의 학생으로 재학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교원((전임, 초빙, 겸임 등)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학((학부생, 특수대학원생 등))함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조건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7.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의 신분으로 소속학교에 재학을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별다른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의 선발권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한 제한조건이 마련될 수는 있으나 우리부에서 제한하는 규정이나 지침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원인사위원회 구성관련(고등학교)

질의

○ 교원인사위원회 구성관련 학교법인 정관이 개정 되었습니다.

- 개정전 : 10인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개정후 : 7인의 교원, 사무직원, 학부모, 동문등으로 조직하되, 교원위원이 1/2이상이 되도록 한다.

○ 교원인사위원의 임기가 학년초 기준으로 시작하여 해당학년도 말까지(2008.3월~2009.2월)인데 정관이 위와같이 중도에 개정이 되, 소속학교 인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종전에 있던 인사위원회를 해산시키고, 개정 정관에 의한 인사위원회 재구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5. [교직발전기획과]

○ 연임결과 여부는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가지고 있는 위원 신분에 대한 신뢰를 존중하여야 할것이라 사료됩니다. (명확한 경과조치가 필요) 이외 구체적인 현행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해석권은 당해 조례를 제정한 시도 교육청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여부

질의

○ 사립학교경영자와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시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한다"라고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26. [교직발전기획과]

○ 단체협약은 협약 당사자인 노사 양측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회의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는 첫째, 공개의 대상이 누구인가? 즉,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도 포함된다는 것인지, 둘째, 공개의 범위는 노사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독자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질의

○ 교사들이 승진하는데 필요한 점수중에 1정자격연수점수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현장에서 2~3년 정도 근무하면 모든 교사들이 받는 연수입니다.

○ 그런데 승진규정중에 1정자격점수가 형편없이 낮아 승진에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못한 점은 받아들이고 수긍이 가나 1정자격연수를 받을 때는 점수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하였으나 점수는 제가 생각만큼 나오질 않았습니다.

○ 승진규정에 보면 여러가지 연수점수를 적용시키고 있는데 단지 한때 젊은 시절 점수 또는 승진에 신경쓰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연수를 받았던 1정자격연수점수 때문에 승진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어야 하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굳이 1정자격연수점수를 고정시켜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와서 열심히 연수를 받고 노력하는 가운데 받은 점수를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겨우 2~3년짜리 교사에게 승진에 압박감을 주는 그런 연수에서 벗어나서 꾸준히 학교현장에서 노력하는 가운데 성취한 연수점수가 더욱더 값진 것이 아닐까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6. [교직발전기획과]

○ 1정 자격연수 성적이 낮아 승진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받은 1정 자격연수를 갱신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자격연수나 사서교사 연수를 받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년이 지난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격연수를 대체하여 최근에 받은 새로운 점수를 제시하도록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파생될 문제점도 많을 것입니다. 모두 100점을 받기위해 끊임없이 연수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제도에 만족은 하지 않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연구점수 상향 조정, 소외되는 사람없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질의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변경으로 인하여 승진 점수 중 연구점수를 대학원 졸업 1점을 1.5점으로, 시도 단위 1등급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조정하여 2009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현재로 3점 만점을 받은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점이 3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을 현재 3점 만점을 받은 교육공무원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받은 점수에 한해서는 꼭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대학원 2군데 2점, 시도단위 1등급 0.5를 2번을 받아 3점이 된 사람은 대학원 1.5점 2개 3점, 1등급 1점 2번 2점, 합 5점을 받을 수 있어야 공평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8. [교직발전기획과]

○ 제안하신 연구실적평정점 만점 상향 조정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승진규정을 개정한 이유는 지나치게 점수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평상시에 학교 근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에게 근평을 통해서 승진을 하도록 평정기간도 조정하였습니다. 연구 실적 평정에서 학위취득이나 연구대회 점수를 높이는 것도 지나친 연구점수 경쟁을 없애도록 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 이미 많은 노력을 통해 3점을 획득한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한 것도 사실

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에는 언제나 이득을 보는 사람과 불리한 사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규정의 변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일관성 유지를

질의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연구시범학교 지정 및 근무평정 등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5. 19. [교직발전기획과]

○ 연구시범학교의 지정은 시도교육청의 권한이며, 시도 지정 연구시범학교 등의 가산점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교과부 지정 연구학교의 경우, 새로운 교육정책 등의 현장검토 및 적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적평정의 개정은 총점 대비 요소별 점수가 낮아 총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어 본연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연찬은 필요하지만 본연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개정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상의 근평반영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변경 여부에 대하여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공무원 승진시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전공과 무관한 상담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하였습니다. 이 학위의 성적을 1급 정교사의 자격점수로 대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7. 2. [교직발전기획과]

○ 상담관련 석사학위소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교(원)감 자격연수성적 평정시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점수를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받는다면 석사학위 취득실적은 연구실적으로 평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지하고 있는 전공과목과 달리,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교(급)경영, 교무업무, 기타 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전공한 경우 등 가능합니다.

교육공무원 외국 국적 취득

질의

○ 교육공무원은 외국인도 신규채용이 가능하지만, 교육공무원(교수) 임용이 되어 있는 신분에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어도 현재의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와 연금 및 기타 급여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 문의 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4.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이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귀국 후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원이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 귀국하여 복직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영주권을 포기하고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 문의

질의

○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며 1990.6.15일 고등학교 교사로 최초 임용되어 00공사에 다닌경력을 초임호봉획정시 80%로 인정받아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1.2~2008.8.31일까지 동반휴직을 하고 9.1일자로 복직하면서 임용전 경력이 80%가 아니라 50%라고 하여 호봉이 2호봉이 감봉되었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에 의하면 50%

가 맞는데 경력환산율이 변동된 적은 없는지요? 1990년당시 00공사에 다닌 경력이 몇%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29. [교직발전기획과]

○ 한국조폐공사에서의 경력은 교육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2008)을 근거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의 하나인 00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공공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5할의 율을 적용받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경력의 중복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학.경력 중복이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것 1개만 산입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정확한 사항은 호봉획정권자인 해당 교육청에서 전력조회등을 통하여 판단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공무원법 해석

질의

○ 교육공무원법 제21조 전직등의 제한에 보면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 2008.3.1～2009.3.29 교육연구관, 2009.3.30～2010.2.28까지 장학관인 경우라면 2010.3.1자로 다른 직위 즉 다시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이 가능한지?
2. 2006.3.1～2009.2.28 ㅇㅇ교육청 장학사, 2009.3.1～현재까지 *교육청 장학사로 전보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2009.9.1자로 승진 전보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5.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법 제21조의 제목을 전직등의 제한으로 하고 그 기간은 1년으로 하였으므로 3. 30까지는 전직이 불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2의 경우 승진자는 동조 2호에 의해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전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공무원의 고용 휴직에 대하여

질의

○ 청도한국국제학교에서 고용휴직의 자격으로 교단생활을 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고용휴직이 내년에도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요건은 법률 제4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재외교육기관으로 인정은 되지 않으나 중국 정부에서 인가가 난 학교이므로 외국 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해석에 의하여 제가 고용휴직을 신청해도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4. [교직발전기획과]

○ 외국 사립학교는 비록 주재국의 인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공공성있는 외국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회의 '외국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기관'에 고용된 사유로 고용휴직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공무원인 부모의 가족수당 지급

질의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가 교육공무원인 경우 장남인 자녀(공무원임)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가족수당을 받고있으므로 제외)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4. [교직발전기획과]

○ 2008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편람 p172에 의거 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존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기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공무원의 개인적인 어학연수에 대한 질의

질의

○ 교육 경력 20년의 윤리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교과와 상관없이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어 중국어 공부를 더 공부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휴직을 하고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및 어학연수가 가능한 근거가 되는 법은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31.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수휴직과 유학휴직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유학휴직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유학휴직에 해당되며, 해당 각 교육청에서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연수휴직의 경우 그 휴직 사유가 국내로 한정되어 있어 해당요건이 갖추어질 경우만 해당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을 위한 휴직의 종류는 동법 제44조에 마련되어 있으며, 반드시 그 휴직사유가 발생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 유학휴직의 다른 휴직은 휴직명령권자인 해당 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대학 졸업 후 농사경력 반영 여부 질의

질의

○ 1981년 2월 17일 교육대학 졸업 후 1982년 9월 25일 발령 받을 때까지 고향에서 농사일을 했습니다. 농사 경력의 1/3이 호봉 책정시 경력에 반영된다는데 지금도 반영되는 건가요? 농사지을 당시 관련된 서류를 확인해줄 사람(예, 이장 등)이 사망했다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25. [교직발전기획과]

○ 임용전 경력산정의 경우 우리부에서 발간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2008)을 근거로 공무

원보수규정 별표 22에 의한 농업에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농업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농지세 납입증명서 및 영수증, 농지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농업에 종사한 것이 확실(인우증명, 사실증명 등은 인정하기 곤란함)할 때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해당 교육청 호봉획정권자에게 제출하여 재획정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급당 학생수 감축 요청

질의

○ 사교육비문제, 빈부격차문제, 실업문제, 왕따 등 청소년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합니다. 현재 대도시는 초등이 40명 내외, 중 고등은 35명 내외입니다. 시골도 35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학교가 학생수가 적어 폐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도시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가르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왕따 등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더불어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25.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부 정책목표도 학급당 학생수 감소 등 선진국수준의 교육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점은 동의합니다. 다만 학생수 감소를 위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우리부는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개시,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e-Learning지원체제 구축, 교원평가를 포함한 학교교육력 제고 시범 실시, 대안교육 기회 확대 기반 마련, 대학서열구조 완화, 학벌주의 극복 등 사회제도와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도로 우리부는 공교육의 현장,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시도별 중기학급관리계획(학급총량제)은 시도교육감이 연도별 초, 중,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설정하여 시도별 총학급수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이 학급수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중기 학교신설, 학생수용,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입니다.

○ 시도별 중기학급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시도교육감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급수는 학교신설, 교원수급, 각종 기자재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책변수입니다. 중장기적 전망과 계획을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 정책에 대하여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교육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제언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근무 순회교사의 연수

질의

○ 교육청 소속의 전문상담교사입니다. 제가 8월 4일부터 8월 15일까지 소속 교육장님의 허가 아래 연가를 쓰지 않고 청소년 상담사 연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 있는지요? 어떤 한 장학사님이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해서 연수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8. [교직발전기획과]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 및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공무원휴가업무예규에 의하여 복무에 관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총경력

질의

○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2급 자격증을 소지한 채로 초등학교에서 과학실험보조원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호봉승급에 있어 8할을 경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교육총경력에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1.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총경력에 포함되는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육공무원보수업무지침을 근거로 교

육경력, 근무경력, 호봉반영경력입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으로의 경력을 호봉반영경력으로 8할을 인정받았다면 말씀하신대로 교육총경력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행정경력의 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

○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 교육행정경력의 범위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같은 조 1호의 국가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관련입니다. 여기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지방직공무원에 한정된 것인지 다른 직의 공무원도 포함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둘째는 같은 조 2조의 특별시 등 지방자체단에서 근무하는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고 고위공무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위공무원단에는 국가직 7급 공무원 이상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직 또는 지방직 공무원인지 궁금하며,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국가직은 7급이상 또는 고위공무원의 경력을 인정해 주고, 지방직은 고위공무원의 경력만 인정해 주며, 그 외에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1.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의 교육행정경력은 문자 그대로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교육청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며, 지방직과 국가직 모두 7급 이상과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일반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공무원의 경력은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육행정경력의 인정범위에서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별은 없습니다.

교장 자격증 부관설정등에 관한 규정 중 질의사항?

질의

○ 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부관설정의 기준)

(1)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제1항의 조건 이외에 교장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는 소지자격 및 경력에 따라 임용예정 학교에서 별표1에 정한 기간동안 계속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계속 근무하는 조건없이 수여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4년제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교장 자격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6. [교직발전기획과]

○ 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훈령으로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위 법령은 교원자격검정령이며, 교원자격검정령 [별표]에 교장자격인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교원자격검정령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부관 중 계속근무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교장자격증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교장임기에 대한 질의

질의

○ 교장임기중 전문직근무는 교장임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의 법적인 근거는?

회신 회신일 : 2009. 4. 14.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3.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 교장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고,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는 전문직에 해당되며, 직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직 근무는 교장 임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장자격 연수 완료 후 자격증 발급 기한

질의

○ 교장자격 연수가 완료된 후 자격증 발급 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2. [교직발전기획과]

○ 교장자격 연수 완료 후 자격증 발급 기한은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발급기관인 해당 교육청에서 발급 기한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에 관하여

질의

○ 연령 만 58세 총경력 35년 (군 장교 경력11년, 교직경력 24년)으로 현직근무중인 고교 교사입니다. 2005년 3월부터 월5만원의 수당을 16개월 동안 지급받아왔으나 2006년 다른 학교로 전보되어 학교행정실에서 군경력포함은 잘못된것으로 안다며 지금까지 지급된 수당 16개월분 환급하고 지급은 취소되었습니다. 공직생활 30년 55세에는 수당을 받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16. [교직발전기획과]

○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 지급 요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로교사수당으로

알려진 교직수당가산금 지급대상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의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만 55세 이상인 교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때 교원으로 임용된 이후 입대휴직 기간은 교직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교육경력에 포함되나, 임용 전 군경력은 제외됩니다. 이는 교직수당가산금이 학교에서 교원으로 실제 근무한 장기 교육경력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민원인의 군경력이 임용 전 경력이냐, 임용 후 경력이냐에 따라 해당 수당의 적정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직수당가산금(원로수당)

질의

○ 교직수당가산금 원로수당 - 만 55세이상자 순수 교육경력 30년이상인자 작년까지는 1,4,7,10월 1일자 기준이지만, 올해는 매월승급으로 교직수당가산금 기준일이 매월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16. [교직발전기획과]

○ 교직수당가산금 지급 기준일에 대한 안내드리겠습니다. 교직수당가산금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의 특수업무수당지급표에 명시되어있는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이 금년 1월 1일 시행으로 많은 부분 개정되었으며, 동 규정 제31조에 근거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한 상당부분 개정되었습니다.

○ 이 개정으로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교직수당가산금 조항 중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분이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으로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직원 공제회 종신보험료 납부

질의

○ 보험회사가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데 교직원 공제회의 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가 안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20. [교직발전기획과]

○ 교직원 공제회에 확인한 결과 보험료 카드수납시에는 보험료의 3.0% ~ 3.5% 정도의 수수료 납부 등 비용증가가 불가피하여 보험료 상승요인을 초래할 수 있어 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규모가 확장 정도를 고려하여 보험료 카드 수납 제도를 검토 계획 중임을 알려왔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맞춤형 복지보험 문제 제기

질의

○ 현재 교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보험을 생명 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입원보장보험은 기존 보험에 들어있는 경우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중 생명보험 의무 가입의 경우도 기존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선택사항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보험 가입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지 (더군다나 생명보험에 벌써 들어있는 상태라면) 정부가 일률적으로 강제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8. [교직발전기획과]

○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있어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이해가 되오나, 법령에서는 "생명/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사항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육아휴직지침 및 교육법전

질의

○ 2008.1.1 일 개정된 육아휴직지침 이후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나 수정된 내용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육아휴직지침과 교육법전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 좀 알려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09. 3. 2. [교직발전기획과]

○ 개정된 육아휴직지침은 우리부 홈페이지〉정보마당〉이전게시판〉정보자료실에 지침이 탑재되어 있으며, 첨부파일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법령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검색어 교육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검색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 추가된 내용이나 수정된 내용은 '휴직신청당시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개정되었으며, 학기단위로의 휴직이 추가 되었습니다.

교직원 직무연수 장소가 본교일 경우 출장신청 가능 여부

질의

○ 교직원 직무연수와 관련한 출장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출장이라함은 - 상사의 명을 받아 [정규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올해부터는 각종 연수여비도 정산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2. 방학중 교원 직무연수 장소로 본교가 정해졌으며, 본교 교사 몇명이 해당되고, 일비도 교부되었습니다. 이경우, 본교 연수대상 교원이 본교로 출장을 내고 출장비(일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3. 출장을 낼 수 없다면 여비목적으로 내려온 일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것 같아서요.

회신 회신일 : 2008. 7. 28. [교직발전기획과]

○ 해당 직무연수 시 교육훈련비 및 여비는 [공무원교육훈련비지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78호)]에 의해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교직원이 본교에서 직무연수 하는 경우도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이 때 합숙, 비합숙 교육인지에 따라 해당 여비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합숙일 경우

1. 운임: 미지급
2. 일비: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지급/기타일은 미지급
3. 숙박료: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4. 식비: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 비합숙일 경우

1. 운임: 미지급
2. 일비: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지급/기타일은 공무원여비규정상 [별표2] 일비의 5할 지급
3. 숙박료: 미지급
4. 식비: 공무원여비규정상 식비의 1/3 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 그러므로, 출장으로 처리하시되 해당 여비의 정산은 합숙, 비합숙 여부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6.25사변일이 국가공휴일이었던적이 있는지

질의

○ 1977-1979년 동안 국가기념일인 6.25 사변일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기간 동안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어 교직원들의 휴무 및 학생들이 등교 안한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8. [교직발전기획과]

○ 1977-1979년 동안의 6.25 사변일의 공휴일 휴무에 관한 사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교직원 및 학생들이 휴무일이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주일학교 경력이 교직경력에 인정되는지

질의

○ 교회에서 주일학교(중고등부) 교사직을 맡고 있는데요. 교직에 경력에 일정부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1.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이하 환산율표라 함)에 있는 종교단체의 교직자로서 근무한 경력(제4류(6할))은 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전임전도사, 선교사, 신부, 수녀, 수사, 불교승려, 총무원임명 주지, 원불교 교역자(교무, 도무, 덕무)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일학교 등에서 학생부 선생님의 명목으로 활동한 경우는 종교단체의 교직자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별 외국대학 현황

질의

○ 유학휴직에 필요한 공인 외국대학 및 어학연수기관에 대하여 유학휴직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16.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부에서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기관만 관리감독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국가별 외국대학 및 어학연수기관등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교육공무원 인사실무에 의한 유학휴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학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나. 휴직사유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다. 휴직의 요건

· 휴직 대상 : 남 ·여 공무원

· 유학 또는 연구 ·연수의 범위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게 되는 경우
-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자기비용에 의한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경비부담 초청도 포함)

※ 국비유학의 경우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교육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휴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40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장기파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임

※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연수기관의 정의

* 교육기관·연구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 ·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함

* 연수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을 포함한다)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함

- 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 정부기관 부설연구소, 교원연수원, 국제어학교육기관,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시 허용

국어과목과 한문과목이 상치교과인지

질의

○ 시골 중학교에서 전출과 동시에 감축된 교감선생님께서 가르치시던 한문과목의 담당자가 없습니다. 교무부장 이하 타교사들은 국어와 한문이 상치과목이 아니라며 국어과목 선생

님이 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치(相馳)교사는(전공과목 이외의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00교육청에서는 상치교과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 교원이 획득한 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목을 학교장이 담당하게 하는 것은 위법(초.중등교육법 등)"이라는 결과가 있는 만큼 시수가 학교에서 제일 많은 국어담당 선생님이 꼭 한문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국어과목과 한문과목이 상치교과입니까?
2. 상치교과라면 한문과목의 수업을 누가 맡아야 합니까? 수업 시수가 제일 많은 국어담당자와 수업시수가 적은 타과목 담당자 중 누가 담당해야 합니까?
3. 학교에서 전공자가 없는 과목(순회교사도 담당할 수 없을 경우)을 비전공교사에게 배정해야 할 때, 가장 타당한 배정기준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8. 29. [교직발전기획과]

○ 상치교사와 관련한 법령이나 지침 등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치교사란 소지한 교사자격증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치교사와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도교육감이 교원의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단위학교 내에서는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국제학교 교사 지원 자격에 관하여

질의

○ 국제학교 초등에서 근무를 하려면 정교사자격증만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나라별 지원자격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부시절 중국어를 전공했는데요. 교육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전공' 학위를 받으면 국제학교 교사지원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7. [교직발전기획과]

○ 국제학교 초등과정의 교원임용의 경우 해당국의 학교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의 경우에는 정교사 자격종별에 의한 초등, 중등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국제학교의 경우

임용권자가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고용계약에 의해 이루워짐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국제학교에 직접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파견 시 현직교사의 고용휴직불가방침

질의

○ 교육공무원이 해외봉사단원으로 근무할 경우 고용휴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재도를 개선하였다고 하는데 고용휴직이 확대되는 방향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30.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이 KOICA 해외봉사단에 선발될 경우 고용휴직이 가능하도록 한 지침은 올해 우리부의 학교자율화 기조 및 '학교규제 지침 일괄정비 계획'에 따라 2008.12.31자로 일괄 폐지되었습니다. 비록 동지침이 폐지된 것은 2008.12.31이지만, 우리 부는 이미 모집공고(2008.11.28) 시점 이전인 7월부터 '학교규제 지침 일괄정비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008.11.12에 동 계획을 확정 통지한 바 있습니다.

○ 우리부가 KOICA에 답변한 사항은 교원이 KOICA 해외봉사단에 선발되는 것은 '고용'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교육공무원법의 고용휴직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린 것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휴직의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하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향후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교육공무원의 참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우리 부 소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군 근무경력 인정 기간 문의

질의

○ 1977년도에 현재의 대학교원으로 임명되면서 이전 군 복무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때 장교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받았습니다. 장교 임관전에 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이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 [교직발전기획과]

○ 하사무관으로 군복무 근무경력 인정은 병역법에 의한 병무청의 병적조회후 호봉재획정 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경력과 학위경력 중복시 호봉획정

질의

○ 군경력과 학위경력 중복시 호봉획정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학원 학위 이수기간은 휴학 등을 제외하고 입학일을 기준으로 실제 수학기간(석사 2년, 박사 3년)을 인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석사등록후 군휴학을 하게 되었을 때 호봉획정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3. [교직발전기획과]

○ 대학원학위과정 이수기간은 휴학 등을 제외한 실제수학 기간 만을 인정하도록 되어있고, 대학원 입학일을 기준으로 석사의 경우 2년, 박사의 경우 3년을 연구경력으로 인정받습니다. 말씀하신 교원의 경우 석사과정 중 군입대를 위해 군휴학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군휴학 또한 실제수학기간에서 제외되는 휴학에 해당되므로 해당 교원의 경우 입학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시되 군휴학기간을 제외하시어 기간을 산정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연히 이 경우 경력중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경력이 교육공무원승진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이 되는 지요?

질의

○ 군복무를 마치고 대위로 예편한 후 2003년에 임용이 된 교사입니다. 호봉과 교육경력에는 위의 기간이 포함이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위의 경력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포함된

경력평정기간에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9.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의 별표 1에 의한 경력의 등급 및 종별경력 중 가경력 3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력평정기간으로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오나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명부작성권자인 임용청의 교육감이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해당 교육청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군미추 추가 신청을 바랍니다.

질의

○ 85년에 군대를 갔다와서 1990년 2월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졸업하고 사립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군대에 갔다와서 발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군미추특별법이 한시적으로 발효되어 많은 사람이 공립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학교생활에 바빠서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지금 알아보니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졸업한 사람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신분 보장을 받으며 오로지 2세 교육에 전념하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3. [교직발전기획과]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서는 "①미임용자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전형에 응시하거나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미임용자가 등재되어 있던 임용후보자명부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미임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②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미임용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미임용등록자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귀하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자세한 문의는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후 복직에 관한 문의

질의

○ 2006년 3월에 신규임용되어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을 신청한 특수교사 입니다.

1. 복직시 원적학교로 복직하는것이 원칙인지 알고 싶습니다.
2. 학교사정이나 교육행정 상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 원적학교로 복직을 못할 시 행정처리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현재, 원적학교에 복직서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원적학교에 정식 특수교사가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원적학교가 아닌 다른학교로 1월 17일에 복직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5. [교직발전기획과]

○ 휴직 후 복직 및 근무지 배치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임용권의 일부로서 임용권자가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재량으로 실시합니다. 통상 6개월 이상의 장기휴직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결원보충을 하게 되며 이 때 휴직자는 복직시 휴직당시의 학교로 발령받는 것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가능한 한 휴직당시의 학교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교원 수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복직조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교육청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반휴직 조건 문의

질의

○ 현재 알제리에 파견되어 근무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중등교원인데 휴직을 하고 함께 거주를 고려 하고 있는데 현재 알제리는 테러문제, 교육여건 등으로 외국인이 거주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 우리공사는 가족이 인근국가(스페인 등)에 거주하도록 고려했지만 배우자는 인근국가 거

주시 휴직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휴직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26. [교직발전기획과]

○ 동반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하여는 법령상 규정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인근국가에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반휴직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휴직의 허가권자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휴직의 허가권자(교육청)는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하므로 거주지를 달리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년수 산입에 대해

질의

○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인데 발령받기전에 시립도서관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고 다시 9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한 공공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근무년수에 50%는 산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9. [교직발전기획과]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의한 임용전 경력 산정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2월 이상 상근(행정업무종사)한 경력이었을 경우에는 5할의 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시립도서관의 대체인력의 임용형태 및 조건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채용형태가 계약직일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을 것이나 호봉획정기관에서 전력조회를 통하여 2월 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에서 지출한다는 증빙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제 교사 호봉 책정에 대한 궁금점

질의

○ 현재 기간제 교사로 근무중입니다. 호봉 책정할때 학력부분에서 4년 대학 졸업후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하나 더 취득하였습니다. 1년 동안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부분은 호봉산정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4년제 졸업(교사자격취득)후 1년동안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타학위 취득 후 기간제 교사 근무 이럴때 1년동안의 학점은행제 졸업에 대해 80%의 호봉을 인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2. [교직발전기획과]

○ 학력산정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시에는 안타깝지만 동등학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동등자격에 의한 인정학력인「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고등교육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능하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기간제 교사 나이를 연장 요청

질의

○ 기간제교사를 65세로 연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할때가 많은데 6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2. [교직발전기획과]

○ 교과부에서는 예전에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의 정원을 62세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동 지침은 2008.4.15자로 폐지되었으며,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시도교육청 또는 단위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임용이 가능토록 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에서와 같이 62세로 정년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희망하는 교육청이나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사는 채용신체검사를 왜 매년하는지요?

질의

○ 정교사는 채용시 단 한번만 채용 신체 검사를 하면 되는데 기간제 교사나 강사는 왜 매년 학교를 옮길때 마다 다시 하는지요? 그리고 공무원용과 일반용이 내용상 차이가 없는데도 가격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굳이 공무원용을 강용하는것도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9. [교직발전기획과]

○ 기간제 교사 및 시간강사의 신체검사는 유효기간(보통 1년)이 있으므로 원본을 복사(원본대조필)하여 소지하여 유효기간까지 사용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공무원용으로 채용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기준에 준하는 자격을 요함으로 공무원용으로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08.4.15부터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거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급을 주지않는 것은 형평성 어긋나지 않는지

질의

○ 기간제교사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7. 19. [교직발전기획과]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 제1항에는 공무원에 한하여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본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정한 규정을 따르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합리적인 성과상여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질의

○ 40일간에 병가를 신청한 교사가 있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병가 후에 17일여일 간의 연가를 신청하고 1개월 정도 병휴직을 낸다고 합니다.

- 이럴 경우에 기간제교사는 계약연장으로 해야하는지?
- 아니면 기간제교사는 계약만료된걸로 보고 시간강사로 재 채용하고 또 기간제교사로 채용해야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08. 9. 3.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기간제교사의 임용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강사의 임용 등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급임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강사로의 임용보다는 기간제교사의 임용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기간제교사로 임용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전에 해당교육청 담당장학사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교과 교사중 공업분야 자격(기계, 전자 등) 소지자가 기술교과의 교감 승진 가능 여부

질의

○ 현행 중등학교의 기술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는 기술 또는 기술.가정이나 공업분야(기계, 전자, 전기, 화공, 건축, 토목, 금속 등)의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이는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교과별로 교감 승진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국어과는 국어1급 정교사(H1국어) 자격 소지자가, 수학과는 수학1급 정교사(H1수학) 자격 소지자가 승진 대상이 되어 승진 할 수 있는 것처럼 현행 공업분야의 1급정교사(H1기계, H1전자 등) 자격 소지자가 3년이상 기술을 가르치고 있을 때 기술과로 교감 승진 대상자가 되어 승진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5.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 42조(명부작성권자) 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시도 교육감의 권한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면평가의 문제점

질의

○ 다면평가는 관리자의 수직적 평가를 피하고, 동료의 수평적 평가를 택한 평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지침을 살펴보니, 2007년에는 평가단을 교직원 비밀투표로 구성했으나 2008년부터는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다면평가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사실 관리자 일방의 근무평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학교는 다면평가단을 비공개로 임명할 것이라고 하는데 피평가자가 평가자를 모르는 것은 평가가 아니라 감시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6. [교직발전기획과]

○ 사립학교는 강제사항은 아니나 교육청에서 평가자료를 수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의4 2항에 의거 다면평가자는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인자는 교장이며 그 구성방법은 확인자가 결정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운 방식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반드시 비밀 투표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가단에 대한 공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평가단을 공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나 서로를 불신하는 분위기를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퇴직자의 퇴직 일자

질의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동법 제33조 4호에 의한 당연퇴직자의 퇴직일을 형 확정일로 잡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검찰청으로부터 처분결과를 통보받은날로 해야하는지요? 형 선고 확정일로 퇴직일을 정할 경우에 면직 발령을 낼 때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6조의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1-3호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퇴직발령일을 소급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9. [교직발전기획과]

○ 국가공무원법 상 당연퇴직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 제4호에 의한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므로 형확정일을 당연퇴직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내용에 대한 인사발령은 형확정일로 면직을 발령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이미 확정된 당연퇴직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신 내용만으로는 임용일자 소급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인사발령은 형확정일을 기준으로 당연퇴직을 통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의 임용일자 소급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2036 판결] 등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해당 내용은 http://glaw.scourt.go.kr에 접속하시어 검색 가능합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와 인가 대안학교에서 교사 경력인정에관한 문의

질의

○ 현재 대안학교에 지원하고자 준비하는 예비교사 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사경력 및 호봉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인가학교와 비인가학교의 호봉과 경력 책정은 어떻게 환산되나요. 대안학교 근무후 일반 공립학교에 들어가도 얼마나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1.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부에서 발간한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을 근거로 임용전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임용보고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는 교사경력 및 호봉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인가된 대안학교의 경우 교사경력을 100%인정하고 있으며, 대안학교 근무 후 일반 공립학교에 임용되었을 경우에도 100% 호봉경력은 100%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교육조교의 경력인정 부분

질의

○ 중등임용을 준비하면서 사립대학교에서 교육조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중등임용이 될 경우 교육조교의 경력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9. [교직발전기획과]

○ 임용전 대학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정원 내에서 유급,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이 인정됩니다. 연구전담 조교로 근무하셨다면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아 10할을 인정하고, 행정조교 등으로 근무하였다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의하여 국립대인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8할을, 사립대인 경우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5할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임용권자인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경력인정에 대한 문의

질의

○ 1989년 2월 국립사범대학 졸업, 1991년 3월 교육대학원 입학, 1995년 2월 교육대학원 졸업, 1992년 3월 교원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교원 임용되기 이전인 1991년 3월부터 1992년 3월까지는 교원경력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91년 3월부터 1992년 3월까지의 1년에 대한 대학원 경력이 호봉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18. [교직발전기획과]

○ 대학원경력의 인정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의한 임용전 경력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위 취득을 시점으로 실수학경력을 인정하며 보통 석사는 최대 2년, 박사는 3년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인 1991년 3월부터 1992년 3월까지의 기간 중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정보마당〉정보자료실〉학교정책국〉검색번호3 교육공무원보수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석사학위로 1급정교사를 받았을 경우

질의

○ 발령일은 2004.3.1일자이고~현재까지 공립초등학교에 특수교사로 근무 중이며 자격증은 초등특수교사 2정입니다.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이것을 초등특수교사 1급정교사로 했을 경우 호봉승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격증만 1급정교사로 받고 호봉승급과는 상관이 없는지요?

○ 1급연수를 통해 1급정교사 자격을 얻은 후의 호봉승급과 비교하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받은 석사학위를 1급으로 했을 경우 연구실적으로는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런가요? 또 만약 제가 대학원에서 받은 석사학위를 연구실적이나 1급정교사로 사용할때 석사학위만 취득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동시에 일정한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9. 8. [교직발전기획과]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재직중에 자격이나 학력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 호봉을 재획정하므로 자격의 변동의 사유로 호봉승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석사학위 1급으로 연수실적을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연수지명에 의한 자격취득시 가능할 것이며 석사학위의 연구실적 또는 1급정교사 사용의 중복 사용 여부는 해당 교육청의 교원연수 등에 관한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수강시 복무관계

질의

○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야간대학원에 다니다가 지도교수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간에 대학원 수업을 받아야할 입장입니다. 1주일에 하루 정도 오후에 시간을 내어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14:30). 이런 경우 현직교사로서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16. [교직발전기획과]

○ 학생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본인 연가 등으로 기관장의 결재을 득한 후에 사용 가능하며, 교원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연구조교 경력

질의

○ 대학교 연구조교(전액장학금면제)로 근무한 경력은 환산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총장발행의 경력증명서 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9. [교직발전기획과]

○ 정원 내 대학조교란 고등교육법 제14조3항에 의한 교직원(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과 조교)을 말합니다. 임용전 대학조교로 근무한 경력은 정원 내에서 유급,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이 인정됩니다. 연구전담 조교로 근무하였다면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아 10할을 인정하고, 행정조교 등으로 근무하였다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2에 의하여 국립대인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8할을, 사립대인 경우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5할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대학원 편입학

질의

○ 교육대학원 수학교육과 모든학기 전과정을 수료하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학연한 초과로 논문제출기한 넘김) 다시한번 타 대학원 편입 교육행정을 전공하려 하려는데 1. 편입이 가능한지 2. 편입해서 졸업하여 교육학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교원승진규정에 의해 연구실적점수 1.5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0. [교직발전기획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편입학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편입할 학교에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승진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점수의 경우 통산 연구경력으로 인한 석사학위 취득을 기준으로 말씀하신대로 1.5점이 반영되나,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 점수의 판단은 명부작성권자인 해당 교육청 교육감이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대학원과 군경력이 겹칠때의 호봉

질의

○ 비사대를 졸업하고 군 장교 복무. 1997.10.1~2003.9.30 (6년) 장교복무중 교대원 진학. 2000. 3~2004.2(휴학을 두번 함) 2004년 3월 부터 계속 기간제... 총 5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몇호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역 후에도 5개월 정도 대학원 학업을 계속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기간제를 했습니다만 군경력과 대학원이 모두 인정되는지 아니면 하나만 인정되는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3. 16. [교직발전기획과]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임용전 경력산정시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경우 이 중 유리한 것 한가지만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중복된 기간이외의 수학기간을 재산정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향후 임용시 호봉획정권자가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아교육전공 대학원 문의

질의

○ 대학원 유아교육전공에 대학교-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유아교육전공이라고 된곳이 있고, 대학교-일반대학원-일반대학원-유아교육과(유아교육학과)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던데 정확한 차이점을 알 수가 없네요.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 상관하지 말고 원하는 아무 대학원이나 진학을 해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5. 20. [교직발전기획과]

○ 특수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면 표시과목 특수교육(유치원)으로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일 경우에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동반휴직

질의

○ 초등학교 교사인데 9월 1일자로 동반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일찍 출국하여 방학중에 여행을 하면, 즉 출국날짜가 휴직날짜보다 빠르면 안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14. [교직발전기획과]

○ 동반휴직의 경우 휴직명령권자에게 허가를 득한 후에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기단위로의 휴직은 해당교육청의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방학의 경우 교원은 복무지도담당자의 지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휴직은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인사사항이고, 방학 중 여행은 복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별도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반휴직 가능 여부

질의

○ 배우자 될 사람은 외국에서 근무중인 외국인입니다. 배우자가 본국에서 2~3년 정도의 동반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13.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0호에서는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동반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반휴직의 경우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동반휴직은 허가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은 임용권자인 해당교육청의 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동사무소 통장경력 호봉획정시 인정여부

질의

○ 동사무소 통장경력이 교원 호봉획정시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9. [교직발전기획과]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경력 인정 반영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통장 경력이 별표의 어느 유형에 적용되어야 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에 통장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임의 시기

질의

○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임을 매년 2월말과 8월말로 하는데 명예퇴임도 정년퇴임처럼 학기말

그 기간에만 해야합니까? 학기말이 아닌 평소에는 명예퇴임이 불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17. [교직발전기획과]

○ 명예퇴임의 시기는 교원의 임용권자인 해당 교육청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예퇴직 조건 순위

질의

○ 교원 명예퇴직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명퇴신청자 수가 그 지역교육청의 명퇴시키고자 하는 인원 수 보다 많을 경우 명퇴시키는 우선 순위가 어떻게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22. [교직발전기획과]

○ 명예퇴직 신청시 우선순위는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 특례규정'제5조제3항에 따르면,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7조제3항에 따르면, 상위직 공무원과 장기근속공무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해서는 시도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로교사 및 장기근속공무원, 과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교사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인정 경력

질의

○ 1989년 3월 16일부터 1994년 2월 28일까지 사립고등학교에서 근무한 후 현재 공립중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근무 경력 가운데 1989년 3월 16일부터 1989년 4월 13일까지 근무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정상적인 교도부에서 교사로서 업무 및 학생지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

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10. [교직발전기획과]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를 근거로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시 임용전 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원의 범위내에 있고, 유급, 상근(8시간)이상 근무하여야 10할 인정이 가능합니다.

- 또한 임용전 경력의 산정은 해당 교원자격소지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 무자격 교사로서의 경력은 동규정 별표 22에 의한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경력을 환산 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유급, 상근이며, 정원내에서 채용되었다면 5할 적용하며, 그렇지 않다면 3할)
- 참고로, 사립학교에서 임면권 자(법인이사장)에게 해직요구, 정원외의 임용, 담당과목의 상이, 강사의 임용(보고.승인 불필요), 신원조사 결과의 하자, 무자격교사 등 관할청에 미 보고된 사립학교근무경력은 정규 교원근무경력으로 볼 수 없으므로 ①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22 제5류의 2에 의거 5할을 적용 ②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동 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충족여부는 관련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청 호봉획정담당자의 전력조회를 통해 근무경력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사학위 점수 인정 여부

질의

○ 00효대학원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학 박사가 아니라 효학 박사로 학위가 나간다고 하는데 연구 점수 3점이 부가 되는지 아니면 2점이 부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2.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조에 의한 학위취득실적평정을 살펴보면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학위중 하나를 평정의 대상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중의 학위취득실적(교육전문직원경력

이 있는 교감의 학위취득실적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학위취득실적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등 직위에서의 학위취득실적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 다만, 제33조제4항에 의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2.6.25, 2007.5.25〉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동법 37조 3항을 근거로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해당 임용권자인 교육청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며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경우 박사는 3점, 그 밖의 학위 1.5점임을 설명드립니다. .

발령 후 군경력 인정

질의

○ 1986.9.3일 발령을 받고 약2개월 좀 넘게 교직생활하다 1986.11.24일 입대(보충역) 1988.5.4일 제대(소집해제) 약18개월 정도 복무하고 1988.5.25일 복직이되었습니다. 발령 후 군복무기간이 전부경력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제대후 복직되기전까지는 인정이 안되는지 또 보충역은 일요일, 공휴일은 군경력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12. [교직발전기획과]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경력환산시 군인경력의 경우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 군경력은 10할 인정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됩니다. 또한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자는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내용상으로는 보충역의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교육청의 호봉획정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 가산점 인정 확인

질의

○ 초등학교에서 중등으로 전직한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한 가산점으로 초등학교에서

취득한 연구 가산점은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가산점(벽지 가산점)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가산점)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에서 취득한 벽지 가산점이 중등학교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지요? 경력, 연수, 연구 가산점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벽지 가산점도 인정되는지와 인정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9. [교직발전기획과]

○ 전직된 경우에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을 포함하되, 질의하신 도서벽지에 근무한 점수에 대한 가산점은 선택가산점으로 시도에 따라 교육감이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생님의 소속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항목과 점수의 기준이 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전직한 경우의 인정여부나 점수의 크기가 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건 겸직 교사의 수당

질의

○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역사과목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보건교사도 겸직으로 맡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보건교사는 정교사와 기간제교사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겸직교사의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10. 31. [교직발전기획과]

○ 보건교사 수당 지급대상자는 보건교사로 임용되어 해당업무에 종사할 때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교사가 실제 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지라도 교직수당가산금 즉 보건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건교사 자격을 소지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였다면 동 수당지급이 가능하오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활동수당의 지급대상이 안타깝지만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교사 산가시 보건업무수당 지급

질의

○ 보건교사가 출산으로 인한 산가를 들어갔을 경우 교직수당가산금(보건업무수당)은 기간제교사에게 보건업무 담당으로 임명 하고 지급할 수 있는것인지요? 정교사인 보건교사와 기간제교사 둘다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29. [교직발전기획과]

○ 보건교사의 출산으로 인한 특별휴가 중에도 보건교사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교사 자격을 소지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였다면 동 수당을 기간제교사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지침은 우리부에서 발간한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가능여부 질의

질의

○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소속 학교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1. [교직발전기획과]

○ 통산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 이외의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64조제1항은 공무원이 재직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종사할수 없고, 영리업무의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직무(공무는 아님)를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겸직허가의 대상이 되는 직무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공무원법복무규정 제25조에서 금지대상 영리업무를 제외한 영리업무 둘째는 비영리업무, 물론 이경우

도 행위의 지속성이 있어야 함.

○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영리행위인지 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무인지여부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당해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행위의 내용과 성격,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는 공무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영리행위업무 금지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교원의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도 살펴보아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직시 휴직전 학교로 복직되는지

질의

○ 남편으로 인해 동반휴직을 하고 외국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고용휴직으로 1년을 연장하여 외국에 있고 2월 28일까지입니다. 휴직기간은 2년이고 휴직의 사유가 위와 같이 다른 경우 복직시 휴직전 근무한 학교로 복직되는 건가요 아니면 타교로 복직되는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27. [교직발전기획과]

○ 동반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휴직 기간 및 휴직사유에 관한 사항은 휴직의 허가권자에 상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휴직의 허가권자(교육청)는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하므로 휴직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직시 휴직전 근무한 학교로의 복직여부는 발령권자인 해당 교육청의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전공 인정 여부

질의

○ 중등2급 교육학(부전공: 일반사회) 자격으로 사립 고등학교에 일반사회 교사 발령을 받아 4년간 근무 후 중등 1급 일반사회 자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학 자격은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9. 4.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학 자격증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인정에 관한 사항은 근무성적평정권자인 해당 교육청의 지침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문경고가 징계로서 비정기 전보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

○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을 받고 00 표창으로 감경받아 최종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전보조치를 당하였습니다. 비정기전보 사유는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 00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 따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수 있다

1호 정원의 변경, 승진, 강임의 경우

2호 생략

3호 징계처분을 받은자

4호 생략

○ 위 인사기준에는 징계처분을 받아야 비정기전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닌데도 비정기전보를 한 것이 위 인사관리 기준에 적합한 행위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23. [교직발전기획과]

○ '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

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 표창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판 2001두 3532, 2002.7.260)

○ 불문경고에 따른 전보 및 비정기전보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 소관사항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비정규직보호법률 적용 문의

질의

○ 2007.07.01부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령』(이하 "기간제법")이 시행중인 바,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원도 위 법률에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 규정을 살펴보면,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1. [교직발전기획과]

○ 기간제교원은 다른법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사학연금 부담금 소급에 관한 건

질의

○ 00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였고 그후 **고교 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교 경력

1년 10일, 강사 경력 4개월 25일을 인정받았으나 부담금 소급적용(재직 기간 합산? 전문적인 용어는 잘모름)은 되지 않는다하여 이를 적용받을 방법이 있는지 질의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1. [교직발전기획과]

○ 00대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을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을 대상과 기간이었으나 학교에서 민원인을 연금법 적용 대상자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고에서 근무한 경력은 '관할청에 보고된 정식 교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한 경력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정한 재직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소급적용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치 과목의 기준

질의

○ 공통사회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의 사정으로 지리 과목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 공통사회 자격으로 현재 고등학교 2~3학년의 한국지리, 경제지리, 세계지리를 담당하는 것은 상치 과목인지가 궁금합니다.
2. 매년 교육청에 상치 과목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상치 과목 교사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2.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별표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에 의거하여

1. 공통사회자격소지자는 지리교육과 관련학과 또는 학부로 상기과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2. 소규모학교의 경우 과목에 해당하는 모든 교원이 배치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학교장이 학교 형편에 의해 다른 과목의 지도를 요청할 판단하여 2과목 이상을 담당을 요청하는 것으로, 상치교사는 공식적인 법적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치교사의 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 개정된 승진 규정에서 석사학위 2개 인정여부

질의

○ 2007년 8월 30일에 새로 개정된 승진 규정에서 석사학위 2개 인정여부에 대해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석사학위 2개가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00신문 교육민원을 보니 새로운 승진 규정에서도 20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까지는 석사학위 2개를 개정조항 제 37조가 시행된 후에도 평정대상으로 인정한다라고 쓰여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9.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부에서 기 송부한 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07.7.26)중 (석사)학위취득실적평정 대상에 대한 지침 중 논란이 되었던 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까지는 석사학위 2개를 개정조항 제37조가 시행되기 전인 2008년 12월31일까지만 평정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20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까지는 석사학위 2개를 개정조항 제37조가 시행된 후에도 평정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하여 2008.5.20 일자로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당해 기관에서는 향후 승진업무 처리시 개정후에도 평정대상으로 인정이 가능하오며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과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질의

○ 1년에 두 달만 근무하면 성과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근무하고 3월 1일자로 휴직하려고 합니다. 만약 1월 중에 출산휴가 기간이 끼어 있으면 성과급을 못 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29. [교직발전기획과]

○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있어서,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의무 배치건

질의

○ 올해 소방안전교육사가 처음 시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배치가 되는 제도는 언제쯤 시행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학생들의 조기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가 다져진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소방안전교육사 배치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20. [교직발전기획과]

○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의거 보육시설 및 유.초.중등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 소방안전의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방안전교육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으로, 소방방재청장 등은 각급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학교장과 교육일정 등을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은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 및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검정공사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동 소방안전교육사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현재 각급학교에 의무배치에 대하여는 우리부에 협의 요청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석교사의 보전수당가산금 지급여부

질의

○ 수석교사라는게 새로 생겼는데 저희 급여작업을 할때 보직구분에 수석교사라고 넣어주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별표 11(보전수당가산금)이 없어집니다. 수석교사라고는 해도

교원이기 때문에 보전수당가산금을 지급하는게 맞을꺼 같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9. [교직발전기획과]

○ 현재 수석교사는 시범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보직교사 개념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별도로 직급수당이 아니라 '연구지원비'라는 이름으로 월 15만원 지급되도록 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급여시스템상으로는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은 수석교사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시스템 관리자 또는 수당업무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규정에서 석사학위를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가능한지

질의

○ 승진규정제33조제4항 :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 또는 [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가능하다고 하는데 1급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자격연수 성적이 90이하로 좋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석사학위를 연구점수에 평정하지 않고 자격연수 성적에 평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9. [교직발전기획과]

○ 자격연수 대체에 관한 내용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지 않고 석사학위로 대체하는 경우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반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승진후보자 평정지침(교육성적 인정 범위)

질의

○ 승진후보자 평정 지침의 자격연수 인정 범위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12. [교직발전기획과]

○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받고 1정자격연수에서의 성적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느냐를 문의하셨는데 이것은 승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합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3조 4항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A학점에 해당하는 점수는 대학원에서 99점을 받았다고 해도 평정점은 90점을 받게 됩니다.

시간강사경력인정에 따른 통상시간에 대하여...

질의

○ 초중등학교 교사의 경력환산에 있어 시간강사경력계산법이... 실제근무한주당시수/공무원통상주당시수=일수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통산주당시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법령에 의하면 2005.7.1부터 공무원통상주당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개정되었으며 교육공무원(일선학교교사)은 2,4주토요일만 휴무하여 평균 주당42시간 근무합니다.

○ 그러면 2005.7.1부터 근무한 시간강사경력을 환산하려면 통산주당시수를 법령에 있는 주당40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교육공무원(학교근무)의 주당42시간으로 통상주당시수를 계산해야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18.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 또는 보수업무 담당자들이 교육공무원 보수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질의와 문의빈도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부에서는 해설 및 문답형식의 보수업무편람을 개정·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를 참고하여 시간제 강사 경력기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대상경력기간 = 시간제강사로 근무한기간*시간강사의 주당 수업시간/42
- 주당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 근무기간의 3할 인정

* 주당근무시간 : 2005.2.28이전 44시간, 2005.3.1~2006.2.28 43시간, 2006.3.1~ 42시간

※ "시간강사의 주당 수업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수업시간을 말하며, 주당 수업시간이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수업시간을 말한다.

영양교사에게 안전관리수당지급이 가능한가요?

질의

○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3의 수당에 한한다)을 지급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월 10,000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교원과 일반직 구분없이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8. 14. [교직발전기획과]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의 3 마'에 의하면 자격을 갖추고 관련 법령에 의거 위험물 관리자로 선임되어 실제로 종사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주권을 가진 초등교사의 복직여부

질의

○ 육아휴직중 남편이 캐나다에 가게되어 현재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향후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할 경우 영주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영주권 취득한 사실을 학교에 등록해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30. [교직발전기획과]

○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는 주 거주지가 외국으로서 국내에 재입국하여 2년을 초과하여 체재

하는 경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의 영주권 취득자가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자국내에 체재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상실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영주권)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영주권을 취득하고 교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격교육연수원 법인 분리 가능여부 질의

질의

○ 00닷컴에서는 교원원격교육연수원을 인가받은 바 있습니다. 기존 (주)00닷컴과 별도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기존 00닷컴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인력과 시스템, 과정 등을 그대로 이양하여 운영한다고 할 때, 관련 규정 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1. [교직발전기획과]

○ 기존의 시설 설비 등을 활용한다고는 하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원격연수원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포함한 신규 인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로교사의 복무및 대우에 대한 내용

질의

○ 교장 8년 만기로 원로교사로 전직하신 분에 대한 복무와 대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2. [교직발전기획과]

○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임기만료된 교장의 경우 원로교사의 우대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3제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1) 수업시간 경감, 당직근무의 면제

2) 명예퇴직대상자 선정시 우선 고려

3) 교내 행사시 우대

○ 이와는 별도로 원로교사는 소속학교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규임용교사에 대한 상담, 교내 장학지도 기타 학교운영 자문에 응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의 사항은 해당 교육청의 교원인사팀의 지침도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경력 인정

질의

○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인 00중고등학교에서 정규교사로 근무하다 00시교육청 별정직5급상당 공채에 합격하여 전직하게되었습니다. 초중등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교사의 유사경력(7할)을 인정받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00중고등학교는 대통령령에의한 학력인정 학교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8. [교직발전기획과]

○ 일반적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라 함은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교원으로서의 경력으로 인정받을려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제2조에 규정한 학교에 근무한 자격을 갖춘자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근무한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경력인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학휴직 연장을 이메일이나,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질의

○ 유학연수 휴직 연장시 외국에 있는 관계로 휴직연장을 한다면 한국에 가서 휴직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메일이나, 스캔한 자료, 편지등으로 통해서 휴직연장 신

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9. 1. [교직발전기획과]

○ 휴직연장 신청의 경우 제출하여할 서류들은 말씀하신대로 우편을 통하거나 한국내의 지인들에 의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는 해외에 나가있는 교원들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기 위함이며 경비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침으로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휴직연장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시어, 우편 또는 메일로 보내시기 바라며, 참고로 휴직연장에 따른 해당 교육청의 첨부 서류 중 반드시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있사오니 해당 교육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경력인정 범위와 기간

질의

○ 육아휴직 경력인정 횟수와 경우, 범위에 대해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1996년 10월 임신으로 인하여 임신육아휴직을 냈으나 유산으로 인하여 1개월 후(11월) 복직하였고, 다시 1998년 6월 임신으로 인하여 임신육아휴직(3년)을 내고 첫 아이를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휴직중 2000년 다시 둘째아이를 임신하여 2001년 3월 다시 휴직원을 내고 둘째아이는 2001년 8월 출산한 후 계속 휴직연장을 한후 2004.3.1일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

○ 현행법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은 둘까지 각각1년씩 2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셋째까지 각각 1년씩 3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만약 2회 2년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저의 경우 첫번째 임신으로 인한 휴직1개월을 1회로 보고 1개월을 경력인정받고, 또 실제로 첫째아이 휴직기간중 1년만 경력인정받아 총 1년 1개월의 경력을 인정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출산하여 휴직을 한 2명의 아이 휴직기간인 2년을 경력인정받을 수 있는 지 정말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29. [교직발전기획과]

○ 육아휴직의 경력인정의 경우 2007년 12월에 개정되어 2008.1.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시 자녀의 요건이 '휴직신청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서 '만6

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하였으며 근속기간 및 호봉경력의 산정의 경우 동번 제44조제4항에 의거 최초의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며 각각의 자녀 1인에 해당됩니다.

○ 다만,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계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얻고자 할 때에는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신청하고,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휴직신청을 하여 각각의 자녀에 대한 복직 및 휴직을 허가받아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휴직의 연장으로 간주되어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수당 및 근속연수 산입을 받을 수 없음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휴직에 관한 사항은 휴직의 허가권인 해당 교육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소속교육청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시에는 해외 거주가 불가능한지요?

질의

○ 지금 동반휴직 중인 초등교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동반휴직을 육아휴직으로 전환하고자 알아보던 중 육아 휴직시는 해외체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육아 휴직 중 해외 체류가 불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9.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의 휴직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자의 국내외를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휴직의 허가는 임용권자가 휴직의 목적 적합성 등에 대한 자체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휴직 목적 및 제반 상황에 대하여 소속 교육청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기

질의

○ 만 6세 이하까지 미취학 자녀를 두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3년생의 아이가 있고 육아휴직은 한 적이 없습니다. 2009년에 육아휴직을 하면 2010년 3월 5일에는 만 6세가 되므로 복직을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행법대로라면 만6세 이하, 미취학 두 요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초등학교 1학년인 동안(2010년)은 육아휴직을 할 수 없겠지요. 2009년 육아휴직을 하여 20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1. [교직발전기획과]

○ 신설된「교육공무원법」의 육아휴직 규정에 자녀(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제44조제1항제7호)로 취학 전 아동에 대해 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취학이후 1학년까지는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육아휴직사유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해외체류

질의

○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휴직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남편이 해외 파견근무를 가게 되어서 육아휴직을 하고 20개월짜리 아이와 함께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혹시 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 [교직발전기획과]

○ 육아휴직의 경우 그 사유와 요건이 충족된다면 임용권자인 해당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허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내 및 국외 거주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휴직 중에 있는 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2조에 의하여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사유의 계속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동태를 항상 파악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져 있으므로 해당 허가권자와의 상의가 필요할 것이며, 별도로 정해진 규칙이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호봉

질의

○ 첫아이때 육아휴직 1년하고 둘째아이때 육아휴직 1년을 한 교사입니다. 둘째 아이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호봉 책정을 안해주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9. 2. [교직발전기획과]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산입(자녀 1인에 대한 총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하여 승급기간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자녀의 첫째아에 대한 산입 적용이후, 둘째아에 대한 산입을 다시신청하시면 적용받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의 경력산입에 관해

질의

○ 교사로서 육아휴직을 2차례에 걸쳐서 사용하였습니다. 최초휴직 1년은 11개월을 사용하였는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2000년도에 법이 변경되면서 경력에 산입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2001년 4월 2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35개월 휴직을 하였는데 복직을 하면서 '최초 1년만 경력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두번째 휴직의 경우는 35개월 모두 경력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두번째 육아휴직의 최초 1년도 경력에 산입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28. [교직발전기획과]

○ 문의하신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에 대한 근속기간 인정은 자녀 각각에 대해 인정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데, 당시에는 1세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이 허용(현재는 만6세 이하 취학전 자녀)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민원인의 두번째 육아휴

직은 첫째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다른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근속기간의 인정은 두 번째 육아휴직 최초 1년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중 출산

질의

○ 육아휴직이 끝나기 20여일을 앞두고 출산을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22. [교직발전기획과]

○ 육아휴직은 교육공무원법 44조에 의한 인사에 관한 사항이며, 출산휴가의 경우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복무사항의 하나로 현재 재직중인 여교원이 출산을 하게 된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더 이상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복직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의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휴직 허가권자인 교육청 교원인사과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규정에 관한 문의

질의

○ 기본교육과정의 전면개정으로 인하여 내년부터 초등부 1, 2학년은 치료지원을 시행하고 초등부 3학년부터는 기존의 치료교육을 재량활동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특수학교의 경우 초등부 1, 2학년의 치료지원 시행으로 인하여 치료교사 6명 중 1, 2명의 시수가 남게 됩니다.

○ 치료교사가 담임이나 교과를 담당할 수 있는지요?

○ 치료교사는 담임을 하지 못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요?

○ 담임을 한다면 초등을 해야 하는지, 중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치료교사 표시과목 전환연수(60시간연수)를 받아 "특수학교(중등) 재활과 복지" 를 가진 상태입니다.

(자격증 발급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9. [교직발전기획과]

○ 치료교사의 수업시수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인 해당 교육청의 지침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담임이나 교과를 담당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교사의 직무에 관하여 완전하게 법령에 규율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임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단위학교에서 교원의 업무분장사항 및 주당 수업시수, 수업 등은 우리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단위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별도의 지침을 마련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을 다녔을 때 호봉인정?

질의

○ 사범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사를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이번년도에 불합격하여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중에 일반대학원에 사범대 대학원생을 뽑는 것이 있어 시험을 보았습니다. 일반대학원 사범대 **교육과 이런식으로요. 그런데 주위에서 교사가 되어서 대학원 다닌 것을 호봉으로 인정 받으려면 일반대학원이 아닌 교육대학원을 다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또 나중에 승진을 할 때도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는 인정을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 또 제가 대학원을 1년 다니고 다음해에 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받게 되면 호봉에는 합격 이전에 다닌 1년만 포함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28.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부에서 발간한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2008)을 근거로 초임호봉 획정시 대학원경력은 연구경력으로써 학위취득을 기준으로 실제수학연수로 산정이 됩니다. 향후 교원으로 임용 후 석사학위 취득은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 취득시에 가산이 되오나,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인정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학원 재학 중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학력과 경력의 중복이 발생되므로 임용전 1년만을 실제 수학기간으로 산정됨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연수 인정범위에 대하여

질의

○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 후 교육대학원에서 상담교육을 전공하여 상담교사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교사 자격을 받은 대학원 석사학위를 자격연수로 대체 받고자 하는데 도에서는 아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점수가 저조한 다른 선생님들은 1년 과정의 전문상담교사 연수를 통하여 자격연수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처럼 대학원에서 상담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1년 과정의 연수를 받을 수 없어 영원히 자격연수 점수를 만회할 기회를 잃어 버리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저희와 같은 경우 1정을 받은 후 대학원에서 얻게된 상담교사 자격도 자격연수로 대체해 주실수 없는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25. [교직발전기획과]

○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11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석사학위 연계과정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취득한 자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자격연수 성적으로 평정 받을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함.

☞ 단, 자격연수성적평정은 동 양성과정의 이수과목 성적만을 별도 분리하여 평정하지 않고 교육대학원 성적 전체를 자격연수성적으로 환산 처리함. 이 경우 학위취득실적 평정대상에서 제외됨(「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 참조)

○ 위 내용에 근거하여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최고점은 90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원 공개전형의 정원 문의

질의

○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원임용시험계획이 공고되었는데 전체 국가공무원 정원이 동결되었으며, 따라서 유 · 초 · 중등 교과교사 및 비교과전문직(보건, 영양, 사서, 상담 교사)의 경우 정년퇴직,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규채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압니다.

○ 여기서 만약에 지금 교사가 100이라 하면 내년에 정년 퇴임하실분이 5명이다. 이러면 임용고시를 통해 5명을 더 뽑는다 라고 제가 이해 했는데 제대로 이해 한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15.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의 임용은 공개전형으로 선발하는 모든 교원에 대하여는 정원이 확정 되는 대로 해당 교육청에서 퇴직교원수와 신규교원수의 수요공급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여 각 과목별(비교과 포함)로 정원을 정하며, 이는 문의하신대로 정년퇴임 및 의원면직한 부분에 대한 충원도 포함하나, 이외에도 관련부처의 예산 및 공무원 정원과도 연계되어 책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교원 임용고시 문의

질의

○ 교원 장애인 임용고시 전형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 경증장애 같은 경우 장애급수가 5 ~ 6급인경우 교원 장애인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없는지와 교원임용고시 장애인 전형 앞으로 어떻게 나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19. [교직발전기획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2006년부터 각 시 · 도교육청은 교원임용시험에도 신규채용인원의 2%에 해당 인원수만큼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장애인교원모집에 대한 우리부의 새로운 방침은 현재와 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 2006년부터 현재까지 각시도교육청에서의 교원선발은 수급코자하는 과목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 보유자로 선정하고 있사오니, 귀하께서 응시코자하는 지역의 교원정책과에 문의하시면 올해이후의 교원임용시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애인 임용 조건에 대한 문의

질의

○ 정신장애는 1등급-3등급까지 있는데요.. 장애인으로 임용시험을 칠 경우에 정신장애도 자격이 주어지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9. 3. [교직발전기획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의거 교원도 장애인을 정원의 3%이상 고용(장애인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3%미만인 경우에는 6%)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신장애의 경우 지원 여부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용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교원정책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장애인을 교원으로 채용할 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단서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4조에 의거 신체검사의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될 경우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14.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기타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

재외국민 교육기관 파견 근무 경력

질의

○ 승진 규정에 보면 "재외국민 교육기관 파견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국제학교에 초빙되어 가는것도 해당되나요? 즉, 학교 자체의 초빙에 의해 해외의 한국국제학교에 간 경우도 재외국민 교육기관 파견 근무 경력에 해당 할까 궁금합니다. 또한, 한국국제학교 근무시 근평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9. [교직발전기획과]

○ 재외국민교육기관의 초빙교사로 그 학교에 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휴직을 하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재외교육기관에서 상근이냐 비상근이냐에 따라 교직경력으로 100% 또는 50%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평의 경우에는 근무를 현 소속학교에서 하지 않았다면 평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

질의

○ 원래 재외국민교육기관이란 외국에 있는 한글학교, 한국학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가 재외동포 학생들을 초청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립국제교육원에 근무했을 때 승진규정에 의한 가산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5. [교직발전기획과]

○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규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재외국민교육기관이라함은 외국에 설립된 학교 학원 교육원 강습소 토요학교 기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국립국제교육원은 맡은 업무가 재외국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재외국민교육기관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가산점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근무한 유치원교사의 경력인정에 대해...

질의

○ 재외국민교육기관으로 한국과 필리핀 모두에서 등록 및 허가된 교육기관인 '00한국아카데미'에서 3년동안 한국인아이들을 가르치고 올해 1월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유치원 2급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총 3년을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11.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에 의한 경력의 기간계산 방법에 의하여 재외교육기관에 고용되어 휴직되었을 시 상근은 100%, 비상근은 50%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는 교육공무원법의 승진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권자가 해당유치원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의거 경력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차(2차)민원 교육공무원 정년과 사립학교 교장의 임기의 해석

질의

○ 사립학교 교장 임기 중 교육공무원 정년이 되면 당연 퇴직해야 하는지요?

사립학교법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면) 개정당시 학교장으로 재임 중이였습니다.

※ 2006년 7월 17일 당시 법인 정관에는 임기규정이 없었음. 또한 개정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Q&A(2006.7.1.)교육인적자원부.사립학교법시행행정팀)Q3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학교장의 임기는? ◦ 경과규정은 없으나, 법적 안정성과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이 법 시행 당시 학교의 장으로 재임 중인 경우 그 임기는 보장하며, 기존 임기가 만료되는 자를 재임명하면 초임으로 봄

※ 잔여임기가 4년을 초과하거나 임기규정이 없는 학교법인의 경우, 최대 4년의 임기를 보장되어 2010년 6월 30일까지 재임 가능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그러나 시교육청 지침으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정년 ①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의 조항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중단(인건비)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의 정년이 사립학교법 교장의 임기보다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0. [교직발전기획과]

○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교원 정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원법상 정년과 사립학교 교장의 임기는 별개의 조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립학교 교장의 경우 정관에 의해 정년이 정해지며, 이는 교육공무원법상 정년 조항과 무관합니다. 다만,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 사립학교의 공공성, 교원정원 등을 고려하여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전과에 관해 의문사항

질의

○ 일반 중등교원의 경우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전공 등의 과정을 통해 특수교사 자격증 취득 후 전과가 가능한데 특수교사(중등)의 경우 특수교사 자격증과 함께 일반교과자격증(중등 국어, 영어 수학 등등)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 일반교과로의 전과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4.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의 전과의 경우 해당 임용청의 교원수급상황에 따라 전과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사자격증과 일반교과자격증을 소지하였을 경우 해당 교과의 T.O가 확보되어 해당청의 전과실시시기에 가능할 것입니다.

전국연구대회 승인에 관한 법령 질의

질의

○ 2000년 8월 7일부터 “공인연구대회”로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9회 대회를 운영해오

고 있습니다. 기 승인된 "공인연구대회"를 반복하여 매년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3.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연구대회는 '연구대회관리에관한훈령'에 따라 매년 연구대회 운영계획과 그 개최결과를 인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공인연구대회의 신규인정은 총괄부서에, 변경인정은 주무부서에 신청토록되어 있고, 개최결과는 총괄부서와 주무부서에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연구대회는 최초 신규로 인정받고 난 후, 매년 그 계획은 달라질 수 있고 또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연구대회를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매년 그 운영성과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총괄부서는 각 연구대회의 실적,효과 등이 당초 계획과 다르거나 특히 부진한 경우 연구대회의 개폐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매년 당해년도 계획에 대하여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과 총괄부서와 주무부서에 동시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 것은 연구대회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교사자격연수 직무연수 인정여부

질의

○ 올해부터 직무연수 성적을 1학점당 0.02로 학점제로 운영되어 교원의 직무연수 학점제을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가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 인정되어 학점으로 인정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2. [교직발전기획과]

○ 연수는 크게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나누며, 자격연수의 실적은 현재 직무연수로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임강사 경력증명

질의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교육대학과 전문대학의 조교수나 전임강사로 2년 이상 근무했다면 현직 교원이 아니라도 교원 자격시험 없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 사항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임강사 경력증명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육군3사관학교 경영학과에서 강사 및 전임강사로 2000년 하반기부터 2003년 6월까지 근무한 바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 [교직발전기획과]

○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 제8호에 의한 검정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지침을 정정하였습니다.

- 교육대학·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의 부교수로 3년 이상(1급의 경우)또는 전임강사로 2년 이상(2급의 경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비현직 교원 포함)
- 소지한 최종학위 분야와 강의한 과목 및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과목이 일치하거나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높아야 할 것으로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 위에서 '강의한 과목'이란 1급의 경우 총3년 이상, 2급의 경우 총 2년 이상 강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 이에 따라 출신대학에서 전임강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동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제출하여 정교사2급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직에 관해서 질문

질의

○ 유치원에 재직 중이며 교육대학원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여 국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유치원에서의 교직 생활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제가 국문학에 좀더 관심이 많아 전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직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9. 17.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전직의 경우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형태로써 임용권자인 해당 교육청 교육감이 교원수급상 필요한 경우 교원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당해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과 관련 있는 학교급에 임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전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직은 매년 해당 지역의 교원수급상황 및 퇴직교원에 따른 교과목의 필요 인원에 따라, 해당 교육청에서 전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유동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소속 교육청의 전직에 관한 현황을 미리 알아보신 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직전 벽지가산점은 인정된다는 것인지요?

질의

○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에서 전직 전에 받은 벽지가산점이 승진에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6. [교직발전기획과]

○ 현재 법령상으로는 199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도서벽지는 전직된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98년 1월 1일 이후 근무실적은 인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부칙 5조(1997년 7월 9일 개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당 관련

질의

○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4년간 근무하다가 신규임용되어 근무할 경우 사립학교 경력이 인정되어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1.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당해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의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며,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감액지급 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거 특별채용된 경우 사립학교 근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아 감액없이 지급하며, 또한,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시 근무년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정근수당에 관한 문의

질의

○ 기간제 교사가 사립학교에서 2007.03.01~2008.02.29까지 근무하고 00사립학교에 2008년 3월 1일자로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었을때 2008년 7월 1일 정근수당 지급시 2008년 1월 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속해서 근무한것으로 보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7. [교직발전기획과]

○ 2008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 164쪽에 의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경우 7월 1일 현재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으로써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거 근무연수를 산정함으로 연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100%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정보마당〉정보자료실〉학교정책국〉검색번호3 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 164쪽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임교사에게도 퇴임시 특별승진제도 신설 요망

질의

○ 교사로서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교감으로 특별승진 발령을 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는데 특별승진의 기회를 정년퇴직자에게도 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9. 3. [교직발전기획과]

○ 특별승진규정에 의거 명예퇴직하는 공무원 및 교과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을 합니다. 모든 교사에게 준다는 것은 특별승진의 취지에 맞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사립학교의 신임 학교장의 자격기준 해당 여부

질의

○ 본 학교법인이 유지·경영하는 학교장의 임기가 만료 예정에 있어, 신임 학교장을 임용 예정에 있습니다. 신임학교장 초빙 대상학교는 IT특성화 고등학교이면서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운영중에 있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2에 의거한 신임교장 임용시 자격특례를 적용한 교장자격이 없는자를 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서의 자율학교 교장의 자격기준을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과정,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등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 1: 자율학교 교장 자격기준 중 IT 특성화 고등학교인 점을 감안하여 자격기준은 전산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에 한정되는 것인지, 전산과목외에 상업과목도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장 공모 지원 자격을 "당해학교 교육과정 전산과 상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공모하여도 위법사항이 아닌지

질의 2 : 해당교과 과정의 자격증 소지여부가 당위규정 사항인지

질의 3 : IT 특성화 고등학교 개방형 교장 공모시, 지원자가 국회의원, 경제기획원, 기술신용보증기금등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업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개방형 학교장으로 임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4. [교직발전기획과]

○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교육감에게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것을 근거로 지정받아

야 합니다.

○ 교장의 자격기준은 IT특성화고등학교로서 필요한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에서 교장으로 모실 분에 대해 조건을 붙인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자격요건으로 꼭 필요한 내용을 넣을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교장의 자격은 근무경력이 해당분야 3년이상이지 자격증을 원하는 것은 아님

○ IT특성화 고등학교이므로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우선일 것이며, 학교에서 자격요건으로 상업과정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에게도 개방할 의사가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할 내용임, 개방형 교장공모는 해당분야 3년 경력이상이면 가능함

휴직 조항 문의

질의

○ 휴직에 관련된 조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된 때'에서 교육대학원에서 파견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참고로 교육대학원이라 야간에 수업이 진행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9. [교직발전기획과]

○ 휴직에 관련된 조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하게 된 때'는 현직교원의 재교육을 위하여 해당 임용청에서 연수지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종일반강사 호봉경력

질의

○ 유치원 종일반강사의 호봉경력은 몇퍼센트 인정이 되나요? 1일 8시간 이상 근무는 하지만, 정규교사가 배치된 종일반이 아닌 종일반강사의 경우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8. [교직발전기획과]

○ 종일반 강사의 호봉경력인정의 경우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에서 “에듀케어”나 “수업보조”로 근무한 경우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는 1일 근무시간(총 근무시간의 합이 8시간)근무자인 경우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를 적용하여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국.공립학교의 경력은 8할,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5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종일반은 정규학급이에요..

질의

○ 유치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일반은 반일반의 연장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상으로 정규학급입니다. 종일반에도 정규교사 배치가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28. [교직발전기획과]

○ 「유아교육법」 제2조 1항에 의하여 유아라 함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2항에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2조 6항에 의거 ‘종일제’ 도 유치원교육과정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중국 심천 한국 국제학교 경력증명서

질의

○ 임용 전 2005년에 심천 한국 국제학교에서 일한 경력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호봉 재획정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4. 15. [교직발전기획과]

○ 임용 전 심천 한국 국제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

될 것이라 사료되지만, 임용권자인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 하시는 것이 좀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중등 교원임용시험 가산점에 대한 문의입니다.

질의

○ 교원 중등 임용에서 지역가산점이랑 복수전공 가산점이 헌법에 위배 된다고 하여 순차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헌재에서 지역가산점은 합헌이라고 나왔습니다.

○ 06학번의 경우 지역가산점과 복수전공 가산점 모두 적용이 안된다고 했는데. 지역가산점은 합헌으로 결정난 결과 06학번의 경우 지역가산점이 주어지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3. [교직발전기획과]

○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제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882 결정)으로 판결됨에 따라, 사범대 지역가산점 및 부전공·복수전공 가산점을 법률에 근거를 두되, 201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일부개정 2004.10.15 법률 7223호]된 바 있습니다.

○ 지역가산점의 합헌에 대한 사항은, 법 개정 전의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닌, 제한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한 합헌사실로서, 현행 법률에 의거 2006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은 가산점의 부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결정요지 발췌]

이 사건 지역가산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타 지역 사범대 출신 응시자들이 받는 피해는 입법 기타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야 하는 기본권의 침해와는 달리 보아야 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제청신청인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07.12.27. 선고 2005헌가11 전원재판부【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별표2]제2호위헌제청】 [헌공제135호])

중등 특수 임용 응시 요건

질의

○ 중등 특수 임용 자격 요건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현재 전문대 2학년생으로 졸업 후에 치료실기 교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 치료교사 선발이 폐지된 현재 치료교육학과는 중등 특수로 전환되어 시험에 응시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치료교사 임용 응시 자격에 교육학개론과 실기교육방법론을 이수한 치료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경우는 중등 특수 임용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18. [교직발전기획과]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의거 실기교사는 전문대학일 경우 교직과정의 교직이론을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과교육은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육실습은 2학점(4주)을 이수토록 규정(실무실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교원자격검정령 안에서 과목표시가 가능한 특수학교(중등)교사 임용시험 자격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외의 조건에 관한 사항은 임용청은 해당 교육청의 임용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등 특수 지역가산점

질의

○ 임용고시의 지역가산점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 특수교사 임용을 응시할 때 지역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8. 11.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채용시험의 가점)에서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가산점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이 아닌 받을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산점 부여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시도교육청의 결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등 특수 직업교사 임용에 대한 문의

질의

○ 각시도 교육청의 임용공고문에 아래와 같이 자격요건이 나왔는데

- 특수학교(중등)직업교육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중등)전문계 표시과목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 기능계 기술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 소지자 (학교급별에 상관없음)

○ 대학교의 중등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상황에서 우리대학의 외식산업조리학과를 복수전공하면 식품가공 표시과목으로 중등2급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여기에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되면 제가 위의 두번째 자격에 해당되어 중등 특수 직업교사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5. [교직발전기획과]

○ 중등표시과목인 식품가공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에 의한 직무분야별 종목 계열의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조리기능사는 가사실업계열인 표시과목 조리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임을 알려드리오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임용권자인 해당 교육청의 교원인사과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2정(음악)자격증 소지자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경력

질의

○ 중등2정(음악)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 음악전담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50%만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초등, 중등 모두다 50%만 무자격교사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4.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시 임용전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정규교원에 준하여 10할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교육경력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해당 학교급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에서 직접 지도하여야 하는 바, 소지자격증과 근무한 학교급이 다르므로 무자격교사의 경우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5할의 율이 적용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경력인정은 임용권자 및 인사경력에 대한 경력확인을 통하여 인사권자가 판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교육청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중등교사 연수휴직관련 문의

질의

○ 중학교 영어 교사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소재 대학에서 한국어강의를 목적으로 하는 FLTA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수휴직이 가능한 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23.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의 휴직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 운영지침은 시도교육청별로 정합니다.

○ 이에 따라, 어학연수로 인한 휴직이 가능여부 및 특별히 인정이 되는 과정(예: 외국대학 부설 어학원, 외국 사설 어학원, 또는 그 밖의 랭귀지코스, 특별히 인정되는 대학) 등의 구

체적인 사항은 휴직허가권자인 임용교육청에서 판단합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관해서 궁금증

질의

○ 2009년도부터 중등교사 임용선발 방식에서 논술 부분과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 체육교사선발에서도 수업실연과 지도안 작성 부분이 같이 이뤄지는 것인지, 바뀌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2009년도부터 실시되는 임용선발에서 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이라는 부분이 임용선발에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8. [교직발전기획과]

○ 중등교원 임용 선발시 논술부분과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부분의 추가된 사항에 대한 추진 배경 및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선 추진배경은 2002년말부터 "교원정책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 및 교원임용시험 제도개선, 교원승진제도 개선 등 임용제도의 다양화를 교직3단체,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온 바,

○ 지난 2007년 3월에 교육혁신위원회의 권고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정책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초.중등교원 선발체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여 2009학년도 임용시험에 적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또한 신규교사 임용 공개전형제도 개선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신규교원 임용 전형제도가 단편적인 지식 평가에 치우쳐,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성,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원 선발제도의 미비와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 전문성을 중점 평가하기 위해 초.중등 신규교원 임용전형제도를 개선하여 기존의 단순면접에서 교직적성 심층면접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도로 문의하신 임용선발에서 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이라는 부분이 임용선발에서 얼마나 효율성 여부는 우리부에서 현재 활용평가지표등을 개발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사의 국내대학 파견은 교원대학교만 되는 것인지

질의

○ 교원대학교 대학원의 경우 교사가 파견형식으로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기타 다른 국립대학으로 파견형식으로 가서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국내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휴직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야간수업이 개설되거나 방학중에 개설되는 강좌만으로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1.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이 휴직을 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연수를 하게 될 국내의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지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32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에 귀하께서 소속하신 시도교육청에 지정기관에 대해 의뢰하시기 바라며,

○ 또한 국내연수는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운영, 교원 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한 사항으로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 수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정상적인 근무후 연가를 이용하여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시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등교사자격증으로 초등학교 교사 근무경력의 호봉환산률

질의

○ 기간제교사로 임용 된 자의 경력을 보니 중등학교교사자격증으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근무 경력이 있는데 이 경력의 호봉환산률이 50%인지 100%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2.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의 임용전 경력의 산정 및 최종 판단은 호봉획정권자인 교육감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청의 호봉획정권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어 획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에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여 설명드리는 것이며 보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를 근거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으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근무 경력은 무자격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학교급과 자격종별이 같을 경우에만 교원으로써의 경력 10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자격교사로 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교육문화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임용권자가 아닌 학교장 발령의 무자격교원이나 정원 외의 무자격교원의 경우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사오니 전력조회를 통해 호봉획정담당자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원선발에 대해서 궁금한점 질문

질의

○ 중등교원의 선발시(임용고사)에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도 응시할 수 있는 건가요?

○ 대학교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서 군생활을 하는데 군 생활중에도 임용고사를 치러서 교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군 복무기간이 끝날때 까지는 교원으로써는 휴직상태가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5. 26.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응시자격)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위 법령에 의거 군인 신분으로 임용시험 응시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 부대장이나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군 복무 중 응시를 제한할 경우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법적으로 최대 2년까지 유효합니다.

중등임용 가산점 문제

질의

○ 교육청 문의 결과 05학번은 현 가산점 4-6점이 2010년도 시험까지 유지됩니다. 06학번은 모든 가산점이 폐지됩니다. 같은 실력인데 가산점 때문에 합격자와 불합격자로 나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으로 정해졌다니 유지는 불가피하리라 판단됩니다. 가산점 유지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그 폭을 줄여 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09. 1. 19. [교직발전기획과]

○ 이미 알고 계신바와 같이 교육공무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등의 졸업자에게 부여하여왔던 가산점 제도가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882 결정)됨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반영되는 가산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 사범대학 지역가산점 및 부전공·복수전공 가산점은 201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교육대학의 지역가산점과 어학·정보처리·체육·기술 분야의 가산점 및 도서·벽지 지역 근무가산점을 계속 부여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2004.10.15) 되었습니다.

○ 이중 사범대학 지역가산점및 부전공&복수전공 가산점을 201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하는 것은 법개정당시 사범대에 재학하고 있는 재학생들을 신뢰보호차원에서 경과조치로 보호하고 하기 위한 제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거법령은

(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 가.(사대가산점), 나(복수전공가산점) 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

①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③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④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⑤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이외의 사범계 가산점 및 복수전공가산점 또는 그 외의 임용시험가산점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2의 규정에 의항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시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설명되어 있으며, 어학 정보처리 등 기타 가산점(경기입상실적,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응시교과관련자격증, 영어성적 가산점 등)도 이에 함께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위의 내용을 근거로 2006년도 입학생부터 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한 점에 대해 억울한 마음은 공감하오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범대학 등의 졸업자에게 부여하여왔던 가산점 제도가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1헌마882 결정)됨에 따름이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임용 특수학교 직업교사 지원자격 문의

질의

○ 이번 임용공고문을 보면 특수학교 직업교사 지원자격에 특수학교(중등)전문계 표시과목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 기능계 기술자격증 소지자 라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중등특수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표시과목으로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리'는 전문계 표시과목인 것으로 아는데, '국가기술자격법'에 나와있는 많은 자격증 중

에 아무 자격증 하나만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3. [교직발전기획과]

○ 특수학교(중등)전문계 표시과목 중 '조리'는 교원자격검정시행령 별표 3의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분야에 가사.실업계열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문계 표시과목입니다.

○ 국가기술자격종목에 의한 가사,실업계열로써 조리(기능장),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기능사)에 관련된 자격증을 말합니다.

중등임용고시 응시자격에 대한 질의

질의

○ 특수학교 치료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치료교사(초등)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료교육이 교육과정상 삭제되면서 치료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중등 재활과 복지로 전환이 되는데요. 2008년도 하반기에 재활과 복지 전환연수를 받고 2009년에 초등과 중등 둘 중 선택하여 전환연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치료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자들은 중등으로 임용고시를 쳐서 중등으로 발령받았습니다.

1. 현재 2009년도 중등임용고시에서 치료교사 2급정교사 자격증으로 시험응시자격이 되는지?
2. 연수를 받고 초등이나 중등으로 전환 후 다시 다른지역으로 임용고시를 응시하게 되면 초등으로 임용을 봐야하나요 , 중등으로 임용을 봐야하나요? (현재 치료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시고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중등으로 시험을 계속 치므로 제가 초등으로 전환연수를 받아도 중등으로 임용을 보아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8. 26.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표시과목이 "치료교육"인 자격증의 소지자는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라고 기술되어 있는 바 2009년도 중등임용시험시 치교교사 2급으로 특수학교(중등)으로 가능하나 과목구분 없이 특수학교(중등)교사를 선발하는 시・도에 가능합니다.

○ 현직 치료교육교사 중 특수학교교사(유치.초등)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보수교육(336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특수학교 교사(중등)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부전공 자격연수(450시간)를 이수토록 하여 자격전환이 가능합니다. 해당 표시과목으로 임용시험에 응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원임용 결격사항 문의

질의

○ 삼진아웃으로 인해 면허가 2007년 4월에 취소(물론 벌금도부과)되었습니다.

○ 현재 중등임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교원임용을 준비하는데 있어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 임용시험 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동법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민원인의 경우 면허 취소로 인한 벌금 부과는 임용시험에 있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자세한 사항은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 교원정책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등임용에서 임용유예 혹은 대기발령에 대해서 질문

질의

○ 공익근무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등임용에 합격을한다면 군복부중이기 때문에 바로 발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임용유예 혹은 대기발령을 받는다는데 맞는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30. [교직발전기획과]

○ 임용유예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2항에 의거「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가능합니다.

○ 또한, 임용이 확정된 후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해당 임용청에 반드시 임용유예신청을 하여 제대 후 해당청 교원인사실무규정에 의하여 발령됨을 설명드리며, 군복무로 인함으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등특수교사 채용을 위한 임용고시의 지원 자격에 대한 문의

질의

○ 특수학교 2급 정교사(치료교육)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교육학과가 초등특수교육과와 중등특수교육과로 통폐합됨에 따라 치료교사도 더 이상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년까지 위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에 응시 자격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나 내년에 실시될 중등특수교사 채용을 위한 임용고시 시험에서도 제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1.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3에 의하면 공개전형에 응시할수 있는 자는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한자이어야 한다(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자격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이번에 치료교육의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치료교육 자격증을 소지한자를 중등 특수(재활.복지)로 변경되어도 중등교원 자격 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을 설명드립니다.

중학교 교원

질의

○ 중등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교원경력은 없습니다. 중학교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8. [교직발전기획과]

○ 중등준교사자격증으로 중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중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중등 정교사 2급자격증 취득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 중등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해당 교육청에서 발급하고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에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자에 대한 유사경력 인정범위

질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의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2. 유사경력의 나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 1의2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이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은 5할의 경력을 환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력이 어떠한 직종의 경력인지, 각급학교 및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교육업무보조,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등) 등의 경력이 호봉획정시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17. [교직발전기획과]

○ 먼저, 분야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IMF실업구제책(사업기간 : 98.3-00.2)으로 임용된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등 경력

※ 교사자격증 소유자는 8할, 교사자격증 미소지자는 3할 인정 (단,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획정 하되 소급 적용 불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3월이상 상근(행정업무 종사)한 경력 5할

○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잡급직원규정(75.1.1-81.12.31) 및 지방잡급직원규정(76.1.1-82.3.4)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개월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 및 위 규정 시행일 이후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개월 이상 상근한 경력에 한하여 5할 인정

- 국고 및 교육청 예산과목상 상용잡급 또는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봉급이 지급되는 경우에 따라 경력으로 보아 여부를 갈음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한 순회 전보 가점을 줄 수 있는가?

질의

○ 인사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에 시달된 '순회교사 활성화 계획'을 근거로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게 전보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문의 하였으나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들에게 순회교사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000교육청의 방침이 적정한 것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19.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부는 2006년도에 순회교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순회교사에 대한 우대방안을 강구하여 교원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우대 방안과 적용범위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결정하여 시행할 사항으로서, 우리부가 직접 답변드릴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범대 가산점

질의

○ 대학에서 교직이수 과정을 거쳐서 국어와 역사에 관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범대학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9. [교직발전기획과]

○ 사범계지역가산점의 경우 해당지역에 소재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해당지역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 또한 이미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교원양성기관에 편.입학하여 동일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과도한 체벌 근절 요청

질의

○ 교사의 체벌은 교장의 허가를 받고,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후, 학생의 동의를 얻고, 길이 60센치,지름 2센치 이하의 매로 엉덩이를 10대 이하로만 상처가 안나게 해야 하고, 반드시 체벌한 내용을 서류로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사 개개인의 판단으로 행해지는 교사에 의한 매질과 가혹행위를 없애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3. [교직발전기획과]

○ 교사의 학생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양정기준에 의거하여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대한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3에 의거하여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를 사유로 파면·해임된 자에 대한 각급 학교 교원으로의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에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원에 대한 처분은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거하여 해당교원에 대한 징계권을 시도교육청이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직무연수(원격연수)

질의

○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격연수로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서 직무연수를 원격으로 실시했으면 하는데 원격연수 기관의 자격이나 인증이 있는지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2. [교직발전기획과]

○ 원격교육연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수렴과 현장실사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원격연수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원격교육연수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 신규로 원격교육연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원격교육연수원 인가기준'에 맞춰 인가서류를 작성하여 우리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원격교육연수원 설립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es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일반공지 No 839 "2009년도 원격교육연수원 신규 인가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관련 직업훈련 포함여부

질의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별표서식 현장실습이수기간범위에 직업훈련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8. 8. 12. [교직발전기획과]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장실습이수기간범위 인정여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

법 시행령 제5조의 현장실습산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과정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현장실습이수기간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 연장 관련 질의

질의

○ 교사가 1년간 병휴직을 한후 휴직 만료로 복직하여 근무1일을 하고 병가60일을 사용한 후 다시 병완치를 위하여 연속으로 동일질병으로 1년 병 휴직이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30.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이 질병으로 인한 경우 1년의 기간내에서 휴직을 할 수 있으며, 동일질병으로 1년을 초과하여 할 수는 없으나 1년의 범위 내에서는 몇개월 단위로 여러번 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병휴직을 1년을 한 자가 복직을 한 후 상당기간 동안(상당기간 동안이란 임용권자가 판단하는 상당기간) 정상적인 근무를 하다가 동일질병이 재발하였을 경우 그 질병의 정도 및 휴직 후 완치 여부 등을 판단하여 휴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질병휴직 1년 후 복직한 자의 근무가 정상적이지 아니하였을 경우, 예로 계속 통원치료를 받거나 병가 등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는 등 정상적이지 아니할 경우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사항은 휴직의 명령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수 교사들의 교수방법 및 수업 노하우 공유

질의

○ 일선 이름난 명교사들의 동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7. 10. [교직발전기획과]

○ 현재는 무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이 되지 않아 볼 수 없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우수 교사들의 교수방법 및 수업 노하우를 전국 교사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우수 교사 수업 동영상" 200편을 선별하여 에듀넷(www.edunet4u.net)을 통해 무료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우리부는 에듀넷에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동영상 제작지침과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공개되는 동영상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평가를 통해 선별한 뒤 전문기관에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 한 교과 단원에 대해 여러 편을 선정해 게시, 교사들이 각각의 교수 · 학습 방법을 서로 비교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관련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es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676번을 참고바랍니다.

초과근무와 출장비 병급건

질의

○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편람 등에 나와 있는 경우처럼, 수학여행에서는 학생인솔등에는 초과근무를 인정하면서 출장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교원의 경우 출장명령에 의하여 평일에 교육연수를 받아 오후 9시까지 워크숍을 받은 경우, 출장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퇴근시간 이후 1시간을 제외한 오후 5시반부터 9시까지의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업무편람에 보면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발생이 예상되어 명령권자의 사전명령 및 확인절차를 거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출장비외에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교원들이 출장을 가기전에 교장선생님의 초과근무명령을 득하고 워크숍 시간이 나와있는 공문까지 행정실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1. [교직발전기획과]

○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 출장시에는 일반적으로 근무상황에 대한 직근상급자의 감

독이 불가능하여 시간외 근무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통상 출장시에는 시간외 근무명령을 내지도 않고 따라서 시간외수당의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출장중이라도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소속부서장이 사전에 초과근무 명령을 내고 이 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초등1급정교사 자격연수를 직무연수처럼 등급제할 계획인지?

질의

○ 승진가산점 부여방법에 대한 일부 교사의 의견 중에는 자격연수점수도 직무연수점수처럼 등급제로 한다는 이야기가 맞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2. [교직발전기획과]

○ 초등 1급정교사 자격연수를 등급제로 시행하는 사항은 현재 까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직교원의 학사편입이 가능한지

질의

○ 임용고시를 합격한 후에 타 대학에 학사편입을 위해 교사 휴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을 다니는 것은 휴직사유가 될 수 없나요? 초등교사가 신춘문예에 지원하는 것도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2. [교직발전기획과]

○ 현직교원으로써 학사편입을 위한 휴직의 경우 관련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의한 연수휴직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현 직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석사과정 이수를 위한 청

원휴직이 있습니다.

○ 교원은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현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대학에 입학을 한다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복무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되오며 대학을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학력과 경력이 중복발생으로 인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다만, 재직 중 통학가능한 거리안의 야간대학을 졸업한 경우 학력인정여부에 대한 판례를 참조하여 학력으로 인정은 되오나 이것 또한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호봉획정에 반영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정보자료실〉유.초.중등〉검색번호 2688 "2008 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을 검색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사 어학연수 휴직 문의

질의

○ 현직 교사의 어학연수로 인한 휴직이 가능한지 알고 싶으며, 특별히 인정이 되는 과정(예: 외국대학 부설 어학원, 외국 사설 어학원, 또는 그 밖의 랭귀지코스, 특별히 인정되는 대학)이 있는 등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3.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의 휴직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 운영지침은 시도교육청별로 정합니다.

○ 이에 따라, 어학연수로 인한 휴직이 가능여부 및 특별히 인정이 되는 과정(예: 외국대학 부설 어학원, 외국 사설 어학원, 또는 그 밖의 랭귀지코스, 특별히 인정되는 대학)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휴직허가권자인 임용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부에서 가능여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우리부에서 실시하는 교사의 영어연수프로그램은 현재 계획된 바는 아직까지 없으며 추후 동 프로그램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청을 통하여 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등교사의 고용휴직 관련

질의

○ 2009년 1월1일 부터 시행되는 확대된 고용휴직제도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임시고용'된 경우 고용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4년제 대학교의 겸임교원으로 계약할 경우도 고용휴직 사유에 포함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10. [교직발전기획과]

○ 공무원의 휴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한편, 교육공무원의 겸임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에 의하여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겸임교원은 고용휴직을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등교원 임용 연령제한 폐지

질의

○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서 40살 연령 제한이 폐지된 것이 확실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3.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05.4.15)되어 현재는 나이제한 없이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초등교원 자격에 관하여..

질의

○ 외국의 교대라고 해야 하나? 외국 시스템의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따서 대한민국에 돌아오면 초등학교 교원 자격증을 인정해 주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5. 25.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나라의 교사자격체계는 교사양성기능을 가진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소정의 교육과정과 학점을 이수하여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선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취득한 교사자격증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교육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초등교원 채용 및 교대 통폐합과 관련한 질의

질의

○ 소위 미발추법에서 보장한 "2007년 중장기수급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이번 년 신규채용 정원은 3500~3900명 선으로 예상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 2007년 11월 9일에 전 교육대학에 보낸 "연도별 초등교사 신규채용 예상규모"(교원정책과)에서 언급(중장기계획 이후)한 2012년, 4949명의 경우 그 예상에 있어 변함이 없는지의 여부를 설명해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09. 5. 18. [교직발전기획과]

○ '2007 중장기수급계획'은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우리부가 수립한 계획이지만, 실제 교원 정원의 확보는 국가의 예산사정 등 매년 변화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므로 반드시 그 계획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정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또한 올해 신규채용 규모를 3500~3900명선으로 예상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아마 올해 교원정원이 동결됨에 따라 퇴직하는 교원 정도의 규모만 채용할 것으로 추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또한, 2011년 이후 교원수급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부는 향후에도 중장기적 교원 수급 계획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대학 통폐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어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사를 많이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 아들이 초등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열정때문에 00교대를 지원해서 초등교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일선 학교현장에 가보면 남교사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남자교사를 더 뽑아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4. 16. [교직발전기획과]

○ 초등교사의 성비 불균형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으나, 성비불균형에 따른 성역할 정체성이나 학생의 학업성취도 차이 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 우리부는 교육대학에서 학칙으로 성비율을 정하도록 하여 입학단계에서 양성 균형을 꾀하고 있으나, 교원임용고사에서 양성평등임용제도 도입은 좀 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초등특수교육과 복수전공

질의

○ 언어치료청각학과에 다니고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언어치료청각학과에서 교직을 이수해서 초등특수교육과와 복수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 초등특수교사 임용 시험을 볼때 필수 이수과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각 대학에서 정한 필수 과목만 이수하면 되는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고시한 필수 이수과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수전공자와 전공자의 기본이수 학점은 당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복수전공자의 필수 이수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1.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2급의 자격취득 검정기준은 전공과목에는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이 각각 14학점이상(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각각 21학점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기본이수과목의 이수학점 적용기준은 우리부 고시 제2007-161호를 적용합니다.

○ 또한 필수이수과목명은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고 , 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이며 특수교육영역(공통)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기본 이수과목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등교사자격으로 근무가능 여부

질의

○ 초등학교에서 예체능 교과 음악, 미술, 체육 과목을 담임이 아닌 교과전담교사로 가르치는데 있어 초등교사 자격이 아닌 중등교사 자격증으로 기간제 교사로 근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4. [교직발전기획과]

○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1항의 의거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합니다.

○ 이때 교원의 자격증이란,「초・중등교육법」제21조 및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하는 학교급별 자격으로서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라 하더라도 중등교사 자격증으로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위 사항은 공립과 사립 구분없이 모두에 해당됩니다.

초빙교사 임명 및 해임 과정

질의

○ 일반 교사가 아닌 초빙교사 임명되는 과정과 해임되는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6. [교직발전기획과]

○ 초빙교사는 현지에서 국내외 거주 교원자격자를 대상으로 계약에 의하여 해외한국학교가 채용 교육공무원이 응모하여 근무할 경우 임명됩니다.

○ 또한 파견교사는 파견임용에 의해서 해외 교사파견은 올해로 끝나며 시험자체가 폐지되었으며 명칭도 초빙교사제도로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 파견이 아닌 해외 한국 학교별 자체 채용계획에 의하여 임명 또는 해임되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국의 자체채용계획에 따라 전형방식을 학교별로 정하고 있으므로 우선은 어느 나라에 가실지를 결정하고 해당국 재외한국학교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빙교원의 자격

질의

○ 내국인 초빙교원의 임용자격 기준으로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를 임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초빙교원은 겸임교원과 달리 현직에 재직 중이지 아니하더라도 과거의 근무경력이 담당교과와 유사 또는 동일한 경우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초빙교원 임용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5. [교직발전기획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4호에 의거 초빙교원도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해 초빙교원 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학교에 두는 교원은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시간강사는 교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시간강사 등은 동법 제17조 (겸임교원등)에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치료실기교사

질의

○ 실기교사(치료교육)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실기교사(재활,복지)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활, 복지를 담당하는 교사가 학교에서 하는 업무가 어떠한것 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8. 18. [교직발전기획과]

○ 현행「특수교육진흥법」에는 특수교육의 정의에 치료교육이 포함되며 개정법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정의를 교육과정과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교육으로 정의합니다. 이에 따라 현 치료교육교사가 8개의 영역을 모두 담당하는 어려움에서 각 영역별 전문성 및 지도시간 등을 고려하여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치료지원 및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또한 학교에서의 구체적인 업무는 임용후 해당 학교장이 결정할 것으로 특수학교의 현장에 맞게 배치되고 업무가 분장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기숙사 근무의 경우도 해당 교육청의 지침과 학교상황에 따라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실기교사 관련 문의

질의

○ 물리치료과 교과과정 중에 교육학개론과 실기교육방법론 과목을 이수하면 졸업할때 실기교사 자격증이 교부가 됐는데, 그게 2007학번까지인가만 해당되고 그 이후 학번부터는 안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무슨 법령으로 실기교사 제도가 폐지됐는지 답

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보건계열 관련학과(작업치료과,간호과. 임상병리과. 치위생과 등등)도 모두 폐지되었는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14. [교직발전기획과]

○ 2007년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치료교육' 표시과목이 없어지고 재활복지로 변경됨에 따라 치료교육을 지도할 교원을 양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학과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교원을 양성하지 않는 것이고, 관련학과폐지는 대학에서 정하는 겁니다. 교원양성이 안되니까 학과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질의

○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항에 의하면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교장(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의 경우 임원의 임기 도중 정년퇴직을 할 경우, 남은 임기동안 법인 임원으로 재직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24. [교직발전기획과]

○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2005.12.29, 2008.3.14〉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위 규정에 의거한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한글학교는 고용 휴직 대상기관인가요?

질의

○ 청도에 있는 한글학교가 현직 교사로서 고용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인가요?

○ 고용 휴직이 가능하다면 몇 시간의 수업을 하였을 때 교직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현행법에 의거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4.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의한 고용휴직에 관한 법률이 2009.1.1자로 동 휴직의 요건 중 재외국민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휴직 대상 기관은 반드시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인정된 기관으로의 고용휴직만을 인정하여 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글학교의 경우 정규학교가 아닌 주말학교 형태로 관할 공관에 등록된 학교로 개인이 아닌 재단 또는 법인이 설립하여 우리부와 해당국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청도한글학교의 경우 현지공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단체)입니다.

○ 이에 고용휴직의 대상 기관의 인정여부는 해당 임용권자가 판단할 것입니다.

해외유치원 경력 문의

질의

○ 유치원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4년제 대학 졸업 후 학사학위를 갖고 해외(싱가포르) 한인유치원에 취직이 되어 3년간 지내고 귀국했습니다.

○ 제 전에 있던 선생님들께서도 모두 싱가폴 한국유치원 경력을 인정 받으셔서 한국에서 취직을 하셨구요. 현재 싱가폴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때 받은 서류들과 관련 증명서, 경력증명서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 한국의 교육부에서 유치원교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24. [교직발전기획과]

○ 유치원교사 경력증명서는 해당 유치원 또는 유치원설립허가권자인 근무하였던 유치원 해당지역교육청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교사제도에 대한 질문

질의

○ 대학에서 6년을 강의 하였습니다. 현장경험은 96년부터 있으나 프리랜서로 활동한 관계로 2002년부터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 2002년부터의 실질적인 경력을 증빙할 수가 있습니다.

○ 고등학교에서 교사자격증이 없이도 현장교사제도가 있어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 고등학교에서 강의 하고 싶은 맘에 글을 올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6. [교직발전기획과]

○ 현장교사의 경우 법적으로 교사가 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산학겸임교사로 해당 교원자격증 없이도 일부 실업계열 및 예.체능 계열의 전문가를 학교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강사의 개념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의 구직란 또는 학교홈페이지의 구인구직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교사의 상담교사 발령

질의

○ 현직에서 부전공 연수를 받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경력은 9년차입니다. 상담관련 학위는 전혀 받은 바 없는데 연수 등을 통해서 상담교사로 발령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회신 회신일 : 2008. 8. 28. [교직발전기획과]

○ 상담교사로의 발령은 해당 표시과목에 의한 임용외에 상담관련 자격취득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직교원의 심화과정으로 운영하는 교육대학원에서 비학위 과정 또는 석사과정을 통하여 취득 후

○ 해당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전직 또는 전과를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봉산정에 관하여?

질의

○ 2009년 초등임용고사를 본 예비교사입니다. 임용후 호봉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9. [교직발전기획과]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초임호봉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동규정 8조 (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02.7.13, 2005.1.7〉

③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획정을 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1.15〉

⑤ 1990년 1월 1일이후에 별표 3 · 별표 4 ·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

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5의2를 적용하여 획정한다. 〈신설 1990.12.31, 1991.12.31, 200

○ 위를 근거로 최종 호봉획정권자는 해당 임용권자인 교육청에서 산정하므로 보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산정이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좀 더 정확한 호봉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 교원인사부서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호봉승급 일자 문의

질의

○ 교원의 호봉 승급일이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3.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시 경력기간계산 방법은 96년까지는 문교예규 제187호에 의거하여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였으나 '97년부터는 동 예규가 폐지되고 새로운 방법인 연.월.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연.월.일로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은 신규임용 및 호봉재획정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봉재획정 사유가 아닐 경우 문교예규 제187호에 의거 과거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단, 호봉재획정 사유가 생겨 호봉을 재획정할 경우에는 연.월.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경력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 선생님의 경우 98년도에 1급 정교사 연수를 하여 1호봉 승급을 할 당시는 이미 문교예규가 폐지되어 새로운 방법인 연.월.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이미 잔여일수를 새로운 방법으로 연.월.일로 적용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는 1급 정교사연수를 통한 1호봉 승급은 호봉재획정의 사유로 포함됨을 알려드리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호봉재획정 문의

질의

○ 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 내용 중 "휴직, 정직, 직위해제 기간중 새로운 경력을 합산할 사유가 없는 휴직 등은 복직시 호봉을 재획정 하지 않음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중 승급제한 되고 휴직후 100%(최초 1년) 경력이 인정이 되어 승급제한도 해제 되는데요

○ 육아휴직의 경우, 위 내용을 적용하여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17. [교직발전기획과]

○ 육아휴직 후 복직시 호봉 재획정 하시면 됩니다.

호봉정정에 따른 사립학교 기간도 환급대상이 되는지요?

질의

○ 공립초등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후 사립초등에 근무 후 퇴직하고, 다시 공립초등에 발령받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립초등 근무당시 호봉승급이 잘못되어 현재까지 약 6개월 정도 미리 가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호봉 정정 신청 후 승인되면 행정실에서 환급업무를 봐야 하는데 사립초등 근무기간도 환급대상이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8. 4. [교직발전기획과]

○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에서 퇴직한 후 공립학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신규임용이며, 이전 교원 경력은 임용당시 [공무원보수규정]의 경력환산율표 등을 통해 호봉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 때 경력인정은 기본적으로 이전 재직기간을 역법에 의해 계산하고, 이 기간을 경력환산율표에 의해 환산하여 인정합니다.

○ 결국 사립학교 근무시 인정받던 호봉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앞서 설명드린 경력기간 인정과정을 통해 초임호봉에 반영하므로 사립학교 근무 시 잘못된 호봉 승급은 현재 호봉까지 연결되어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전 사립학교의 잘못된 호봉 승급은 현재 호봉정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해당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시 이전 사립학교 교원 경력인정이 잘못되는 등 호봉정정 사유가 있어 호봉정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호봉책정시 경력인정(영양교사)

질의

○ 2007년 10월에 개정된 호봉인상 대상에 영양교사도 포함된걸 보았습니다. 간호사 면허증 소지하고 종합병원에 근무했을 경우 호봉인정 100%(임시직일 경우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양사도 영양사면허증 소지하고 공립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경우 호봉을 100% 인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일용직(임시직) 영양사로 근무한 것은 80% 인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9. 23. [교직발전기획과]

○ 영양교사의 호봉획정시 임용전 경력환산과 관련하여 산업체 등 근무 경력 교사의 임용 전 경력환산율 상향 조정 업무 처리지침(2007.10.14 교육단체지원과)에 의하여 영양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단체, 기업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정규직 영양사로 종사한 4년제 대학 졸업 후 경력(동일분야 담당교사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일 경우 인정 대상 경력이며

-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근무 경력자 : 8할
- 상법에 의한 합명.학자.주식.유한회사 근무 경력자 : 8할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기타직업에 종사한 경력자 : 7할로 인정합니다.

○ 동 지침에 의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종합병원에 근무했을 경우 법인체 종합병원 간호사 일 경우 10할을 인정받습니다.

○ 다만, (1)영양교사의 경우
- 일반직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은 10할
- 기능직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은 8할이며
- 계약직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일 경우
  · 학교회계직원 중 급여의 지급방법, 근로조건, 복무관계 등이 상시 근무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3할 인정
  · 기타 실제 출근일수에 따라 매 1일당의 급여가 지급되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
  · 기타 경력에 관하여는「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에 의거 산정하도록 별도의 지침을 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공립학교에서의 영양사로 근무할 경우 앞에서 설명드린 (1)의 경우를 감안하여 해당 교육청의 호봉획정권자의 전력조회를 통하여 경력환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

호봉획정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인정여부

질의

○ 교육공무원의 경우 일반회사 경력은 재직기간의 4할까지 인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니던 직장들이 부도가 나서 문을 닫은 회사도 있고, 지금 연락을 할 수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제가 그 작장을 다녔다는 기록은 지금으로선 '국민연금 가입증명'에 나타난 기록이 전부인데요, 이런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에 나타난 기록으로도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9. [교직발전기획과]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2에서 인정하는 제6류(4할)로 인정하는 각종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법인격이 있는 회사를 말하며, 법인격이 없는 회사 근무경력은 제7류(3할)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게 됩니다.

○ 또한 해당 회사의 근무경력은 유급, 상근직 여부 확인이 되어야 경력 인정이 되며, 이를 위해 근무형태, 계약 관계에 대한 임용권자의 경력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국민연금가입증명 만으로는 대체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임용권자별로 증거능력 인정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폐업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접촉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호봉획정시 연구원 경력 관련

질의

○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의 기타 연구기관에서의 경력(88P)에서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은 어디를 말하는지,
2.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속에 주식회사 연구소 가 포함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08. 7. 25.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편람p88 ①에서 기술하고 있는 기관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공기관 범위는 p105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한 법인체를 말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제5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제6류 주식회사(소속 연구소)는 상법 등에 의한 영리 목적의 법인입니다.

호봉획정에 관한 질문

질의

○ 동등 정도의 2개 이상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1학교 이외의 수학연수 : 8할(법정수학연수만 인정 예:3학년 편입자는 4학기만 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일반대학 4년을 나오고 교대를 새로 입학하여 4년을 다닌 경우엔 4년의 8할을 인정해주는지요?
2. 의과대학같이 6년과정인 경우는 6년의 8할을 인정해주는지요?
3. 교대이외의 4년제 대학을 2개 이상 졸업한 경우 모든 대학의 8할을 인정해주는가요?
4. 일반대학이라함은 모든 4년제 대학을 말하는건지요? 아님 꼭 교직과정을 이수한 학과를 나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1.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부에서 발간한 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을 근거로 우선 동등정도의 학교의 졸업이란「공무원보수규정」별표22의 비고 제2호 "동등정도의 학교"라 함은「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중에서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의 경우

○ 말씀하신대로 4년의 8할을 인정하며 고등교육법에 의한 법정수한연한이 6년 과정인 경우 그 수업연한에 대한 8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동등정도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1학교 이외의 수학연수는 8할의 율을 적용하므로 가능합니다.

○ 일반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수학연한을 의미하며 통산 4년은 학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

질의

○ 우리학교 교감선생님은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정규고교와 방송고교를 겸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송고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일요일(보통 격주)에 출석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감선생님께서 정규고교 업무로 일요일에 근무하다면 당연히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에 따라 일반대상자로 분류하여 4시간의 시간외근무시간을 합산하겠지만 방송고교 출석수업으로 일요일에 근무한다면 일요일 근무는 현업대상자로 분류하여 평일근무시간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그 밖에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를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일반직과 기능직도 휴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7. [교직발전기획과]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5조에 의한 현업대상자로의 지정은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 또한,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총액인건비 자율항목으로 동영 제17조에 의한 휴일에 근무(휴일 근무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교정직공무원 등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일반직과 기능직도 휴일근무 수당 예상이 계상된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한다는 행정안전부 공무원보수등의 지침을 근거로 설명드립니다.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별도의 수당지급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 변경에 대하여 문의

질의

○ 유학휴직 중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초등교사입니다. 2년 동안 학위과정으로 유학휴직을 신청했었습니다.

○ 유학휴직 상태에서 내년에 제가 육아휴직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작은 녀석이 현재 7세로 취학전이라서,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8. [교직발전기획과]

○ 육아휴직으로 변경 신청은 교육공무원법제44조에 의한 휴직의 변경시 새로운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해당 임용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자녀가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이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 위의 요건이 충족되면 육아휴직은 가능할 것이나, 이미 유학휴직 중 새로운 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전 휴직에 대하여 복직한 후에 육아휴직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명령(유학휴직에 대하여)과 휴직명령(육아휴직에 대하여)을 같은 날에 발령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정하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휴직 중 1정연수

질의

○ 휴직중 2학기 복직을 하지 않으면 겨울에 1정연수를 받을 수 없나요? 2학기 복직을 하지 않으면서 겨울연수가 나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9.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자에게는 1정연수 지명대상에서 안타깝지만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복직예정대상자를 교육청에서 파악하여 수요조사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교육청에 교원정책과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휴직 후 경력인정 및 호봉승급

질의

○ 2년을 휴직하고 국내 대학원(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제 개인사정상 학위를 받지 못하고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 기간중 1년만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호봉에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똑같이 2년 휴직하고 해외연수 즉 해외에서는 학위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경력과 호봉이 모두 인정이 되는데 국내에서 똑같이 공부를 하였는데 왜 인정이

안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8.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 국내연수휴직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휴직의 경우 학위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경력산정이 가능하오며 상위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교육경력의 산입으로 호봉재획정할 필요가 있을 시 호봉재획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연수휴직시 동법에서 정하는 경력인정은 학위취득과 상관없이 50%를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호봉승급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반면 유학휴직의 경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임용권자가 직무와 연관성, 휴직목적달성 가능여부 등 휴직의 목적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휴직이 허가되는 것으로 국내연수휴직과는 구별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질의

○ 2006.08.12일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 2006.08.12부터 07.12.15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데,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11. [교직발전기획과]

○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간의 육아휴직 규정이 달라, 육아휴직을 자녀 나이 만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에 대하여 1년을 원칙으로 하되, 2년 범위 안에서 휴직기간의 연장이 가능토록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 2006.08.12~07.12.15까지 육아휴직한 자녀에 대하여 2008년도 적용시 당해연도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에 대하여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직에 관하여

질의

○ 아이를 외국에 있는 친척집에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같이 따라가서 3-6개월 정도 적응시킨 후 돌아오려 합니다. 그 동안 아내는 어학연수를 받고자 합니다. 무급으로 휴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5.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의한 청원휴직 및 직권휴직등 여러 가지 휴직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휴직명령권자인 해당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휴직의 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직의 임용기간 포함여부

질의

○ 배우자의 해외근무로 인해 무급 휴직을 1년 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임용기간에 포함되는지요?(교육공무원법령에 휴직과 임용기간 조항관련)

회신 회신일 : 2009. 4. 13.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동반휴직은 동법 44조에 의한 청원휴직이며 휴직기간 및 경력평정, 호봉승급에 관한 별도의 사항들은 우리부에서 발간한 교육공무원인사실무편람을 근거로 승급제한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휴직제도 관련문의

질의

○ 현직 초등특수교사입니다. 경력 5년 이구요. 심리학으로 대학원 진학을 고려 중입니다.

○ 야간이 아닌 일반 주간대학원이므로 연수를 목적으로 한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봉급이나 경력인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휴직이 가능할까요?

회신 회신일 : 2009. 3. 19. [교직발전기획과]

○ 연수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1항에 의한 청원휴직에 해당됩니다.

○ 또한 교육공무원이 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 휴직허가권자인 해당 교육감이 직무와의 연관성, 교원수급, 연수효과, 연수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결정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교육감의 휴직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중 1정연수에 관해

질의

○ 3년 재직후 남편의 해외발령으로 동반휴직 중입니다. 2007년 여름에 1정연수가 나와 같이 다른 분들은 연수를 받았지만 저는 휴직 중이라 받지 못했습니다.

○ 혹시 올 겨울 1정연수가 나온다면 꼭 받고 내년 복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7.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휴직시 법령에 의한 복직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연복직이 가능합니다.

○ 휴직한 교원의 복직으로 인한 기간제교원의 남은 잔여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다른 학교로 전입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2학기 복직에 관하여 해당 교육청에 신청하시고 연수를 받으셔도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휴직중 전보 관련 문의

질의

○ 초등교사인 2009년 3월 2일자로 전보 대상자였는데 임신,출산으로 1년 전보유예를 했는데

요, 2월 14일부터 출산휴가를 받고 5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1. 제가 2학기때 복직을 해서 내년 3월에 다시 휴직을 한다면, 전보 대상이 되는 건지요? 아니면 그 학교에서 계속 휴직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2학기때 전보대상자가 된다면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교육청변경이 가능한지요?
2. 계속 휴직을 연장하여 최대 3년을 휴직하고 2012년에 복직을 한다면 지금의 학교로 복직을 하게 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8. [교직발전기획과]

○ 교원의 전보권은 임용권자인 해당 교육청에서 인사관리규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직 및 파견자의 경우도 해당 임용권자가 복귀자 현황 등을 제출받아 3월 부터 8월 사이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희소과목 1급정교사 자격연수관련

질의

○ 현재 특수학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입니다. 희소과목 1급정교사 자격연수와 관련해서 6년차에 접어드는 경력이지만 아직 1정연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 2009년 특수교육계획에 보니 희소과목 교원들을 대상으로 1급정교사 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회신 회신일 : 2009. 3. 21. [교직발전기획과]

○ 1정 연수를 받고자 하나 연수과정 개설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현재 1정 연수 자격 대상자 지명 및 연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향후 시도연수 담당자나 연수원 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동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원 겸직 가능 여부

질의

○ 아는 분이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노동부 지정을 받아 교육생을 모으면 교육생들의 교육비는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학원입니다. 노동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학원에 취업 상담실을 마련해서 상담실을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학원의 상담교사로서 월 1회 출장을 가는 것이 공무원 겸직규정에 위반되지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13. [교직발전기획과]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한 대통령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며 동 규정 제25조(영리업무 금지)에 의거 영리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26조(겸직허가)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업무판단과 겸직허가에 관련한 자세한 것은 귀하의 임용권자(교육감 또는 복무지도감독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리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종사하고자하는 교원은 영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임용권자(복무감독권자)와 사전에 상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원임용시험 및 국가고시 토요휴무일 시행 요청

질의

○ 임용시험이 일요일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각자 해야할 일이 있으므로 일요일시행이 적절하다고 하지만, 임용시험은 타대학생이나 일반인은 볼 수 없는 교대생들만 보는 국가고시로 토요일 시행을 요청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16.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4조(교사 신규임용전형관리 협의체 설치)에서는 "① 시·도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시험 공고에 관한 사항 및 시행일자 조정 등은 시도교육청의 협의체에서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외의 국가고시의 일요일 시행여부는 현재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지침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동협의체 및 관계관 협의회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수렴을 한 후에 결정될 상황으로 요구하시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며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임용시험의 협의체인 주관교육청이 매년 지정되고 있으므로 해당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당에 대한 질의

질의

○ 2002.3.1～2002.5.31 동반휴직

2003.3.1～2006.8.31 고용휴직(00한국학교근무)

2006.9.1～한국초등학교에 복직

2007.1.1. 정근수당 지급시 고용휴직(2003.3.1～2006.8.31)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고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9. [교직발전기획과]

○ 고용휴직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에 의해 근무연수에 산입되는 휴직에 해당되므로 2007.1.1 정근수당 지급 시 전액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 직위해제 처분 등이 있을 경우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지급하도록 되어있음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시안

질의

○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시안” 자료를 찾는데 원본을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4. [교육과정기획과]

○ 개정된 유치원 교육과정은 지난해 12. 13자로 확정 · 발표하여, 확정된 개정안은 2009년도부터 유치원에 적용하게 됩니다.(관련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구)교육인적자원부 분야 홈페이지(www.moe.go.kr) -부내서비스-(교육과정/교과서)(http://cutis.mest.go.kr)-교육과정소식-149번에서 확인)

○ 7차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서 및 활동지도 자료집은 집필 중으로 올해 중순경쯤 발표될 예정으로 있었으나 현재까지 진행 중으로 완료되는 즉시 우리부 홈페이지 및 보도 자료로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추가로 2008년 11월 현재 교육과정/교과서정보서비스(http://cutis.mest.go.kr)를 통해 탑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즐거운 생활」 실험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수정요망!!

질의

○ 2007 개정교육과정 1,2학년용 즐거운생활 교과서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수정을 요합니다.

〈문제점〉

1. 개정교육과정 [즐거운생활]교과서의 국악관련 내용 비중이 지나치게 축소되었다.
2. 개정교육과정 [즐거운생활]교과서에 일본풍 전래동요나 창작곡이 실려있다.
3.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제작 집필진 및 심의진이 국악교육에 대해 잘모르는 서양음악 전문가들로만 이루어져있다.

○ 이는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후손에게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중요한 일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 부디 꼭 확인하시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의 확인을 위

해 관련기사를 개재하며, 즐거운생활교과서와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개선해야할 내용〉

1. 2007 개정교육과정에 의한「즐거운 생활」실험본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의 전통문화영역을 현행과 같은 비율로 환원시키거나 상향시킬 것.
2. 2007 개정교육과정에 의한「즐거운 생활」실험본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의 국악영역을 현행과 같은 비율로 환원시키거나 상향시킬 것.
3. 2007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개발시 집필진, 심의진, 연구진의 국악과 양악 전공 교수 및 교사 비율을 동일하게 할 것.
4. 일본 동요 풍의 노래를 삭제할 것
5. 교육과정의 목표에 역행하는 교과서 개발로 불필요한 예산과 노력의 낭비를 초래한 교과부 담당자를 문책할 것.

회신 회신일 : 2008. 8. 30. [교육과정기획과]

○ 아시는 바와 같이 '즐거운 생활'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따라 하나의 독립된 교과로서 '다양하고 즐거운 놀이와 활동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과 감상 능력, 심미적인 태도를 기른다.'라는 목표 아래 구성된 통합교과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 아래 학생들의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주제 아래 다양한 활동과 경험들이 통합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교과입니다.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통과 문화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래동요를 몇 % 이상 넣어야 한다는 것은 전래동요를 먼저 선정해 놓고 그에 맞추어 교과서를 편찬해야 한다는 전제가 됩니다. 이는 학생 경험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교과서를 편찬하게 되는 통합교과인 즐거운 생활 교과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즐거운 생활 교과가 음악 교과라면 그런 접근이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즐거운 생활 교과는 주제 중심의 통합교과이기 때문에 주제에 따라 그 주제에 맞는 동요를 관련 요소로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통과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깊이 공감하므로 전래동요는 음악 교과에서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의 구성에 따라 지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4년 교육과정 기초 연구, 2005년 교육과정 시안 연구, 2006년 교육과정 현장적합성 검토를 거쳐 2007년 2월에 교육과정을 고시하였습니다. 7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현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 전국 64개 학교로부터 현장적합성 검토 의견를 받아 수정 보완한 후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제화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과 민족 정체성을 확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에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질의

질의

○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부칙에 명시된 대로 2009년에 유치원, 초등1, 2학년 시행부터 시작하여 2013년 고 3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내년 전면시행이라는 말이 있어 혼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30. [교육과정기획과]

○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기본 교육과정,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등으로 편성 운영됩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지체 부자유, 청각, 시각 장애아 등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입니다. 기본 교육과정은 정신지체, 정서장애 등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입니다.

첫째,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고시된 바와 같이 '09년부터 학년별로 연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둘째,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별로 학년 구분 없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기본 교육과정은 '09년도에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 대부분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은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인 것 같습니다. 기본 교육과정은 내용이 학년별이 아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09년도에 전면 시행된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일반 초중등학교처럼 학년별로 연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기본 교육과정'(정신지체, 정서장애 대상)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적용 시기를 구분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학년도 [치료교육활동]편제 및 담당교사배정

질의

○ 현직 특수교사 이면서 NEIS 교무업무시스템전담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2008 개정 특수학교교육과정의 편제와 개정 전 특수학교교육과정의 편제의 연차적용으로 인한 [치료교육활동]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3. [교육과정기획과]

○ 2009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특수학교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치료교육활동이 편제되어 있으므로 특수학교에서는 해당학년 학생들에게 치료교육활동을 편성 운영하셔야 합니다. 또한, 치료 교육활동은 치료 교사 또는 재활복지 교사가 맡아서 수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원격 60시간 연수에 의해 치료 교사에게 주어지는 재활복지 교사 자격은 특수교사 자격으로의 과정이기에 그 동안 치료교육활동을 담당하셨던 치료 교사(또는 재활복지 교사)가 아직까지는 그 교과를 담당해주셔야 함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09학년도부터 실시하라는 보건교육에 대한 질의

질의

○ 2008 부분수정교육과정(교과부고시 제2008-148호)에 근거하여 2009학년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에 각 각 17시간의 보건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침이나 공문이 시달되고 있으나 2009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계획을 수립을 어찌해야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9. [교육과정기획과]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부분 수정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8호)는 학교보건

법 제9조의 2와 부칙에 의해서 2009년 3월 1일부터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된 바, 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동 고시로 따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재량활동을 운영하는 것은 학교 자율권 확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량활동 전반에 대한 시수 배정권 등이 학교장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동 고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 자율권 확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시수의 배정은 최근 학생들의 성장 발달과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은 보건 교사가 담당하되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담당할 보건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담임 교사, 교과 담당 교사 등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7차 개정 교육과정 중 '특별활동' 영역관련

질의

○ 7차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특별 활동 영역 중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은 영역 간의 균형을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영역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고,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은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위에 조항에 따르면, 특별활동 영역 중에서 한가지를 중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진술과 봉사활동과 행사활동을 별도로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상치됩니다.

○ 그리고 봉사활동과 행사활동을 위한 '별도의 시간'이라는 것이 '교육과정 기준 주수 34 주' 이외의 16일의 융통성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내용 분량 기준 주수 32주' 이외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9. 17. [교육과정기획과]

○ 특별 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한 교과 이외의 활동입니다. 특별 활동은 근본적으로 집단 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집단에 소속한 개인의 개성, 자율성, 창의성도 아울러 고양하려는 교육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특별 활동 교육과정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5개 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학년별 연간 68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영역별 시간 배정은 학생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재량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영역별 활동에 필요한 시간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에 배당된 최소 시간을 기준으로 학교 재량으로 해당 학교에서 배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학교 재량으로 배정하되, 더욱 질 높은 활동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려고 봉사 활동과 행사 활동의 시간은 별도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특별 활동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에 배당된 시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의 필요, 학생의 희망, 요구 등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을 학생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에 맞게 각 학교에서 결정하여 배정하되, 특별 활동 5개 영역이 모두 중요한 활동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편법 운영을 위해 학교의 재량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 급별, 학년별로 활동 영역 및 내용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떤 영역에 역점을 두어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영역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 확보한 시간을 배정해도 큰 무리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학생의 소질과 특기·적성 신장을 위하여 계발 활동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자 할 경우,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에서 계발 활동 영역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기타 활동에는 적은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거나 자치 활동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기타 활동에는 적은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영역에 특별 활동 시간을 모두 배정하고 기타 활동은 전혀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는 피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필요한 경우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은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국가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의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학교에서 시간을 더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차 교육과정 개정

질의

○ 초 · 중등 교육과정 '제 7차교육과정'이 2007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로 한차례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헌데 최근 보니 2008년 12월에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60호'가 나왔더군요. 그렇다면 제 7차 교육과정이 2007년과 2008년, 두번의 개정을 거친것입니까? 그리고 2009년도 개정교육과정이 또 있습니까?

1. 제 7차교육과정은 몇번의 개정을 거쳤으며, 개정 고시번호를 각각 알려주세요.

2. 2007년도와 2008년도 개정교육과정은 차이가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09. 3. 9. [교육과정기획과]

○ 2003년 이후 국가사회적 요구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정도 이루어지지만 가급적 큰 틀의 교육과정은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개정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이후 수시교육과정 개정체제에 따라 8차 교육과정이라 공식적으로 칭하지 않고 교육과정 개정 연도를 따서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2004년 이후 해마다 교육과정의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왔고, 최근 가장 큰 폭의 교육과정 개정은 2007년에 개정한 것입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인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2007.2.28), 보건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08-148호'(2008.9.11),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을 개정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60호'(2008.12.26) 등이 최근에 개정한 교육과정입니다.

○ 2008년에 개정한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교육과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과정/교과서정보서비스(http://cutis.mest.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차 교육과정 개정안 중 재량활동

질의

○ 2007년 2월에 발표된 7차교육과정 개정안을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의 재량활동이 총 12단위에서 (창재 포함) 6단위로 바꿨는데 이를 재량활동

의 축소운영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그러니깐 교과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이 모두 포함되어 6단위로 축소된것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09. 2. 23. [교육과정기획과]

○ 고등학교 1학년의 재량활동이 12단위에서 6단위(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 포함)로 조정되었습니다. 월2회 주5일 수업으로 인한 수업시간 감축 및 역사 및 과학교육강화를 위해 재량활동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학교의 재량활동 운영의 자율권 강화를 위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재량활동의 내용과 시간을 모두 국가기준에 제시하여 학교의 자율권이 부족하였으나, 2007년 개정한 교육과정에서는 시도로 위임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재량활동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시간상으로 보면 재량권이 축소되었다고 보일 수 있으나, 운영상으로 보면 재량권이 좀 더 지역과 학교에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정보

질의

○ 2009년부터 적용되는 2007 영어교육과정에 대해 어떻게 자료를 볼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3. 19. [교육과정기획과]

○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교과부 주요 사이트의 교육과정/교과서 정보 서비스(http://cutis.mest.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수학 영역의 바뀌는 부분

질의

○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 기존 7차 교육과정의 내용에 있던 '정비례,반비례'부분이 초등6학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09년에 중1을 올라가는 학생들은 '정비례, 반비례'

를 배우지 않고 중학생이 되는 모순이 있구요. 기존 7차 교육과정중 고1 내용에 있었던 산포도와 표준편차가 중3내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2009년에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은 중3까지는 7차교육과정으로 고1에서는 8차 교육과정을 받게 되면서 분산과 표준편차의 내용을 배우지 못하고 상급학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중3과, 중2, 중1 학생들까지 7차 교육과정을 받고 있으므로 향후 3년간 발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30. [교육과정기획과]

○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 3월,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 적용됩니다. 그리고 수학 교과의 일부 내용이 학년 간, 학교급 간 이동하여 일부 학년에서는 일부 교과 내용을 배우지 못한 채 진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개정 교육과정 적용 대비 수학과 교수-학습자료"를 초등학교용 175,000부, 중학교용 17,000부를 각각 제작하여 2008년 4월 전국의 초등학교 선생님과 중학교 수학 선생님께 보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정 교육과정 적용 전년도인 올해에 위에서 지적한 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업시간에 교육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자료는 학생용 CD를 부록으로 담아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할 형성평가지 등을 손쉽게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서 발간 여부

질의

○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 정식으로 언제쯤 발간되나요? 연수 책에 나오는 개정 교육과정 중 일부 틀린 사항이 있어 개정 유치원 정식 발간 여부에 문의합니다. 개정 교육과정 연수에서 나눠 준 책이 2009학년도 시험에 적용되는건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8. 28. [교육과정기획과]

○ 개정된 유치원 교육과정은 2007년 12월 19일에 확정 · 발표하였으며, 2009년도부터 유치원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급변하는 시대 상황

에 맞게 개정 · 보완하는 '수시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설서 및 활동 지도 자료집 집필을 마치고 9월초 인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9월 중순경 각 시 · 도 교육청 및 시중에 배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도 하반기 임용시험에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교육과정에 관하여

질의

○ 7차 교육과정은 개정되어 나와 있는게 있는데 기본교육과정도 같이 개정이 된건지요. 8차 교육과정이 아니라 개정 7차 교육과정이라 교육과정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1. 교육과정개정의 범위(국민공통교육과정, 특수교육과정 등)와 개정된 교육과정의 최종 고시일
2. 기본교육과정이 개정이 되었다면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6. 29. [교육과정기획과]

1. 교육과정의 개정 고시는 2009년 3월 1일 이후부터 초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종 교육과정 고시일은 2007년 2월입니다.
2.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 교과서/교육과정 정보 서비스(http://cutis.mest.go.kr)에서 관련 자료 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목중 국사가 선택과목인가요?

질의

○ 현재 고등학교 교과목중 국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사는 고대사와 근현대사가 구분되어 근현대사는 선택과목이다. 국사가 수능시험에서 선택과목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 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09. 7. 29. [교육과정기획과]

○ 국사 교과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과입니다. 또한 국사 교과의 내용은 선사시대로 부터 현대사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근현대사는 심화 선택과목으로 학교 또는 학생이 선택하여 이수하는 교과이며 19세기 이후 현대까지의 역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은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할 과목이 없으며, 학생 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점의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판매

질의

○ 서점에서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점 측 얘기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마당에서 팔 수 있도록 지정해 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책은 복사제본한 교재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26. [교육과정기획과]

○ 우리부에서는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을 지정하여 판매를 하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 고시마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책자는 불법이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부 교육과정기획과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est.go.kr) → 하단의 바로가기 서비스 〉 교과부 주요사이트(교육과정/교과서) → 교육과정 공지사항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과 시수 감축

질의

○ 교과시간수 조정에 있어 주당 3시간이상의 시수가 배당된 교과는 주당 평균 1시간이내 수업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 교육 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감축한 1시간의 교육

활동은 해당교과 시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재량활동(창의적 재량활동) 시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감축한 교과의 시수가 되고 수업내용구성만 담임 재량으로 하는 것인지요?

○ 주5일수업제로 인한 교과 시수 감축에서 연간 34시간(주당 평균 1시간)범위에서 감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질문 1번의 주당 3시간이상 시수가 배당된 교과와 상관 없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교과를 정하여 주1시간 혹은 2시간 배당된 교과의 시수를 감축을 해도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9. [교육과정기획과]

○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영역에 대한 연간 수업 시간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시간 확보와 운영 등에 대해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주 5일수업제 실시에 따라 수업시수는 단위학교가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중에서 연 34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운영하되, 특정 교과목이나 영역을 집중적으로 감축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교과 편제와 단위 배당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에 관한 질의

질의

○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 교과를 두 개 이상으로 나누어 편제와 배당을 1년 반 또는 2년으로 운영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6. [교육과정기획과]

○ 초 ·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하면 '학교는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 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후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시

기 바랍니다.

교과내용에 대한 교사의 권한

질의

○ 교과서를 가르칠 때 교과서 이외의 내용에 대한 것을 교사가 재구성하여 가르치는 법적인 한계가 있는지요? 교사가 재구성하는 내용이 사회적인 통념상 학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고등학교 윤리교과서는 시민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윤리 과목시간에 윤리와 사상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가르치면 문제가 없는지요? 현재 대입수능에서는 시민윤리에서는 출제하지 않고 윤리와 사상+전통윤리에서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인 통념상이란 수능에서 아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2. [교육과정기획과]

○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과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 정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이 경우 지역의 여건,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할 때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은 가르쳐져야 합니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있어 학생의 성취수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교과내용의 재구성이나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보충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교육과정의 내용 중 일부를 수능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능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해당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과연 학생에게 바람직한 것이고 도움을 주는 것인가 하는 점도 신중히 고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학입시와 수능시험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당면 과제이기는 하지만 교과목의 존재 이유를 수능시험 출제 여부에 국한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과정 [공업계열 전문 교과 과정] 자료

질의

○ 교육개정 관련하여 제1차~제7차 교육과정 [공업계열 전문 교과 과정]을 보고 싶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별책20] 공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찾았는데 남은 과정은 찾지를 못하겠네요. 자료를 볼 수 있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 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5. [교육과정기획과]

○ 공업계 전문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교육과정·교과서 정보 서비스'에 탑재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며, 그 전 것은 〈대한교과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과정 운영

질의

○ 2009학년도 00고등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서 2학년 과학기술집중과정에서는 음악교과 2단위를 이수하게 되어있고, 인문사회집중과정에서는 미술교과 2단위를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및 NEIS 에서는 음악과 미술 과목을 정상적으로 운영(미술 2단위, 음악 2단위)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는 음악 1단위는 수학교사가 수학수업을 진행하고, 미술 1단위는 영어교사가 영어수업을 하는 편법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9. [교육과정기획과]

○ 교장, 교감선생님 및 관련되는 교과의 협의회를 통하여 충분히 상의하여 해결하시길 바라면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결정한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기초하여 학교에서 결정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 말은 학교 교육에 실행할 교육과정은 최종적으로 당해 학교에서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국가나 시도교육청과 교육과

정의 결정 권한을 공유 내지 분담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분석 결과와 기초 조사 및 실태 분석 결과를 종합, 분석, 토론하고,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교육 방침을 종합하는 작업을 선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학교는 교육 목표, 특색 사업, 역점 사업, 영역별 교육 중점, 편성·운영의 기본 원칙을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교과별, 영역별, 학년별 교육 중점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제기하신 교육과정 편법운영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과 관련되신 교과의 협의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충분한 논의를 거치신 후 해결하시길 바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과정심의회 재구성

질의

○ 교육과정심의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택교과와 통합교과를 제외한 총론 및 기타 급별, 교과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임기가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이전에는 6개월 전에 교육과정심의회를 재구성했는데, 이번에는 구성을 아예 안하는 건가요?

○ 지금 미래형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논의가 나오고 있고 조만간 교육과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걸 다루는 심의기가 자체가 없이 교과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인가요? 교육과정 심의회가 일정한 규정에 의해 구성되었는데 앞으로 구성 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4. [교육과정기획과]

○ 교육과정심의회는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여론 수렴과 개정사항 심의를 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자문 기구입니다. 2006년에 구성된 교육과정심의회는 2008년에 임기 만료되었고, 2007년에 구성된 심의회는 2009년 9월에 임기만료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부는 교육과정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 구성의 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새로운 교육과정심의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아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에 대해

질의

○ 고등학교 교사로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변경하고 싶은데, 자연반 선택과목으로 물리, 지학, 화학, 생물이 있는데, 그 과목들 시수가 똑같이 맞춰져야 하나요? 예를 들면 물리1 시수가 2시간이면 다른 과학 과목들도 2시간씩 해야 되고, 3시간이면 다른 과학 과목들도 3시간씩 해야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5. 28. [교육과정기획과]

○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따르면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은 4단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 단위가 4단위이므로 각 과목별 감축 운영은 어려우나 교과에 따라 6단위로 증배운영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단위 학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상업계 교과 공업계로 통합한 것에 대하여

질의

○ 상업계의 일부 교과(예, 디자인 교과)가 공업계로 통합되어 상업학교에서는 통합된 교과를 운영할 수 없어 일부 학교에서는 디자인과를 폐지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차교육과정에서는 계열의 경계가 없어서 필요하다면 다른 계열의 과목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멀티미디어디자인과가 있어 디자인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계로 통합하여 이제 상업학교에서는 더 이상 디자인 교과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또 일부에서는 다만 지금까지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공업계에서 관리만 할 뿐이지 상업계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도 하더군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31. [교육과정기획과]

○ 7차 교육과정에서는 상업에 관한 교과에 디자인 관련 과목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

만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자인 과목이 상업계열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업계열에서는 공업계 계열과목을 쓸 수 없으므로 디자인계열은 향후 공업계열에서 기준학과를 설정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새교육과정중 전문계열 기준학과 및 전문교과 편제에 관하여

질의

○ 새교육과정의 전문계 교육과정 편제 편성표를 보면 전문계열별로 기준학과 와 전문교과목이 편제되어있는데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준학과가 변경된 학과가 있는데 이에 대한 3가지 의문사항입니다. 상업계열의 시각디자인과는 공업계열로 이관 관광경영실무는 가사실업계열로 이관등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개정된 응용디자인과와 관광경영학과의 경우 기준학과 로만 제시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과목은 타계열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둘째. 기준학과가 타계열로 이관되었으면 계열필수과목도 변경이 되어야 하는가?

셋째. 두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현 상업계열로 등록된 전문계고교의 시각디자인과의 필수과목이 상업계 필수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교과목들은 공업계열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다면 계열필수 과목도 공업계열 필수 과목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유사한 예로 상업계열 고교에 신설된 관광과 또는 유아교육과 등의 학과의 필수과목이 상업계열 필수과목으로 편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가사실업계열의 필수과목이 편성되어야 하는가?

○ 아울러 상업계열이지만 계열필수과목이 공업계열이나 가사실업계열의 필수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학과의 계열등록(교육청으로의 등록)도 변경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서 제가 속한 학교뿐만아니라 타 상업계 교사들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4. [교육과정기획과]

○ 상업계에서 기준학과란 상업계열에서 개설할 수 있는 학과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과목이 타 계열로 이관되었어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학과는 향후 상업계에서 학과를 신설할 때 기준이 되는 학과입니다.

○ 이미 학과가 개설이 되어 운영되는 학과는 계열 필수를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각 계열은 자기 기준 교과에서 필수 교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미 학과가 신설되어 운영되는 학교는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학과를 다시 신설할 경우에는 계열의 교과 내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합니다.

중·고등 및 대학교육과정에 질문

질의

○ 저는 지금 중 고등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주제로 비지니스 프리젠테이션을 준비중입니다. 예전 또는 요즘에 중등, 고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이나 미래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이었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9. 19. [교육과정기획과]

○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관련 교과(도덕, 사회, 기술.가정 등)의 수업시간에 진로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http://cutis.mest.go.kr의 교육과정 소식 자료에 제7차 교육과정(1997.12.30 고시)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2007.2.28 고시)이 탑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관련 교과 교육에서 진로교육을 다룰 뿐만 아니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진로교육을 범교과 학습으로 다루도록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생활지도, 학습지도, 진로지도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대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1조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마다 다양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000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별로 학생생활지도 관련 기구가 있어 진로, 취업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체계적인 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사교과가 선택제 인가요?

질의

○ 중,고등학생들의 국사교육이 필수가 아닌 선택제라고하던데 국사교육이 선택제로 바뀐시점과 바뀐이유 등에 관하여 자세한 자료 좀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5. 29. [교육과정기획과]

○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국사교육은 '필수'입니다. 현행 7차 교육과정(1997. 12.31. 고시) 및 2007 개정 교육과정(2007.2.28 고시)에 의하면 중학교에서는 2~3학년에서 '(중학교)국사'를,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고등학교)국사'를 필수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사과목이 독립적으로 분리 되었는지

질의

○ 중등학교 과목 중 역사라는 과목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이수단위 시간이 늘어난나고 예전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 발표안이 실행이 됐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7. 2. [교육과정기획과]

○ 세계화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과학적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과학과 수업시수를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증대하여 말씀하신대로 중.고등학교의 사회 교과에서 '역사'과목을 독립시키고자 2009년 새교육과정을 발표하였으며 적용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9년도 : 초 1, 2학년
- 2010년도 : 초 3, 4학년
- 2011년도 : 초 5, 6학년, 중 2학년, 고 1학년
- 2012년도 : 중 3학년, 고 2학년
- 2013년도 : 고 3학년

연구학교 자료의 공개

질의

○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연구학교 관련 두 가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1.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보고서를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7. [교육과정기획과]

○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통합검색:연구학교-정보마당(94건)-2008학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신규지정 연구학교 현황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개정교육과정 지도서를 구입 방법

질의

○ 2007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지도서가 현장에 보급되지 않아 현장에서 유아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매우 곤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수요를 조사하여 배부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교육청은 사전에 수요조사가 없었으며, 문의 결과 각자 학교에서 구입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하지만 출판사 홈페이지에는 "품절"이라는 메세지만 몇 달째 뜨고 출판사가 임의로 출판할 수 없으며 반품된 것만 일부분 살 수 있다는 답변만 올라오네요.

회신 회신일 : 2009. 5. 21. [교육과정기획과]

○ 유치원 교육과정 지도서는 공급 판매 기관인 출판사에 확인한 결과 6월에 재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서

질의

○ 유치원 교육과정을 1차부터 찾으려고 하니 쉽지가 않네요. 혹시 유치원 교육과정을 1차부터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또한, 5차부터는 해설서를 구했는데 혹시 그 전에도 해설서가 있었는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9. [교육과정기획과]

○ 해설서는 5차 교육과정 때부터 발간하였으며, 해설서는 현재 교육과정/교과서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계고 교육과정에 대한 질의

질의

○ 우리학교는 전문계고로서 올해부터 3년간 현장실습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구과제중 하나를 3학년에 배치된 보통교과를 2학년에 이수하게 하고 3학년에는 전공교과목만으로 배치하여 3학년이 되면 언제든지 현장실습을 나가게 할수 있는 체제를 구상해보고 있습니다.

○ 현재 1학년이 3학년이 되면 국어 1단위, 영어 1단위와 수학 3단위를 이수 하게 되어있는 그 5단위를 2학년으로 내려서 이수하게 하고 공교과목 5단위를 3학년으로 올려서 이수하게 되면 대학으로 진학을 변경하고자 하면 3학년에 국어, 영어와 수학 등을 이수하지 않았다 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1. [교육과정기획과]

○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재구성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재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2011년 1학년, 2012년 2학년, 2013는 3학년이 적용됩니다.

전문계고 학과 통폐합에 따른 필수교과 이수 관련

질의

○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전문계고교(농,공,상,가사 등)간 학과를 조정하였고 학과내 필수교과를 지정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있는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기존 상업계열 학과인 디자인 관련 학과는 공업계열로, 관광관련 학과는 가사계열 학과로 통폐합 되었는데 이때 디자인 학과와 관광관련 학과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상업계열 학과 편제에는 없는데 재학생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과목도 상업계열 교과와 공업계열, 가사계열 교과를 동시에 배우게 되는데 해당 학과명을 상업계열에 맞게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요?

둘째, 학과통폐합으로 계열이 변경된 학과에서의 공통필수교과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디자인학과는 공업계열로, 관광관련 학과는 가사계열로 통폐합되었으며 해당계열의 필수교과를 이수해야 되는데 재학생들은 여전히 상업계열 교과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 개정교육과정을 보면 반드시 해당계열의 공통필수교과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매우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 [교육과정기획과]

○ 계열이 통폐합 되었더라도 지금 현재 상업계열로 편성이 되어 있다면, 상업계열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신설되는 학과에서는 적용됩니다.

○ 상업계열로 편성되어 있는 학과는 상업계열 필수 교과를 배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보컴퓨터 관련 교육과정 편성

질의

○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서 8페이지의 (2)전문교과 표에 보면 타이틀이 교과/ 과목/ 기준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로 구분되는 '농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에 관한 교과'는 '전문계 계열'(농업, 공업, 상업 계열 학교)을 뜻하고, 정보컴퓨터 교사는 실업계에서는 컴퓨터 관련 전문교과를 가르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저희 학교는 상업계열 교과이며, 이 표에 보면 '상업에 관한 교과'에 포함된 과목에 컴퓨터 관련 과목인 컴퓨터 일반과, 프로그래밍 실무, 컴퓨터 그래픽, 자료처리, 전자계산실무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정보컴퓨터 교사가 이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저희 학교 상업교과 선생님들 중 '상업에 관한 교과'를 발령 과목 '상업 혹은 상업정보'로 해석하여, 정보컴퓨터 교사가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포함된 컴퓨터 관련 과목을 모두 가르칠 수 있고, 특별한 경우 정보컴퓨터 교사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컴퓨터 일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도 상업교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상업에 관한 교과'가 '상업 교과'를 뜻하는 것인지, '상업 계열(상업계)'을 뜻하는 것인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2. '상업에 관한 교과'가 '상업 혹은 상업정보' 과목을 뜻하는 것이라면 '정보컴퓨터' 교사가 가르쳐야할 과목에 대한 명시는 어디에 되어 있으며, 실업계에서 컴퓨터 관련 교과라는 구분을 일선 학교에서 나눌 수밖에 없는지 알려 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09. 6. 11. [교육과정기획과]

○ 7차 교육과정에서 상업에 관한 교과란 상업계열의 전공 교과를 의미합니다. 컴퓨터 관련 과목 수업은 상업계에서 상업 전공교사와 컴퓨터 관련 교사가 다 가르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학교의 교원 수급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학교 영어 7-a, 수학 7-가 학기별 이수 시간 확보

질의

○ 2007학년도 1학기 중학교 1학년 영어7-a, 수학7-가는 학기별 이수시간 영어(51시간), 수학(68시간) 반드시 확보해야 하나요? 연간 이수시간은 확보했는데 1학기 영어 50시간, 수학 67시간을 실시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 학기별 이수 시간을 확보하라고 명시된 법령이 어디에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19. [교육과정기획과]

○ 2004.11.26.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85호에 Ⅳ.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중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항목의 내용은 학교는 필요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총 교과 이수 단위를 10% 범위 내에서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학교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질의

○ 7차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교과재량 심화보충 운영부분에 대해 중학교 교육과정운영상 교과재량 심화보충교과를 선택하는것에 있어서 국민공통기본교과 중 일정교과로 그 선택의 폭이 제한이 있습니까?

○ 교과재량 심화보충교과가 학년 당 2과목을 꼭 이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9. 8. [교육과정기획과]

○ 국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교육부 고시 제1997-15호)에는 교과 재량활동시간을 선택과목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시간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중학교 재량활동의 선택과목 시간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은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

질의

○ 컴퓨터의 중요성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중요성만큼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컴퓨터 교과에 대한 지원 및 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7. [교육과정기획과]

○ 제7차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은 범

교과 학습 주제로 설정하여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정보" 과목 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에서 컴퓨터 및 정보화 관련 내용이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교육도구로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 특히,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하드웨어와 개별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정보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알고리즘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악플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 교과목으로서의 컴퓨터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의 교수-학습내용에서 컴퓨터 및 정보화 관련 내용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컴퓨터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에서의 컴퓨터 활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컴퓨터의 유용성과 기능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문과와 이과 분리

질의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를 나누어서 따로 수업을 받게끔 제도가 시행된 것이 언제부터인가요?

○ 중학교 입학시험이 언제부터 시행하다가 사라진 것인지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4. [교육과정기획과]

○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를 나누어 따로 수업을 받는 제도는 7차 교육과정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어 예전처럼 제도상으로는 문과나 이과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주요 선택 과목을 정하고 그 선택 과목을 이수한 학생끼리 성적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이고 그 학교만 따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고등학교 2, 3학년에서는 소위 무학

년제로 운영되므로 2학년과 3학년 동시에 같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중학교 입학시험이 폐지된 것은 7차 교육과정 시기인 2003년도부터이며 교육청별로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을 정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초등 1, 2학년 재량활동에 영어교육 편성에 관한 질의

질의

○ 2007 개정교육과정, 영어교과에서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과 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상 재량활동에 범교과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 내용항목 중 영어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교육과정에 독도, 보건, 독서, 정보통신기술교육 등은 명시되어 있으나 영어교육 관련은 '영어교과'에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1,2학년은 해당없음

○ 영어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 개발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 형태로 적용하기로 함(즉 1,2학년에 영어 도입을 재고하기로 함)

○ 교육과정과 편성운영 지침에서 1.2학년 영어 도입을 유예했으나 재량활동으로 편성하는 것은 상위내용을 위배한다는 점

회신 회신일 : 2009. 3. 5. [교육과정기획과]

○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와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됩니다. 초등학교에서 재량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입니다. 재량활동은 교과교육이나 특별활동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지식위주의 교과교육에서 벗어나 단위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능력을 함양하여 자신의 미래를 자기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을 갖추어주고, 학생들에게 자신과 관계된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고, 나아가 학생 개인의 요구와 관심, 흥미를 교육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국어, 수학 교과 이외에는 현재 통합 교과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량활동 시간의 영어 교과 편성은 창의적 재량활동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설정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재량활동 영역 편성

질의

○ 내년부터 개정교육과정 재량활동의 내용과 성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단위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 확대'가 보다 강화된 점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교나름의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능력 개발을 위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 교육내용을 창의적 재량활동에 반영하여 실천하도록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자 한다 라고

○ 학교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 시간은 영 68시간(주2시간, 1학년 60시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량활동에서 운영하여야할 규정된 교육내용과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 교육과정에 명시된 범교과학습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수 있는 교육내용의 사례가 35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정보화 및 정보윤리교육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 교육지침으로 34시간을 확보운영하라는 내용과 보건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아울러 시기적으로 2009년도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을 수정 보완하여 고시해야 할 때 입니다. 모든 시도가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이러한 재량활동의 모순을 최대한 융통성 있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택 운영할수 있도록 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7. [교육과정기획과]

○ 재량활동은 범교과 학습내용을 자기 주도적 방법으로 학습을 운영하는 시간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기준에 범교과 학습영역으로 보건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등 35개 교육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정보통신기술교육을 강조하여 운영 지침을 제시하였고, 최근에는 보건교육을 강조하여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학교교육에서 다양한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고, 특히, 국민

의 대의기관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존중하여야 하는 바, 다양한 교육방법을 강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자율화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교육과정 운영관련 지침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교육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조속한 시일내에 재량활동 운영에 관한 개선 사항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정 중 정일제와 정시제에 대해서 질문

질의

○ 정일제와 정시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정일제는 매주 특정한 요일 특정 교시에 활동하는 것이 맞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8. 12. [교육과정기획과]

○ 교육과정에 의한 전일제(정일제가 아님) 교수·학습 방법은 학교현장에서 1년 또는 1학기 이수단위(학기당 17시간) 계획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에 예를 든 활동을 말씀드린다면,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p35 〈관련자료 우리부홈페이지 - (구)교육인적자원분야 - 정보교실 - 정보자료실 - 유.초중 분야 - 235번에 탑재〉
- 특별활동 상황의 영역의 (자치활동, 적응활동, 행사활동 - 전일제 수업), (계발활동 - 정시제)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학과 진급평가 관련 의견

질의

○ 2009학년도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는 제7차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97.12.30)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부분 수정 고시(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6-75호, 2006. 8. 29), 그리고 2007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7-79호, 2007. 2. 28)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그런데 고시 2006-75호와 2007-79호의 부칙에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은 2009학년도에 초등학교 3, 4학년은 2010학년도에 초등학교 5, 6학년은 2011학년도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 조항을 그대로 해석하면 1-2학년은 올해부터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수준별 교육과정이 폐지되고 수준별 수업이 적용되고(따라서 진급 평가도 폐지) 3-4학년은 2010학년도, 5-6학년은 2011학년도부터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2009학년도에는 종전의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수준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진급평가의 경우에도 2009학년도에는 3-6학년이, 2010학년도에는 5-6학년이 실시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아울러 '수준별 수업'의 적용과 진급평가의 폐지도 1-2학년은 2009학년도, 3-4학년은 2010학년도, 5-6학년은 2011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 다만 위의 두 가지 교육과정 개정 관련 고시(2006-75호와 2007-79호) 외에 별도의 고시나 예규, 지침, 공문 등에 의하여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은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적용하되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용어의 폐지와 '수준별 수업' 권장은 즉시 또는 2007학년도부터 등으로 앞당겨 적용하도록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수준별 교육과정의 폐지와 수준별 수업의 적용, 그리고 진급평가의 폐지 학년, 시기 등을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30. [교육과정기획과]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고시 제2007-79호(2007.02.28.) 이후 2차의 부분 개정이 있었습니다.

- 1차 부분 개정 : 2008.09.11 -> 보건교과 부분 수정(고시 제2008-148호)

- 2차 부분 개정 : 2008.12.26 -> 영어교과 부분 수정(고시 제2008-160호)

○ 앞으로 교육과정 개편은 전과 같이 일시에 전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지 않고 사회적 변화 등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 필요성이 있다면 연구, 검토, 수정 및 보완에 따라 수시개정체제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는 고시 제2006-75호에 의거하여

- 2009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 2010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 2011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 2012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 2013년 3월 1일 ; 고등학교 3학년

으로 시행됩니다.(단, 중등학교 수학과 및 외국어과의 적용시기 별도 규정)

○ 따라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시기가 도달되지 않은 학년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1997-15호)의 내용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셔야합니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관한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cutis.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서 국제 이해 교육 의 운영 실태 문의

질의

○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국제 이해 교육], [세계화 교육] 과 같은 주제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나, 특색 사업으로 자리 매김한 학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4. [교육과정기획과]

○ 국가 수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국제 이해 교육]을 범교과적 학습 주제로 하여 관련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국제 이해 교육] 관련 교육 활동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학교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정·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 현황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 이해 교육] 연구학교 운영 현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초등학교의 수준별 수업 집단 편성에 대해

질의

○ 7차 개정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초등학교에서는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때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 편성에 대해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급 내 집단 편성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지만 개정 교육과정으로 오면서 이러한 원칙이 없어지고 중, 고등학교와 같이 자율적인 집단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교육과정 해설서 1권의 160쪽을 보니 다시 한 번 '초등학교에서의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급 내 집단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라는 말이 있어 혼란스러워 글을 남깁니다. 개정 해설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없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7. [교육과정기획과]

○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초등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급 내 집단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수준별 교육과정은 삭제되었지만 수준별 수업은 더욱 내실화되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즉, 해설서의 내용처럼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급 내 집단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의 내용은 틀리지 않습니다.

○ 학교급을 달리한 중고등학교에서의 수준별 수업은 학급 내 집단 편성보다는 수준을 고려하여 재편성한(3단계-상, 중, 하 또는 4단계-상, 중상, 중하, 하 등) 학급간 이동 수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이동 수업이 아닌 학급 내 집단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되, 학급간 이동수업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지요. 수준별 교육과정과 수준별 수업을 분명하게 구별하시어 해설 또는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취학전 아동 한글교육은 어느정도까지?

질의

○ 초등학교 1학년 과정은 한글 첫단계부터 교육하게끔 되어있다더군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첫 수업부터 바로 받아쓰기로 시작한다더군요.

○ 취학전에 한글을 깨우쳐야만 하나요. 그럼 얼마 있지 않으면 영어까지 해야겠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27. [교육과정기획과]

○ 현행 초등학교 1학년의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에 대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의하면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서 한글의 자음, 모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부모의 과열된 교육열,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등에 편승하여 선행학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취학 전 한글교육의 수료 정도는 현행 교육과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의하면 한글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 모음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 우리부가 제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틀에 의거하여 단위학교에서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개별학급, 개별교사의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부가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현 시점에서 강제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자녀께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당해학교의 당해학급에서 선행학습을 전제로 하여 한글의 자, 모음 교육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첫 수업부터 받아쓰기로 진입하여 아동의 학습권에 막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당해 학교장 혹은 관할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 특별보충과정에 관해서 문의

질의

○ 개정교육과정은 단계형의 의미가 없어져 7차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던 특별보충과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근거자료나 공문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특별보충과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8. [교육과정기획과]

○ 이미 개정 교육과정 지침에 의해 특별 보충 과정을 실시하도록 기술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육과정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정 계발활동에 관하여

질의

○ 학교교육과정에 계발 활동을 본교에서는 전일제로 일년에 4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계발 활동에 성경읽기를 개설하고자 합니다만 교장선생님은 교육법 6조 2항을 들어서 반대 하십니다. 그래서 책읽기 반을 만들어서 책내용을 결재한다음 만들겠다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학생 종교자유보장을 위해 학교가 종교과목을 개설할 경우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 편성하고 정규 교과 시간 외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학생의 의사를 고려한 자율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31. [교육과정기획과]

○ 교육기본법 제6조 2항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2007.02.28)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하면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8.04.15 자율화 조치 이후로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었기에 그 이후로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의거 종교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가 폐지된 것은 아니고 단위학교에서 종교과목 개설시 복수과목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종교교육시 학생에게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특정 종교에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민원인의 질의내용인 계발활동 시간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교육과정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학교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결정한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기초하여 학교에서 결정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 말은 학교 교육에 실행할 교육과정은 최종적으로 당해 학교에서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국가나 시·도교육청과 교육과정의 결정 권한을 공유 내지 분담한다는 의미이며,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교육 방침을 종합하는 작업을 선행하여야 합니다.

○ 결국, 민원요구보다는 재량활동의 종교과목 편성에 대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과 열린 마

음으로 논의하신 후 학교운영위원회 등 지역사회의 의견도 수렴하신 후 좋은 결정 있으시길 바랍니다.

학사일정 관련 문의

질의

○ 중국정부에서 인가받은 학교의 개교준비를 하고 있는 한국인 교사입니다. 중국정부의 인가를 받았지만 주변 환경상 한국아이들이 주 대상이 될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커리큘럼이나 학사일정을 짤 때 한국 7차교육과정을 많이 반영하려고 합니다.다.

1. 한국법정수업일수가 220일이고 주5일제 시행관련해서 융통성있게 운영하면 220의 10%를 제한 198일을 수업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198일 수업이 가능했으니 198일의 10%를 제한 180일정도만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초중등 법정수업일은 모두 같은건가요?

2. 저희학교는 매주 5일수업만 하기 때문에 한국 기준을 채우려면 34주보다 훨씬 긴 주를 수업해야 할 것 같은데요. 대신 격주로 문화체험 활동이 있을 예정인데 이를 수업일수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업일수에 넣는다면 특별활동으로만 인정받을수 있는지 사회나 체육수업으로 넣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정수업일에 들어가는 날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한국 학교들 기준으로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7. [교육과정기획과]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매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5일 수업제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20일의 10%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더라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교과별 연간 수업 시간 수의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과별 연간 수업 시간 수는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의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기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 교육과정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휴업일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

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휴업일은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휴업일의 특기·적성, 체험·봉사 프로그램 등은 정규 교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므로 수업일수나 수업시수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u-learning 시범학교에 관하여..

질의

○ 업무관계로 우리나라 유러인시범학교(초,중,고)가 어디가 있는지 시범학교 리스트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4. [교육과정기획과]

○ 연구학교 지정은 우리부는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고, 교육감은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합니다. 우리부에서는 지정한 u-러닝 연구학교 현황('07:10개교, '06:3개교)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est.go.kr) 〉 (구)교육인적자원분야 〉 정보교실 〉 정보자료실 〉 유초중등교육 〉 "연구학교"(2286번, 1998번)로 검색하시면 연도별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3학년 기술 · 가정 전기 · 전자 기술 단원 실습 방법 구분

질의

○ 3학년 기술·가정 전기·전자 기술 단원의 전자제품 만들기 실습 단원에는 각 교과서마다 납땜 방식, 브레드보드 방식, 전자키트블록 방식 중 하나만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각 교과서에 실린 실습 방법의 정확한 수를 알고 싶습니다.

1. 납땜 방식으로 실습하는 교과서 종류는 몇 가지 종류이며
2. 브레드보드 방식으로 실습하는 교과서 종류는 몇 가지 종류이며
3. 전자키트블록 방식으로 실습하는 교과서 종류는 몇 가지인지 정확하게 할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1. 25. [교과서기획과]

○ 교과서에 한 가지 방식만 나오지 않으며 한 가지 방식 이상 실습이 제시됨.

1. 납땜 방식으로 실습하는 교과서 종류 - 5권
2. 키트블록 방식이 제시된 교과서 - 1권
3. 납땜 방식, 전자키트블록 방식 제시된 교과서 - 2권
4. 납땜 방식, 브레드보드 방식, 전자키트블록 방식이 제시된 교과서 - 1권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외형체제 기준

질의

○ 새로운 교과서 제작에 관심이 많은 이로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외형체제에 대한 기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 관심이 많은데 초등학교 수학교과서에 관한 교과부에서 제시한 기준안을 얻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31. [교과서기획과]

○ 초등학교 수학 교과용도서는 국정도서로 개발하며, 국정도서의 편찬 관련 사항은 별도의 '국정도서 편찬 추진 계획'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 교과용도서의 외형체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형 : 4×6배판
2. 색도 : 교과서 4도, 지도서 2도
3. 쪽수 : 교과별 기준 쪽수에서 20% 가감 가능

○ 기타 편집 배열, 서체 및 디자인은 학생의 발달 단계, 교과의 특성, 학습의 효율성, 가독성,

조형성 등을 고려하여 발행사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구입 방법 문의

질의

○ 당초 신입생으로 배정받은 공립고등학교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2월 초순에 지방의 다른 사립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전학을 하게 된 학교에 확인하였더니, 신입생들에 대한 교과서 배부가 이미 끝나서 여분의 교과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26. [교과서기획과]

○ 초 · 중 · 고등학교 교과서는 학교에서의 주문수량과 개별판매 실적 등 여유 생산량을 고려하여 생산 · 공급되고 있으며,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각급학교에 교과서를 우선적으로 공급한 후, 정산과정을 통해 학교에서 반납되는 수량과 여유계상분은 개별 판매처를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각급학교에서 교과서 주문 후 학생의 전입 등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 관할지역 공급소에 추가 주문을 통보하면 추가 생산 또는 학교 간 교과서 공급량 정산 절차를 통해 교과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자제분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도, 당초 교과서 주문 시 학생의 전출 · 입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것이고, 자제분에 대한 교과서 지급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의치 않아 개별구입을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지역별 지정판매점, (사)한국검정교과서 등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 학급증설, 학생 전입 등에 따른 교과서 추가 공급에 관하여는 학교와 공급소(발행사)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교과서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학년도 교과서 개별 구입처

1. 교과서별 온라인 구입처

교 과 서			구 입 처 (출판사 홈페이지)	전 화 번 호
국정	초등학교	◦ 국어(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미래엔컬처그룹	(02)3475-4093
		◦ 영어(CD, TAPE 포함)	천재교육	(02)3282-2851
		◦ 수학, 사회, 실과(1,2년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생활의길잡이, 즐거운생활 포함)	두산동아	(02)3670-5109
		◦ 도덕(생활의길잡이 3~6학년 포함)	지 학 사	(02)330-5302
		◦ 과학(실험관찰 포함)	금성출판	(02)2077-8145
		◦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교 학 사	(02)712-2188
	중 학 교	◦ 국어, 국사, 특별활동지도자료	두산동아	(02)3670-5109
		◦ 생활외국어	천재교육	(02)3282-2851
		◦ 도덕	지 학 사	(02)330-5302
	고등학교	◦ 국어, 문법, 국사, 확률과통계, 이산수학, 해양과학, 공업계, 수산해운계, 상업계, 가사실업계	두산동아	(02)3670-5109
		◦ 도덕, 시민윤리, 윤리와사상, 전통윤리, 농업계	지 학 사	(02)330-5302
		◦ 아랍어 Ⅰ · Ⅱ, 외국어계	천재교육	(02)3282-2851
		◦ 생활과학, 과학계	금성출판	(02)2077-8145
		◦ 체육계	교 학 사	(02)712-2188
검정	중 학 교 고등학교	◦ 위 교과서 이외의 교과서	(사)한국검정교과서	(02)3663-5409~12

2. 서울지역 직매장

○ 두산동아㈜ 직매장 – 국정교과서 및 검정(두산동아㈜)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270번지 연강빌딩 2층 (☎02-3670-5106)
- 지하철 : 1호선 종로5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소요

○ (주)미래엔컬처그룹 직매장 - 국정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1-10 ㈜미래엔 1층 (☎02-3475-4097)
- 지하철 :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에서 직진 도보 5분소요

○ (사)한국검정교과서 직매장 - 검정교과서 및 국정(일반계)교과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77-2 선일빌딩 2층 (☎02-3663-5409~12)
- 지하철 : 6호선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마포구청역 방향 50m

3. 각 지역별 지정 판매서점

시 · 도	지역	서 점 명	전화번호	비 고
서 울	종 로	영풍문고	(02)399-5625	국 · 검정
	을 지 로	(주)리브로	(02)757-8100	〃
	영 등 포	(주)지에스북	(02)2671-5651/3	〃
	강남(삼성동)	반디앤루니스	(02)6002-6020/1	〃
	강동(천호동)	교민문고	(02)488-2151/3	〃
	관악(신림동)	광장서적	(02)876-9081	〃
	노원(상계동)	두레문고	(02)932-3822	〃
	송 파(잠실)	예림문고	(02)419-4471	〃
	용산구(한강로)	대교문고	(02)2012-3888	〃
	노 원(중계동)	노원문고	(02)951-0633	〃
	종 로	교보문고	(02)397-3604	〃
	양 천(목4동)	종로문고	(02)2663-1865	국정
	서초(서초동)	교보문고	1544-1900	〃
	서초(반포1동)	영풍문고	(02)595-0928	〃
	광 진(구의동)	프라임문고	(02)3424-1450	〃
	노 원(중계동)	그랜드문고	(02)938-1065	〃
	동작(신대방동)	골드북	(02)841-7100	〃
	도봉(창5동)	예일문고	(02)995-5206	〃
	노 원(상계동)	가람문고	(02)933-0066	검정
부 산	서 면	영광도서	(051)816-9500	국 · 검정
	서 면	동보서적	(051)803-8000	〃
	괴 정 1 동	문학서점	(051)204-0465	〃
	남 포 동	문 우 당	(051)245-3841	국정
	해운대(우동)	영풍문고	(051)740-4300	〃
	사상(학장동)	태학도서	(051)313-1718	〃
대 구	수성(범어동)	학원서림	(053)425-0050	국 · 검정
	중구(덕산동)	영풍문고	(053)428-6700	국정
인 천	중구(인현동)	대한서림	(032)764-7337	국 · 검정
	북구(부평동)	부평문고	(032)529-0077	국정
광 주	동구(대의동)	종합서적	(062)222-4354	국 · 검정
	서구(금호동)	고려문고	(062)952-1468	국정
대 전	중구(선화동)	계룡문고	(042)222-4600	국 · 검정
	중구(중동)	대훈서적	(042)254-7007	〃
울 산	남구(신정2동)	민중서림	(052)265-8271	국정

시 · 도	지 역	서 점 명	전화번호	비 고
경 기	수원(천천동)	경기서적	(031)248-6300	국 · 검정
	안양(안양동)	대동문고	(031)449-4488	〃
	안산(사 동)	대동서적	(031)406-6666	〃
	의정부(의정부동)	숭 문 당	(031)846-2666	〃
	부천(심곡동)	경인문고	(032)613-2197	〃
	성남(서현동)	리브로(서현점)	(031)703-1110	〃
	고양(주엽동)	정 글 북	(031)922-5000	〃
	구리(교문동)	동원서적	(031)569-4621	〃
	수원(팔달로)	동남서적	(031)251-3929	〃
	부천(중 동)	영글북스	(031)623-1600	국정
	광명(광명동)	광명서적	(02)2613-5461	〃
	성남(구미동)	장영실서점	(031)716-2030	〃
	성남(신흥동)	중원문고	(031)736-2600	〃
	시흥(대양동)	한가람문고	(031)404-0161	〃
	평택(합정동)	평택문고	(031)651-9204	〃
	평택(평택동)	중앙문고	(031)651-2888	〃
	구리(수택동)	태성문고	(031)562-5838	〃
	김포(북변동)	김포서점	(031)982-4487	검정
	고양(마두동)	리브로(마두점)	(031)901-0330	〃
강 원	춘천(효자동)	교 학 사	(033)254-4133	국 · 검정
	동해(효가동)	제일서점	(033)521-3131	국정
충 북	청주(북문로)	유신상사	(043)256-2542	국 · 검정
	충주(교현동)	이 학 사	(043)844-3493	국정
충 남	천안(대흥동)	국민도서	(041)558-0004	국정
전 북	전주(경원동)	홍지서림	(063)288-5311	국 · 검정
	익산(영등동)	종로문고	(063)832-7474	국정
전 남	순천(연향동)	중앙서림	(061)723-9902	국 · 검정
	순천(연향동)	서원문고	(061)742-7811	국정
경 북	포항(남빈동)	학 원 사	(054)249-3396	국 · 검정
	구미(송정동)	춘양당서점	(054)455-6669	국정
	경주(동부동)	현대서점	(054)742-4885	〃
	경산(삼복동)	경산서적	(053)815-2724	〃
	구미(형곡동)	금오서점	(054)452-6112	검정
경 남	진주(중안동)	대양서적	(055)741-2835	국 · 검정
	통영(중앙동)	이 문 당	(055)645-3311	〃
	김해(대성동)	근비도서	(055)321-1387	국정
	창원(중앙동)	창원서적	(055)282-1544	〃
제 주	제주(연동)	현대서점	(064)748-1177	국정
	제주(이도2동)	탐라도서	(064)755-3335	검정

학교내 교과서 배부 방법에 대한 건의

질의

○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2009년 교과서 담당이라서 교과서를 선정하고 올해 3월까지 교과서 배부와 정산업무를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출판사별로 교과서가 배달되어 올해 2월 중순까지 배달되어 왔는데 보관할 일정한 장소가 없어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여러 번 보관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한 번 이동하는데 고생한 친구들은 안하려고 하여 계속 다른 학생들에게 일을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 2010년 교과서 업무를 맡은 저도 고생할 것이고 제 후임자에게 똑같이 고생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여겨 업무 이양에 대한 건의를 드리니 교과부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8. [교과서기획과]

○ 교과서의 학교 공급 방법 개선은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일선학교 관계자, 교과서 발행사 및 공급인 등과의 폭 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교원의 업무 경감과 학교에서의 교과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 관련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CD없는 교과서는 시행령 위반인지

질의

○ 교실수업개선과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을 위해 교과서 검인정 시행령도 전자저작물인 CD를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아는 데 일부 출판사들이 CD가 없이 평가를 하라고 내보냈습니다. 이는 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12. [교과서기획과]

○ 현재 중1, 고1 영어 교과서의 경우 듣기자료(CD)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발행사가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7.6.22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에는 중학교 영어 교과목에 대한 검정 교과용도서가 '교과서, 지도서, 보조자료(CD)'로 되어 있었으나, 2007.8.7 교과용도서 구분 수정고시에서 '교과서'만 검정도서로 명시되고, '지도서 및 보조자료(CD)'가 인정도서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 우리부에서는 일부 교과에서 교과서와 함께 듣기자료(음원자료)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문을 수정('08.8.28)하고 이를 통하여 2009.3월부터 영어 등 듣기 학습이 필요한 외국어는 서책형 교과서에 듣기자료(CD)를 함께 보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과서와 사회 문제집에 독도 표기

질의

○ 한국지리 공부를 하다 말고 어이없는 상황을 한가지 목격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지리 교과서에 보면 EEZ(배타경제수역) 즉 한국의 영해 과정에선 독도가 분명 있습니다.

○ 하지만 그 후 한국지리 교과서에선 한국 기후를 설명할 땐 그것이 모두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은 지도에선 점이나마 독도와 울릉도를 꼭 표기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교과서에 까지 실린 내용을 더 이상 부정할 순 없을 것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13. [교과서기획과]

○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입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지리부도 혹은 교과서의 대·소축적 지도에서는 독도를 표기하도록 하지만, 간혹 몇몇 지도는 디자인 기법상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학기술부는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교사용 지도서(중학교 1학년 사회) 제작 관련 문의

질의

○ 중학교 1학년 사회 과목의 교사용 지도서 제작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중학교 사회 과목의 교사용 지도서 제출 시기 : 시・도교육청에 언제 제출하게 되나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일부개정 2009.8.18 대통령령 제21687호]호] 제14조 1항의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월 전까지"라고 하였으므로 2009년 9월쯤에는 저희가 중학교 1학년 사회 교사용 지도서를 시・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2. 중학교 사회 과목의 교사용 지도서의 제작 사양

   : 여기서 제작 사양이라 함은 판형, 지질, 색도, 쪽수, 서체, 제본 방식 등을 말합니다. 교과부에서 2007년 8월에 제작하여 배포한 "중학교 검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이라는 책자에 교사용 지도서의 제작 사양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책에 나온 제작 사양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까?

3. 중학교 사회 과목의 교사용 지도서의 인정 기준

   : 국어, 사회, 도덕, 역사는 시도 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인정도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 기준"이 정해졌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1. 6. [교육과정기획과]

○ 중학교 사회 과목 교사용 지도서 제출 시기

1. 중학교 사회 과목 교사용 지도서는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7호, '08.8.28)에 의거,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도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 도서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4조 1항의 적용을 받아, 인정도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학기가 시작되는 6월 전까지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 규정 제40조에 의거, 제14조 1항은 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3월 새 학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년도 9월 전에 시・도교육청에 심사본과 함께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중학교 사회 과목의 교사용 지도서 제작 사양 및 인정 기준

1. 동 규정 제40조 2항 등에 의거 인정 기준의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인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께서 갖고 계신 '중학교 교사용 지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 기준(예시)'는 그야말로 예시이므로, 인정 신청을 희망하시는 시・도교육청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의 칭호 사용

질의

○ 왕의 칭호, 시호를 기록에만 부르게 하고, 교과서에는 임금의 존함(이름)을 부르게 하면 어떻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8. 21. [교과서기획과]

○ 왕의 시호는 왕이 죽은 후의 그의 업적을 평하여 그의 일생을 기리기 위하여 부여하는 호칭입니다. 따라서 그 시호에는 왕의 일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반영 되었으므로 교과서에 사용되며, 당시에는 왕의 이름은 함부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학교별 같은 교과서를 쓸 수는 없는지

질의

○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각 학교마다 다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교과서가 다른 것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9. 26. [교과서기획과]

○ 「초 · 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라 학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도서를 사용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초등학교 교과서는 대부분(영어, 예체능 제외) 국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정도서는 국가수준에서 기준과 통일을 기해야 하거나(초등학교 교과, 국어, 문법), 국가관,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해 과열된 논쟁이 조정 · 정리되어야 할 과목(국사) 또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 이념적 혼란 극복이 필요한 교과(도덕), 수요가 적어서 출판사의 검정 신청이 없는 교과(실업계 전문교과, 특수학교 각 교과) 등에 적용이 됩니다.

○ 그러나 교과서 제도의 점진적 다양화 추세에 따라 그 동안 국정도서로 편찬되어 왔던 중 · 고등학교의 사회 관련 교과서 중 국사를 제외한 대부분의(고등학교 2 · 3학년의 사회 관련 선택과목 포함) 교과서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검정도서로 전환되었습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체육, 음악, 미술, 실과 5,6학년 교과서와 영어 3~6학년 교과서, 중등학교 국어, 도덕, 역사 교과서가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필자들이 정부의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을 기준으로 다양한 수준, 형태의 교과용 도서를 집필하여 교사, 학부모 등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교과용 도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중고등학교의 경우 일부 국어, 도덕, 국사과목을 제외한 일반 교과목은 검정교과서로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는 교과부가 검정한 과목별 교과용도서 중에서 학생들의 수준과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도서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선정하고, 학생들은 동 교과용도서를 구입하여 수업시간에 사용하게 됩니다

○ 검정교과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수준, 유형의 도서를 개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학술연구를 진작하고 획일적 교과서체제를 벗어나 다양한 교과용도서가 개발 운영됨으로써 국민들의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국정교과서 제도보다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세계 각국은 다양한 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제도는 각 나라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독특한 교과서 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과서 검정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일본과 독일이 있으며, 미국은 정부의 영향력이 보다 약한 인정제, 영국은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는 교과의 경우 지방과 서울뿐만 아니라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르게 채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적 차별을 양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학 등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 다소 불편하실 수 있는 점 죄송합니다.

사회과부도 지도의 황해를 서해로

질의

○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사회과부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지도 어디에서도 서해는 없었습니다. 황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회과부도 지도에는 서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다 황해라고 기록되는 것입니다.

○ 정작 서해는 이미 중국의 바다로 인정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들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서해바다부터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찾읍시다. 사회과부도의 서해 바다를 찾아주십시오. 황해라는 단어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적 단어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6. [교과서기획과]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초등학교 사회과 학습을 위해 사회과부도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해양의 명칭은 교육과학기술부 단독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황해라는 명칭은 국제수로기구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명칭은 국제수로기구에서 결정됩니다. 국제수로기구와 협의하는 우리나라의 국가 기구는 외교통상부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사회과부도에 표기한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서해(西海)'라고도 부르지만, 국제적으로는 '황해(Yellow Sea)'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사회과 부도의 명칭 변경을 교육과학기술부 단독으로 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지역의 기준점

질의

○ 아시아지역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등으로 구분 부르고 있는바 어느지역에서의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5. [교과서기획과]

○ 뚜렷한 기준점은 현재 없고 유럽과 아시아 대륙 전체를 놓고 볼 때 동부, 서남, 동남, 중앙아시아 구분한 것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지명 및 지역관련 하여 겹치는 지역 등이 많아 뚜렷한 구분선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미래를 여는 역사'가 교과서로 쓰이고 있는지?

질의

○ 현행 교과서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2005년도에 한중일 공동교과서 '미래를 여는 역사' 발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이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쓰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 [교과서기획과]

○ '미래를 여는 역사' 교재는 역사관련 시민단체 중심으로 한중일 삼국이 함께 연구하여 출판한 동아시아 근·현대사 서적입니다. 위 교재는 현재 일선학교의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래어라고 계속 교과서에 등재되는 "다스"는 "다즌"이 맞지 않습니까?

질의

○ 아이가 초등을 다닐 때 수학 교과서를 보니 여직 "다스"를 쓰고 있더군요. 2000년도 초에도 "다스"를 쓰고 있었고 아마 지금도 "다스"로 표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제 생각에 이건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조어인 "타"로 하든지 제대로 "다즌"이라고 하든지, 다스처럼 국적불명이며 영어로 치더라도 어디에도 없는 "다스"같은 단어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어디 고전에 잘 찾아보면 우리말 중에 12개를 나타내는 아름답고 고유한 단어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권위있는 어학자, 언어학자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수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22. [교과서기획과]

○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국어원간의 업무 협약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문법, 어휘 등은 국립국어원의 어문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어생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말에 대한 정확한 어법과 표현을 심어주고자 한 취지입니다.

○ 국립국어원에 "다스"와 관련하여 문의한 결과 민원인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스"는 영어의 dozen이 일본으로 유입되어 변화된 말로 일본에서 온 외래어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건 12개를 묶어서 칭하는 말로 우리말로 순화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다만, 국립국어원에서는 “다스”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순화대상용어(다스)와 순화된 용어(타(打), 12개 묶음)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본어투 용어 순화자료집(2005.12.29.))

일본어교재 구입 방법

질의

○ 중학교 3학년 학부모입니다. 제2외국어를 한다고 하여 일본어를 선택하였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한교과서에서 발행한 일본어 교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구입해야 된다면 어디서 구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29. [교과서기획과]

○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고, 의무교육기간 중에는 교과서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각급학교에서 주문도서 신청 및 선정을 하며, 이에 해당 교육청에서는 관련 교과서 주문 집계를 내어 교과서 발행사에게 통보하여 각 학교에 주문량만큼 공급하게 됩니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별 실정에 맞게 전학하는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여유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만약 학교에 재고가 있다면 무상으로 부여 가능하나, 재고가 없다면 개별 구입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교과서를 구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각 지역별 지정판매점 또는 두산 직매장, (사)한국검정교과서를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천지역 지정판매점

- 경인문고(심곡동) ☎032-613-2197
- 영글북스(중동) ☎032-623-1600

* 두산직매장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270번지 연강빌딩 2층(☎02-3670-5106)
- 지하철 : 1호선 종로5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소요

* (사)한국검정교과서 직매장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77-2 선일빌딩 2층 (☎02-323-4682~3)
- 지하철 : 6호선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마포구청 방향 30m 지점(인디안모드 2층)

중학교 생활국어 개선 요청

질의

○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국어와 생활국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두 다 한 학기 별로 있는데요. 생활국어를 1학기, 2학기(총 2권으로) 배부 하는건 낭비라 생각됩니다.

○ 공부하는 양에 비해 단원이 턱 없이 많은 생활국어를 한 학기별로 배부할게 아니라 1년 정도하는 분량으로 줄여달라는 말입니다. 실용성이 없는 과목은 없애고 필요한 과목들만 골라 1년 총 12과목수를 반으로 줄여주셔서 종이가 절약하는 방안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1. [교과서기획과]

○ 교과서 개발은 교육과정 고시 이후, 교과서를 국정, 검정, 인정으로 구분 고시한 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어과의 경우는 학기별로 국어 및 생활국어 2책의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하나의 자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국가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교과서를 활용하여 수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도서의 분량 축소나 과목 감축 등은 향후의 교과서 및 교육과정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교과 테이프 구입 방법

질의

○ 제가 영어공부를 하려고 초·중·고 영어 교과서를 구하고 싶은데요. 교사용도 함께 구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18. [교과서기획과]

○ 일반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발행사 홈페이지, 발행사 직매장, 개별 지정 판매서점, 지역별 검정교과서 공급인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사용 지도서는 발행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입이 가능하며, 교사용으로 나온 지도서이기 때문에 여분의 수량에 따라 구하지 못하는 교과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중.고등학교 교사용 영어교과서

  (사)한국검정교과서협회 02-3663-5409~12 www.ktbook.com

- 초등학교 교사용 영어교과서

  (주)교학사 02-707-5120 www.kyohak.co.kr

○ 직매장

(사)한국검정교과서협회 02-323-4682~3

대한교과서(주) 02-541-8247

교과서 구입 방법

질의

○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교과서 구입을 하고자 출판사로 문의했으나 책이 없다는군요.

회신 회신일 : 2009. 3. 17. [교과서기획과]

○ 구입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확률과 통계'는 두산동아(주) 직매장 또는 두산동아 홈페이지를 통해 지금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두산동아(주) 직매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270번지 연강빌딩 2층(02-3670-5106) 지하철 : 1호선 종로5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소요

○ 우리부에서는 매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교육과정,교과서정보서비스)에 교과서 개별 구입처를 탑재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과서 추가 주문

이 급증할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추가 생산 관계로 일시적으로 교과서 구입이 지연되는 수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일선학교(학생)의 교과서 주문을 시도교육청이 최종 수합, 출판사(공급소)에 통보하면 출판사는 여유분을 감안하여 교과서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대상인 초, 중학교 학생의 교과서 대금은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고등학교 학생의 교과서 대금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초등학교 1,2학년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파일을 구할 수 없나요?

질의

○ 우리학교는 특색사업으로 동시외우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어과 교과서와 지도서의 동시를 발췌하여 동시집을 만들어 배부하고 아동들이 외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 학년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동시집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 2학년은 책과 지도서를 이용하여 1학기에 있는 시를 발췌하였는데 2학기는 책도 지도서도 없는 형편이라 동시집을 만드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지도서 파일이 있으면 동시집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국어 1,2학년 1, 2학기 지도서 파일을 보내주시면 아동 교육에 요긴하게 활용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13. [교과서기획과]

○ 우리부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국정도서라 하더라도 모든 교과내용 저작물(지문, 사진, 삽화 등)에 대한 저작권을 우리부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저작물에 따라 우리부의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으면 되는 것도 있고, 개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저작물은 저작자의 동의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교사용 지도서 파일은 저작권법에 의거 해당 자료를 보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 참고로 교사용 지도서는 해당 교육청에서 교원 수급 실정에 맞게 해당 학교로부터 수요 파악 후 신청을 받아 교사에게 공급하며, 지도서 파일은 해당 출판사에서 관련자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국정도서 실험본 제공 요청

질의

○ 초등학생 교과서 실험실습교재 생산자입니다. 내년 변경되는 3, 4학년의 교과서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요청드리며, 실험용 교과서를 시범학교와 마찬가지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0. 26. [교과서기획과]

○ 초등학교 국정도서 실험본은 개발 2년차에 현장적합성 검토를 위해 사용합니다. 편찬기관에서는 타당성과 현장적합성 높은 국정도서를 개발하기 위해 실험본 사용 후 수합되는 검토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실험본은 완성된 교과서가 아니며, 우리부에서는 실험본을 관계 기관(검토학교, 시·도교육청, 편찬기관)에만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구물 성격의 실험본을 공개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초등 3,4학년 국정도서 정본은 '10년 1월말까지 발행·공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

질의

○ 개편되는 무슨 과목이 얼마나 개편되는지 과목별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8. 11. [교과서기획과]

○ 우리부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연차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09년 : 초등학교 1.2학년

나. 2010년 :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다. 2011년 :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라. 2012년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마. 2013년 : 고등학교 3학년

○ 단, 수학과 및 외국어과(영어)의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6-75호(2006. 8. 29)'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09년 :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 2010년 :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 2011년 :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 학 입 시

"대학진학시 전문계 특별전형"에 관해서 문의

질의

○ 오늘 선생님께 듣기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 시 고등학교 학과와 관련된 대학교의 과에만 전문계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예를 들어, 저와 같이 정보산업고등학교의 "인터넷 정보" 과의 학생은 상업과 관련된 경영학과나 인터넷정보 학과만을 지원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관련된 학과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단순히 "과의 명칭"과 관련된 과가 아닌 "학습하는 내용과 관련된"과를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1. [대학자율화팀]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은 전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고, 많은 전문계고등학교 졸업학생들이 이에 근거한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 전문계고등학교 출신자 특별전형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일계 전형의 자격 기준을 당해 대학의 장이 전문계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 동일계열의 범위는 출신고교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대학이 모집단위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방적으로 동일계열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하거나 현재 소속하고 있는 학과의 졸업생들이 어떤 학과로 진학하였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 12년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

질의

○ 베트남에서 한인학교를 1-6년 졸업하였고, 이후 베트남 사립중학교에서 비공식학생으로서 2년째 재학 중인 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 고입 검정고시를 보고 다시 한인학교

로 고등학교 진학하면 12년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또는 검정고시도 해외에서 쳐야만 한다면 베트남이나 필리핀 검정고시가 만약 있으면 마찬가지로 다시 한인 학교 고교과정을 이수하면 12년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요? (비 공식 학생이라는 재학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6. [대학자율화팀]

○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은 일반적 공통 자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 일부변경 적용하는 대학, 확대 적용하는 대학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특별전형 적용 대상자는 〈외국에서 12년 전교육과정 이수자〉를 말하므로 민원인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으며, 검정고시를 통한 교육과정 이수는 특별전형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능 귀마개사용에 대해서

질의

○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님께 귀마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부정행위라며 안 된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다 끝나고 나와 보니 다른 반이나 학교에서는 귀마개 사용을 했다더군요. 시험을 치루지 않으신 분이 보시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사항이시겠지만 민감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부디 귀마개를 시험장에서 허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금지사항이 된다면 일괄적으로 모든 수험장에서 금지를 해야지 감독관 재량에 따른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불평등하다고봅니다.

회신 [대학자율화팀]

○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입 금지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

자기기

★ 휴대 가능물품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

*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를 준비하여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 휴대 가능

○ 건의하신 귀마개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 · 도교육청 등과 협의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대학입시제도에 관해 질문

질의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내신)는 대학에 입학하는데 있어서 반영(비율)이 축소되나요? 만약 축소된다면 수능비율이 확대되는 건가요?

○ 각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본고사라는 것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4. [대학자율화팀]

○ 우리부에서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으로 정하고 있으며,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안으로 옮기기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여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자율화 조치로 대학의 내실화와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일괄적인 규제를 폐지하여, 2009학년도는 학생선발시 전형방법에 따른 비율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며, 2010년도부터는 우리부

가 정하던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기본사항)을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해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2009학년도 이후 대학입시제도의 학생선발방법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학교생활기록부, 수학능력시험, 대학별 고사 등의 전형요소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요소별 전형방법 및 전형비율은 각 대학의 대입전형관리위원회 등을 거쳐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 우려하신 대학별 고사(논술 등)는 현재도 전형방법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별 본고사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과거의 본고사는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2012학년도 대입전형의 기본사항은 법에 의거 2010년 8월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학협의체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장애 학생의 대입 특별전형에 관해서

질의

○ 혈액질환으로 6개월 이상 입원을 했었고, 골수이식을 받은 지 2년이 지났고, 지금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혈액질환은 장기간의 불편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급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학 입학시 특수교육 특별법으로 건강장애에 관한 만성 질환자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저처럼 장애인 등급은 받을 수 없는 만성 질환자가 건강장애 선정이 될 수 있는지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1. [대학자율화팀]

○ 질의하신 대학의 장애인특별전형에 대하여, 현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 의거 각 대학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 지체장애 외에 건강·학습장애에 해당하는 학생 또한, 각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학입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은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 일반적인 지원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장애인등에 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구)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장된 자로서 지체부자유의 장애가 있는 자"로 정하고 있으나, 모든 대학에서 이와 똑같은 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은 아니고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원서접수 전에 심사를 거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3급이 아닌 1~2급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따라서, 동 특별전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대학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선발여부와 선발규모를 정하고, 지원 대상 역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지원코자 하는 대학의 모집전형을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 야간 직장인 특별전형

질의

○ 전문대를 졸업 후 건축과로 편입을 하고 싶은데, 직장인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는 4년제 대학 야간이 어디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8. [대학자율화팀]

○ 민원인께서 접수하신 내용은 4년제 대학의 대학입학 주요사항을 수합하여 발표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6393-5200, http://univ.kcue.or.kr)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대학입학정보에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정고시와 대입 특별전형

질의

○ 고입검정고시를 합격하면 고등학교는 베트남 한국 학교에서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

변사람들이 검정고시를 보면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 고입검정고시를 보면 대학갈 때 특례가 안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1. [대학자율화팀]

○ 질의하신 대학입시에서 재외국민특별전형은 대학별 당해 입학정원의 2% 범위 이내, 학과별 정원 1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정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장이 해당대학의 입시전형위원회를 통하여 모집 시기 및 대상, 거주기간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별도의 대상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의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로 주재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재학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특례입학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특례전형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교육기간을 2년으로, 전체 재학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는 있는 바, 구체적인 전형기준은 대학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이에 국내 고등학교 검정고시생은 외국의 거주기간에 대한 특례적용대상이 아니며, 외국 고등학교 검정고시 또한 해당국의 학력에 대한 검정고시로 대학의 특별전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졸검정고시생 대학 수시 입학

질의

○ 2007년 4월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각 대학들이 수시 모집을 할 때

○ 예를 들어, 검정고시에 유효기간을 두어 09학번은 2007년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 2010학번은 2008년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 등으로 차별을 두어 재수 혹은 개인사정에 의해 대학입학을 한 두 해 미루게 되면 대학 입시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서울교육청에 문의 해본 결과 2월 달에 발표되는 결과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시험을 금지 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같은 학생들은 결국 대학에 지

원하지도 못하고 학업의 꿈을 접어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4. [대학자율화팀]

○ 대학은 대학의 건학이념, 모집단위 특성, 전형유형에 따라 지원방법 전형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학생부의 반영방법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출신자 등 학생부가 없는 자, 졸업자의 학생부 반영방법도 대학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 학생부가 없는 자 또는 졸업자의 학생부 성적을 수능 등 다른 전형요소를 활용하여 산출하는 경우도 그 방법을 대학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에 대해서

질의

○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읍면 소재 학교이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전형이 됩니다. 조건이 고등학교를 부모님과 함께 농어촌지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생일 때문에 주소를 옮겨서 제 농어촌 기회는 박탈되었습니다. 부디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잃어버린 제 농어촌 특례를 다시 되찾아 주십시오.

회신 회신일 : 2008. 10. 1. [대학자율화팀]

○ 질의하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 · 어촌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4% 이내에서 정원외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대학은 수험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교소재지, 재학기간, 학생의 거주지, 거주기간 및 부모의 거주지 등 지원자격 기준을 대학의 [대학입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교육수혜 및 사회복지체제가 미비하여 어려운 사회계층에 대한 배려와 또한,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입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대학이 소재지 고교 3년의 재학(부모거주 포함) 또는 소재지 초 · 중 · 고 12년간의 교육과정 이수(부모거주 무관)를

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동 사항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등학교의 실질적인 농어촌 전형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해당 대학에서 그 대상여부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대입 기회균형선발제

질의

○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기회균형선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3. [대학자율화팀]

○ 우리부는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농어촌학생, 전문계고 학생 뿐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정원외 특별전형(총 9% 범위내)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다만, 학생의 선발권은 대학에 있으며, 각 대학은 입시전형위원회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전형의 구체적인 지원 자격 및 지원 서류 등 모집요강은 지원코자 하는 대학에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입원서접수료 해지시 환불

질의

○ 1학기 수시모집에 제 아이가 ○○대학교에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접수(응시)료도 응시유형에 따라 각각 7만원과 9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정상 접수를 취소해야만 하겠기에 접수(응시)료를 환불 받고자 학교로 연락을 하였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 그러나 접수 취소를 하려고 하는 날자는 아직 접수기간 이내에 해당하고 또한 응시로 인하여 제반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기본 비용을 제외하고는 다시 환불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1. [대학자율화팀]

○ 대학입학전형과 관련된 전형료의 책정 및 환불여부에 대하여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 우리부에서는 대입전형에 있어서 전형료를 대학에서 책정할 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최소 실비만 책정하도록 대학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전형료 등 예결산 관련 자료도 공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의 경우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 탈락자에게는 이후 단계의 전형료를 환불하여 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입 전형료의 반환여부는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되는 사항으로 우리부에서 강제하기는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부에서는 대학입학전형시 전형료 책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대학과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대입특례자격요건 중 기간 문의

질의

○ 지금 남편의 해외발령으로 근무지가 두바이인데 남편이 쿠웨이트로 발령이 나서 새로 비자를 받고 가족비자를 받으려면 기간이 4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네요. 이곳 학기가 9월부터 시작하는 바라 지금 10학년, 8학년 다니는 두 딸을 이곳 두바이 외국인학교에 등록하고 아빠 없이 제가 아이들이랑 생활하다가 쿠웨이트의 가족비자를 받으면 그곳으로 가려는데, 아빠가 같이 있지 않는 기간은 대입해외특례자격기간에서 빠지는지 확실한 정보가 궁금해서요.

○ 또 하나 질문은 지금 아이들이 영국학제 학교(13학제)를 다니는데 10학년을 마치고 가면 된다는 의견과 11학년을 마쳐야된다는 의견, 또 하나 11학년 반 학기를 마치고 가면 한국 고등학교의 고1과정이 끝나는 기간이라 맞다는 의견이 분분하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10. [대학자율화팀]

○ 대학입학전형시 재외국민특례입학과 관련하여 부모의 해외근무로 인하여 외국의 학교에서 일정기간 재학한 경우 대입시 일반전형과는 별도로 특례입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전형시 재학기간 및 요건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입시전형위원회 등을 거쳐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외국학교의 소재지는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하고 있으나, 근무국의 지역 · 종교 · 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학기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재학한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2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을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을 재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에 따라 재학기간을 고등학교 교육과정 2년 이상을 포함한 3년 이상으로, 또는 재학기간을 4년으로, 부모의 재직 및 동반여부를 2년, 1년6개월 또는 전 수학기간으로 정하는 등 각 대학에 따라 지원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재외국민 특례입학 지원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재학기간 및 부모님의 재직지역의 변경에 따른 사항은 각 대학의 자격요건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 판단하므로, 지원코자하는 대학에 지원자격 등을 문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시 등록 관련 질문

질의

○ 제가 대학교 재학 중 수시2학기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 대학에 예치금은 XX년 12월 15일에 납부했고 자퇴는 XX년 12월 30일에 했습니다. 예치금 내기 전에 합격한 대학에 전화로 물어보니 우선 예치금 납부를 하고 2월 등록금 납입 전까지 전 대학 자퇴가 되면 된다고 하시던데 나중에 이중등록 및 이중학적에 해당되어 위험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2. [대학자율화팀]

○ 고등교육법에는 이중학적 금지 조항을 두어 두 곳 이상의 대학에 적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 재학 중이라도 수능 응시 및 대입 지원을 가능하나, 재학생으로서 새로이 합격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은 자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 이중학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입시 전형료 문제

질의

○ 대학은 그 많은 아이들이 낸 전형료로 건물 하나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싼 전형료 해결방법이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8. [대학자율화팀]

○ 대입지원시 전형료 책정,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이나, 우리부에서는 전형료 책정시 최소 실비만을 책정하여 운영하되 전년도 지원율 및 전형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전형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의혹 방지를 위해 전형료 예결산 내용을 공개토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수시모집은 대학의 학과 및 대학의 특성에 맞게 우수하고 재능있는 학생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전형방법 및 자격요건, 선발인원 등은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유롭게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 동 의견과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각 대학에 직접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대입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수능 사진

질의

○ 현 대학수능사진은 지금 여권같이 귀가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수능사진이 여권같이 귀가 나와야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의미도 없는 여권용 사진으로 수능사진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고 사진 촬영하는 번거로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2. [대학자율화팀]

○ 우리 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용 사진의 규격을 여권용 사진(3.5㎝×4.5㎝)으로

정한 것은, 대리 시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에 수립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권용 사진은 사진으로 개인을 식별하는데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규격이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응시원서용 사진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어, 개인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양쪽 귀가 나오는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시원서용 사진 규격〉

-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크기 3.5㎝×4.5㎝), 사진내 얼굴 길이는 2.5㎝~3.5㎝
- 짙은 색 안경과 모자 등 착용 금지 및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 사진배경은 무늬 또는 그림이 없는 밝은 계통의 단일 색

외국국적의 학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가능 여부

질의

○ 외국국적의 학생이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수능 응시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3. 9. [대학자율화팀]

○ 문의하신 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응시자격이 됩니다.

대학입시 수시 관련 문의

질의

○ 수시 신청 시 실수로 잘못신청 했습니다. 합격했는데 무효처리하고 다시 지원 할 수 없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10. [대학자율화팀]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43조에 의하여 이중등록 금지로 인하여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전형 종료 후 모든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 되면 안타깝지만 합격을 무효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한 문의

질의

○ 사위가 교환교수로 미국으로 갔었고 가족 중 외손녀가 미국의 고1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몇 년 이상 공부해야 한국 내 대학입시에 특례입학이 가능한지요?

○ 미국에서 대학생이면서 한국내의 대학에 편·입학을 원할 경우 어떤 대학에 편·입학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어떠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2. 26. [대학자율화팀]

○ 대학입학전형은 대학의 건학이념, 모집단위 특성, 모집시기에 따라 지원자격, 전형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대상, 전형방법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 대학 재외국민 특례입학의 지원자격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 주재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재학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특례입학대상자로 보고 있으나, 각 대학별로 고등학교 과정 교육기간을 2년으로, 전체 재학기간을 3~5년 이상으로 정하는 등 대학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진학코자 하는 대학에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편입학은 여석의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편입학 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자가정 아이 대학입학 시 혜택가능한지

질의

○ 저희 아이가 고3학년인데 수시 쓰려고 하는데, 정원 외 학교를 들어 갈 수 있나 해서요. 기초수급자는 되고 모자 가정은 안 된다고 합니다. 모자 가정도 아이들 공부할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9. [대학자율화팀]

○ 우리부는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농어촌학생, 전문계고 학생 뿐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정원외 특별전형(총 9% 범위내)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현재 대학입학전형은 원칙적으로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행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기회균형선발의 저소득층 학생의 선발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정하고 있어 안타깝지만 모·부자가정이라 하여도 동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에 정한 정원외 학생선발과 별개로, 각 대학은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자녀, 사회적 배려대상자및자녀 등 각 대학의 독자적인 기준에 의거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지원코자 하는 대학의 전형방법을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자 초등·중등 교육 안내 요구

질의

○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내년 2월 다시 한국으로 입국을 하는데 영주권자라 아이들이 국제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2년여 동안 학교를 다녀서 아이들이 한국 학생들을 잘 따라 갈까 두렵습니다.

○ 미국에서 현재 큰아이는 중학교 1학년이고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국제고등학교 졸업 후 국내 대학 입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커리큘럼이 달라서 일반 수능보는 고등학생과 달리 다른 교과과정을 받아야 하는데 국내

대학 입학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16. [대학자율화팀]

○ 재외국민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으로 재외동포법 등에 의해 보호를 받는 다고 할 수 있으나,

○ 간결하게 설명드리자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주요 대학들의 경우 대부분 필답고사(지필교사)나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자가 비교적 적은 대학들의 경우에는 (심층)면접 및 서류전형만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 서류전형의 내용으로는 구비서류 요건을 제대로 충족시켰는지의 여부와 고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심사하며 학업계획서도 중요한 전형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잘 작성해야 합니다.

○ 현재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대상, 전형방법 등은 전국의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외국소재 전학년 성적자료는 서류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특별전형의 자세한 전형방법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외국 학력인정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합법유학 자격을 지닌 자가

외국정부가 인정하는 정규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학력이 인정됩니다.

◎ 대입특례/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기준별 대학 현황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일반적 공통 자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 일부변경 적용하는 대학, 확대 적용하는 대학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공통자격기준(영주 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자녀, 전교육과정이수자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학은 순천대, 대구대 등 52개교입니다.

○ 일반적 공통자격기준을 일부 변경 적용하는 대학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78개 대학으로서, 변경 내용을 예로 들면, 입학허용기간 제한(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부터 2년 6개월 이내)을 해제(군산대, 경남대, 수원대 등), 외국소재 고등학교 과정 1

년을 포함하여 2년이상 외국 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단국대, 동국대, 인하대 등) 등입니다.

○ 대상 및 자격기준을 종전보다 확대한 대학은 75개교이며, 적용대상의 예를 들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외에서 거주하는 현지법인 부모의 자녀, 자영업자의 자녀, 연수·유학·출장자의 자녀, 선교사의 자녀, 교직원 강의·연구목적 파견자의 자녀, 해외취업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등입니다.

○ 외국에서 3년간 유학한 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기준을 보면

① 외국학교의 소재지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다만, 부모근무국의지역·종교·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

② 재학기간 : 재학기간은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③ 기간의 산정 :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본다.

○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국내소재 국제학교는 외국자제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거하여 학력인정기관이 아닙니다. 이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하시는 대학에 문의하시면 학력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수지원 위반관련 문의

질의

○ 인문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자연계열인 ○○대학교 나군 임상병리학과를 잘못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을 잘못 숙지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런 착오를 일으켰지만 그래도 접수비 5

만원만을 손해 보게 되는 건 줄 알고 오늘 접수마감 직전인 5시에 **대학 나군전형중국어과를 접수하였습니다.

○ 이럴 경우 복수지원 사항 위반이라는 걸 ○○대학교 측과 전화상담 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1. 2. [대학자율화팀]

○ 복수지원시 정시모집은 군별로 1개 대학에만 지원 가능하며, 그 중 정시모집 합격시 등록을 1개 대학만 할 경우입니다. 또한 복수지원사항 위반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취소 처리되지 않는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입학이후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입학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해당 학교에 강력히 취소요청을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선택과목 수정이 가능한지

질의

○ 올해 수능을 보는 고3 수험생의 엄마입니다. 제 아이는 지방의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원서를 작성하며 지원한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만 보고 4과목만 선택했습니다. 제2외국어나 한문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을 모른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제 아이의 잘못이나 아직 수능이 한 달 가까이 남아있으니 수능 원서를 수정할 수는 없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6. [대학자율화팀]

○ 원서접수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이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16개 시도교육청의 협의회 따라 결정되어 운영됩니다. 수능시험에서 원서 접수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는 60만명의 수험생을 운영하는 대규모 시험으로 접수단계에서 성적통지까지도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부담감에 따라 경직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응시생들이 실수로 과목을 오기하지 않도록 수능접수시 유의사항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 및 공문발송, 접수시 확인 철저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안타깝지만 원서접수 이후 수능원서 선택영역/과목의 변경은 수험번호 부여, 시험장 배치 등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수험표 대리수령 문의

질의

○ 수능 수험표를 직접 수령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수능 수험표 대리수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05. [대학자율화팀]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수능 수험표 수령의 경우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 확인 후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에 대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 또는 재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수령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인터넷사이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수능 좌석 배치 수정 건의

질의

○ 수능 때 저는 교탁 바로 옆에 배치되었습니다. 감독관님들은 제 앞으로 계속 지나다니시기 시작했고 시험 보는 내내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책 상줄 배치시에 책상을 교실에서 한 개만 더 빼시던지 아니면 교탁에서 뒤로 1미터 정도 떼 내어 감독관님들이 지나다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며 시험을 보는 일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19. [대학자율화팀]

○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은 고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가 대학입

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이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시행하는 제도임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국 단위의 일제고사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공간확보, 좌석배치, 감독인원 등 시험 시행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많은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능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에서는 2006학년도 수학능력시험부터(2005.11. 시행)학생들의 불편과 부정행위방지 등을 위해 기존 교실당 수험생수를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능시험 응시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험감독관 교육시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수험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만, 개별 시험실의 여건과 크기가 일부 차이가 있고, 선택과목에 따라 응시생 수가 다양한 점, 부정행위방지대책 등을 고려해야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시험 수험장소 배정에 관해서 문의

질의

○ 수험장소 배정방식이 모교고등학교가 속한 시에 있는 고등학교이더군요. 집에서 모교 가는 버스도 하루에 3번 밖에 없고 기차도 잘 없을 뿐더러 그나마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하는 시외버스는 이른 아침부터 운행하지 않습니다. 재수생에게는 원서 쓸 때 희망하는 시에서 시험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회신 회신일 : 2009. 2. 3. [대학자율화팀]

○ 대입수학능력시험의 접수 · 응시는 졸업자의 경우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 ·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를 이전한 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 ·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 접수하여 시험을 봅니다.

○ 수능에 응시한다면 현재 주소지 교육청에서 지정한 시험지구에서 수능원서 접수와 시험을 봅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현재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응시하고자 한다면 주소지를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능시험장 소지물품에 관한 질의

질의

○ 수능 시험지의 크기가 커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상에서는 문제지를 충분히 펼쳐 놓고 사용하기에는 조금 공간적인 협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아울러 책상의 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책상의 면이 오염되어 불쾌감 등을 유발하여 시험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넓은 면적의 책상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과 기존의 책상을 이용하는 학생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책상의 크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3. [대학자율화팀]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수험생을 위한 시험지구 결정 증설·조정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의 의견 및 수험생 편의 등을 참작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시험장의 경우 시·도교육감은 시험지구별로 시험장을 결정하여 당해 학교에 통보하며 책상의 크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험생 체격에 맞는 책·걸상 비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 시 불편

질의

○ 수능 신청시 출신고로 가야하는 현행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교원서나 토익이나 토플 등등 다 전부 인터넷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시험을 보는데 수능도 인터넷으로 원서내고 카드나 등등으로 입금하고 가까운 지역이나 혹은 주민등록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시험 보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08. 9. 24. [대학자율화팀]

○ 수능원서는 출신고교에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는 대리응시, 원서 변조 · 위조 등 부정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 여부를 대조해야 하고 원서접수 시 성적 확인, 발급담당자 성명이 기재된 졸업증명서 원본을 첨부하는 사항과 응시원서에 기재 시 영역별 선택 등 여러 가지 학적사실 확인이 필요하므로 출신고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원자의 편의 도모 및 시 · 도교육청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졸업생 중 주소지가 변경된 자는 현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능입학시험 응시자격에 관하여 문의

질의

○ 현직 교사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다른 전공으로 대학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교사로서 휴직을 하고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 휴직한 상태에서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수능응시자격과 관련한 법률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1. [대학자율화팀]

○ "고등교육법 제33조 (입학자격)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충족되면 수능시험에 응시는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수능접수는 해당 교육청에서 하므로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시합격에 대한 문의

질의

○ 수시합격여부만 확인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합격자 유의사항 등, 입학동의서를 내라는 게시물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1월말부터 2월초까지 등록금을 내라는 게시물이 있어 등록금만 내면 되는 줄 알고 등록금을 내는 기일에 등록금을 내려고 보니 합격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 그래서 학교에 문의해보니 인터넷 홈페이지에 2차 수시 합격자들은 입학동의서를 내라는 게시물이 있었는데 내지 않아서 불합격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 교육행정법상 입학동의서 등 합격자 유의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에만 기재해도 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9. [대학자율화팀]

○ 현재 대학입학전형은 대학의 건학이념, 모집단위 특성, 모집시기, 전형유형 등에 따라 대학에서 전형방법을 대학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특히 수시 모집에는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등록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다음 차기예정자가 등록함으로 학생선발권은 각 대학의 고유권한으로 전형방법, 전형자료 및 동 전형기간 내 선발시기 등은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임으로 우리부에서도 도움이 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합격에 대한 문의

질의

○ 대학 수시합격 후 등록예치금 납부자의 경우 정시모집 지원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대학의 등록을 포기하고 사이버대학에 지원할 수는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3. [대학자율화팀]

○ 대학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수시모집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학생은 이후 모집전형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다만, 동 복수지원 위반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적용되므로, 그 외 학교(기능대학, 원격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의 지원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수능시험 볼펜 사용 여부

질의

○ 올해 수능을 치는 고3인데요 시험당일 날 시험장에서 샤프펜하고 컴퓨터사인펜을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전 샤프보다 볼펜이 편해서 그러는데 수능 칠 때 파란색볼펜으로 시험문제를 풀어도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08.10. 13. [대학자율화팀]

○ 수능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휴대 가능한 물품은 이미 고지한 바와 같이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연필심(흑색, 0.5mm), 시각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시계입니다. 따라서 파란색볼펜일 경우 가능물품에서 제외되오나, 당일 휴대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이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검사한 후 휴대 가능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생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당일 감독관에게 매 교시 해당 물품을 확인 받으시기 바라며, 필기구일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외국 유학 중고생 대학입시 관련 문의

질의

○ 저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엄마와 함께 2003년부터 공부하여 현재 중학교 과정을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4년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국내 대학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9. 22. [대학자율화팀]

○ 고등교육법제33조에 의한 대학의 입학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 학교의 학력은 「초·중등교육법」 제98조3항제3호에 의거 외국학제에 의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제출 기관인 거주지역 교육청에서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동등학력대상자로 심의 받아 자격을 취득하시면 가능합니다.

외국인 학생의 정의 문의

질의

○ 외국인 학생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1. 대학입학의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학생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가령 "학생 본인이 외국인이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 경우" 라든지, 아니면 "학생 본인이 외국인이고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외국인 경우" 등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일텐데, 그 경우 우리나라 국적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의 경우 외국 국적을 인정하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야만 외국인으로 인정이 되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14. [대학자율화팀]

○ 2010학년도 대입정보 주요사항에 기술하고 있는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의 인정범위입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교육과정이수 외국인 및 전교육과정이수 외국인 학생의 부모 국적은 불문.

㉢ 이중국적자 · 무국적자는 외국인에서 제외(단, 지원당시 이중국적자라도 특례입학자격인정 기준시점까지 한국국적 포기예정자는 조건부로 인정. 재학기간은 외국국적취득 후부터 기산)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 · 중 ·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 · 편 · 신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대로 인정

재수생 수능원서 접수방법 문의

질의

○ 저의 딸애가 올해 서울에서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 겨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룰 장소를 딸애의 모교가 있는 곳이 아닌 지금 생활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쪽"에서 수능시험

을 치르려고 하는데 그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 [대학자율화팀]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가 시험 지구를 달리하는 주소지로 이전된 자는 현거주지 시 ·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면 현주소지 관할 시험지구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재수생의 경우 주소지가 도시로 이전될 경우 농어촌특별전형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부터 시골(농어촌 특별전형 해당지역)에서 학교를 다녔고,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재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근무하게 됨으로 온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이사하게 되면 온가족이 주소이전이 불가피한데 이럴 경우에도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에 해당되는지?

○ 만일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 본인(수험생) 만 주소를 시골에 있으면 되는지?
- 아니면 가족 모두의 주소가 시골에 있어야 하는지 ?

회신 회신일 : 2009. 3. 24. [대학자율화팀]

○ 질의하신 농어촌지역 특별전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 · 어촌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4%이내에서 정원외로 학생을 선발 할 수 있으며, 대학은 수험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교소재지, 재학기간, 학생의 거주지, 거주기간 및 부모의 거주지 등 지원자격 기준을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 · 어촌특례의 혜택 범위도 해당 대학교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해당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및 서류를 심사하므로 해당대학에서 결정합니다.

재외국민 특례입학 12년 전과정 이수의 자격이 되는지?

질의

○ 금년 5월 과테말라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어 대학을 한국으로 가고자 합니다. 11년은 외국에서 모두 이수하였으나 초등학교 1.2 학년을 외국에서 이수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국에 일시 귀국하여 3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3학년 2학기 중에 다시 외국으로 이주하였으나 한국과 학기가 다른 관계로 3학년에 편입을 하지 못하고 4학년으로 승급(skip) 하게 되어 재외국민 특례입학 12년 과정에서 1년이 부족하게 되는 바, 이곳 외국의 학교에서 승급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12년 전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14. [대학자율화팀]

○ 재외국민 특례입학 기준을 보면, 외국에서 12년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각 대학별로 재외국민특별전형의 기간 및 요건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진학코자하는 대학에 지원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시모집 중복지원에 대한 문의

질의

○ 금번 저의 아들 대학입시지원과 관련 "다"군 00대와 **대의 체육관련학과에 관련 규정 숙지부족으로 중복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 중복지원시 "다"군 응시자체가 불가능한지 여부

2) 이로 인해 "가", "나" 군 전체의 응시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신 회신일 : 2008. 12. 31. [대학자율화팀]

○ 복수지원시 정시모집은 군별로 1개 대학에만 지원 가능하며, 그 중 정시모집 합격시 등록을 1개 대학만 할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대학을 지원한 후 최종 1개 대학에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합격 후 입학등록 이전까지는 '다'군 지원이 가능하오며 걱정하시는 것처럼 응시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수능을 없애고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것은 어떤지

질의

○ 올해 고 2인 학생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모의고사를 볼 때 앞이 캄캄했습니다. 수능이 내신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며, 공부한 것을 출제하는 내신시험의 비중과 중요성이 왜 나날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수능과 내신은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2. [대학자율화팀]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 36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 대학입학전형은 모집시기별로 '수시', '정시' 그리고 '추가' 모집으로 구분하며, 수시모집은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대학별고사가 주요 전형 요소로 반영되며, 정시모집은 학생부, 대학별고사와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주요 전형 요소로 반영됩니다.

○ 이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
- 학생의 능력, 진로 적성을 중시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따라 시험 영역과 과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며
- 언어 영역 · 외국어 영역(영어)은 범교과를 소재로, 수리 영역,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함으로써
- 대학수학 적격자의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며
- 학생 선발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상세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와 특징 파악을 위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하여 학교로 배포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방법 안내」, 「2010대학수학능력시험 이렇게 준비하세요」라는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 학력인정 여부 문의

질의

○ 국내 중학교 졸업 후 홀로 중국에 가서 중국내 고등학교에 입학 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취득한 학력(졸업장)을 국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중국에서는 전 중국대학을 지원할 수 있지만, 대학별 수시프로그램에 의하여 국내 대학 입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5. [대학자율화팀]

○ 우선 몇 가지 충족 여건이 되면 입학은 가능합니다.

○ 첫째,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하여 12학년 졸업예정자

○ 둘째, 우리나라 학교와 외국의 학교에 다닌 모든 과정을 12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에서 수능을 본 자는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입학할 수 있으며, 직접 대학에 원서접수(특례입학규정)시에는 대학이 정하는 학칙과 규정에 따라 입학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학교인증에 관하여 문의

질의

○ 중국 산동성 태안의 태산외국어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졸업한 인증서가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지 문의드립니다.

○ 중고등학교과정을 마치지만, 이 졸업인증서로 한국에서도 고등학교졸업인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졸인정을 받아야 한국에 있는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곳 학교는 중국에서는 인정을 받아 중국대학을 가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대학에 입학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3. [대학자율화팀]

○ 우리나라 학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6-3-3-년(12학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미국의 교육제도와 같습니다)

○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제33조 대학입학자격에 의하면,

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12학년학제를 졸업한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고등고육법에 의하여 동등학력을 인정받은 자는 대학수능시험이 가능하며, 수능시험 전형일정 등은 거주지의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오니, 그쪽으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희망하시는 대학의 입학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시 합격 후 KAIST지원 가능 여부

질의

○ 올해 대학입시에서, 수시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도 KAIST에 또 지원 할 수 있는지요?

○ 작년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일반대학소속)와 과기부(KAIST 소속)가 따로 여서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5. [대학자율화팀]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제42조 및 42조의 2, 3에 의하여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해당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으로 복수지원 및 이중등

록 금지원칙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문의

질의

○ 대학 입학을 앞두고 복수지원 허용과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이 어디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11. [대학자율화팀]

○ 문의하신 복수지원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에서 수시 합격자는 이후 전형에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법을 달리하고 있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의 경우에는 가능함. 해당학교 이름은 경찰대,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와 기능대학(폴리텍대학) 등은 지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고교 졸업생의 국내 대학 입시 방법 문의

질의

○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의 경우 국내 대학에 응시하려면 먼저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수능시험을 봐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 2009년 6월 캐나다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학생이 2010학년도 입시에서 국내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28. [대학자율화팀]

○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로 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국내·외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12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 동등학력으로 인정된다면 수능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

습니다.

○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격의 판단은 해당국가의 학제 및 수학연한, 개인별 학적관련서류에 대한 확인(대사관 등 관계기관에 조회)이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 · 심의과정이 필요하므로, 관할 교육청(응시지역 시도교육청)의 장학사님과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외한국학교의 경우 수능접수 절차 문의

질의

○ 이번에 저희 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치를 학생이 있는데 어느 교육청 관할하에 수능접수를 해야 하나요? 일단 저희도 단체수능접수가 가능한 거죠? 개별접수를 하기엔 학생들에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라서요.

회신 회신일 : 2009. 3. 31. [대학자율화팀]

○ 수능원서접수는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졸업자의 경우에는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 ·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는 현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 · 도교육감이 지정한 장소에서 접수합니다.

○ 그리고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본인이 한국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정한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수능 원서접수 교부 및 접수, 문제지 · 답안지 운송 및 보관, 시험실시 및 감독 등 시험관리는 시 ·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 · 도교육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농어촌전형지역 개편

질의

○ 현재 실시하고 대학입학전형 중에 있는 농어촌 전형 관련하여 현재 농어촌 전형 지역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점과 개선을 바라는 바입니다.

○ 00시 전체를 농어촌 전형 지역으로 지정해 주시거나 아니면 인구와 지리조사를 통해 00에서 가구 수가 적고 아직 다른 동들에 비해 미발전지역인 곳들을 조사해 다시 농어촌전형 지역을 개편해 주시거나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22. [대학자율화팀]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은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 · 어촌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4%이내(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대학은 수험생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교소재지 · 재학기간 학생의 거주지 · 거주기간 및 부와 모의 거주지 등 지원 자격기준을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농어촌 혜택의 적용 분류기준도 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전형방법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기회균형선발제의 차상위계층에 대해 질문

질의

○ 기회균형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기준 중 한부모가정이란 모자가정, 혹은 부자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부, 혹은 모의 직업에 관계없이 한부모 가정이면 무조건 해당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 그리고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차상위계층 학생의 경우에는 기회균형선발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에 의거하여 또한 인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납입기준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8. 1. [대학자율화팀]

○ 기회균형선발제 기본계획에 있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차상위계층이며, 부 또는 모가 한분만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 복지급여 혜택 등 학교에서 기회균형선발에 의한 학생 선발기준은 전국의 학교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기본으로 하지만 학생가정의 수급정도에 따라 신청대상학생이 많을 수록 혜택을 받는 금액과 선발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에 따른 복지급여 가정의 해당여부는 학교에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셔야 합니다.

농어촌 소재 지정학교 문의

질의

○ 농어촌 소재 지정학교를 같은 00시 소재학교 가운데서도 일부학교는 농어촌 소재 지정학교로 되고 일부학교는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며, 같은 시소재 학교라도 자연녹지지역은 가능하고 주거지역은 안 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에 의거 농어촌지역의 대상지역 및 자격요건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00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체를 대학교 자율에 맞기든지 공평하게 모든 학교가 지정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2. [대학자율화팀]

○ 현재 대학입학전형에서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과 지원 자격기준인 학교소재지·재학기간·학생의 거주지·거주기간 및 부와 모의 거주지 등은 당해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농어촌특별전형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고자 농어촌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꾸준한 협의를 통하여 법령에 근거한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 현황을 지난 1월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파악하였습니다.

○ 대입자율화정책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자료를 대학협의체인 대교협 제공, 대교협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에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대학에서는 대교협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참고하여 대학여건에 맞게 농어촌특별전형의 대상지역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귀하의 의견을 대교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특별전형이 합리적으로 운

영될 수 있도록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입수학능력시험 감독업무에 관련 문의

질의

○ 대입수학능력 시험감독을 위한 감독관으로 저희 학교 교원중 한 명만 제외하고 모두 하게 되었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 쯤으로 해당 교육청에서 예외없이 모두 감독관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 학교에서 판단하여 제외한 사람을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수능일날 저희 학교처럼 비고사장이지만 대부분이 감독업무일 때 학교는 휴무에 해당됩니까? 휴업에 해당됩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11. 28. [대학자율화팀]

○ 정부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등의 협조하에 시험장교 설치에서 시험실 준비, 사전 감독관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능시험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감독관은 시·도교육감이 위촉합니다. 위촉 절차에 대한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능당일 수능수험생의 원활한 수험실 입실을 위하여 재학생 중 수험생이 다수 있는 학교, 다수 교사가 감독교사로 차출된 학교, 기타 학교 인근에 시험장이 다수 있어 정상수업 시 교통장애 등 시험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학교 등 관내 학교에 대해 학교사정과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학교장이 임시 휴교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관련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격완화에 우려

질의

○ 기존에 무자격 외국인 강사가 많은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음 및 실력, 인성도 검증이 안 된 외국인들을 불러 모은다면 조만간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원어민 강사 채용이 꼭 필요합니까? 외국 유학생이나 한국에서 열심히 영어공부를 해온 사람 위주로 시험을 치러 강사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9. [글로벌인재육성과]

○ 우리부에서는 '95년부터 외국어교육 및 세계화교육 강화를 위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실제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자신감 향상 뿐 아니라 영어실력 향상, 영어권 나라에 관한 이해 등 인지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부는 질 높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력 풀을 확대하기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입국 자격을 정하고 있는 사증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모국어 국가 출신으로 제한되어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자격을 공용어 국가 출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용어 국가로 확대하더라도 일정한 자격제한을 두어 우수한 원어민 보조교사가 입국하여 학생을 가르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능 영어과목을 언제부터 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는지 문의

질의

○ 얼마 전 수능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시험을 치르게 되며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6. [글로벌인재육성과]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수능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2012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실용영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읽기, 듣기, 말하

기, 쓰기가 포함되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2010년과 2011년에 시범 시행을 거쳐 2012년 이후부터 자율적으로 활용하게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인증영어능력평가의 진행상황 문의

질의

○ 2009년 하반기부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실시한다는 보도 자료도 있고 올해에는 방안을 확정한다고 발표했던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9. [글로벌인재육성과]

○ 12.19일자로 우리부에서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읽기, 듣기 뿐만 아니라 말하기, 쓰기 평가가 모두 포함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시행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학생용 평가시험으로서 2009년도에 개발을 시작하여 예비시험을 실시하고, 2010년-2011년에 시범 시행 후 2012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논란이 있었던 동 시험의 수능대체 여부는 개발이 완료되어 시행되는 2012년에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간제 및 방과후 영어 선생님도 교원자격증이 필수인지

질의

○ 대학졸업 후 10년이상 영어학원에서 강사생활을 하였으며, 작년에는 태솔과정을 수료(미국연수 포함)하였습니다. 기간제 및 방과후 영어 선생님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문의하였으나, 교원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간제 및 방과후 영어 선생님은 교원자격증을 없이도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3. [글로벌인재육성과]

○ 현재 기간제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관련 과목의 교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과목 교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 영어강사의 경우는 반드시 법에 의해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자격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강사를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09년 9월부터 선발, 배치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는 범위의 경우에 한해 미소지자의 경우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는 '08.12.18 발표된 영어교육정책방안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외국인 강사가 필요한지

질의

○ 방과후 학교를 개설 운영하는 학교에서 대부분 원어민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학교와 학원의 관계에 의해 원어민 외국인 강사가 채용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되며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고 또 해외유학까지 갔다가 온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정식자격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많은 분들이 자격도 없이 그저 해당국 외국인이라는 자격과 원어민 강사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외국인 강사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확실하게 자격증이 있는지 취업비자가 있는지 관리해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9. 4. 3. [글로벌인재육성과]

○ 원어민이 우리나라에서 영어회화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E-2비자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며, 또한,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F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은 한국에서 취업이 일반 원어민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투입되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경우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등의 자격을 충족시킬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 또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어 능력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초중등학교에 배치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09년 5000명)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초등학교부터 교환 학생 제도 신설을 건의

질의

○ 영어라고 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 강화와 사회가 요구하는 커다란 전제 조건이다. 영어권 나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 교환 학생 제도를 활성화한다면 자연적으로 영어라는 장벽에 많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6. [글로벌인재육성과]

○ 초등학생들이 교환 학생 제도를 통해 영어권 나라로 가서 교육을 받는다면 영어교육 효과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 이수의 문제, 비용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학교에서 영미권 등 학교와의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 것 뿐 아니라 각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제고하는 등의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해 개별 학교의 특성에 따른 국제교류 활동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에 대한 문의

질의

○ 지난 11월 20일 공청회가 열린 후 보도 자료라는 코너에 있는 파일들을 보았습니다. 보도자료에 명시되어있는 내용들이 확정된 내용들처럼 느껴지던데맞나요? 지원 자격 요청은 공청회의 제 3안으로 채택된 것이 확실한 것인지와, 인력을 09년 하반기에 뽑고 연수를 시킨다고 나와 있던데 어떤 기준으로 뽑고, 가산점은 어떻게 주어지는지...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볼 수가 없네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22. [글로벌인재육성과]

1. 우리부가 12.19일자로 발표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와 관련하여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내용입니다.

2.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신분은 「초 · 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의 강사 신분을 가집니다.
3. 지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초등 및 중등 영어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 능통자를 선발하되, 인력수급 및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별도로 시 ·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에 한해 미소지자도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일반공지 '2009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모집'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자격문의

질의

○ 저는 방과후 초등영어교사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모집하여 학교에 배치한다고 하는데 1,2차로 나눠서 뽑으며 중등2급 정교사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응시자격 조차되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요.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은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무관하다고 하는데 무언가를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방과후 영어교사들은 이 정책으로 흡수되어서 기존의 초등학교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8. [글로벌인재육성과]

○ 교사자격증과 관련하여 원칙에 대해서는 08년에 실시한 공청회 등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으로 전문강사라 하더라도 정규수업에 배치되는 이상 영어교사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반영한 것이고, 영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우수한 실력을 가진 자를 선발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에서 그 자격 등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수준별 이동수업 및 수업시수 확대에 따른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과후학교 강사와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제 자격 조건 문의

질의

○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를 도입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시도 교육청별 채용한다고 합니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자격조건들과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19. [글로벌인재육성과]

○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초등학교 영어수업 및 중·고등학교 수준별 이동 수업 확대에 따라 필요한 영어교육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내년도부터 동 제도를 도입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의 강사 신분을 가지되, 신분안정을 통해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임용할 계획이며, 지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초등 및 중등 영어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 능통자를 선발하되, 인력수급 및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별도로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자에 한해 미소지자도 선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mes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1090번('영어교육정책 추진방안 발표')

영어회화지도(E-2) 비자 대상국 관련 문의

질의

○ 올해 영어공교육 완성이라는 정책기조에 맞춰 E-2(회화지도) 비자 발급요건 변경되었으나, 영어를 공용어로 하며 원어민보조교사 조항이 포함된 양허내용이 포함된 국가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대상국 : 필리핀, 인도)에 대한 양허각서는 언제 추진이 완료되는지요? 그리고 협상이 인도 외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2. [글로벌인재육성과]

○ 영어를 공용어로 하며 영어 보조교사 공급관련 양허규정을 포함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E-2(회화지도) 비자 발급 대상 국가에 포함됩니다. 현재 진행 단계와 관련하여 인도와는 CEPA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거의 완료 단계에 있으며, 필리핀과는 거의 초기단계의 수준에 있어 아직은 인도나 필리핀 원어민을 영어보조교사로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협정체결과 관련하여서는 국가 간의 협정을 주관하는 외교부와 법무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국가 간의 문제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09.11.6 CEPA 비준안 국회 통과, '10년 발효 예정

외국인 강사 자격과 관련한 문의

질의

○ 예를 들어 미국 국적을 가진 남자가 부모님이 외교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살아 중국 북경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을 경우 영어가 모국어이면서 영어 구사에 아무 문제없는데도 이 사람은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에서 학사학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 자격이 없는 건가요?

○ 캐나다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유학 와서 석사학위를 받았을 경우에 한국에서 받은 석사학위로는 강사취업도 안되므로 꼭 캐나다 학위 증명을 하고 성적표까지 떼어야 하는데, 캐나다 학사학위가 있어서 국내에서 석사 취득이 가능했던 일인데도 불구 꼭 캐나다에 있는 성적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3. [글로벌인재육성과]

1. [미국 국적을 가진 남자가 중국 북경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을 경우 강사자격이 없는지?]

학교 등에서 원어민보조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E-2비자를 받아야합니다.

E-2비자는 사증발급지침(법무부)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 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는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 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우리나라와 통상협정을 체결한 영어공용어 국가 국민으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미국 국적을 가진 자가 다른 국가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캐나다 학사학위 취득자가 국내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도 캐나다에 있는 학사 성적표를 받아야 하는지]

사증발급지침에 의하면, 사증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로 범죄경력증명서, 자기건강확인서, 학위취득증명서, 성적증명서(출신학교에서 봉인하여 발급)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증명서는 E-2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내의 석사학위 취득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영어강사의 에이즈 검사 시행 요청

질의

○ 많은 국내 외국인 영어강사집단에서 성병검사는 인권차별이라는 주장을 하며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유독 외국인 영어강사 집단에서 대마초등 각종 마약 사범과 문란한 성생활로 인한 성병의 국내인들에게 감염 등 많은 사회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영어강사들의 국내 교직자들과 똑같은 에이즈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5. [글로벌인재육성과]

○ 현재 EPIK을 통하여 원어민보조교사로 채용된 자들에 대해서 각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입국 후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일괄적으로 실시하며, 마약흡입, 에이즈 감염 등 교사로서 부적합한 질병이 발견된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채용하는 원어민보조교사의 경우에도 자체지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질의

질의

○ 영어마을에는 좀 더 많은 외국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점점 올라가는 높은 인건비로 외화유출이 아깝습니다.

제안1 : 대학 재학생으로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선발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도 절

감하고 양질의 강사를 수급 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제안2 : 동남아나 유럽국가중에서 영어 전공자나 영어 능통자들이 선발과정을 통해 입국 시 일정규모이상의 영어마을에서도 채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3 : 영어마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교실에서 가르치는 일 외에 매점이나 객실관리 청소 등의 잡무에 영어소통이 가능한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1. [글로벌인재육성과]

○ 귀하가 제출하신 민원 중 먼저 '자격기준 및 공용어국 채용'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자발급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자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 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우리나라와 통상협정(영어보조교사 양허내용이 포함된 FTA, CEPA 등)을 체결한 영어 공용어 국가 국민으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자로서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현재는 원어민보조교사의 질 관리 등의 문제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완화하였으며, 귀하가 말씀하신 영어마을의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하여는 충분한 내부 검토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점이나 객실관리 청소 등의 잡무에 영어소통이 가능한 외국인들의 고용문제는 영어마을 관치주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에 맞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EBS 영어교육방송 채널을 지상파나 저렴한 케이블 상품으로 시청할 수 없는지?

질의

○ EBS 교육방송을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EBSe채널을 텔레비전 대신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7,9세)들도 EBSe채널에서 제공하는 유아나 초등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시청하고 있답니다. 케이블로 유료 EBS 잉글리쉬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더군요. 영어 채널도 돈이 있어야 볼 수 있답니다. 텔레비전 시청료를 납부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시청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9. [글로벌인재육성과]

○ 현재 지상파는 4개 채널만(MBC, KBS1,2 , SBS)이 송출되고 있으며 그 이상은 송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여 지상파 채널 수를 늘리는 MMS라는 방법 도입이 모색되고 있으나, 현재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 2012년에나 지상파로 가능할 듯 합니다.

○ 케이블 채널의 경우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케이블 업체는 사기업으로,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만을 선택하여 방영합니다. 정부가 케이블 업체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틀어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재산권의 제한이 되므로 이는 법으로만 가능합니다. 법으로 정한 의무채널이 몇가지(국회방송, 종교채널 등)가 있으나, 현재 EBSe는 의무 방영 채널로 선정되지 않아 ('08년에는 선정되었었습니다) 케이블 저가형으로 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EBSe프로그램을 IPTV에 탑재하는 방법, '10년 케이블 의무방영채널(공익채널이라고 합니다)로 선정되도록 지원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EBSe '10년 '교육지원' 분야 공익채널 선정

EBS 영어교육방송(EBSe English TV) 방송을 공익채널로 선정토록 건의

질의

○ EBSe 영어교육방송이 개국한지 2년에 불과하지만 방송내용이 나날이 향상되어 가면서 질좋은 영어교육방송에 푹 빠져 지내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역 케이블 방송사에서 개편후 EBSe 영어교육방송의 송출을 중단한답니다.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의 활성화, 지역간, 계층간 격차해소등에 도움이 되고자 정부차원에서 EBSe 영어교육방송을 개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공익채널에서 제외되면서 지역방송사업자들이 송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양질의 영어 교육방송을 전국민 모두가 어느 지역에서든지 계속 향유 할 수 있도록 교육

과학기술부에서 조금 더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9. [글로벌인재육성과]

○ EBS 영어교육방송은 누구나 저렴하게 영어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07년부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영어교육 전문채널입니다. 공익채널 선정은 전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는 일입니다. 공익채널은 방송법에 의해 케이블TV가 반드시 틀어주어야 하는 방송입니다. 공익채널 선정에는 6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적합한 채널을 선정합니다. 그 중에는 '공교육 보완'과 '사회교육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종류마다 2개의 채널을 선정하여 케이블 TV에 의무적으로 방송하도록 합니다.

○ EBS는 '수능', '중학', 'EBSe(영어)'등 여러 교육채널이 있는데, 수능과 중학을 공교육 보완에 신청하게 되어(2개만 선정) EBSe를 '사회교육 지원' 분야에 넣은 것입니다. 사회교육지원은 아무래도 '성인' 분야이므로, 공교육 보완에 초점을 둔 EBSe가 재능영어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공익채널 선정에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틀어야 하는 공익채널이 아닌 이상, 케이블 TV가 어떠한 채널을 선택하는가는 결국 완전한 '사적영역'이므로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정부의 케이블 TV에의 채널 선택권 제한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걸려있어 더이상의 의무채널을 늘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 공익채널은 방송법에 의해 매년 선정되므로, 공익채널을 금년 내에 재선정하는 것은 이미 선정된 채널들의 법적 기득권문제가 걸려있으므로 불가합니다. EBSe가 '09년 공익채널 선정에서는 제외되었으나, '10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과학기술부는 방통위에 협조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EBSe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BSe '10년 '교육지원' 분야 공익채널 선정

EBS 영어교육 채널 공공채널 언제쯤 가능한지요?

질의

○ EBS 영어교육 채널이 있다는 것을 얼마전에 알았는데요. 알아보니 저희 000구 000케이블

방송에서는 요금이 비싼 디지털 방송을 시청해야만 나오도록 되어있더라구요. EBS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방송 아닌가요? 그런데 왜 보고싶어도 볼 수가 없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검색해보니 "공공채널 전환과 라디오 채널 신설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던데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1. [글로벌인재육성과]

○ EBS 영어교육방송은 영어 사교육비 경감 및 계층격차 해소를 위해 '07년 4월 개국하여 현재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영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말씀하신 '공공채널'의 경우 방송법 시행령 54조에 따라 3개만 지정이 가능하며 이는 이미 국회방송, 행정KTV, 방송대학TV로 지정이 되어 있어 EBS 영어교육방송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공공채널을 추가하는 것 또한 '의무방영'으로 인한 케이블업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로(현재 공공채널 이외에 종교채널, 공익채널 등으로 케이블 업자가 의무방영하고 있는 채널은 약 20%정도입니다)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따라서 EBS 영어교육방송의 경우 '공익채널'(의무방영채널이며 매년 새로지정)으로 지정되어 케이블채널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침 상 공익채널 선정 시 한 분야에 '두개'의 방송을 동시에 선정하여 둘 중의 하나만 의무방송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EBS 영어교육방송은 일자리 방송이라는 채널과 경쟁하여 현재 45%의 케이블업체로만 아날로그 방송이 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방송이 되지 않거나 비용을 더 내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케이블업체가 어떠한 채널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케이블업체의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정부가 채널 방영을 요구할 수 없는 점을 양해에 주시기 바랍니다.

※ EBSe '10년 '교육지원' 분야 공익채널 선정

초·중등 교육시설

고등학교 실험실 폐수배출처리시설 설치 여부

질의

○ 고등학교 내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에서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가능 여부는 위 법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 용도분류 상 교육연구시설 내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의 79)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배출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2. [교육시설지원팀]

○ 초·중·고등학교 내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령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학교보건법 제6조(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금지행위)에 학교 학습과 보건 위생에 위해하는 시설은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개별법에 의거하여 폐수배출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다면, 개별법에 의거하여 학교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적법하게 폐수배출처리 시설에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립초등학교 시설사업의 인허가기관은?

질의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에 의하면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면 감독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감독기관을 찾으면 「초·중등교육법」 6조에 의해 국립학교는 교과부로,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으로

되어 있는데 국립대학내 부설초등학교(국립학교)의 시설사업은 어느 기관을 승인을 득해야하는지요.

○ 법령 내용에 따르면 교과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과부 자체 (국립초에 대한)승인업무를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립대학의 사업의 경우, 해당시청의 승인을 받았다시며, 국립초의 경우에 어찌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 [교육시설지원팀]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에 의거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장 범위 질의

질의

○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에 정한 체육장 면적은 순수 체육장 및 부대시설(스탠드, 조회대등)과 교사동 주변에 배드민턴 등 간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면적도 체육장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9. [교육시설지원팀]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 제6조에 의거 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 면적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지에서 교사용대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체육장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사용 대지면적 산정에서 지자체 건축관련 조례에 의거 건폐율 및 용적율을 적용한 면적을 산출하여 교지에서 뺀 면적으로 보아 스탠드 조회대, 배드민턴장이 교사 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체육장 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컨테이너 교실활용에 대하여

질의

○ 인구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신도시 및 발전도시의 초등학교에는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교실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인근 신설학교 개교시까지 학생을 수용한 임시교실 즉, 임시로 컨테이너 교실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위와 같지 않더라도 소규모 학교라도 특별교실 부족 등으로 컨테이너 교실을 활용하여 교육연구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로 학생들을 교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건축법과 동일하게 시설승인과 검사를 하여 시설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컨테이너에 교실로 활용할시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절차를 갖춘 시설물이라면 교육시설(교실, 특별실 등)로 활용하여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맞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시설이 부족한 교육시설 여건에 일부에서는 컨테이너를 무분별하게 사용활용하는 사례도 있어 보이는 것 같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시설물을 컨테이너에서 한다 하니 한편으론 열악한 교육환경에 학생들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컨테이너라도 건축법상 하자 없는 쾌적한 여건을 갖추었다면 교육시설물로 활용해도 무방할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5. [교육시설지원팀]

○ 먼저 콘테이너 교실은 학교내에 긴급하게 확보하여야 할 부족시설을 확보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교실은 가설건축물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설치 허가를 받아 시설한 경우는 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적용 받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임시 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컨테이너, 조립식 건축물) 임시로 사용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축조한 임시 건축물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적용범위 문의

질의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1항 가목에 학교시설이란 “교사대지, 체육장 및 실습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와 멀리 떨어져 학생들의 실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목장용지를 학교실습지로 보아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농업계고등학교로서 운영하고 있는 목장용지가 학생들의 실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적용을 받아 건축을 할 수 있다.

2. 학생들의 실습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학교용지가 아니므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 [교육시설지원팀]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에 의거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지로 결정된 시행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지 외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득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과의 관계

질의

○ 기존 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다른법률과의 관계) 6항과 7항에서는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대해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증축하고자 하는 학교시설부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면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를 받고, "임야"로 되어 있으면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기존 운영되고 있는 학교부지에 접한 개인부지를 매입 등기하여 학교건물을 건축(증축)하고자 하는데 있어, 매입부지의 지목이 임야일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18. [교육시설지원팀]

1. 도시관리 계획결정(학교시설)이 되었다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에 따라 의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시관리 계획 결정을 선행하셔야 합니다.
2. 위의 1번의 답변과 비슷합니다. 만약 도시관리 계획결정이 되었다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에 따라 의제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관리 계획 결정(학교시설)을 선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동 사항에 대한 질문은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문의하시

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 조성 관련

질의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에 의한 학교시설(교사대지·체육장)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주택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토록 하였더라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학교용지 조성)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8. 8. 1. [교육시설지원팀]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역의 학교용지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조성·개발하여 시·도교육청의 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따라 개발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하여 공급한 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도 교육 예산 문의

질의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1. 보통교부금
   - 경상보조금 금액
   - 국세 교육세 금액

2. 특별 보조금 금액

○ 지방세 전입금 중

1. 법정 전입금

- 시도세 전입금 금액
- 담배소비세 전입금 금액
- 지방교육세 전입금 금액

2. 비법정 전입금 금액

○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이 GDP 몇 %쯤 될까요?

회신 회신일 : 2009. 4. 28. [지방교육재정팀]

○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1. 보통교부금 : 315,168억원
   - 내국세분 : 272,224억원
   - 교육세분 : 42,944억원
2. 특별교부금 : 11,343억원

○ 2009년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지자체 전입금 예산('09. 본예산 기준)

1. 법정전입금 : 72,832억원
   - 시도세전입금 : 16,563억원
   - 담배소비세전입금 : 5,687억원
   - 지방교육세전입금 : 47,109억원
   - 기타 전입금 : 3,473억원
2. 비법정전입금 : 1,329억원

2009년도 학교 회계직원 임금 체계

질의

○ 학교 회계직원에 대한 임금, 호봉제로의 채용여부, 근로 일수 방법 등 결정권자가 정확히 학교장이 맞습니까?

○ 2008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회계직원 예산 편성기준에 대한 통합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발송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그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했는 줄 압니다만 2009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회계직원 예산 편성기준과 같은 통합지침을 발송하지 않습니까?

○ 2009년도 학교회계직원(기간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방식, 호봉제로의 채용여부, 근로일수에 대한 지침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별다른 지침에 따르지 않고 작성하여 학교로 발송하는가요?

○ 학교장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거해서 정해진 예산만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권한이 학교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한테 있는게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29. [지방교육재정팀]

○ 학교의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입니다. 우리부에서 2007년도 및 2008년도에 예산편성 통합지침을 만들거나 시달한 바 없으며, 2009년도에도 별도의 지침을 만들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책정 및 복무 또한 학교의 장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도교육청에서 임금부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수당 지급여부 문의

질의

○ 교육행정기관(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교육전문직, 교원, 일반직 공무원 등)이 교육청 산하의 소속을 달리하는 기관이나 단위학교의 업무(경영, 수범사례, 주요사업, 신규사업설명, 기타)등에 특강을 할 경우 강의수당 및 원고료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07.7.2 기획예산처의 답변자료를 보면

각급 행정기관(공무원교육훈련기관 포함)에서 공무원을 초빙하여 자체 직장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무원교육훈련기관 포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민간인 및 타 부처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강사료를 운영수당(201-06목)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자기부처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예시) : 산림청 소속의 산림과학원에서 산림청 본부 공무원을 초빙하여 직장교육을 하는 경우 본부 직원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음. 서울체신청 직원이 부산체신청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산림청에서 국정홍보처 직원을 초빙하여 직장교육을 하는 경우 국정홍보처 직원에게 초빙강사료 지급이 가능함.

2. 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세출예산지침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보면 본청(의회 포함), 사업소, 읍·면·동은 독립된 기관으로 보고 본청직원이 사업소에서 강의를 할 경우 강사료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1번과 2번 중 어느 사안에 따라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4. [지방교육재정팀]

○ 단순한 업무관련 회의참석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교육의 정식 강사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의 질의 내용 중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의 지침 중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 중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시·도교육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시·도교육감으로 간주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여비 지급 시기 질의

질의

○ 교육공무원입니다. 출장(관외)을 가게 되면 그 출장비는 출장이 끝나는 시점에서 언제까지 지급해 주어야 하는가요? 3, 4월에 다녀온 출장비가 아직까지 정산처리가 되지 않아 행정실에 문의하면 준다고만 하고 돈 몇푼에 비열한 인간이 되니 도대체 법적으로는 출장비

는 언제까지 지급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원래 출장을 가라고 미리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5. 14. [지방교육재정팀]

○ '공무원여비규정'에서는 지급시기를 따로 명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근무하시고 계시는 해당 학교의 여비 지급시기를 다시한번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비의 선, 후 지급관련 하여서는 동 규정 제8조의2 ②항의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②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학교 회계직원 2009년도 급여인상 계획

질의

○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급여는 공무원기본급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비정규직 영양사는 일반직 9급1호봉의 21배, 조리원은 기능직10급1호봉에 21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 2009년도 공무원임금을 동결시키기로 했으니 아마 비정규직급여도 동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별도로 정해질 것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2. [지방교육재정팀]

○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정규 및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04년도 비정규직종합대책에 따라 공무원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도 및 학교에서 이를 그대로 준용했다면 '09년도에 공무원 임금 인상이 동결된다면 같이 동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그러나 '06년도 이후 임금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관리기준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07년도 무기계약전환 추진 이후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 중 지역 교육지원과 관련 문의

질의

○ 2007년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자체에서는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 중 지역교육부문 예산(20%)을 영어체험교실, 보육교실, 지역교육현안사업에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을 통하여 영어체험교실, 보육교실을 구축하였으며, 일부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지원하였습니다.

○ 금년에도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 교부현황과 관련하여 공문을 받았는데요. 지난해에 부동산 교부세의 균형재원으로 단위학교형 영어체험교실, 보육교실 구축을 완료하여 시설 구축으로는 지원이 필요 없어 운영비(강사수당, 간식비 등) 지원 요청이 있는데요.

○ 부동산 교부세의 균형재원 중 지역교육 부문 지원액을 영어체험교실 및 보육교실의 운영비로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 부동산교부세로 지정된 영어체험교실과 보육교실 외에 교육지원 사업 (예)국-영-수 위주의 아카데미, 유치원 종일제 지원,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학교 관현악단 운영 지원 등)에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7. [지방교육재정팀]

○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 중 지역교육수요로 교부된 예산은 해당 교육청 및 학교장 등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최종 판단하에 지원하되, 부동산교부세 제도 및 영어체험교실, 보육교실 등의 사업취지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계약시 계약당사자는 누가되어야 하는지?

질의

○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신설학교부지를 매입할 경우, 개발사업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교육청에 공급해야 함에 따라,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시 시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A, B사로 받았다면,(공동사업시행자)

1.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계약시 A, B사 모두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동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A사로만 되어 있다면, 학교용지 매입계약시 A사하고만 협의를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9. 4. 21. [지방교육재정팀]

○ 학교용지 매매계약 체결의 주체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변동된 권리관계에 따른 부지 소유권자와 교육청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폐교 재산 매각에 대한 질의

질의

○ 폐교를 매각할 계약조건이 향후 5년간 계약된 용도(지역주민을 위한 주민복지시설 등)외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매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이를 임의로 계약조건을 삭제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매수한 날로부터 2년 9개월이 지나도 사업을 하지 않아 인접토지에 피해를 주고, 또 토지를 분필하여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여 개인주택을 지을수 있는지요? 개인주택과 주민복지시설이 같은 용도인가요? 그리고 해당 교육청은 매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계약해지 등 관리감독은 어디까지 인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9. 26. [지방교육재정팀]

○ 매각 이후 임의대로 계약조건을 삭제할 수 없으며, 동법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활용되어야 하며, 개인주택을 짓는 것은 지역주민의 복지와 무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동법 제7조②시·도 교육감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폐교 활용 관련 문의

질의

○ 지금까지 10년 넘게 잘 활용해 온 폐교를 경쟁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 온 교육성과가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 폐교 임대는 본래 국가 자원을 교육적으로 활용하자는데 의의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경쟁자가 있어 무조건 공개입찰을 한다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교육은 할 수 없게 됩니다.

○ 활용의 성과를 적절히 평가하여 지속 이유가 있다면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3. [지방교육재정팀]

○ 폐교의 건전한 용도로의 활용 촉진과 소득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폐교의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폐교의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매각의 결정은 시·도교육감이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교육청과 협의바랍니다.

폐교 재산의 수의매각 여부 문의

질의

○ 우리 군에 폐교가 있어 학교재단법인에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해 학교법인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 수의매각이 가능하다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5항 규정에 의해 매각공고 30일 이후에 가능한지? 매각공고 절차없이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회신 회신일 : 2009. 4. 14. [지방교육재정팀]

○ 교육용 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폐교를 수의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대로 매각계획을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9.5.28일자 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공영개발 주체 범위

질의

○ 2007.4.11일 기획예산처 고시를 통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자산신탁(주)'이 지구단위계획지구내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였는데, 개발로 인한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 지구내 시설결정되어 있는 학교부지를 2009.5.28일자 개정·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확보하여 교육청에 무상공급하게되어 있고 제4조의2 제1항에서 학교시설까지도 무상공급하게 개정된 바, 제4조 제3항 제1호 즉, 공영개발의 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즉, 첫번째 해석 : 한국자산신탁(주)은 (기타)공공기관이므로 위탁자(민간인)와 수탁자로서의 위탁(수탁)계약과 상관없이 주택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공영개발로 보아 학교부지는 물론 학교시설까지도 무상공급해야 한다.

○ 두번째 해석 : 한국자산신탁(주)이 (기타)공공기관이나, 민간인이 위탁하여 수탁자로서 사무를 대리해주는 것이므로 주택개발사업 시행의 경우 공영개발로 보지 않고, 민간개발로 보므로 무상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회신 회신일 : 2009. 7. 28. [지방교육재정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개발사업시행자를 공영개발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시공사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과표 변경에 따른 환급 및 해약세대 관련

질의

○ 해당 사업지는 2008년 12월 사용승인을 얻었으며, 분양된 세대에 대해서는 분양금액의 4%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분기마다 납부하였으며 2009년 2월말 기존 계약세대 및 미분양 세대에 대해서 분양가 할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계약자들 중 상당수가 해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분양가(과표)의 변경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금액도 할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해약에 따른 세대에 대해서 납부된 학교용지부담금도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환급이 안되면 추후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1. [지방교육재정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실제 분양한 가격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분양자료는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분양공급계약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자료로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이 완료된 주택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분양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학교신설비용 납부시 학교용지부담금에서 해당금액 공제 가능 여부

질의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중 당해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학

교신설비용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인가권자가 인가조건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학교신설비용을 납부토록 정하였습니다.

○ 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징수하는 바, 사업시행자가 학교신설비용을 당해 교육청에 납부할 경우 차후, 도시개발사업 구역內 공동주택 건립시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에서 교육청으로 납부한 학교신설비용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나. 시행자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

다. 교육청 : 인천 남부 교육청

회신 회신일 : 2009. 3. 18. [지방교육재정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한다)』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개발지역내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를 신설하는데 필요한 용지의 확보 또는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단기간에 발생된 학교신설 및 증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관련 경비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법제정의 취지임

○ 따라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경우와 기존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신설되는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모두는 개발지역의 학교 신증설 수요에 상응하는 학생수용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세가지 경우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차별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학교 건물 신축비용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한 경우에도 기부한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 만큼 학교용지부담금은 감면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이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하고, 인허가 조건에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학교)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반면 신축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부담금 부과면제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환급금 권리양도에 관하여 문의

질의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하여 최초분양자가 아니고 여러 명을 거쳐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초분양자와는 안면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인감증명을 받아서 권리를 양도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분양권을 매수할 때 학교용지 부담금을 따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영수증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영수증만으로는 환급받을 수 없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29. [지방교육재정팀]

○ 지난 3.14 공포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서는 부담금 납부자는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환급권의 양도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형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산권의 양도 시에는 일정한 형식을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바랍니다.

아파트 할인분양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문의

질의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분양한 물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분양가의 0.4%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는데, 만일 할인분양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는

1. 할인된 분양가를 기준으로 0.4% 납부해야 하는지?

2. 당초 분양승인된 분양가의 0.4% 적용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09. 2. 10. [지방교육재정팀]

○ 할인된 분양가를 기준으로 부과징수함이 타당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

질의

○ 미분양으로 인하여 분양가격 할인을 통하여 분양을 하였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부과기준이 모집공고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할인하였을 경우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1. [지방교육재정팀]

○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제 분양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문의

질의

○ '제2종 지구단위계획시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써'라는 문구가 지침에 있습니다. 학급수가 부족하여 교사를 증축하여야 한다면 사업자가 먼저 교사증축공사를 하고 차후 납부해야할 학교용지부담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17. [지방교육재정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의하면 부담금을 기존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의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 제3호,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발사업자가 인허가 조건에 따라 교실을 증축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교실 증축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면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이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하고, 인허가 조건에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학교)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반면 교

실 증축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부담금 부과 면제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문의

질의

○ 아파트 구입시 최초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 다음사람에게 분양권을 양도시 당연히 분양권+학교용지부담금+각종세금들을 분양권 가격에 더해서 파는게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학교용지부담금을 현 거주자 소유자가 아닌 최초 분양권 가진 사람에게 환급하는 방법을 만드셨는지?

○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고 영수증까지 있는데 최초 계약자가 돈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돈을 주면 인감등 관계서류를 보내 줄테니 이런 날 강도같은 일이 어디있고 이런 시스템의 환급이 어디있더랍니까? 최초 분양권자가 아니라 그 분양권에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웃돈을 주고 산 현재 거주자들에게 그 혜택을 주고 환급을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닌가 생각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3. [지방교육재정팀]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하면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은 시·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특례법에 따라 납부한 것임을 알고 있는 부담금 납부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하여야 하며,

○ 동법 시행령 제4조에는 법 제3조에 따라 부담금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부담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그 계약 사실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사실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알려야 하며, 시·도지사는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환급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특별법에 부담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상속인은 시·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특례법에 따라 납부한 것임을 알고 있는 부담금 납부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분양자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환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환급할 경우 위험합니다. 부담금의 환급방법 및 절차와 환급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여 환급해 줄 수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문의

질의

○ 분양계약서상(시공사-조합)에는 조합원 분담금에 학교용지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분양권전매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조합원 분담금+프리미엄을 주겠다고 작성되었지, 분담금에 포함된 별도 학교용지 분담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더군 다나 제가 분양권을 구입한 날자는 2002년 12월 19일이고 시공사와-조합이 실제 학교용지 분담금을 납부한 날짜는 2003년 6월 1일자였습니다. 학교용지 분담금이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별도로 조합원에게 납부고지서를 전달하지도 않았고 일괄+로 시공사와 조합이 납부처리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사업승인 이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조합아파트의 성격상 분양권 전매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음에도 불구, 학교용지 부담금은 변경된 조합원 명의로 납부되지 않고 행정 편의상 당초 조합원 명의로 일괄 납부된 상황인것 같습니다.

○ 분명 조합원 분담금에 학교용지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매매 검인계약서에는 조합원 분담금+프리미엄 지급이 명시되어 있으며 더군다나 매매계약일자가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일자보다 앞서는데도 제가 환급신청을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은 학교용지 분담금 환급을 신청 할수 없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15. [지방교육재정팀]

○ 당초 지자체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자는 학교용지부담

금 부담에 대한 특약이 있는 계약사실(특약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과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2가지 서류 모두 제출해야 환급신청 가능),

○ 변경후, 증빙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의 경우 매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1가지 증빙서류로도 조정신청 가능) 시·군·구청에서는 이를 접수한 후 환급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하여 동 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처리하며,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불가하다고 판단결정되면, 동 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공탁 신청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환급 신청절차의 기본적인 흐름은 위와 같으며 귀하의 경우, 최초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로서,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영수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있는 경우 그것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해당구청에 조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신청에 대한 업무는 해당 구청에서 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해당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문의

질의

○ 군청 담당자 얘기가 작년에 신청한 사람들은 돌려받고. 2009년에 신청한 사람들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준다고 하더군요. 내가 낸돈 돌려 받는건데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09. 3. 24. [지방교육재정팀]

○ 환급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서울시청에서 각각 분담하여 마련합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환급재원은 전액 지자체로 지급되었으며 서울시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분에 대해서는 현재 마련하고자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전에 납부하였다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대상 기간이 2005년 위헌판결 이전이라면 귀하도 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2005년 5월 이후에 납부하였다면 그것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아닌 다른 세금으로 보이므로 상세히 확인해 보시고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감액 관련 질의사항

질의

〈질의 1〉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 00아파트 176세대 건설과 관련하여 (주)0000개발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시행사에서 교육청에 기부 체납자료를 제시하며 부담금에 대한 정정 요구

○ 교육청 자료를 확인 결과, 토지구획 정리를 하면서 시행사와 교육청간에 재산을 교환하고 일부 시행사 소유 토지 중 86.4㎡가 교육청으로 기부체납 됨.

○ 우리시 검토의견은 시행사에서 세대별 분양가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하여 분양하 였으리라 예상되며,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재산을 교환하고 시행사 소유 재산 중 일부를 교육청에 기부체납한 것은 별개로 여겨짐.

○ 이런 경우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4항 제1호(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체납하는 경우)규정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상기 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 또한, 부담금 면제 규정 중 특례법 제5조4항 제2호 규정의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질의2〉

○ 회사에서 시행한 00아파트사업과 관련하여 시에서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회사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지역의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지역의 초중학교의 최근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는 동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면제의 요건을 구비하는바 이러한 경우 면제가 가능하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3. [지방교육재정팀]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교육청에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을 해당금액만큼 감면 가능합니다. 최근 3년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신설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취학인구의 감소는 물론 학교설립 수요도 없어야 됩니다. 학교설립 수요는 초중고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정책,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결정하게 되는 점 알려드리니 양지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개정(5.28)안에 대한 질의

질의

○ 이번 5.28 제정, 공포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납부예상금액의 총 10억중 6억)하기로 개발사업승인을 받고 2년동안 납부하고있었으나 취학아동의 증가로 기존설립된 학교의 증축이 불가피하여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을 증축하여 무상공급하려는 경우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재정의 열악(도로부터 학교용지매입비 전출이 되지 않고있음)으로 기존시설 증축불가 통보

○ 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의 근거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유무

○ 그리고 면제의 의미(일부면제, 전액면제 인지)

○ 일부면제가 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액 4억 보다 학교시설 증축비용이 더 많을 경우 정산의 방법

회신 회신일 : 2009. 7. 3. [지방교육재정팀]

○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담금도 납부하고 학교 용지 또는 시설을 무상제

공 한 경우 이중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무상공급한 금액 보다 부담금 징수액이 크다면 차액 부분 만큼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무상공급 금액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문의

질의

○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함에 있어 시행자가 시공사에 공사비 대신 해당 세대로 분양가대비 인하된 금액으로 정산했을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0. [지방교육재정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양시점은 사업시행자가 최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간 계약에 의해 미분양시 공사비를 신축 아파트 등기를 이전하여 충당하기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이는 사업시행자가 시공사에게 분양한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특례법 제5조제4항 질문

질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4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 법개정 전인 2009.5.28 이전에 협의된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으로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면 학교용지 부담금이 면제가 가능합니까?

○ 위 1항의 경우 공동주택 단지내가 아닌 인접학교에 교실을 증축하여도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한것으로 인정됩니까?

○ 위 1,2항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이 면제되면 전액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무상 공급한 학

교시설비용만 면제되는 건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23. [지방교육재정팀]

○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부담금을 기존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동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의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법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개발사업자가 인허가 조건에 따라 학생수용시설을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할 경우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학교용지 부담금에서 면제 가능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질의

○ 부동산 개발회사인 당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사업의 분양율이 심각하게 저조함에 따라 준공 후, 시공사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대물변제계약서를 체결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시공사에 일괄 양도하여 시공사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양도 가격은 분양승인시 가격보다 상당폭 할인된 가격이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오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상기와 같이 미분양으로 인하여 준공 후에 시공사에 대한 채무정산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 시에도 분양으로 간주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함이 타당한지?

○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납부해야 한다면 사례별로 상기와 같이 시공사가 잔여 분양물 일체를 대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사업권 전체를 양수받은 것을 보고 시공사가 일반분양자에게 매매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질의 1,2의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최초 분양승인 기준이 아닌 실제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3. [지방교육재정팀]

○ 학교용지부담금은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 분양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유상 매매로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서 타인에게 이전된다면 공급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부과권자에게 제출하고 부과권자는 이에 대한 가격을 기초로 부담금 부과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의거 부담금 부과는 실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문의

질의

○ 특약사항의 매매계약서만 첨부한 환급조정신청을 받은 건에 대해 환급신청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 아파트 승계내역은 A -> B -> C -> D 로 가정할 때 D가 현소유자로서 C와의 계약당시의 특약계약서로 환급조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교과부 지침시달은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는 환급조정위원회에 회부시키라고 하는데 최초분양자 A는 계약당시 명의를 빌려줘서 잘모르겠다며 현소유자에게 환급권양도와 자신의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며 중간매수인 B, C 는 매도계약시 학교용지부담금 돈을 받고 매수인에게 넘겨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교과부 지침시달에 의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이 되지 않는 것 보다는 D 에게 환급신청을 받아 A 와 B 에게 환급동의절차를 구하여 실질적인 환급권자에게 환급이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과부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6. [지방교육재정팀]

○ 환급법에서는 부담금의 환급은 최초분양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법 제1조에서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

에서 '부담금의 납부자'는 해당 행정청의 부담금 납부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최초분양자'를 의미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통설입니다. 또한 법 제2조 2항에서는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납부한 것임을 알고 있는 부담금 납부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청의 부담금 납부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을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당초에 여러명의 매수인이 있는 경우 모든 매수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변경후에는 최초분양자의 동의만을 얻으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갖춘 분들도 최초분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최초분양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부대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최초분양자의 거부감을 유발시켜 받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시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문의

질의

○ 저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대상 아파트에 현재 4년째 실거주하고 실소유자 입니다. 매수당시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1차매수자 였던 분한텐 지불을 하고 매수를 하였습니다. 영수증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을 신청 하려고 했더니 최초 분양자가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신청을 할려고 했더니 학교용지 부담금을 1차매수자에게 지불한 특약내용이 검인 계약서에 나와있지 않다고 해서 신청자체가 불가 하다고 합니다.(특약내용은 실거래 계약서에 나와있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해주는 정책자체가 무조건 최초 분양자에게 유리하게 되있는것 같습니다.. 사실 상 거래를 할때 매도자의 경우 자기가 들어간 비용을 매수자로 부터 받고 거래를 하는게 통례아닌가 싶습니다.

○ 그리고 예전에는 통상적으로 계약시 실거래 계약서와 다운계약서 2부를 작성들을 하셨던 경우가 태반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는 다운계약서가 되었겠죠 그사실을 공공연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검인이 안된 계약서에 특약내용이 있다고 해서 조정신청 조차

안받는 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태가 매수자의 경의 서류가 모두 완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최초분양자가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협의가 필요하고 최초분양자에게 일정의 돈을 지불하고 위임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진행들이 되고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6. [지방교육재정팀]

○ 환급신청을 하는데에는 기본적으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부담특약 기재)와 영수증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서류를 갖추지 못한 민원인들이 많아서,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둘 중 하나도 됨, 그 외 서류 중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서류이면 됨)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제출하면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서류중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조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문의

질의

○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하고 분양된 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이후, 분양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세대에 대하여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환급이 가능한지요?

○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하고 분양된 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이후, 공동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되어 분양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전부에 대한 환급은 가능한지요?

○ 상기 1,2항의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 환급신청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21. [지방교육재정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장소 등

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

○ 이때 분양자료는 동법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 분양공급계약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자료로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이 완료된 주택 등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분양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이때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과한 관할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문의

질의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양측이 합의가 안될 경우 환급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말뿐인것 같더군요. 6개월내 해결이 안되면 바로 공탁으로 넘어간다고 말하는데 사실상 제도만 환급조정이지 매수자한테는 아무도움이 안되는 것입니다.

○ 양측이 다 신청했을 경우 지자체에서 매도자한테 권리양도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때 마냥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제출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에 어떤 이의신청도 하지 않으면 매수자한테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매도자측도 신속히 대처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수자와의 문제가 많이 복잡해지고 있어서 최초 등기자에게 환급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6. [지방교육재정팀]

○ 우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매수자와의 문제가 많이 복잡해지고 있어서 최초 등기자에게 환급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고 최초등기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 매수인의 입장에서 보기에 현재의 제도가 몹시 불합리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입법한 현행 법규에 학교용지부담금은 최초분양자에게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 제1조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청의 입장에서 "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징수고지의 대상 및 납부영

수증의 발부대상인 최초분양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매수인의 경우 매매계약에 따라서 최초분양자가 받아야 할 환급금을 대신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매수인이 환급을 받으려면 정당한 권리자인 최초분양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환급의 정당한 권리자가 최초분양자인데, 이의가 없는 경우 곧바로 매수자에게 환급을 하는 것은 우선권이 최초분양자에게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하여 그 우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급조정 또는 공탁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환급신청이 된 상태라면, 이후의 환급조정위원회 절차를 잘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급 관련문의

질의

○ 2008년 11월말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 신청서를 시청에 접수했습니다. (분양권 구입 후 등기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임)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저희 아파트 최초분양권자로부터 환급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가 시청에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저와 직접 계약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영수증 원본을 첨부(분양권 매매 계약서에 학교용지부담금 승계와 관련하여 특약사항 은 없음)하여 환급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최초분양권자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환급동의를 했으므로 별도의 절차없이 저에게 환급금이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환급조정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정이 필요한건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1. [지방교육재정팀]

○ 당초 환급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부담특약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었으나, 두 가지 서류를 모두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둘 중 하나 또는 다른 증빙서류로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였으며 동 제도는 명칭만 다를 뿐 효과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최초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의를 하면 환급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환급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합니다. 조정신청도 환급신청과 동일하게 최초분양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받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정위의 역할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업무 질의

질의

○ 00도의 환급업무처리지침에 의거 환급신청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 계약서 특이사항에 학교용지부담금 승계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납부영수증 원본이 있거나 납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사실(확인서 등)이 있는 경우이며, 두 번째 납부 영수증 원본이 있는 경우, 계약서 특이사항에 학교용지부담금 승계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환급신청이 가능함.

○ 교과부 환급 조정 신청 업무처리 안내에 의거 환급조정신청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했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의 특이사항에 학교용지부담금 승계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납부영수증이 없을 경우 환급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처리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 위 2호의 사유로 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했다고 주장하는 현소유자가 최초분양자에게 환급권 권리양도증명을 요구하였으나, 최초분양자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양도증명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현소유자가 부득이 환급조정신청을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급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조정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 동일세대에 조정신청자가 1명 단독일 경우에는 조정신청자에게 환급신청서를 접수하게 하여 최초분양자와 중간 매수인 등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게 환급동의 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에 환급신청자에게 환급금 지급을 하게 되면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처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급조정신청건을 환급신청건으로 접수하여 위와 같이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7. [지방교육재정팀]

○ 매수인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최초분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매수인에 대한 환급동의

여부를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회신 요청하였으나, 최초분양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급조정위원회에 회부가 가능하며 환급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결과에 따라 환급 또는 공탁 결정을 할 수 있음.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5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부담금의 환급방법 및 절차와 환급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환급방법 및 절차와 환급조정위원회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우리부에서 통보한 「환급업무 질의 응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 · 도지사가 정하여 운영할 사항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제도 개선요구

질의

○ 학교용지 부담금의 경우 아파트 등 부동산의 매매시에 이러한 금액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부담하여 받게 되고, 이러한 매매사실의 완료에 따라 당연히 학교용지 부담금의 양도양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양수의 확인을 위하여 최초 분양자의 인감증명을 요구하게 된다면, 최초 분양자가 인감증명을 그냥 발급해 주지 않고 돈을 요구하게 되며 그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많은 돈을 요구할 때에는 상호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 현재 해당 아파트 등 부동산의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모든 권리를 양도 양수하였음이 법적으로 확실하고, 이러한 양도 양수가 완료되었다고 보므로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2. [지방교육재정팀]

○ '08.3.14 제정 · 공포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서는 「(구)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그 납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며, 이때 동법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용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는 자이므로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환급토록 이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으로 환급대상자를 변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또한, 환급권 양도시 실제로 부담금을 부담한 자가 최소한의 절차로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의 양도절차를 변경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환급권은 환급특별법 시행 후 발생하는 권리로 하나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재산권자가 변경되기는 어려우며, 당사자간의 별도의 확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건

질의

○ 아파트 분양권은 그 당시만도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아파트 전매권을 매수할때는 학교용지부담금또한 당연히 인수를 한거였고요. 환급에 필요한 서류(영수증, 매매계약서 첨부)를 완벽히 준비해놓고도 최초 매수자의 인감증명을 못받아 지급을 못받는다는 건 억울합니다. 아파트분양권판매는 사인간의 계약사항이었겠만 그때 법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명의도 변경을 해주셨으면 이러한일이 발생치 않았겠지요.

○ 인터넷에는 최초분양자들이 인감증명서를 교통비명목으로 최소20만원에서 50%까지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요. 그리고 무조건 신청하고 보자는 누리꾼들도 있더군요. 왜 모든권리를 팔고도 슬데없는 욕심이 생기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집 최초분양자도 이사실을 알고계시더라구요. 저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그랬더니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더군요. 모든 권리는 최초 등기자(or 현등기자)라 생각합니다.

○ 환급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무슨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우선환급대상자기준은 어떻게 정할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9. [지방교육재정팀]

○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은 최초분양자에게 하도록 법령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제1조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부담금의 납부자'는 부담금을 징수한 기관(시・군・구청)에 부

담금을 납부한 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로 냈다라고 주장하는 자는 계약사실(부담특약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과 부담사실(영수증)을 증빙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환급신청 자체가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형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분양자가 이의없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매수인에게 자연스럽게 이양이 되는 것이므로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저희 담당자들의 견해가 아닌 법률전문가(교과부 고문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저희가 그 의견을 듣고 판단하여 제시하는 견해입니다.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후 진행되는 환급조정위원회의 절차에 잘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 신청지급 지연에 대하여

질의

○ 저는 아파트를 최초 분양자에게서 프리미엄을 주고 학교용지분담금을 은행에 입금을 하고 분양을 받은 입주자입니다. 구청에 분담금 신청을 할때 최초 분양자가 아니라하여 거절을 해 본인이 최초분양자에게 분양권 전매 영수증에 학교 용지분담금은 매수자분담이란 서명을 받고 분담금은행 지로용지를 받아 본인이 직접 은행에 입금 영수증을 받아 이번 학교용지분담금을 신청했으나 아직도 받지 못해 구청을 방문 이의신청을 하니 아직도 예산이 안내려와 안된다하여 기다리라고 하니 저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냈다는 서류를 첨부하면 근거가 확실한바 지불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10. [지방교육재정팀]

○ 환급법은 부당하게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환급하라는 것인데 환급법에서는 부담금의 환급은 최초분양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최초분양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의 경우 서류를 갖추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청 자체가 환급으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 즉 최초분양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환급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규정상에 신청이 없더라도 최초분양자에게 환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매수인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최초분양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며, 최초분양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조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공탁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탁처리를 하면 판사가 직권으로 심판하여 최초분양자와 매수인 둘 중 한 명에게 환급결정을 하게 됩니다.

○ 한편 최초분양자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부대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최초분양자의 거부감을 고조시켜 받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시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 특례법(5.28)개정안에 대한 질의

질의

○ 이번 5.28 제정, 공포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기로 개발사업승인을 받고 2년동안 분양률 67%로 총 납부예상액 10억중 6억을 납부하고 있었으나 취학아동의 증가로 기존 설립된 학교의 증축이 불가피하여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을 증축하여 무상공급하려는 경우.<시교육청은 광역지자체로부터 학교용지매입비 전출이 되지 않고 있는 등 교육재정의 열악으로 기존시설 증축이 어렵다고 함

○ 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의 근거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유무

○ 그리고 면제의 의미(일부면제, 전액면제 인지)

○ 일부면제가 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액 4억 보다 학교시설 증축비용이 더 많을 경우 정산의 방법

회신 회신일 : 2009. 7. 3. [지방교육재정팀]

○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 · 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담금도 납부하고 학교용지 또는 시설을 무상제공한 경우 이중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무상공급한 금액보

다 부담금 징수액이 크다면 차액 부분 만큼은 환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무상 공급 금액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관련 문의

질의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4조3항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기존 일반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제3섹터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기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공영개발사업입니다.)지방자치단체가 20%, 주식회사KUP(KOREA URBAN PARTNERS) 50%, 한미은행(1) 15%,파슨스은행(2) 15%로 참여하여 천안제3컨플렉스사이언스주식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내에 공동주택 4,500세대를 개발할 계획으로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업입니다. 이럴 경우 학교용지확보등에관특례법제4조3항1호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인지요?

○ 공영개발인지 민영개발인지 여부에 따라 학교용지 공급방법이 결정되는 사안으로 이럴 경우 우리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매입시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질의 요청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5%미만의 지분을 투자했으므로, 민영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8. [지방교육재정팀]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각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따라서 특례법에서의 공영개발사업자는 위 사업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위 각목에서 인용한 타법령을 기준으로 공영개발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장 재산소유권 관련 문의

질의

○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어있는 공유재산을 학교에서 임대하여 학교림으로 관리하던 임야를 학교장이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에게 매각하였고 매수자는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관리하다가 최근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산관리 관련 권한 등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1945년 해방당시 국민학교에서 ○○면 소유의 임야를 임대하여 학교림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당시 학교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근거(지정고시 등)가 있는지?

○ 1959년경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국민학교에 희사하였다고 하는데 국민학교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재산관리관 권한여부)를 할 수 있는지?

○ 1962. 2. 3 ○○국민학교에서 학교림으로 관리하고 있던 임야를 개인의 요청에 의하여 그 일부면적을 학교장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매각 하였고 매수자는 매각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당시 국민학교장이 개인에게 학교에서 관리하던 임야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회신 회신일 : 2008. 7. 21. [지방교육재정팀]

○ 매매계약 당시인 1962년은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의 시기로 『구 지방자치법』 제116조에서는 도의 관장사무에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동법 제103조제3호에서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 따라서, 당시 재산의 취득 및 처분권이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는지의 여부와 학교장에게 부동산의 등기적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하여 파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결과와 매매계약서의 진정성 여부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회계가 국고라는 근거는?

질의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의 차이는 교육비특별회계(국고)인 수업료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미납시 엄청난 징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협찬금으로 미납시 아무런 법적제제를 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운영지원비는 설령 고의로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아무런 강제수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같은 국고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질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재원의 성격은 판이합니다. 학교회계의 입법 취지는 1999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로 인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에 의한 학교회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근거로 학교의 모든 재원을 통합하여 "학교회계"로 설치한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2항의 2의 학교운영지원비와 2항의 4처럼 학부모부담경비가 국고가 맞습니까?

○ 학교회계 전부를 국고로 볼 수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11. 19. [지방교육재정팀]

○ 학교회계는「초·중등교육법」제30조2에 의거 설치된 회계로서,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와는 다른 별도의 회계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초·중등교육법」제32조에 의거 학교회계에 세입으로 수입처리되면 "학교회계비"가 됩니다. 즉 국고와 지방비와는 다른 "학교회계비"입니다. 그리고 학교회계비는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므로 수입 처리한 학교운영지원비는 공금에 해당합니다. 학교회계 세입으로 수입된 수익자부담경비(학부모부담경비) 또한 공금에 해당합니다.

학교회계에서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학교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는 전현 다른 법적 설치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특별회계는 어떤 사업시 재정이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금융권에서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도 가능하진 질문 드립니다. 즉, 체육관 건립시 예산 확보는 10억인데 2억이 더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주 거래 은행처와 협의하여 10년 상환으로 2억을 차입하여 쓰고자 합니다.

○ 학교에서는 '학교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여 학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요?

○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다면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만 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1. [지방교육재정팀]

○ 학교회계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세입에 대한 부분은 제2항의 각호에 명시하고 있고, 학교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립학교의 경우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을 학교에 시달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라야 합니다. 학교회계의 은행 차입은 법률 또는 지침에 근거해야하나 이에 해당하는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습환경 격차 해소 관련 문의

질의

○ 주로 신설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지어지는 신설학교와 기존의 학교간의 학습환경격차가 너무 심하므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어도 체육관과 식당(교실급식이 아닌)만이라도 혜택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실내 체육관 : 잦은 황사, 오존 경보 혹한 혹서 우천 등으로 위축되기 쉬운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한 교육과정운영의 정성화를 위하여 체육관이 필수 시설입니다.

식당 : 조리실에서 위생적인 조리가 이루어져도 번거로운 운반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오염과 비위생적인 교실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단체 급식당은 필수 시설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13. [지방교육재정팀]

○ 지방교육재정의 상당부분이 개발사업지역의 학교설립에 투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구도심과 신도시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개발지역 학교신설비용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지방교육재정은 구도심학교활성화에 투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

습니다.

○ 이러한 법개정 등이 원활히 추진되면 그만큼 지방교육재정은 확보될 것이며, 이후 교육청에서 확보되는 교육재정으로 구도심 학교활성화에 투자한다면 신도시와 구도심간 교육여건 격차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관련

질의

○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은 제33조 (지급의 방법)에서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에서는 증빙서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제33조 (지출의 방법)에서

①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로써 행하거나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개정 1982.5.28〉

② 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여 지출을 예금통장에 의하여 행한다는 것이 계좌이체에 의한 방법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건별로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학기관에서 지출시 증빙서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시 지원대상에 유치원, 초중고교 외에 교육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개별학교에서 운영이 어려우나 여러 학교에 혜택이 가는 사업의 경우. 예를들어 영재교실, 과학축전, 교원연수 등)

회신 회신일 : 2008. 12. 16. [지방교육재정팀]

○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사학기관에서 지출을 하는 경우, 원칙은 예금통장(계좌이체)을 이용하는 것이며, 다만 소액의 지출을 하는 경우(예를 들어 1,000원 단위 이하의 지출건 등) 매 건을 계좌이체할 수 없으므로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의 조문에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

나, 각 시도별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사학기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금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사립학교법 제43조)이 있어,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공립학교에 준하여 지출에 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시도별로 제정하여 운용중인 시도교육청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공사립 구분없이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시도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7항에 따르면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청으로도 교육경비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문의

질의

○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분기에 한번씩 일정금액을 내고 명칭이 수업료로 되어있으면 산재장학금을 받을수도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명칭을 수업료로 바꾸면 수많은 산재장애인들은 혜택을 입을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9. [지방교육재정팀]

○ 학교운영지원비는 예전의 “육성회비”, “기성회비”가 발전된 것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물가가 미치는 영향, 지역실정, 수업료 변동률 및 학교의 재정소요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대부분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폭넓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중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교육재정여건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재정이 열악하여 학교운영지원비 부분까지 전액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2012년까지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2학기 부터는 차상위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까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토록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사교육

사교육 학원비를 경감 문의

질의

○ 학원비를 내린다고 하셨고 학원비를 조정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 사는 지역의 학원비는 비싼지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특기적성교육은 왜 따로 비용을 받나요? 학교에서는 학원에서 배운 것 아니냐며 학원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학원에 다니지 않은 아이들은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인재정책기획과]

○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 10월 학원비 경감을 위주로 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6월 3일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선행학습 관련 사교육 수요 감소를 위해 특목고 및 대학입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 방과후학교와 관련하여서도,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이 무료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자유수강권' 제도도 더욱 확대하여 필요로 한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사교육비 증가 추이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8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물가 인상률을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07년에 비해 0.3% 감소한 바 있으며,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방문교습 수업료, 교재비) 인상 자제 요청

질의

○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학원이나 학습지를 하나 더 시키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는 학원비에 대한 관리강화를 발표하였습니다.

○ 그런데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방문교습의 수업료와 교재비가 수십% 인상된 사

실을 알고 계신가요? 부모로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사교육비의 부담이 감소되어야 국민의 소비의욕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원비, 방문교습 수업료 등의 인상에 대한 철저한 관찰과 감독을 요청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6. [인재정책기획과]

○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방문학습지 사업은 사교육 유형 중에서도 대표적인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 절차만으로 개인도 쉽게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학원과는 달리 교과부(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정부개입이 어렵습니다.

○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학습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담합에 의한 가격상승 등 부작용 방지 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업체의 가격담합 사례 등을 발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방문학습지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교육없는 학교 지원 사업의 실효성 문제

질의

○ 정부는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기 위한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사업을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학교에 투입한다고 해서 과연 사교육 수요가 얼마나 줄어들 것이며, 정책의 연속성이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 중학교의 방과후수업은 대부분 고등학교 보충수업처럼 문제풀이 중심으로 진행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학생들의 사고력이나 판단력, 창의적 상상력을 기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7. [인재정책기획과]

○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사업의 목표는 단위 학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 사업의 취지대로 지역사회의 특성과 학교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우수 학교운영 모델이 학교 현장으로부터 개발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주도록 잠재력을 키워주는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으로 정착되고, 결과적으로 공교육 내실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선정 대상으로는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과 방과후학교 등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서 사교육 경감 추진 의지가 분명하고 운영계획이 구체적인 학교로, 학생을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질 낮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선정에서 배제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F2 비자 강사등록 시 문의

질의

○ 필리핀F2 비자를 가지신 분을 내국인 강사로 등록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분이 회화를 가르칠 것이 아니냐며 안 된다는 답변입니다. 타지역에서는 외국인이 대졸이면 내국인 강사로 등록이 되는데 저희 지역은 좀 엄격한 것 같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13. [평생학습정책과]

○ 외국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학원법시행령에서는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께서 정한 체류자격이 있는지 해당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시어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원강사 등록에 관한 문의

질의

○ 현재 강사 신고 기준에 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4년제 대학에서 2년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성적증명서를 교육청에 가지고 가면 강사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년과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4년과정 중 2년 과정을 마쳤을 경우에는 강사신고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

다. 만일 학점에 정확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면 국내 대학마다 학점 이수기준도 틀린상황인데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학원강사 자격기준(제12조 제2항)의 구분 6번에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도 사용되는 규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13. [평생학습정책과]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1항 제1호에는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과정의 이수는 개별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대학의 학칙을 확인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동 기준을 만족하였다면, 현재의 신분이 재학, 휴학, 자퇴생 신분이어도 모두 강사자격이 있습니다.

○ 시행령 별표2 6호에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라는 규정은 1995년에 강사자격기준에 학력요건이 고등학교 졸업에서 대학 졸업으로 강화되면서, 개정 시행령 시행 이전에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거나, 강사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항입니다. 따라서 95년이전에 학원강사를 하시고 그 당시 2년이상 전임의 교습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공동주택 음악레슨 소음에 대해서

질의

○ 윗층에서 첼로 개인 레슨을 하고 있는데 본인포함 앞집과 주변의 주민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어 해결방안을 요청합니다. 교육청은 신고제로 되어 있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제한사항 없이 할 수 있고 구청은 제한사항이나 처벌규정이 없다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6.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관련 법령에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개인과외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

은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어 제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에 공동주택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입주자와 사용자에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참조하시고 또한「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에 대해 의결할 수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습소에는 왜 유아수업을 불가능한지

질의

○ 이번에 미술교습소를 내는데 평수가 작고 세가 저렴한 곳을 고르다 보니 학원 인가가 안나고 교습소 신고가 가능한 평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교습소와 미술학원은 평수가 다를 뿐 다른게 없다고 봅니다. 물론 신고제 허가제 차이가 있겠지만요. 학원은 타전공자에게도 허가를 내주면서 유아를 받을 수가 있고 교습소는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유아를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이 이해가 안갑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5. 27.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교습소"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시설로 학원이 아닌 시설임

○ 동 규정에서와 같이 유아에 대한 교습은 "과외교습"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교습소에서의 교습 대상은 아니나, 유아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동시 교습인원 9인 이하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학원 등록 또는 교습소 신고의 절차 없이 교습이 가능 하므로 교습소에서 초중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과 유아 또는 성인을 동시에 교습(동시 교습인원 9인 이하인 경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참고로, 교습소 지도 · 감독에 관하여는 시 · 도 교육감의 권한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 · 도교육청 또는 관할 지역관할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창작교습소가 가능한지요?

질의

○ 대학 문예창작학과 진학을 원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기 위해 8평정도의 강의실을 만들어 교습소 운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문예창작교습소는 안되고 "국어교습소"로 신고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예창작교습소"는 불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8. 26. [평생학습정책과]

○ 교습소의 명칭은 법령상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교육청에서 교습소의 분류 또는 학습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 교습소 시설기준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이 9인이하이어야 하며,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의료교육 (침, 뜸교육) 에 관한 교육청의 처분가능 여부

질의

○ 관할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 침뜸교육을 하는 곳을 민원제기 하였으나, 해당교육청은 학원법에 해당되지 않으니,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학원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평생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22.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은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 4항에 따라 교습과정이 이론교습과목과 실험 · 실습 또는 실기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침, 뜸을 교육하는 학원을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론과 실습을 겸해야 할 것이나, 침, 뜸을 실습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

는 "의료법"에 위반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학원으로 등록하여 교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에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와 그에 대한 처벌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층내에 학원 및 교습소 및 과외 인허가 문제

질의

○ 아파트 층내에 학원, 교습소, 과외 인허가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간에 갈등이 쌓여만 갑니다. 고층아파트에서 승강기 기다림 문제, 소음, 공공전기요금, 시설훼손, 쓰레기 방치 등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주용도가 주거인 아파트층내에 위와 같은 시설의 인허가는 별도의 빌딩이나 단독 건물로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31. [평생학습정책과]

○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학원, 교습소의 설립은 불가합니다. 만약 학원처럼 운영되는 경우(같은시간에 10인이상 교습하거나, 강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에 공동주택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입주자와 사용자에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참조하시고 또한 「주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에 대해 의결할 수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외국어학원 입원자격에 관한 건

질의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종류)" 국제화(분야), 외국어(계열)에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

은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라고 교습과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로 교습하는 곳에서는 성인이 수강을 신청하면 받을 수 없는지요. 아니면 주된 교습대상 외에 일반성인도 교습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23. [평생학습정책과]

○ 학교교과교습학원 국제화(외국어계열)분야의 교습과정에 일반성인도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원법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리한 목적은 학원의 특성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는 교육환경 보호와 수강료 및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재외동포(F-4) 학원강사 자격에 대한 문의

질의

○ 재외동포가 학원강사를 할 경우 학력이 외국(미국)에서 4년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3학년 때 휴학을 하여 휴학증명서를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을 경우 학원강사를 할 수 있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7. 22. [평생학습정책과]

○ 재외동포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F-4)라 함은 후자 즉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학원법상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3학년 때 휴학한 자는 학원 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태글리쉬의 불법운영 여부

질의

○ 최근 태글리쉬(태권도+영어)라고 하여 태권도를 직접 영어로 가르치는 학원이 주변에 있습니다. 별도의 영어회화를 별도로 강사를 두어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태권도의 동작동작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 동 기관은 아직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없고 광고만 하였을 경우 무등록 운영 광고사항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위와 같은 사항을 무료로 가르칠 경우 무등록 영어학원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태권도만 배우는 학생과 태권도+영어를 함께 배우는 학생을 차별하여 수강료를 별도로 받을경우 영어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무등록 학원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5 [평생학습정책과]

○ 광고만 하고 아직 교습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등록학원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제1호에서 “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습료의 유무로 학원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기술한 것과 같이 태권도만 배우는 학생과 태권도와 영어를 함께 배우는 학생을 차별하여 수강료를 받은 이유만으로 무등록학원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이 학원의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 무등록학원으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 위에서 ‘교습’행위라고 하는 것은 학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학원의 교습과정들을 교습하는 것으로써, 단순히 교습과정과 관계없이 태권도만을 가르칠 경우 체육시설로 신고하면 될 것이나, 태권도를 매개로 하여 영어(학원의 교습과정)를 교습하고 있다면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는 개별·구체적으로 실제 교습과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학원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생 등 미성년자 수강 가능 여부

질의

○ 평생직업교육학원과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되기 전에는 학원법 제5조의 교육환경의 정화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에는 교습과정이 보습, 컴퓨터, 예능, 웅변, 독서실 등만 해당되고 직업기술계열학원은 해당되지 않았지만 직업기술계열학원에 미성년자의 학원 수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그 당시 설립된 직업기술계열학원이 법령 개정으로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되었지만 인근에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어서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의 직업기술계열학원(현재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학생등 미성년자의 수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7. 1.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원법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는 목적은 학원의 특성에 따라 그 종류를 구분하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거나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인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대하여는 교육환경 보호와 수강료 및 교습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그러므로,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는 학생에 대해 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학원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시 · 도 교육감의 권한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 · 도 교육청 또는 관할 지역관할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수강대상 기준 문의

질의

○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된 학원의 수강 대상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학원법상 외국어계열중 성인만 대상이면 평생직업교육학원, 모든 연령대가 대상이면 학교교과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의 기준이 민법상 성인 나이인 만 20세 이상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2.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의 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1의 학원의 교습과정에서는 기타 계열에서 위법의 교습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위의 학원을 제외한 평생 ·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유아, 장애인, 「초 · 중등교육법」상의 학생(초 · 중 · 고생)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교습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학원내 영상강의의 명확한 허용을 바랍니다.

질의

○ 학원에서 제공하는 강의는 실강의(강사가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강의진행)와 영상강의로 구분되는 바, 영상강의라 함은 예컨대 오전반 실강의를 녹화하여 오후 또는 저녁에 특정 강의실에서 상영하는 강의형태를 말합니다. '학원은 학원법에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라고 하였으니, 강사가 학습자와 대면하는 실강의만을 제공하여야만 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09. 5. 25.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학원"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한 "영상강의"가 단순히 강의를 녹화하여 보여주는 것이라면 학습장소 제공으로 보아 독서실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며 "영상강의"가 단순히 강의를 녹화하여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고 강사가 있고 '교습'이 이루어진다면 학원(성인고시)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영상강의"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학원의 등록 및 지도 · 단속에 관하여는 시 · 도교육감의 권한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내 영어도서대여점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보습분야, 보통교과계열로 학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현장방문하여 확인하던 중 제가 하고자 하는 학원내 영어도서대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31.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은「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므로, 해당과정의 교습행위와 교습행위를 위한 부수적인 행위 이외에 이와 관계없는 별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습과정과 관계없는 별도의 영어도서관을 운영하고 영어도서를 대여하는 행위는 학원내에서는 운영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법 제5조 질의

질의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4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사항이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연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이거나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에 정화위원회 심의 사항인지 아니면 연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밖에 있는 경우에 심의를 하는지 어떤 경우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4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사항인지 질문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22.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가까운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인·허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가까운 장소"의 범위는「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3항에서 연면적 1,650제곱미터 미만은 동일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와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은 수평거리 20미터 이내(같은층), 6미터이내(위층, 바로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원법정수강료에 대한 문의

질의

○ 학원 수강료 계산시 쉬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합당한가? 경영정보를 교육청에 제공하고 수강료 조정심의를 받을 수 있는가? 조정신청을 내면 언제까지 조정 심의를 해야하고 신청인에게 일정기간 안에 통보해야하는가?

회신 회신일 : 2009. 3. 20. [평생학습정책과]

○ 수강료 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학원업무는 지방사무로 교육감의 권한이며「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수강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 조정을 명할 수 있고 구체적인 구성, 운영 등에 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수강료 조정위원회 구체적인 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의 권한 사항으로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정신청에 대한 거부 등의 경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쟁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학원 수강료 범위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의 판단사항이나,「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실제교습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학원의 교습행위에 대하여

질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학원의 정의에 따라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수학, 역사 등의 교습과정을 강사가 놀이, 스토리텔링(동화구연), 체험활동을 통해 사고력,

표현력 등 확장, 통합적 사고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학원의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09. 6. 10.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시설에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이 이루어진다면 학원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되며, 수업방식을 동화구연, 체험활동 등으로 한다고 해서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1. "학원"이란 사인(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교습과정 분류 등) ①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학원이 있는 건물에 유해업소 입점 여부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학원이나 교습소와 가까운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연면적 1650㎡ 이상되는 건물의 경우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와, 수평거리 6m 이내의 상하층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원과 유해업소는 같은 장소에 있을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노래주점과 학원은 수평거리 6m 이내의 상하층에 있으므로 입점할 수 없음.

○ 학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유해시설을 허가하는 관청에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학원과 6m 이내의 상하층에 있어도 일단 시청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상대정화구역안에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허가를 하고 있는데 반해, 학원은 정화위원

회에서 심의조차 받을수 없다고 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있음.

회신 회신일 : 2008. 9. 24. [평생학습정책과]

○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가까운 장소"에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인·허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가까운 장소"의 범위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연면적 1,650제곱미터 미만은 동일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와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은 수평거리 20미터 이내(같은층), 6미터이내(위층, 바로아래층)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원허가 유해업소중 노래방문제

질의

○ 학원인가가 노래방때문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선거리로 동일층은 20m 상하층은 6m 기준이라고 하는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당구장 피시방등은 괜찮고 노래방이 있으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 작은 문제이지만 생계의 문제인지라 건의드립니다. 노래방 상하층의 유해규정을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2.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이하 학원법)에서는 학교보건법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고 있으며, 동 법령에 노래연습장업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금지행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학교보건법에서는 200미터로 정화구역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반면에 학원법령에

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은 유해업소와 학원이 같이 있을 수 없으며,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은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나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 학생의 학습권과 보건위생을 위해 건물의 크기를 막론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유해업소를 동일건물에서 같이 있을 수 없도록 하거나, 학교보건법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수 있으므로 민원인의 주장처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여러 의견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아 대상 창의놀이 등 학원법 적용 대상 여부

질의

○ '영유아 대상 창의놀이 프로그램' (요미요미), '유아 미술 퍼포먼스 교육 프로그램'(미술재미) 등 운영이 학원 관련 법령에 의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09.10.15.(2008.10.27)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수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학습방법)를 통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학원법령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면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로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 3654 판결의 사례는 2007.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전 판례로, 학원법 개정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유아를 포함함. 창의력, 사고력은 교육의 목표(모든 보통교과의 목표는 창의력, 사고력 신장임)이지 교습과정이나 교습과목이 아님.

수강료 반환 관련 1/2의 정의

질의

○ 1개월 총교습시간이 20시간인 경우 10시간 교습을 받고 11시간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 수강 해지한 경우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회신일 : 2009.10.15.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 별표3 수강료 반환기준에 의한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이라 함은 10시간 교습을 받고 11시간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 수강 해지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민공동시설내 영어체험학습 학원법 적용 여부

질의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루어질 예정인 영어체험학습은 그 교육대상이 약 700명이고, 60㎡를 겨우 넘긴 공간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일 경우 이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 또한 현행 학원법에서 말하는 '학원'에 해당하게 되는지?

회신 회신일 : 2009.10.27.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

을 교습하는 시설'임. 따라서, 운영하고자하는 것이 학습방법(체험학습 등)에 상관없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면 학원으로 등록 하여야 합니다.(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민공동시설'에 학원을 설립하려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이어야 함)

음악학원에서 성악과 피아노 교습이 가능한지

질의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음악학원으로 등록을 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성악과 피아노를 교습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회신일 : 2009.11. 3. [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교습과정은「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별표1과 같고,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습하는 피아노 및 성악이「초·중교육법」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경우 음악 교습과정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

질의

○ '교육분야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현황' 자료 중 교과부 직할 비영리법인 중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익법')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익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이 되어있느냐는 질문에 민법 32조 및 교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이하 '교과부규칙')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 상증세법 12조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들은 공익법인 구분된다는 점에서 공익법에 설립근거를 둔 연구재단 또한 공익법인으로 구분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익법에 의해 설립되면 공익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지요?

○ 그렇다면 평생직업교육국 자료 중 교과부 직할 공익법인 4곳(산학협력재단, 학원총연합회 등)과 시도교육청 위임에 의해 시도별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구분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궁극적으로 위 자료 중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의 근거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24 [평생학습정책과]

○ 법인은 구성요소에 따라 재단법인, 사단법인, 영리성 여부에 따라 영리법인, 비영리 법인, 설립 근거에 따라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으로 분류됩니다.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을 질의하셨는데 이는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민법법인)을 영리법인에 대응하여 통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하고, 각 부처의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 감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공익법 제2조에 따른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하고, 공익법인은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광의로 비영리법인에 포함됩니다.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인은 공익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나 공익법에 해당되는 사업(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 등"은 과세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으로, 동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은 공익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공익법인 장학재단 운영 관련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재단을 운영 중입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수혜자 범위 한정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지만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한정할 범위에 관하여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 저희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기부자 또는 기부단체에서 특정 수혜자를 지정하여 (특정학교 또는 특정학생) 장학금을 기탁하는 경우 저희 장학재단에서 "정관"등에 지정기탁 가능함을 명시하여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관" 등에 지정기탁(특정 수혜자 지정) 도입을 명시하는 경우 공익령 제6조에 어긋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25. [평생학습정책과]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수혜자 범위한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 한정 범위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설립이 허가되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합의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주무관청(소관 교육청)에 수혜자범위 한정 요청을 하시고, 해당 교육청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할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혜자 범위 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수혜자 한정의 필요성 인정 여부는 소관 주무관청이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공익법인 이사선임시 '특수관계자'

질의

○ 현재 장학 및 문화사업을 수행 중인 공익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

인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의 이사로도 선임될 수 있는지요.

○ 공익법인의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항 5호에서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질의의 경우 출연자가 법인이므로 그 법인의 이사가 특수관계자에 속한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22. [평생학습정책과]

○ 결론적으로 선임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규정한 1호의 "출연자" 및 5호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로 규정하고 있어 선임이 불가합니다.

미등기된 공익법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

질의

○ 법인대표 이사장이 공익법인 명의로 재산(부동산)을 취득한 후 본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공익법인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지 않고, 단지 소유권만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서 승인하거나 관리되던 재산이 아니다"라는 공문서를 요청한 바, 이에 대한 사실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9. 6. 29. [평생학습정책과]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 제11조(재산)제4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 이사장이 개인의 사재를 차용하여 취득했더라도 법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반드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등한시 하였으므로 "주무관청에서 승인하거나 관리되던 재산이 아니다"라는 사실확인서 발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공익법」 시행령 제16조(재산의 구분)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

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이와 같이 하려면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현황이 법인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취지로 볼 때 부동산 취득 시 법인 명의로 취득을 하였다는 것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마땅히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 시 「공익법」 제19조(벌칙)규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

질의

○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당해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인 도교육청 중 어느 기관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 [평생학습정책과]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3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재산은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법인의 주무관청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관리하되(이하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주무관청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 경우 해산된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있어, 문의하신 장학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해당 교육청으로 귀속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교과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 근거는?

질의

○ 현재 교과부 소관 공익법인 및 비영리법인 그 설립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들 비영

리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5. [평생학습정책과]

○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 및 동법 시행령,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허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부 직할 비영리법인(공익법인)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에 근거하여, 우리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허가, 감독되고 있습니다.

○ 광의로 보면 공익법인도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인은 공익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해산에 관한 규정 등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으로의 전환 관련해서 공익법인은 공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전환 시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기본재산 등 요건과 관련하여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 허가시 민법 제32조 학술에 관한 주무관청 판단

질의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단 또는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학술이란 사업은 주무관청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알고 있고, 가톨릭의 신학과 사상에 대해 연구를 하는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시교육청관계자는 동 목적사업이 종교 및 학술로, 교과부가 중앙부처의 학술에 대해 전담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군사분야연구는 국방부가, it 분야는 정보통신부가, 의학분야는 보건복지부로 각각 해당 분야의 학술분야의 주무관청이라고 시교육청관계자가 이야기하고, 문광부관계자는 종교가 아니라 학술로 판단하는데 저의 입장에서 어느 관청이 주무관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3. [평생학습정책과]

○ 주무관청은 정부조직법, 소속기관직제, 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에 의거 법인의 설립취지, 목적,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를 말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설립허가신청) 2항]에서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된 사업이란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에서 목적사업비 총액의 70% 이상 집행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 면세 사업 적용을 위하여

질의

○ 저는 한 영리법인(주식회사)의 대표입니다. 저희 법인은 의료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과 동시에 의료경영과 의료서비스 교육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즉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국세청에 알아보니 주무관청에 등록(신고, 인가, 허가 등)되어 있는 사업자라야 부가세면세가 된다고 하네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26. [평생학습정책과]

○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소 등기 외에 주무관청에 등록하는 사항이 없으며, 영리법인과 관련해서는 주무관청이라는 개념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부에서 영리법인 등록과 관련한 행정행위는 없으며, 예로 드신 경우는 비영리법인이 아니신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 아울러, 부가가치세 면세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동 사항과 관련해서 국세청, 관할 세무서, 등기소 등에 보다 상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법인끼리 혹은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통합

질의

○ 유사 목적을 가지거나 혹은 필요에 의해 비영리법인끼리 혹은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서로 통합을 하고자 할 때 비영리법인끼리 통합 가능여부와 잔여재산의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 또한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 통합 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가귀속 혹은 공익사업에 사용, 공익법인에 무상대여 증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되는 비영리법인으로는 귀속될 수 없는지?

회신 회신일 : 2008. 12. 2. [평생학습정책과]

○ 유사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간의 통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됨이 원칙이나, 이 경우 해산하고자 하는 법인이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통해 귀속될 법인으로 재산증여 후 해산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유사목적을 가진 경우로, 비영리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재산 증여 및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주무관청의 판단이 전제되어야 할 것 입니다.

○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통합문제는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목적 자체가 기본적으로 동일, 유사성을 전제로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주무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질의

○ 비영리법인 정관상에 "본부 산하에 시·군 지역교육청 관할 구역별로 지구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교육청 지역을 벗어난 타 시·도에 지구회를 둘 수 있는지요? 지구회를 둘 경우 민법 제50조에 따라 분사무소로 보아 등기를 하여야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8. [평생학습정책과]

○ 지부를 두고 법인 활동을 할 경우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등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0

조에 따르면 "법인이 주사무소 이외에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 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가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해당 교육청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위치 및 건축물 용도

질의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홈플러스, 백화점 등 사업장에서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평생교육시설의 위치가 반드시 사업장 내에 위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의 인접지역도 신고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기존에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형태 백화점문화센터의 경우 지하에 위치한 경우가 있는데, 신규로 신고하고자 할 경우 평생교육시설의 위치가 건물의 지하에 위치하고자 할 경우 교육시설의 위치로 지하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평생교육시설이 위치하게 될 층의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제한이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16. [평생학습정책과]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사업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업장 내에 시설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물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한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학원은 조례에 따라 지하공간에서는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이 업무는 해당 교육청으로 이양된 사무이므로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비 기준 문의

질의

○ 지식 ·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으려고 합니다. 학원법에는 시설설비의 기준이 나와 있던데 지식 ·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비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회신 회신일 : 2008. 9. 2. [평생학습정책과]

○ 지식 ·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은 설비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시설 운영자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1. 지식 · 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 여기에서 지식 · 인력개발사업이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 ·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

2.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3.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지식 ·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관련 신청자료 등을 검토하여 최종 판단을 받아 설치되므로, 구체적인 설립절차 및 요건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 평생교육담당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유아 대상 교육 가능 여부

질의

○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에 의해 평생교육시설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9. 7. 13.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제6조(교육과정 등)에 의하면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유아교육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개설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변경, 지위승계

질의

○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교육청 내 신고 된 (동부) 교육청에서 관할이 다른 (남부) 교육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의 범위에 있어서 시설·설비·교육과정·인적인 부분을 모두 제외하고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만을 지위승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변경 통보와 지위승계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9. 7. 2. [평생학습정책과]

○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시설") 신고는 평생교육사가 "원격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곳의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제4항에 따르면 "원격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교육청(교육감)에 통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치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원격시설"의 지위 승계는 신규 "원격시설" 신고와 달리 위치도, 시설배치도, 시설·설비 현황표, 평생교육사 배치, 운영규칙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위승계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원격시설" 위치에 설비되어 있는 시설, 평생교육사, 운영규칙(교육과정 등)을 인수인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평생교육원"이라는 명

칭만으로 지위승계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 "원격시설" 지위승계 신고와 위치변경 통보를 동시에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이므로 해당 업무별로 각각 처리하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평생교육시설 형태 및 시설 조건

질의

○ 평생교육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시설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시설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18.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시설에는 여러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30~38조,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설립됩니다. 평생교육시설 중 사내대학, 원격대학은 우리부에서 인가하며,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은 해당 대학에서는 우리부에 보고하여 심사 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 외 평생교육시설의 인.허가 및 운영의 관리.감독권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립절차 및 현재 등록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교육청 평생교육담당과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우리부에서 인가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사내대학, 원격대학,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 대한 관련법과 절차 및 설립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2조
- 인가 현황 : 삼성전자공과대학교(4년), 삼성중공업공과대학(2년)
- 설립요령 : 홈페이지(www.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분야) 〉 정보교실 〉 정보자료실 〉 평생직업교육 〉 495번

*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3조
- 인가 현황 : 홈페이지(www.mest.go.kr)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평생직업교육국 〉 2번('교육과학기술부 인가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현황)

- 설립요령 : 홈페이지(www.mest.go.kr) 〉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 평생직업교육국 〉 1번(사이버대학설립요령 재공지 및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0조
- 인가 현황 : 홈페이지(www.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분야) 〉 정보교실 〉 정보자료실 〉 평생직업교육 〉 1995번(대학부설평생교육원 현황 안내)
- 설립요령 : 홈페이지(www.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분야) 〉 정보교실 〉 정보자료실 〉 평생직업교육 〉 1529번

평생교육시설 교육대상

질의

○ 평생교육시설 이란 정확한 목적과 평생교육시설로 인가 받은 업체의 정확한 교육대상이 누구인지요?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교과 과목에 준한 과정을 교육할 수 있나요? 통신을(인터넷 온라인) 이용하여 현재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과외가 가능한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1. [평생학습정책과]

○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교육대상은 유아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과정이 이루어지므로 제외되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과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부터 일반 성인까지 해당됩니다.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정규교육과정과 관련한 교습은 불가합니다.

○ 2008년 2월 15일 평생교육법 전부개정 시행 이전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이 가능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종전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현재 신규 신고하려는 시설에서는 불가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교과와 관련한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입법발의(박종희의원 대표발의, 2009.3.24)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시설장소(인가장소)외에서 과정운영 가능한지

질의

○ 저는 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내에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발판이 된다고 판단이 되나, 현 상황에서 평생교육시설법에는 위배 되는 게 없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며, 다른 하나는 국내를 벗어나 해외에서 평생교육원 과정이나 부설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지, 해외 기관 또는 협회와의 MOU를 맺음으로써 과정운영 개설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21. [평생학습정책과]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원칙적으로 학교의 인적 ·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기여토록 한 것이므로 보고(신고)된 장소에서 강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대학 소재지 이외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임차를 통해 분원을 설치하면 가능하나, 권역별로 분원설치가 제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권, 대전충남권, 부산울산경남권,대구경북권, 광주 전남권 등

○ 평생교육법은 국내법이므로 해외 설치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해외에서의 평생교육은 해당국가에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 학급증설, 정원, 수업년한 변경

질의

○ 「평생교육법」(2007년 12월 14일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 되고, 2008년 2월 15일 시행

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제28조제5항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주체는「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평생교육법」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 개정「평생교육법」 시행 전 종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인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개정「평생교육법」 시행 후 학력인정시설 지정사항 변경[①학급 증설, ②1학급당 학생정원 조정(증원), ③수업년한 변경(1년3학기제→1년2학기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가능한지?

회신 회신일 : 2008. 8. 17.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법」 부칙 제3조(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2007년 12월 14일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시행 전 종전(2007년 12월 14일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기존의 학력인정시설 지정 신청서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만 개인이 계속 운영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할 때는 지정기준과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급수의 증설은 평생교육시설을 더 늘려 설치하는 것이므로「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그러나 학생정원과 수업 연한은 기존에 지정한 학급수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학생들이 쾌적한 교실환경과 질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귀청 소속의 일반 정규학교의 학급정원수, 학생수의 증가에 따른 제반 사항,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아울러, 이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이므로 교육감의 재량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미술영재교육 목적의 중·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가능 여부

질의

○ 미술영재 평생교육시설 학교 설립에 관해 문의합니다. 미술영재교육으로의 학력인정시설 설립이 가능한지요? 중/고등학생 대상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가 기준인가요?

회신 회신일 : 2009. 5. 29. [평생학습정책과]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 및 제28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등에 의거 수업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환경 확보 및 교육과정운영과 학사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참고하시어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미술영재교육으로의 학력인정시설의 설립 가능여부는 관련 법령의 시설 및 기준에 충족여부를 확인하신 후 관할 교육청에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2 등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기준(시행규칙 별표 2)

1. 학습시설 : 가. 수업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49.5제곱미터이상),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시설
2. 자료실 : 가.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나. 관리실과 겸용할 수 있음
3. 관리실 : 1실 이상

○ 끝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업무로 시도조례에 의거 시도교육청에서 설립·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어 설치하고자하는 시설의 관할 지역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전문계와 인문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은 가능한지

질의

○ 본교는 현재까지 전문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본교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전문계 교육과정을 토대로 교육을 하여 왔습니다.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력을 인정받는 만큼 인문계 교육과정의 운영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전문계 교육과정만 가능한지 아니면 인문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병행 운영함도 가능한 지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6.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르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교육감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학력인정 지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교육감은 정규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인문계, 전문계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으나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지정여부는 교육감에게 이양이 된 사항이므로 해당 관할청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 및 지방 공무원

교육전문직 선발 관련 문의

질의

○ 교육전문직인 교육연구사에 관심이 있어서 교육전문직 경쟁시험 공고를 찾아보았는데 교육연구사의 경우 전공과목별로 선발 인원이 정해져있고, 교육학의 경우도 중등교사로 제한이 되어 있네요.

1. 초등교사는 교육연구사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
2. 초등교사가 지원하려면 선발 분야를 교육대학교시절의 전공(심화)로 지원하는 것인지
3. 초등교사는 선발 분야 중 일반 항목의 교육학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8. 13. [인사과]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전문직은 매년 소요인원을 감안, 전공별 선발인원을 달리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 초등교육과 밀접한 업무분야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선발인원을 결정하며, 이 경우 선발공고안의 지원자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수급 여건에 따라 초등 교육전문직을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공과목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경우는 보통 중등교사에 해당되며 초등교사(심화과정)은 중등교사의 전공과목 구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학" 과목의 경우에도 중등교사의 전공 과목 중 1개 과목입니다. 이러한 경우 초등교사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교육전문직이 되는 방법

질의

1. 교육전문직 특히, 교육연구관이 되는 길을 알고 싶습니다.

교육연구사에서 승진을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길로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4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신청을 한 후 시험같은 것을 봐야하나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30. [인사과]

○ 교육연구관 자격요건은,

교육공무원법 별표 1에 아래와 같이 자격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졸업자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자

(2) 2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3) 행정고등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4) 2년 이상의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자

(5)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11년 이상의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자

(6)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교육연구관의 직무는 교육연구사의 교육연구 및 교육행정 활동을 지도 ·조언하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 ·도 교육청 소속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원 등 교육연수, 교육연구 분야의 업무관리를 담당하는 특정직 교육공무원입니다.

교육연구관은 통상적으로 교육연구사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후에 승진을 하거나, 교감, 장학사 등에서 전직을 통하여 임용됩니다. 따라서 행정고시 출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통한 임용 등은 현장에서는 사례가 없습니다.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훈·포장 수여

질의

○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에 대한 훈.포장 수여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사립학교 경영자들이 받을 수 있는 훈.포장은 얼마나 되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여 수여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1. [인사과]

○ 현행 정부포상의 규모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민

교육발전 훈.포장 수상인원은 매년 14명 내외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 이 중 사학 설립자 및 경영자들이 차지하는 훈.포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04년 70%(12/17명), '05년 54%(7/13명), '06년 60%(8명/14명), '07년 70% (9/13명), '08년 70%(10/14명)로 매년 적지 않게 꾸준히 수상해 오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포상대상자 선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직위, 수공기간, 공적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공적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사교류 가능 여부 문의

질의

○ 2008.6.27자 대통령령에 의거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교육행정직렬이 폐지되고 행정직렬(교육행정직류)에 통합 개편되었습니다.

- 질문1 : 국립대 행정주사(행정직렬 교육행정직류)가 중앙부처 행정직렬 일반행정직류 행정주사와 1:1교류에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2 : 지방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 통합은 언제쯤가능한지? 아니면 논의조차 없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2. [인사과]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교육 및 과학기술분야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 중 교육행정직류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직렬이 달라 교류할 수 없었던 중앙행정부처간에 교류가 가능하여 졌습니다. 다만, 국립대의 경우 인사권은 각 대학의 장에게 있으므로 인사교류의 요건(직류 등) 등 소속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공무원임용령의 개정 내용은 국가직공무원에 한하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해당되지 아니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여부는 현재 논의중인 사항으로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당직 및 시간외근무 관련 질의

질의

○ 국가공무원 당직 및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문 1. 현재 초・중・고등학교는 첫째, 셋째 토요일은 정규수업을 하고 있는 바, 국립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국가공무원(교원 제외) "A"에게 학교수업이 있는 토요일에 09시~18시까지 일직근무 명령을 낼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현행운영 방법 : 정규수업이 있는 첫째, 셋째 토요일 행정실 직원은 09시~13시 까지 시간외 근무 형태로 주간 3교대 초과근무 운영중이며, 13시 이후는 숙직자로 하여금 근무하게 하고있습니다. 다만, 정규수업이 없는 둘째, 넷째 토요일은 09시~18시까지 일직근무을 발령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국립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국가공무원(교원 제외) "A"가 학교수업이 있는 첫째, 셋째 토요일 13시 이후 당일 숙직근무는 어떻게 발령하는것이 정당한지 알고싶습니다.

예시) 첫째, 셋째 토요일 13시~18시까지의 시간외근무를 한 후 18시~익일 9시까지 숙직명령을 발령낼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외근무와 숙직을 할수 있다면 시간외근무 수당과 숙직비를 병급 지급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6. [운영지원과]

○ 귀하의 당직근무 질의와 관련,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아래 참조)

○ 정규수업이 있는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일직을 편성할 수 없으며,

○ 제3항에 의해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의 경우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되는 13:00 부터 다음날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를 숙직근무시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당직자에게 숙직근무시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3조(당직의 구분)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수발의 역할

질의

○ 일선 지역교육청 과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의 특성상 대외비 생산이 많은데, 과에서 문서 수발의 담당을 제가 속한 학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수발부서 지정), 제32조(수발담당자의 지정)에서 수발의 의미를 부서 직원들이 원본을 만드는 외의 모든 절차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원본을 받으면 그 외의 모든 발송의 역할들을 모두 보안 담당부서 담당자가 하여야 하는 역할인 건지 수발의 역할적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15. [운영지원과]

○ 비밀문서의 수발에 관련하여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수발을 어디까지 하느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장 재발급, 영문발급 가능한지

질의

○ 유학을 가는데 장관상의 영문 상장이 필요합니다. 영문 상장 재발급 혹은 그에 상응하는 영문 확인서를 받고자 합하는데 가능한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18. [운영지원과]

○ 상장 재발급은 상훈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발급하지 않으나, 다만 상장 분실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로 수상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 운영지원과 총무팀(☎2100-6125, 팩스 2100-6133)에서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

친 후 '수상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 해당부서에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팩스민원 신청서식 (기재사항 : 용도, 발급부수, 신청인 주소, 연락처, 수상자 인적사항)

○ 영문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부에서 발급한 수상확인서는 영문이 아닌 한글로 발급되며, 민원인께서 공증을 받아 사용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에서도 차량 홀짝제를 실시해야 되는지

질의

○ 학교도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승용차 홀짝제나 장애인 차량구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7. 15. [운영지원과]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추진지침 (국무총리지시 98.6.12)」에 의한 공공기관 중 사무관리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과 그 소속기관(교육시설포함)으로 학교도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의 장애인 차량구역의 의무 표시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해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청 산하 도서관 설치 법령

질의

○ 시도 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청 산하에 많은 도서관이 있는데, 이러한 도서관 설치 법령에 대해 알려 주시면 참고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4. [학교선진화과]

○ 공공도서관 관련 설치는 도서관법 제27조 (공공도서관 설치 등)에 근거 하고 있습니다.

참고 : 〈도서관법 제27조 (공공도서관 설치 등)〉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균형인사(기술직·이공계공무원인사관리)지침 적용

질의

○ 상기 운영지침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결(2003.8.20)되어 2008년 균형인사지침으로 통합되어 행정안전부 예규로서 교과부에서도 2008년도6월부터 적용하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서는 현재까지도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기술직)은 상기 지침 적용 대상에서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3. [학교선진화과]

○ 행정안전부의 균형인사지침(기술직, 이공계공무원 인사관리)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5조에 의한 대상 정부기관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에 국한되어 있으며, 교육청은 동 법 제정시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시도 교육청에서는 기술직·이공계공무원에 대한 균형인사지침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능직 공무원(통학버스 운전직) 유사경력 인정 여부

질의

○ 기능직공무원 운전직 특채로 들어오신 직원이 들어오기 전에 관광버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3년 정도 근무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 처음에 들어올 때 관광버스 경력증명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그 경력을 인정받아 특채로 선발됐다고 하는데 사기업체에서 근무했다고 호봉에는 반영할 수 없다고 하네요.

회신 회신일 : 2008. 12. 1. [학교선진화과]

○ 기능직 공무원(통학버스 운전직) 유사경력 인정 여부는 임용전 운전직의 유사경력에 따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최대 8할 까지 인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전 유사경력에 필요한 조건(동일분야 근무, 1종 대형면허 등)을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공무원 대체 휴무

질의

○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 4주 토요일은 휴무를 실시하나 그외의 토요일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휴무토요일이 아닌 날 근무한 것에 대하여 방학중 대체휴무를 주도록 공문으로 시달하였습니다.

○ 2, 4주 토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근무한 것에 대하여 방학중에 대체휴무를 하도록 한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지요? 복무에 관하여 도교육청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1. 30. [학교선진화과]

○ 대체휴무의 법적근거 ;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도 복무조례 및 시·도교육청 지침에 근거합니다.

○ 휴무토요일 근무자의 대체휴무에 대해서도 위 1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도 복무조례와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수 있으며, 문의하신 사항은 시·도교육감 재량사항입니다.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질의

○ 학교의 장이 학교의 근무시간을 09:00~17:00(점심시간포함)으로 정한다면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8시간 근무하는것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09:00~18:00으로 근무를 해야 8시간 근무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4. [학교선진화과]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모든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며 학교근무자의 경우도 이에 적용됩니다. 학교근무자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정여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으나 현행 법령상으로는 학교근무자의 경우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편 학교의 경우 아직 완전한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방학기간 휴무 또는 주중 근무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근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 반대

질의

○ 교육감은 정부에서 임명해야 합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최대한 수용해, 최선을 다해 추진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정부에서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야 우리 교육이 살아 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책 따로, 교육 따로 해서는 우리의 '교육 백년지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7. 28. [학교선진화과]

○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및 특수성을 살리고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1991.3.8)되면서 교육감 선출을 그동안 실시해 온 정부임명제를 폐지하고 해당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선출토록 변경되었습니다.

○ 이후 1997.12.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 선출로 변경되었고, 2006.12.20 선거인단 선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하에 현행 주민직선에 의한 선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지방자치시대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감의 정부 임명제로의 복귀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을 확보하고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무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각급 행정기관(공무원교육훈련기관 포함)에서 공무원을 초빙하여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무원교육훈련기관 포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민간인 및 타 부처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나, 자기부처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 있음【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예산처)】

○ 위에서 말한 자기부처 직원이란?

예시〉 교육청 민원실 직원이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일선 학교 교직원들을 상대로 친절교육을 한다면 강사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13. [학교선진화과]

○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각급 행정기관(공무원교육훈련기관 포함)에서 공무원을 초빙하여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무원교육훈련기관 포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민간인 및 타 부처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나, 자기부처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 있으며, 예시로 산림청 소속의 산림과학원에서 산림청 본부 공무원을 초빙하여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 본부 직원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용권이 동일한 시·도교육청 직원이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일선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경우 강사료 지급대상이 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 자격

질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위의 규정 중 교육경력에 초·중등학교 학교장이 임명하는 기간제교원의 경력도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사립학교의 교육행정경력(예, 행정실근무경력)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31. [학교선진화과]

○ 교육감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1. '기간제교원'의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서의 교육경력도 포함됩니다.
2. '사립학교의 교육행정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잡급의 호봉인정에 대한 문의

질의

○ 지방자치단체 근무경력의 호봉인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군청에서 280일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교육청 조무원에 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의 근무경력을 호봉인정 받고싶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인사 담당자로 부터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제7265호)에 근거하여 상근인력이 아닌 관계로 호봉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제가 질의 내용을 검색하던중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제7265호)에 의한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규정 시행일 전의 임시직, 고용직, 유급상비대원, 잡급, 촉탁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8할이 인정되며, 그외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또는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5할이 적용됩니다." 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규정 시행일이 언제부터였는지를 알고 싶고, 저희 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상근인력"이라는 말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우라면 5할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11. 19. [학교선진화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중 지방잡급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사안에 따라 8할 또는 5할이 인정됩니다. 잡급직원규정 시행일은 1974.9.25, 지방잡급규정 시행일은 1976.2.5 (급료와 상여금 조항은 1976.1.1)이며, 상근이라함은 잡급직원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은 공무원규정을 준용하고 있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과 같은 형태의 근무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의원 자격조건의 타당성

질의

○ 교육의원 선거 자격조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법에서 교육의원은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이 가능합니다. 겸임교수 경력과 고시학원 강의경력으로 지원가능 할까요?

회신 회신일 : 2009. 6. 3. [학교선진화과]

○ 교육의원후보자 자격과 관련하여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중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서 교원은 고등교육법에서 총장, 부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③~④ 생략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하고 있어 고시학원은 동법의 적용을 받는 평생교육시설이라 볼 수 없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겸임교수 경력과 고시학원 강의경력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교육의원 후보자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 타

꿈나래21 구독관련 문의

질의

○ 평소 「꿈나래21」을 웹으로 보고 있는데 책자를 구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꿈나래21」페이지에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회신 회신일 : 2009. 2. 2. [홍보담당관]

○ 문의하신 「교육마당21」 책자가 부처 통합 이후 '꿈나래21'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까페에 가입 후, 모니터링단 활동을 해 주시는 분께 매월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다음(www.daum.net) 〉 '꿈나래21'로 검색 〉 '『꿈나래21』을 사랑하는 사람들' 까페 가입 (http://cafe.daum.net/narae21.mest) 〉 회원가입 후 등업 신청하시면 해당 주소지로 우편물이 전달될 것입니다.

○ 참고로 꿈나래21 독자모니터링은 매월 책자를 읽고, 그에 관한 생각을 간략하게 해당 코너에 올려주시는 활동입니다.

학부모봉사동아리(우리아이함께키우기) 운영 문의

질의

○ '우리아이함께키우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는 시·도별로 연수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동아리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워크숍을 개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1. 17. [학부모정책팀]

○ 학부모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평소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동아리를 구성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동아리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우수한 계획서를 제출한 동아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학부모님들이 하고 계신 자원봉사활동을 계획대로 추진하시면 훌륭한 자원봉사활동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하였던 사전 연수는 투명한 회계처리와 관련 증빙서류 준비를 포함하여 이번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사업의 취지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 학부모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의 연수회는 내년 4~5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때 전국의 우수한 학부모자원봉사동아리를 발굴·선정하여 표창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 대학의 종류 리스트 문의

질의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대학의 종류의 리스트를 볼 수는 없는가요?

회신 회신일 : 2008. 11. 27. [인재정책분석과]

○ 귀하께서 문의하신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대학의 종류는 http://www.careernet.re.kr/(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대학생.성인-학교정보-대학교-(전문대.대학교)/대학교/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원격대학/각종대학 으로 검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사회선생님 현황

질의

○ 전국 중고등학교 사회선생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자료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30. [인재정책분석과]

○ 문의하신 전국 사회교사 현황은 우리부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교육통계연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교육통계서비스(http://std.kedi.re.kr) 〉통계간행물(교육통계연보) 〉 1-4. 중학교현황, 1-6. 일반계고등학교현황, 1-7. 전문계고등학교현황 〉담당과목별 교원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사고등학교 현황

질의

○ 전국의 고등학교 중 가사.실업계열 고등학교가 얼마나 있으며 의상 관련 전공을 개설한 고등학교 현황과 그 중 특성화로 지정된 고등학교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17. [인재정책분석과]

1. 전국의 전문계고등학교 중 가사고등학교 현황은 총 7개교입니다.
   * 7개교(대구관광고, 울산생활과학고, 한국관광고, 경북생활과학고, 삼성생활예술고, 제주고, 한국뷰티고)
2. 전국 전문계고 중 의상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는 성동여자실업고, 신경여자실업고, 인천생활과학고, 울산생활과학고 총 4개교입니다.
3. 의상 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 중 특성화고로 지정된 학교는 없습니다.

학교 목록(주소,전화번호 포함) 요청

질의

○ 업무상 교육과학기술부 인정 각종 학교 목록(주소 및 전화번호 포함)을 엑셀로 받고 싶습니다. 예전에 자료실에서 찾았는데 현재는 찾을수 없네요

회신 회신일 : 2008. 9. 11. [인재정책분석과]

○ 학교 주소록은 통계법 제30조에 의거하여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엑셀파일로 우리부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제공하였으나, 2007년 말 개정된 통계법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규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치, 초, 중등학생 수를 알 수 있는지?

질의

○ 한국을 해외에 알리는 영화를 준비중인데 자료가 꼭 필요해서요. 우리나라의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를 알 수 없을까요?

회신 회신일 : 2008. 9. 26. [인재정책분석과]

○ 귀하께서 문의하신 우리나라 정규학교의 학생수입니다.(비인가, 학력미인정 학생수 제외)

○ 우리부 홈페이지->교육통계(바로가기)->유초중등통계->학생->유초중고 학생수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육관련 통계자료는 교육통계서비스시스템(http://std.kedi.re.kr)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유 치 원 : 541,550명
- 초등학교 : 3,830,063명
- 중 학 교 : 2,067,656명
- 고등학교 : 1,862,501명

국가 공인 영어 인증 자격

질의

○ '09년 현재 영어관련 국가공인 현황은?

회신 회신일 : 2009. 4. 30. [진로직업교육과]

○ 우리부에서 민간자격 국가공인 자격증 중 영어 관련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종목	자격관리자	등 급
① 실용영어	(사)한국외국어평가원	(1,2,3급)
② TEPS(영어능력검정)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TEPS관리위원회	(1+, 1,2+, 2급)
③ 영어회화능력평가시험	(주)이에스피평가아카데미	(ESPT-성인1급,2급)
④ 한국영어검정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1,2,2A급)
⑤ Mate Speaking	숙명여자대학교	(Expert~Moderate Mid(8개등급))
⑥ Mate Writing	숙명여자대학교	(Expert~Moderate Mid(5개등급))
⑦ Flex 영어(듣기/읽기)	대한상공회의소	1A,1B,1C,2A,2B,2C,3A,3B,3C

국가공인한자검정 시험 단체현황

질의

○ '09년 현재 한자관련 국가 공인 현황은?

회신 회신일 : 2009. 1. 14. [진로직업교육과]

○ 민간자격기본법 제19조에 의거 우리부 소관 민간자격 국가공인 자격증 중 한자 관련 자격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한국어문회 - 한자능력급수(1,2,3,3Ⅱ급)
2. (사)한자교육진흥회 - 한자실력급수(사범,1급,2급,3급)
3. (사)한국외국어평가원 - 실용한자(1급,2급,3급,4급)
4.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 한자급수자격검정(사범,1급,준1급,2급,준2급)
5.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 한국한자검정(1,2,3,준3급)
6. (사)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 한자능력자격(1,2,준2,3급)
7. 대한상공회의소 - 상공회의소 한자(1,2,3등급)
8. (사)대한한자연구회 - 한자한문전문지도사(지도사2급,1급,훈장2급,1급,특급)
9. (사)한국생활한자문화회 - 한자급수인증(1,2,3급)
10. (주)와이비엠시사 - YBM 실무한검(1,2,3급)
11. (사)한국정보관리협회 - 한자어능력(1,2,3급)

민간자격의 등록 가능 여부

질의

○ 민간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자격증을 신설할 수 있는지, 민간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자격과 관련된 아카데미 등을 설립하고자 할 때 이것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1. 20. [진로직업교육과]

○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호~4호에 해당하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 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는 신설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격과 관련된 아카데미 설립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으로 운영할지 모르겠으나, 만약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운영할 계획이라면 해당 시도교육감이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 설립자격 등을 충족한다면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로 문의바랍니다.

사단법인 자격증 유효기간 문의

질의

○ 민간자격증에 대한 유효기간과 보수교육 시 수강료 납부가 적법한지 여부

회신 회신일 : 2009. 1. 6. [진로직업교육과]

○ 자격증의 유효기간

순수민간자격의 경우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4호에 따라 운영규정상 유효기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효기간 설정은 민간자격관리자가 필요에 따

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보수교육시 교육비 부담 문제

자격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민간자격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이에 수반되는 교육비도 민간자격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발급 시 유효기간이나 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자격취득자에게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자격기본법 제4장 민간자격 등록 대상

질의

○ 자격기본법 17조 2항의 민간자격 등록 대상은?

회신 회신일 : 2008. 10. 7. [진로직업교육과]

○ 민간자격등록제는 자격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자격을 취득하시려는 분들 모두에게 민간자격에 대한 정확한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이에 민간자격을 신설 · 운영하는 자는 교과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해야 하며, 그 대상으로는 기존에 발급된 자격증 또는 신규발급된 자격증 모두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격증 불법 사용에 대한 문의

질의

○ 특정 사단법인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노동부에서 승인해준 것처럼 자격증을 규정과 법에도 없는 교육비를 받아가며 종사자들을 현혹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자격증이 의무사항이고 정부에서 승인된 공인자격증으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규정과 교육교재도 없이 마음대로 시험 치는 것이 관련법 위반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9. [진로직업교육과]

○ 민간자격등록제는 국민의 피해방지 및 자격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07. 4. 27 자격기본법 개정('07. 10. 시행)으로 도입되었으며, 자격기본법령에서 금지하는 바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민간자격등록관리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 자격증은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절차를 통하여 등록된 민간자격입니다. 그러나 등록된 자격이라 할지라도 공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허위 및 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공인을 받지 않고 단지 등록 한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민간자격관리자가 공인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경우 자격기본법 제33조(거짓광고의 금지 등) 및 동법 제39조(벌칙) 및 제41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학기 지원사업 EBS 무상지원 문의

질의

○ EBS 무상교재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면 꼭 받아 교재비가 절감이 되고자 합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23. [이러닝지원과]

○ EBS에서는 지난 2004년도부터 매년 저소득층에 대한 교재무상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2월말경 전국 고1~3학년 28,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09학년도 1학기 교재(언어, 외국어, 수리 1세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 교재무상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도서벽지 생활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EBS의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 모든 소외계층을 포함할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9년도 1학기에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국의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새터민,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 이미 지원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 2009. 2학기 교재지원사업은 EBS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동 지원사업이 계속 추진키로 결정되고 학생이 지원대상자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정된다면 2학기에는 학생이 EBS교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정보화사업 관련 문의

질의

○ 신규개발 할 기술 및 확보한 저작권 목록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업체에게 제공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민간업체에서 중복 개발되지 않도록 디지털교과서 관련 기술에 확보 및 개발할 저작권목록 및 언제 제공되는지 시기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6. [이러닝지원과]

○ 동 사업은 국가 선도 시범 사업으로

- 초등 수준별 영어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을 통해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의 영어능력 신장 및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도모하고, 아울러 디지털교과서 개발 기술 및 방법을 민간에 제공하여 이러닝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첫 번째 질의와 관련 2008.10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저작권 확보(기술개발 포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므로 향후 계약이 결정되면 나올 사항입니다.

○ 두 번째 질의와 관련 디지털교과서가 상용화 되는 시기가 2013년이므로 민간에 관련 기술 등이 제공되는 시기도 2013년 이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초고속인터넷 무료이용

질의

○ 저소득층 자녀 초고속인터넷 무료 이용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한 내용이 없더군요. 신청

방법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1. [이러닝지원과]

○ 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전국단위 서비스가 가능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와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공동지원과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의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 기존에는 15만명을 대상으로 KT와 월 19,800원으로 Magapass Lite(2M~ 10Mbps급) 단일 상품으로 지원하던 것을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① 08년까지는 총 76만명을 지원하였고, 올해 1만명을 추가하여 16만명을 대상으로 지원,

② 참여업체가 3사(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로 확대

③ 인터넷 사용료를 월 19,800만원에서 18,700원으로 인하

④ 기존에 사용했던 KT Magapass Lite는 Megapass FTTH로 증속되고, SK브로드밴드는 광랜, LG파워콤은 XPEED 광랜을 기준으로 지원

⑤ 지원대상자 관리 프로그램을 개별 ISP별로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 그리고 인터넷통신비 지원대상자 선정은 시·도교육청별로 배정된 인원의 범위내에서 단위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규정을 수립·운영하여 담임선생님 추천과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한 학부모 및 학생 동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EBS 중학과정 강의 다운로드

질의

○ 현재 EBS 고등학교 과정 강의는 다운받아 아무때나 인터넷 연결없이 컴퓨터나 동영상플레이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나 중학과정은 다운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EBS 중학 강의라는 매체의 무료강의라도 다운 받을 수 있게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19. [이러닝지원과]

○ EBSi의 고교 및 수능강좌의 경우 사업비의 일부 금액을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EBS사이트의 중학 방송강좌는 EBS 자체예산으로 제작·서비스 되고 있어 다운로드 서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비(System) 구축과 별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현재는 방송프로그램의 다시보기를 통해 학습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부형께서 제기하신 중학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는 현재까지 EBS의 제반여건상 무료 온라인 강좌만 서비스하고 있으며, 향후 제반사항 점검 후 다운로드 서비스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이에 필요한 투입예산 및 사용자별 서비스에 따른 비용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적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BS 교부금 삭감

질의

○ 뉴스를 보다가 EBS교부금을 130억 삭제하라고 교과부에 요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부금을 삭감해버리면 당장 강의의 양이 줄어듭니다. EBS의 강의가 많다고 하는데 불합리적인 요구에 반대하며 EBS수능강의 교부금이 삭감 없이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2. 30. [이러닝지원과]

○ EBS 수능강의 사업은 그동안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간 ·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등 성과가 큰것으로 정책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서 우리부는 EBS 수능강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혼돈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교육경력 인정(시간강사, 전임교수)

질의

○ 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감 후보등록 자격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후보자격에 5년 교육경력(행정 경력 포함)이 요한다고 하여, 저의 교육경력이 인정되는 지에 문의하였으나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00대학교 시간강사로 강의하였고, 2003년에는 00대

학교 겸임교수로 임명받아 강의해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것이 교육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데 확실한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7.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감후보자 자격으로서의 교육경력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고, 고등교육법상 교원은 총장 및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말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10조, 고등교육법 제14조)

- 따라서, 시간강사와 전임교수는 교육감후보자 자격으로서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교육전문직 선발에 따른 연령제한 완화와 선발 방식 개선 희망

질의

○ 교육전문직 응시하였던 평교사입니다. 나이제한을 완화해주셔서 재도전의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또한 1차 선발에서 타도의 경우처럼 약 5배수 정도로 해주신다면 뜻이 있는 교사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6. [교직발전기획과]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전직임용은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개전형을 거쳐 임용하되, 전형기준·전형방법 및 전형절차 등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의 전문직으로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직

질의

○ 작년 4월 1일 부로 사립학교 기능직10급으로 행정실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정관

상에는 직원구분은 기능직 10급, 일반직 8급, 6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연수에 따란 승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 7급 직원이 사직을 하여 일반직 정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1. 기능직 10급 직원이 일반직 전직으로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전직에 따른 절차를 이사회 의결로서 가름할수 있는지요? 전직의 요건은 학교법인 이사장 표창이 있습니다.
2. 만약 1번 사항이 법상으로 위법일 경우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을 할때 사직을 하고 난 후 새로 신규채용으로 해야되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8. 10. 8. [교직발전기획과]

○ 사립학교 직원의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의거 별도 임용 및 직렬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며,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9조에 의거 "전직 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전직시험을 거쳐 임용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 제2항 제7호에 의거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채용시험에 의거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사립학교 직원의 임용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이므로 재직중인 학교의 인사(임용)처리 규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대상자선정 장애등급

질의

○ 2010학년도 수능을 특수교육대상자(이하 특교자)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 현재 난치성질환(백혈병)을 진단받아 골수이식후 계속적인 관찰을 요하는 상태입니다. 하

지만, 백혈병은 장애등급을 받을수 없다하여 특교자 자격이 되지못합니다.

○ 난치성질환자 경우 특교자 전형으로 입학하기 위해서 장애등급(일반건강장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4. 15. [교직발전기획과]

○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학을 위한 장애등급(일반건강장애)은 장애인복지법상의 등급을 요구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9조 4항에 의거 해당 대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성 질환 치료를 위한 장기 의료처치가 요구되는 질환의 경우에는 일반건강장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 대학의 특별전형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위를 정할 것으로 우리부에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민학교 출신자의 학력인정

질의

○ 저는 50대 중반의 고등공민학교 출신입니다. 며칠 전 대안학교 비슷한 곳에 고등학교 과정의 야간에 지원서를 내려고 했더니 고등공민학교 출신이라면서 문교부 학력 인정하는 학교 출신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 3년 동안 학교에 다니고도 학력인정이 안된다고 해서 진학을 막는 저희 고등공민학교 출신에게는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 모를 것입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19. [교육복지정책과]

○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규학교를 이수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 교육기관의 시설 및 설비, 학업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이며 고등공민학교는 교육시설뿐 아니라 수업연한, 연간 수업일수 등 전반에 걸쳐 중학교와 차이가 있으므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에게 곧바로 중학교 학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력검정평가인 검정고시를 통하여 학력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2005.11.2

4, 2003헌마713).

○ 참고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15조에 의하면 3년제의 고등공민학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고시과목 중 국어, 수학, 영어외의 과목 고시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시험일자 질의

질의

○ 예배시간과 시험일정이 겹치는 관계로 시험을 치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시간을 피해서 오후예배를 드리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으나 종교적 이해관계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2. 20. [교육복지정책과]

○ 중입 검정고시의 경우 매년 1회(토요일), 고입·고졸검정고시는 매년 2회(1회차 일요일, 2회차 평일)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인, 직장인, 자영업자 등 응시자들의 다양한 형편을 고려하여 모두에게 공평한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초등졸업검정고시 혹은 중학교입학 검정고시

질의

○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하여 초등학교 졸업자격검정을 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무교육은 특정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나이가 되면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험을 두어 스크린 한다면 그것은 의무교육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 요즘은 대안학교다 홈스쿨이다 해서 초등교육의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을 위해서는 검정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6. 18. [교육복지정책과]

○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정해진 학교교육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당 과정을 온전히 이수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온전한 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에서는 별도의 학력 획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장치(검정고시 제도 등)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은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취학의무)에 따라 보호자에게 취학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절 제43조(입학자격등)에 따라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과정이 의무교육과정이긴 합니다만 입학자격을 초등학교 졸업자(또는 동등학력소지자)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학교교육단계에서 이전 단계인 초등학교교육을 온전히 이수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는 중입 검정고시를 합격하여야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고입 검정고시 응시 자격

질의

○ 2월 17일자로 정원외 관리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중학과정 검정고시를 보려고 하는데 금년 4월에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월 응시 자격이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언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 [교육복지정책과]

○ 문의하신 중학과정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로 교육과학기술부령인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동령 제5조의2(응시자격) 제②항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는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검정고시위원회의 고시 공고일 이후 중학교 제적 또는 정원외 관리된 자 및 초등학교 졸업자는 고시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응시 예정 시·도교육청에 검정고시 공고

일 등을 확인하셔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격 완화 요청

질의

○ 고졸 검정고시를 응시하려면 반드시 검정고시의 공고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학교로 부터 재적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제한을 두어 응시를 못하게 하면 저는 아무 이유 없이 1년을 허비한 후 내년의 2011수능에 응시해야합니다. 게다가 2011수능은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2010수능과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데 제가 받는 불이익은 너무나 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4. 1. [교육복지정책과]

○ 검정고시는 가정사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게 자격검정 평가를 통하여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중입, 고입, 고졸 검정고시 모두 재학생은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이수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중입 및 고입검정고시의 경우 정원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고졸검정고시의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자퇴 후 6개월이 경과한 자에게 예외적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는 제한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있었으며 주요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학교 재학생이던 모씨는 퇴학 후 검정고시에 응시하려 했지만 퇴학된 후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규정한 검정고시규칙으로 인해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시험이므로 시험응시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할 것이고, 자격요건에는 제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
2. “검정고시규칙 조항은 고교 퇴학자의 응시증가를 줄이고 정규학교 교육과정의 이수를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고등학교 퇴학 후 일정기간 응시를 제한한

다면 내신관리를 위해 고등학교를 퇴학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에 대해 자퇴여부를 숙고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3. "제한받는 사익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검정고시에 응시, 학력인정을 취득하려는 것에 불과하지만 달성하려는 공익이 퇴학자의 응시증가를 줄이고 정규학교 교육과정의 이수 유도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질의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추진된 혹은 추진 중인, 추진예정인 지역 어디가 있으며 주요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수행주체가 어떻게 되며 어떠한 지원 행정 조치를 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외 다른 마을단위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9. 30. [교육복지정책과]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생에 대하여 교육, 문화, 복지, 심리정서, 보건 등을 총체적인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학교를 선정할 경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한부모가정 자녀가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를 지역단위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는 사업지역과 사업학교를 선정하고 사업비의 약 50%를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업에 대한 연수나 평가, 학교에 대한 컨설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사업지역과 학교에 대하여 행·재정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고, 사업학교는 단위학교 지원학생들에 대한 여건과 특성에 따라 실질적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지역 아이들의 자아정체성, 심리정서적 안정 등으로 마을분위기가 좋아지는 효과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비의 일부를 대응투자하거나 운영협의회 등의 구성원으로 참여

하기도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eduzone.kedi.re.kr 에서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질의

○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적을 보면 '03년 80개교, '04년 52개교, '05년 51개교, '06년 42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1. '07년, '08년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2. '03년~'08년까지 통폐합된 학교 중에서 연도별로 공립과 사립의 숫자를 알고 싶습니다.
3. 농산어촌 영세사학의 폐교를 위한 특례규정이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요?

회신 회신일 : 2009. 6. 15. [교육복지정책과]

○ 연도별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현황

- 60('03), 50('04), 47('05), 42('06), 108('07), 91('08)

* 일부 사립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확한 수치 확인 곤란

○ 연도별 영세사학 법인 해산 현황

- 6('03), 3('04), 4('05), 2('06), 3('07), 1('08)

○ 영세사학 폐교에 관한 특례규정

1. 사립학교법에 영세사학 '해산법인 특례' 신설(제35조의 2, '97.8)
2. 영세사학 해산특례 적용시한 경과로 일몰('06.12.31)
3. 영세사학의 해산 기회 제공을 위해 현재 입법 추진 중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질의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106개의 통폐합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대상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상이 지정되어 있다면 대상 학교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1. 13. [교육복지정책과]

○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자 2006년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에 의거 학생수 60명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시 · 도교육청에서 지역여건 및 향후 학생 수 변화 전망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익년도 통폐합 대상학교를 선정 ·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06개 학교는 시 · 도교육청에서 2008년 자체 계획 수립을 통해 2009년에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예정된 학교로서 통폐합과 관련된 상세사항은 시 · 도교육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k-2 학교란?

질의

○ 최근에 언론에 발표된 k-2학교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취지, 의미, 대상학년은 어떻게 되는지? 중 · 고등학교는 포함되는지? k-2학교 선정 대상 학교는 어떤 기준인지?

회신 회신일 : 2009. 1. 13. [교육복지정책과]

○ (가칭) 농산어촌 K-2학교는 유치원(Kindergarten)의 'K' 및 초등학교 2학년의 '2'를 따서 명명한 것으로 농산어촌 저학년 학생의 원거리 통학을 방지하여 교육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당초, 분교장을 지정하여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1 · 2학년 학생에게 교육 뿐만 아니라 보육활동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원학교의 프로그램중 하나로 추진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관련 방과후학교 강사 활용

질의

○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계획'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여기서 한국어반 교실 같은 사례외에 '국제결혼 이민자 방과후학교 강사 활용'처럼 외국인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0. [교육복지정책과]

○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학부모, 외국인 등을 활용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을 활용한 국제이해교육/다문화교육

-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이해교실(CCAP : Cross Cultural Awareness Programme)"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등이 학교를 방문하여 출신국 언어, 문화, 풍습 등에 대해 소개하고, 문화간 이해 관련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학교내 재량활동 시간 등에 운영되며, 이를 통해 일반학생 등의 다문화 이해 능력을 높이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

-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및 학습지도, 상담·통역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학력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선정하여 집중교육(6개월)을 통해 '이중언어 교수요원'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서울교대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과정'을 운영('09.3~8월)하고, 이수자 중 70명을 서울시내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동 제도의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10년에는 경기도 지역까지 운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대상 :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등 지역 출신 대졸 이상 학력자 · 과정 : 6개월간 수업과정(교양과목, 교직과목, 전공과목 등으로 구성) 운영 * 한국사회의 이해, 다문화사회와 이중언어 교육, 수업 관찰, 아동심리와 상담 등으로 구성 · 이수자 활용 : 서울시 교육청 내 거점학교 등에서 방과후 강사로 활용

다문화가정 지원 문의

질의

○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육 지원 및 보조금 지원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9. 3. 20. [교육복지정책과]

○ 우리부와 16개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등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한국어, 문화이해교육, 멘토링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학교(정책연구학교, 거점학교)에서 방과후 지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외국인근로자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 중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참고)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문의: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2023-8617~2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자가정 학비지원 가능여부

질의

○ 저는 아이2명을 키우고 있는 모자가정세대입니다. 차량을 구입하기 전까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았으나, 차량구입으로 인하여 모든 혜택이 단절되었습니다. 내년이면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수업료 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 [교육복지정책과]

○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생의 학비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기초수급자 지원 사업과,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사업, 농어민자녀 지원 사업 등으로 나눌수 있으며, 사업내용과 기준은 지자체 및 교육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저소득층 지원 기준은 해당교육청의 지침 등으로 정하고 있음으며 궁금한 사항은 지역교육청 및 진학대상 학교에 문의하시고, 경차구입에 따른 학비지

원은 지자체 사업 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거주지 동사무소 문의하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2007년기준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1. 학비지원

- 모자가정 (학비는 동사무소에서 지원, 학교운영비는 학교에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우학생 (특수교육심의를 통해 선발된 학생)
- 저소득층 자녀 : 시·도교육청별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 담임교사 추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

2. 급식비 지원

- 기초생활수득자
- 모.부자 가정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우학생
- 저소득층 자녀 : 시·도교육청별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 담임교사 추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

난민 인정자 진학

질의

○ 법무부에 의하여 인정받은 난민(외국인)의 진학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학교 취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입학이 학교장의 재량에 따른 것인가요? 청강생이 아닌 정식학생(수료증이 아닌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지, NEIS에 등록되는지)의 신분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회신일 : 2008. 10. 2. [교육복지정책과]

○ 우리부는 2003.1월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불법·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근로자 자녀에게 동등한 취학권을 갖도록 법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이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며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 : 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편.입학이 가능함
- 중·고등 :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을 결정할 수 있음

○ 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NEIS에 등록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내용을 입력하며, 해당 학생의 수료 및 졸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유학(초·중·고생)정책

질의

1. 현재 초·중·고생의 자비유학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금지 조치를 이제 풀어야 하는 때가 되었다고 보이는데 언제쯤 개방을 추진할 예정입니까?
2. 아시아지역 학생들의 한국 유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교졸업자에 한한다는 규정에 묶여 우리나라는 초·중·고생 연령대의 아시아 학생들은 한국으로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유있는 아시아지역 10대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오고 싶어도 한국정부의 폐쇄적 유학정책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비된 초·중·고부터 유학생반 개설을 시작하고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 10대 학생들의 한국유학을 개방할 계획은 없습니까?

회신 회신일 : 2008. 8. 14. [국제협력정책과]

1. 초·중학생의 해외유학 자율화 여부는 반대여론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 및 의견수렴,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부는 정책연구, 여론조사,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관련 규정 개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제92조는 외국인학생의 국내 초·중·고등학교의 입학, 전학 및 편입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같은 법령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학생의 국내 초·중·고등학교 입학 등은 제한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회신 사례집

총 괄	감 사 관	변 광 화
	민원조사팀장	김 대 성
기 획	사 무 관	배 석 희
	교 육 연 구 사	정 회 택
	행 정 주 사	박 영 태
	행 정 주 사	박 지 영
편집정리	전 문 상 담 관	권 명 숙
	전 문 상 담 관	박 혜 진
	전 문 상 담 관	이 학 모
	전 문 상 담 관	이 지 숙
	전 문 상 담 관	이 봉 순
인 쇄	선명인쇄(주) ☎(02)2268-4743	

본 책자는 PDF로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보마당 ⇒ 정보자료실)
또한 사례집의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상담센타(☎02-6222-6060)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